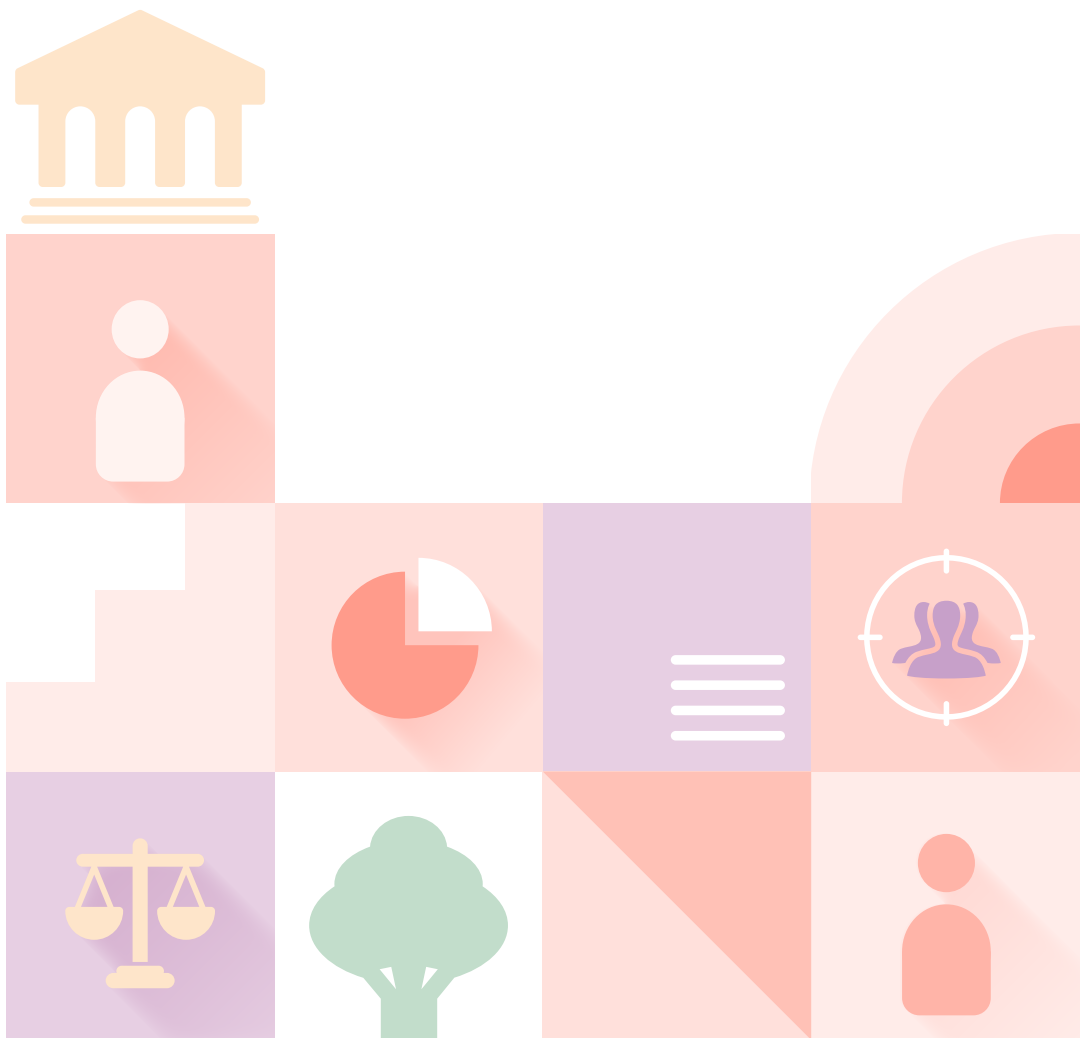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270000-001065-01

2023 성범죄 백서





성범죄 백서 제2호 발간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면서 성범죄의 양형이 적정해지고 있으나,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신상정보관리센터는 성범죄자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범죄유형 등을 분석한 「성범죄 백서」 창간호를 '20년 발간하였으며,

올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상정보 등록·관리사건 39,464건을 추가로 분석한 「성범죄 백서」 제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범죄 백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된 114,420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함과 더불어 신상정보 제도 변천 과정, 업무절차, 외국제도 운영사례, 사회내 처우 현황 등의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도의 전반적인 파악과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성범죄 백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게시하여 성범죄자 형사정책 분야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을 비롯하여 성범죄자 관리와 교육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성범죄 백서」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신상정보관리센터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9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일러두기

1. 통계의 기준

- 이 백서의 통계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 단위는 사건 수이다. 동일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각각 다른 범죄로 복수 등록되었을 경우 등록된 각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하나의 판결에 다수의 성범죄로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였으며, 이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았다.
-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 죄명은 강간 등,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등,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촬영물등 이용협박등,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영업으로 분류하였다.
- 강간 등에는 각 법의 강간 외에 간음, 강간등상해, 강간등살인, 강간등치상, 강간등치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강제추행에는 강제추행 외에 위계등추행, 업무상위력등추행이 포함되어 있다.
- 유사성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동법 제7조 제2항 및 5항이 포함된다.
- 부록에서는 2021년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의 성폭력사범 통계(2008년부터 2020년까지)를 수록하였다.

2. 용어 해설

신규등록 건수	최초등록일 기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로 등록된 사건
전체등록 건수 (실사사건)	각 선고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기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신규등록 건수로, 종료된 사건수를 포함한다.
등록·공개·고지 건수 (등록유형)	(등록) 등록 명령만을 받은 대상 사건 (등록·공개) 등록 및 공개(또는 열람) 명령만을 받은 대상사건 (등록·공개·고지) 등록·공개 및 고지 명령을 모두 받은 대상사건 ※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2016년 개정법률이 적용된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단, 개정법률 시행 전 종료 사건은 당시 법률 등록기간)

선고형	판결문 상 기재된 해당 범죄의 최종 선고형. 다수의 죄명으로 각기 다른 처분을 받거나 형벌이 병과되었다면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며, 집행유예·선고유예는 별도로 분류하였다.
성범죄 전과	신상정보등록사건의 해당 판결 확정일 이전에 확정된 성범죄의 총 전과 횟수로,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성범죄의 경우도 성범죄 전과 횟수에 포함된다. (단, 성인대상 성매매 범죄 및 각 범죄의 소년보호사건, 기소유예 중지,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처분은 제외한다.)
직업	등록 대상자의 현재 직업으로, 총 14개로 분류한다. 분류기준은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를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총 10개와 더불어 공무원, 학생, 무직, 기타를 별도로 추가하였다. 등록 대상자가 제출서에 직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역시 기타로 분류하였다.
국적	신상정보등록시스템상 중 외국인으로 분류된 대상자의 국적. 국적은 판결문상 명시된 국적 또는 등록외국인기록상 확인되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국가별 등록 사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9개국 및 기타(국적불상 포함)로 분류하였다.
죄명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된 범죄를 총 14개로 분류하였으며, 다수의 죄명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등록시스템상 첫 번째로 입력된 죄명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접촉범죄·비접촉범죄 (범죄유형)	해당 죄명의 범행이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을 포함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접촉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이 해당하며, 비접촉범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등,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업이 해당한다.
원등록 사건	재범으로 인해 신상정보가 복수 등록된 범죄자의 최초 등록사건
재등록 사건	기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 중 재범 판결 확정으로 인해 추가 등록된 사건으로, 원등록 범행의 여죄로 인한 재등록사건은 제외하고 집계한다. (참고로, 신상정보등록시스템상 재등록일 기준으로 원등록건이 이미 종료되어 폐기된 경우는 재등록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재등록 경과 기간	원등록사건의 최초등록일부터 재등록사건의 최초등록일까지의 경과된 일자
성범죄 죄명별 특성 <표>의 음영(■)	죄명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과 월
성범죄 재범 <표>의 음영(■)	재등록대상자의 원등록과 재등록의 범죄가 동일한 경우

목 차

제1편	신상정보등록제도	13
제1절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개요	14
제2절	신상정보등록제도 업무절차 및 내용	22
제3절	외국 신상정보제도 운영 사례	34
제2편	성범죄동향분석	49
제1절	성범죄 현황	50
제2절	성범죄자 특성	86
제3절	성범죄 죄명별 특성	101
제4절	성범죄 재등록사건 현황	148
제5절	재등록·원등록 비교	158
제6절	분석 요약 및 주요 동향	171
제3편	성범죄자의 사회내 처우 현황	177
제1절	보호관찰 현황	178
제2절	사회봉사명령 현황	183
제3절	수감명령(이수명령) 현황	186
제4절	전자감독 현황	192
제5절	성충동 약물치료 현황	198
제6절	청구전조사 등 현황	202
부록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205



표/그림 목차

표목차

제1편 신상정보등록제도

1-1-1	신상정보제도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	19
1-1-2	현행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정보	21
1-2-1	신상정보등록제도 유관기관 업무	22
1-2-2	등록 대상 성범죄	24
1-2-3	기본신상정보	25
1-2-4	신상정보 등록절차	27
1-2-5	선고유형별 등록기간	28
1-2-6	등록기간별 점검주기	28
1-2-7	최소 등록기간 경과	29
1-2-8	면제 심사요건	29
1-2-9	공개 대상 성범죄	31
1-2-1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31
1-2-11	공개정보	31
1-2-12	유형별 고지집행	32
1-2-13	고지받는 대상	33
1-2-14	고지정보 정정 절차	33
1-3-1	미국 스마트 소개	35
1-3-2	미국의 성범죄자 분류 단계 (Sex Offender Classification Tiers)	38
1-3-3	캐나다 : 법정형 기준 차등화	41
1-3-4	영국 : 선고형 기준 차등화(성인 기준)	44

제2편 성범죄동향분석

2-1-1	신상정보등록 현황	50
-------	-----------	----

2-1-2	연도별 성범죄 기소 건수, 성폭력범죄 등록 건수 현황	52
2-1-3	등록유형별 연도별 등록 현황	53
2-1-4	등록 기간별 현황	55
2-1-5	공개 기간별 현황	57
2-1-6	고지 기간별 현황	59
2-1-7	선고형별 현황	60
2-1-8	최종 심급별 현황	62
2-1-9	선고형별 등록대상사건 최종 심급 현황	64
2-1-10	자유형 이상 형량 현황 (사형·무기징역·징역·금고형)	65
2-1-11	사회내처우 부과현황(중복집계)	66
2-1-12	보호관찰 부과현황	68
2-1-13	보호관찰 기간 현황	70
2-1-14	사회봉사명령 부과현황	71
2-1-15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별 현황	72
2-1-16	수감·이수명령 부과현황	73
2-1-17	수감·이수명령 부과시간별 현황	75
2-1-18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현황	75
2-1-19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별 현황	77
2-1-20	치료감호 부과현황	78
2-1-21	치료명령 부과현황	79
2-1-22	성충동 약물치료 부과현황	81
2-1-23	면제 신청 현황	83
2-1-24	등록 종료별 현황	84
2-2-1	성범죄 전과 횟수 현황	86
2-2-2	공개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현황	88
2-2-3	연령별 현황	90



표/그림 목차

2-2-4	연령별 죄명 현황	91
2-2-5	성별 현황	93
2-2-6	직업 현황	95
2-2-7	내·외국인대상자 현황	96
2-2-8	외국인 대상자의 국적 현황	97
2-2-9	외국인대상자의 죄명 현황	99
2-2-10	외국인대상자의 연령 현황	100
2-3-1	죄명별 등록사건 현황	102
2-3-2	범죄 유형(접촉·비접촉) 현황	104
2-3-3	죄명별 선고형 현황 (병과된 벌금, 치료감호는 제외)	105
2-3-4	연도별 선고형 현황(강간 등)	107
2-3-5	연도별 선고형 현황(강제추행)	108
2-3-6	연도별 선고형 현황(유사성행위)	110
2-3-7	연도별 선고형 현황(아동복지법 위반)	111
2-3-8	연도별 선고형 현황 (공중밀집장소추행)	112
2-3-9	연도별 선고형 현황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13
2-3-10	연도별 선고형 현황 (통신매체이용음란)	114
2-3-11	연도별 선고형 현황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115
2-3-12	연도별 선고형 현황 (성착취물제작·배포등)	116
2-3-13	연도별 선고형 현황(성매수 등)	118
2-3-14	죄명별 형량 현황 (사형·무기징역·징역·금고형)	119
2-3-15	죄명별 벌금형	121
2-3-16	죄명별 집행유예 기간	122
2-3-17	죄명별 최종 심급 현황	124

2-3-18	죄명별 범죄시간 현황	125
2-3-19	죄명별 범행월 현황	127
2-3-20	월별 범행시간 현황(강간 등)	129
2-3-21	월별 범행시간 현황(강제추행)	130
2-3-22	월별 범행시간 현황(유사성행위)	131
2-3-23	월별 범행시간 현황(아동복지법 위반)	132
2-3-24	월별 범행시간 현황 (공중밀집장소추행)	133
2-3-25	월별 범행시간 현황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34
2-3-26	월별 범행시간 현황 (통신매체이용음란)	135
2-3-27	월별 범행시간 현황 (카메라등이용촬영)	136
2-3-28	월별 범행시간 현황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137
2-3-29	월별 범행시간 현황 (촬영물등이용협박등)	138
2-3-30	월별 범행시간 현황 (성착취물제작·배포등)	139
2-3-31	월별 범행시간 현황(성매수)	140
2-3-32	월별 범행시간 현황(성매매강요)	141
2-3-33	월별 범행시간 현황(성매매알선영업)	142
2-3-34	죄명별 등록대상사건의 내·외국인대상자 현황	143
2-3-35	죄명별 피해자 성별 현황	144
2-3-36	죄명별 피해자 연령	146
2-4-1	재등록사건 연도별 등록 현황	149
2-4-2	처분유형별 구성비	149
2-4-3	재등록사건 등록기간별 현황	150
2-4-4	공개 기간별 구성비	150

2-4-5	재등록사건의 연도별·죄명별 등록 현황	151
2-4-6	재등록사건 선고형별 현황	152
2-4-7	재등록사건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 (중복집계)	153
2-4-8	재등록 경과 기간	153
2-4-9	재등록대상자 성범죄 전과 횟수	154
2-4-10	재등록사건 성별 현황	155
2-4-11	재등록대상자 국적 현황	155
2-4-12	재등록사건 직권등록 여부	156
2-4-13	재등록사건 연도별 비접촉 범죄 현황	156
2-5-1	재등록사건과 원등록사건의 죄명 비교	159
2-5-2	재등록사건 범죄 유형(접촉·비접촉)	160
2-5-3	재등록사건 발생 시기(월별)	161
2-5-4	재등록사건 발생 시기(시간별)	162
2-5-5	재등록사건 범행 장소	163
2-5-6	재등록대상자 음주 여부	165
2-5-7	재등록대상자 공범 여부	165
2-5-8	피해자 연령별 구분(아동·성인)	166
2-5-9	피해자 성별	167
2-5-10	피해자 장애 여부	168
2-5-11	피해자 수	168
2-5-12	피해자와의 관계	169

제3편 성범죄자의 사회내 처우 현황

3-1-1	성폭력범죄자 대상 보호관찰 도입 시기	178
3-1-2	보호관찰 접수사건 및 실시사건	179

3-1-3	성별에 따른 보호관찰 실시사건	180
3-1-4	성폭력사범 재범률	181
3-1-5	성폭력사범 재범률(동종)	182
3-2-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	184
3-2-2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간별 현황	185
3-3-1	성폭력 수감명령 및 이수명령 접수현황	187
3-3-2	수감명령 시간별 현황	188
3-3-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구성	189
3-3-4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교정)	190
3-3-5	성폭력 수형자 심리치료 실적(교정)	190
3-3-6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실적(교정)	191
3-4-1	전자감독 실시 죄명 추가 현황	192
3-4-2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	193
3-4-3	연도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접수현황	194
3-4-4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처분 유형별 접수 현황	195
3-4-5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연령별 현황	196
3-4-6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부착명령 기간별 현황	197
3-5-1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현황	199
3-5-2	연도별 성충동 약물치료 현황	199
3-5-3	성충동 약물치료 죄명별 현황	200
3-5-4	치료기관 현황	200
3-5-5	국립법무병원 프로그램	201
3-6-1	성폭력범죄자 조사 접수 현황	203



표/그림 목차

부록.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4-1-1	연도별 성폭력범죄 현황	206
4-1-2	연도별 성폭력범죄 발생월	207
4-1-3	연도별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 (2014년 이전)	208
4-1-4	연도별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 (2014년 이후)	209
4-1-5	성폭력범죄자 성별	210
4-1-6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연령	212
4-1-7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직업	213
4-1-8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국적	215
4-1-9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217
4-1-10	연도별 성폭력 발생장소	218
4-1-11	연도별 성폭력범죄 공범 수	220
4-1-12	연도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기간 및 종류	221



그림목차

제1편 신상정보등록제도

1-2-1	업무 흐름도	23
-------	--------	----

제2편 성범죄동향분석

2-1-1	신상정보등록 현황	51
2-1-2	연도별 성범죄 기소 건수, 성폭력범죄 등록건수 현황	52
2-1-3	등록유형별 연도별 등록 현황	54
2-1-4	등록 기간별 현황	56
2-1-5	선고형별 비율	61
2-1-6	사회내처우 부과현황	67
2-1-7	보호관찰 부과비율	69
2-1-8	사회봉사명령 부과비율	72
2-1-9	수감·이수명령 부과비율	74
2-1-10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비율	76
2-1-11	치료감호 부과비율	79
2-1-12	치료명령 부과비율	80
2-1-13	연도별 성충동 약물치료 부과비율	82
2-1-14	면제 불허 사유	83
2-1-15	등록 종료별 비율	85
2-2-1	성범죄 전과 횟수 비율	87
2-2-2	공개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비율	89
2-2-3	연령별 비율	90
2-2-4	연령별 죄명 비율	92
2-2-5	성별 현황	94
2-2-6	내·외국인대상자 연도별 등록 현황	96

2-2-7	내·외국인대상자 국적 비율	98
2-3-1	죄명별 등록사건 비율	103
2-3-2	죄명별 선고형 비교 (병과된 벌금, 치료감호는 제외)	106
2-3-4	죄명별 범죄시간 현황	126
2-3-5	죄명별 범행월 현황	128
2-3-6	죄명별 등록대상사건의 내·외국인대상자 비율	143
2-3-7	죄명별 피해자 성별 현황	145

제3편 성범죄자의 사회내 처우 현황

3-1-1	보호관찰 접수사건 및 실시사건	179
3-1-2	성별에 따른 보호관찰 실시사건	180
3-1-3	성폭력사범 재범률	181
3-2-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	184
3-2-2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간별 현황	185
3-3-1	성폭력 수감명령 및 이수명령 접수현황	187
3-3-2	수감명령 시간별 현황	188
3-4-1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	193
3-4-2	연도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접수현황	194
3-4-3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처분 유형별 접수 현황	195
3-4-4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연령별 현황	196
3-4-5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부착명령 기간별 현황	197

부록.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4-1-1	연도별 성폭력범죄 검거 상황	206
4-1-2	성폭력범죄 발생월 비율	208
4-1-3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 비율 (2014년 이전)	209
4-1-4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 비율 (2014년 이후)	210
4-1-5	성폭력범죄자 성별	211
4-1-6	성폭력범죄자 연령 비율	213
4-1-7	성폭력범죄자 직업 비율	215
4-1-8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국적	216
4-1-9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218
4-1-10	연도별 성폭력 주요 발생장소	219
4-1-11	연도별 성폭력 공범 수	221
4-1-12	연도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기간 및 종류	222

신상정보등록제도

제1절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개요

제2절 신상정보등록제도 업무절차 및 내용

제3절 외국 신상정보제도 운영 사례

제 1 절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개요

01 개요

-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벌주의에 기초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 세계 각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사후관리 대책으로 전자감독,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성충동약물치료 등 크게 3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더불어 위 제도를 모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였고, 보안처분인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와 더불어 전자감독, 성충동약물치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 제도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02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의의

-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등록된 정보 중 일부를 일반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03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변천 과정

- 우리나라는 신상정보 등록제도 도입 전 2000년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먼저 시행하였다. 당시 이른바 원조교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면서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제도 도입 이후 계속하여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성범죄 이슈가 연이어 터지자 사회적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성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법률 제·개정을 통해 도입 초기와는 다른 제도적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1) 범죄 계도문을 통한 신상정보공개

△ 「청소년성보호법」(제6261호, '00. 7. 1.시행)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에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 당시 시대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신상공개 등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에서 신상공개 대상자를 선별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
-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범죄사실 요지였고 범죄 계도문을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였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가 이루어졌다.
- 최초로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공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에서 등록·관리하지 않았기에 범죄 수사에 활용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2)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도입

△ 「청소년성보호법」(제7801호, '06. 6. 30.시행)

- 2006년 6월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도입되었다.
- 그동안 지적되어 오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에서 등록·관리하게 됨으로써 성범죄자가 재범하였을 경우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검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결정으로 등록 절차가 이루어졌고 등록된 신상정보는 5년간 보존·관리토록 하였으며, 등록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사진이었다.
- 또한 등록기간 동안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및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는 이전과 같이 계도문 등을 통해 공개가 이루어졌다.
- 다만, 성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만 등록 대상을 적용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하였다.

(3)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확대

△ 「청소년성보호법」(제8634호, '08. 2. 4.시행)

- 2008년 2월 법 개정을 통해 신상등록 여부 결정의 주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 종전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재범위험성을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법원에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재범위험성의 판단과 결정 없이 등록하도록 하였다.
- 등록업무의 소관 부처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으며, 등록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열람 기간은 5년으로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였다.
- 제출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였고, 열람정보는 제출정보 이외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범죄사실 요지)이 포함되어 있다.

(4)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시행

△ 「청소년성보호법」(제9765호, '10. 1. 1.시행)

- 2010년에 들어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신상정보 열람 방식이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알림e')를 통한 공개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신상등록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읍·면·동),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요지이며,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공개할 수 있다.

(5) 신상정보 등록기간 확대 및 우편 고지제도 도입

△ 「청소년성보호법」(제10260호, '10. 4. 15.시행)

- 2010년 4월에는 등록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었고, 우편 고지제도('11. 1. 1. 시행)가 도입되었다.

(6) '열람명령' → '공개명령' 전환 규정 마련

△ 「청소년성보호법」(제10391호, '10. 8. 24.시행)

- 2010년 8월에는 기존의 열람대상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 법원 선고를 통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전환 규정이 마련되었다.

(7) 신상정보 고지제도 시행

△ 「청소년성보호법」(제10260호, '11. 1. 1.시행)

- 2011년 1월에는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가 시행되었다. 고지제도는 고지 대상자가 거주한 곳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고지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 고지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요지이다. '성범죄자알림e'에서 공개되는 주소지는 '읍·면·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고지인 경우 아파트 동 호수 등 상세주소가 포함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로 볼 수 있다.
- 2020년 11월부터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앱) 고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고지대상 세대주에게 모바일로 우선적으로 고지하고, 모바일 미열람 세대 및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우편고지서를 발송한다.

(8) 성인대상(피해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 도입

△ 「성폭력처벌법」(제10258호, '11. 4. 16.시행)

- 2010년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하고 살인한 이른바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4월부터는 종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 적용하던 신상정보 제도를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성폭력처벌법」에서는 10년으로 정한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20년으로 정하여 양 법률에 차이가 있었다.
-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담당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동일한 가해자가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성폭행한 경우에는 양 기관으로부터 우편 고지서를 받게 되는 등 업무의 중복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9)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

△ 「성폭력처벌법」(제11556호, '13. 6. 19.시행)

△ 「청소년성보호법」(제11572호, '13. 6. 19.시행)

- 2012년 8월 서울 중곡동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른바 '서진환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게 실시하던 종전의 정책에 대해 전환과 혁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다.
- 국회는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개선하였다.

- 먼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나이 기준으로 담당부처가 이원화되었던 것을 등록업무는 법무부가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 둘째, 등록기간은 20년으로 통일하였으며, 등록대상 성범죄(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추가·확대하였다.
- 셋째, 사진의 경우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던 방식을 관할경찰서에서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저장·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진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 넷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만 실시하였던 우편고지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학원과 교습소의 장까지 알리도록 하였고, 행정구역과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도 30일간 게시하도록 하는 등 고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 다섯째, 최초 고지 이후 추가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편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가구(우편고지 집행 이후 출생, 입양, 전입 신고된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정)에도 반기 1회 고지명령을 집행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였다.
- 여섯째, ‘성범죄자알림e’ 이용에서도 열람자를 20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하고 복잡했던 인증 절차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인증만 거치면 국민 누구나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였으며, 공개·고지 정보에 성폭력범죄 횟수와 전자장치 부착여부 정보를 추가하였다.
-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2006년 6월 30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회 이상을 실형을 받은 자,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2008. 4. 16.~2011. 4. 15.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의 선고로 공개·고지명령을 소급할 수 있게 하였다.

(10)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 차등화 및 등록면제제도 도입 등

△ 「성폭력처벌법」(제14412호, '16. 12. 20.시행)

-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변화도 있었다.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토록 한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헌법불합치(2014헌마340) 결정을 하였다.
- 이에 따라 불법성·재범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선고형을 기준으로 징역 10년 초과는 30년,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징역 3년 이하는 15년, 벌금형은 10년으로 등록기간을 차등화하였다.
- 그리고 선고받은 형의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후 잔여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는 제도(2017. 6. 21. 시행)를 도입하였다.

1-1-1 신상정보제도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

시행	제도구분	대상	주요내용	결정기관
'00. 7. 1.	공개	청소년성매수자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제6261호) • 계도문 배포(연2회)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개정보 -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 범죄사실 요지	청소년보호위원회
'06. 6. 30.	등록·열람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 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자	△ 「청소년성보호법」(제7801호) • 신상정보 등록(5년) 및 열람(5년)제도 도입 -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지방경찰청에서 청소년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열람 • 등록정보 - 성명, 생년월일, 직장 및 실거주지 주소, 사진 • 열람정보 - 등록정보와 동일	국가청소년위원회
'08. 2. 4.	등록·열람(확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청소년성보호법」(제8634호) • 신상정보 등록(10년) 및 열람(5년)제도 확대 - 법원의 유죄판결 확정시 당연등록, 열람명령은 법원이 선고 - 등록기간 10년으로 확대, 1년마다 사진제출 의무 신설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등록·열람 집행 • 등록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 열람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법원
'10. 1. 1.	인터넷 공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제9765호) • 인터넷을 통한 공개(최장 10년)제도 시행 - 공개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알림e') 운영 - 20세 이상 실명인증을 거쳐 정보 열람 -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관장 • 등록정보 추가 - 신체정보(키, 몸무게) • 공개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요지	법원
'10. 4. 15.	등록기간 확대	상동	△ 「청소년성보호법」(제10260호) • 신상정보 등록기간(20년) 확대 - 여성가족부에서 업무 관장('10. 3. 19.) - 우편 고지제도 도입('11. 1. 1. 시행)	법원
'10. 8. 24.	열람 → 공개전환	-	△ 「청소년성보호법」(제10391호) • 열람대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공개명령 전환 규정 마련 - 검사 청구 → 법원 선고	법원

시행	제도구분	대상	주요내용	결정기관
'11. 1. 1.	우편고지	상동	△「청소년성보호법」(제10260호) - 신상정보 고지(최장 10년)제도 시행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 - 고지정보 :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법원
'11. 4. 16.	성인확대	성인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시행(제10258호) -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 도입 - 피해자 연령 19세 이상은 법무부, 19세 미만은 여성가족부에서 관장 - 등록(10년), 공개·고지(최장 10년) - 등록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경력정보 - 공개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요지 - 고지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요지	법원
'13. 6. 19.	등록·공개 운영 일원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성폭력처벌법」(제11556호), 「청소년성보호법」(제11572호)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운영 주체 일원화 - 등록은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 - 등록기간(20년) 통일 - 등록대상 성범죄 추가(4개 범죄)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신설),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공개열람 대상 확대 - 실명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정보 열람 - 등록·공개·고지 정보 추가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법원
'16. 12. 20.	등록기간 차등화 및 법령정비	상동	△「성폭력처벌법」(제14412호) -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 차등화(10년~30년) - 신상정보 확인 주기 차등화(3, 6, 12개월) -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벌금형은 제외 -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도입 및 출입국 시 신고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신설('17. 6. 21. 부터 시행) - 등록정보 추가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법원

시행	제도구분	대상	주요내용	결정기관
'17. 6. 21.	면제제도 및 출입국 신고의무 등 시행	상동	△ 「성폭력처벌법」(14412호) -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시행 - 선고유예자(2년 경과자) 면소시 등록면제 규정 추가 - 최소등록기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 잔여기간 등록 면제 - 출입국 시 신고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행	법원
'20. 5. 19.	등록대상 추가	상동	△ 「성폭력처벌법」(제17264호)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 신설 - 불법 성적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자 처벌규정 신설	법원
'20. 6. 25.	등록대상 추가	상동	△ 「성폭력처벌법」(제17086호)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신설	법원

1-1-2 현행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정보

등록	(등록대상)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 포함) 확정시 등록 (등록기간) 선고형에 따라 최소 10년 ~ 최장 30년 등록·관리 (등록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⑥ 신체정보(키, 몸무게), ⑦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⑧ 사진, ⑨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판결일자, 판결법원, 사건번호, 죄명, 선고 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 ⑩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⑪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기간
공개	(공개대상) 공개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공개기간) 최장 10년 (공개정보)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④ 신체정보(키, 몸무게), ⑤ 사진, ⑥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포함), ⑦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⑧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기간
고지	(고지대상) 고지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고지기간) 최장 10년 (고지정보)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④ 신체정보(키, 몸무게), ⑤ 사진, ⑥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포함), ⑦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⑧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기간

제 2 절



신상정보등록제도 업무절차 및 내용

01 개요

(1) 근거법령

-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 업무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 「성폭력처벌법」에는 등록대상 성범죄,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출입국 시 신고의무,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의 관리, 등록의 면제, 등록의 종료, 등록정보의 활용, 비밀준수,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청소년성보호법」에는 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고지, 공개명령의 집행, 고지명령의 집행, 고지정보의 정정, 공개정보 악용금지, 취업제한,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업무절차

-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법무부·경찰·여성가족부 세 개 부처가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아래 <표 1-2-1>와 같다.

1-2-1 신상정보등록제도 유관기관 업무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
신상정보 등록·관리 등록면제·종료 유관기관 신상정보 전송 열람시스템(형사사법포털) 운용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 성범죄자알림e 운용	신상정보 제출서 접수, 사진촬영 신상정보 진위여부 점검 위반자에 대한 수사

- 신상정보 업무 흐름은 아래 <그림 1-2-1>와 같이 이루어진다.

1-2-1 업무 흐름도



-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와 사진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판결문과 신상정보 제출서가 송달되면 법무부에서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며, 등록된 정보는 경찰과 여성가족부에 실시간 전송한다.
- 등록기간 경과, 등록면제, 사망 등으로 등록이 종료된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자는 본인의 등록정보 및 폐기사실을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공개·고지 대상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우편(모바일)으로 고지한다.

02 신상정보 등록

(1) 등록대상 성범죄

- 등록대상 성범죄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 1-2-2>와 같다.

1-2-2 등록 대상 성범죄

1. 『형법』	
제297조(강간)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298조(강제추행)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5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39조(강도강간)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42조(강도강간미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11조(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4조(특수강간 등)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벌금 제외
제6조(장애인 등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벌금 제외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사)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0조(업무상 위력에 등에 의한 추행)	제15조(미수범)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2(예비, 음모)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상해·치사)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용어 변경 및 법정형 상향('20. 6. 2.)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의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4.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2) 등록대상자

- <표 1-2-2>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제3호¹⁾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등록대상자가 된다.
-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죄 중 배포·제공·소지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법정형(징역형 이상)을 상향하였다.
- 등록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는 사형,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형을 물론이고 선고유예, 형집행면제 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3) 등록절차

-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 제출하는 기본신상정보는 7개 항목으로 아래 <표 1-2-3>과 같으며,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1-2-3 기본신상정보

법 제43조 제1항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⑥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⑦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1) 공개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상실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공개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자

-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와 전자기록(사진)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관할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송달받은 정보(기본신상정보, 사진)와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자, 판결법원, 사건번호, 죄명, 선고 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및 부착기간(부착명령을 받은 경우)을 성범죄자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대상자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를 통해 자신의 등록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등록대상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등록대상자가 제출 기한 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상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2-4 신상정보 등록절차



03 등록정보 관리

(1) 등록기간

-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보존·관리한다. 아래 <표 1-2-5>와 같이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은 20년, 10년 초과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은 30년간 등록·관리하게 된다.
- 다만, 경합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형으로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판결로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등록기간이 기산되나,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기간 앞뒤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2-5 선고유형별 등록기간

선고형	벌금	징역 3년 이하	징역 3년 초과 ~ 징역 10년 이하	징역 10년 초과, 사형, 무기징역
등록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 등록정보 변경

-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아래 <표 1-2-6>과 같이 등록기간별 점검주기에 따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6 등록기간별 점검주기

구분	공개·고지 기간	등록기간 30년	등록기간 20년·15년	등록기간 10년
점검주기	3개월		6개월	1년

- 사진은 최초 촬영한 후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다시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는 교정시설 등의 장이 등록대상자가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면 된다.

- 등록대상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입국한 후에는 14일 이내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다 입국하였을 때도 입국 신고 절차는 동일하다.

(3) 등록정보의 활용

-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포에 갈음하여 검사나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등록정보를 조회하거나 출력하게 할 수 있다.

(4) 등록정보의 면제 및 종료

1) 등록정보의 면제

- 등록대상 성범죄로 형의 선고로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을 면제한다.
- 또한, 등록대상자는 아래 <표 1-2-7>과 같이 등록 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면제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아래 <표 1-2-8>의 객관적 요건 등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

 1-2-7 최소 등록기간 경과

등록기간	30년	20년	15년	10년
최소경과기간	20년	15년	10년	7년

 1-2-8 면제 심사요건

법 제45조의 제3항

- ▶ 등록 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 판결 시 선고받은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 완납
- ▶ 판결 시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이수명령 집행 완료
- ▶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전자장치 부착, 약물치료 명령 등 의무위반 범죄가 없을 것

- 면제 신청인은 등록의 면제 심사 결과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면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등록정보의 종료 및 폐기

- 신상정보는 등록기간이 지나거나 등록이 면제된 경우에는 등록이 종료되며, 법무부장관은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등록대상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등록정보가 폐기된 사실을 열람(등록이 종료된 때부터 1년)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04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기본신상정보 제출 시 사진 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매년 사진의 갱신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05 신상정보 공개·고지

(1) 신상정보 공개

1) 공개대상자

- 신상정보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아래 <표 1-2-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9 공개 대상 성범죄

법 제49조 제1항

-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 ②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
- ③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장애인)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공개기간

- 공개기간은 <표 1-2-10>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개기간이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에는 5년, 벌금의 경우에는 2년을 각 초과하지 못한다.

1-2-1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구 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벌금
공개기간	최장 10년	최장 5년	최장 2년

-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되나,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기간 앞뒤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공개집행

-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개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와 같이 송달받은 공개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공개기간 동안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되는 정보는 8개 항목으로 아래 <표 1-2-11>과 같다.

1-2-11 공개정보

법 제49조 제1항

-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④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⑤ 사진, ⑥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⑦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⑧ 전자장치 부착 여부

-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되는 정보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 ‘성범죄자알림e’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공개정보는 일반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회한 공개정보를 SNS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신상정보 고지

1) 고지대상자

- 신상정보 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표 1-2-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고지기간

-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따라서 고지기간은 공개기간과 동일하게 <표 1-2-10>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고지기간 또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되고,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기간 앞뒤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고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고지집행

- 고지명령은 아래 <표 1-2-12>의 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1-2-12 유형별 고지집행

법 제50조 제3항

-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고지정보는 위 <표 1-2-11>의 공개정보와 동일하나,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만 제공하는 공개와 달리 ‘번지 및 아파트 동과 호수’ 등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정보를 아래 <표 1-2-13> 아동·청소년 친권자 등에게 우편(또는 모바일)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동 포함)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고지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1-2-13 고지받는 대상

법 제51조 제4항

- ▶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 ▶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시행일: 2023. 10. 12.]

-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지정보와 함께 전출정보를 고지하며, 고지명령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입양·전입신고가 된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 고지받은 대상자로서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우편고지를 한다.
- 누구든지 집행된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고지정보 정정 절차는 아래 <표 1-2-14>와 같으며 고지정보에 정정이 있는 경우 요청자 및 종전에 우편 고지를 받았던 친권자 등에게 정정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1-2-14 고지정보 정정 절차



- 고지정보도 공개정보와 동일하게 일반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고지받은 정보를 SNS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 3 절

외국 신상정보제도 운영 사례

-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미국으로 1947년 도입하였다. 그 뒤를 이어 영국이 1997년에 시행을 하였다. 신상정보제도를 운영한다고 알려진 국가 중 영미법계에 속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며, 대륙법계에 속하는 나라로는 프랑스가 2005년에 시행하였고 독일의 경우는 아직 성범죄자 등록제도 시행에 관하여 알려진 바가 없다.
- 성범죄자의 체계적 관리와 범행 발생 시 검거의 용이성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신상정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 법무부에서 2022년 4월에 발간한 보고서²⁾에는 41개 국가가 제도를 운영 중이고 42개 국가가 제도 시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운영 방법은 등록 대상, 기간, 해외 출국 시 의무사항, 웹사이트 운영 등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등록 대상 성범죄 종류는 미국, 영국, 캐나다처럼 대부분의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가 있고 아동 대상 성범죄만 대상인 국가도 있으며 등록기간 또한 최소 2년에서 종신으로 다양하다. 해외 출국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한 국가가 있고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국가도 있다. 또한 같은 국가 내에서도 미국, 호주 등은 주별로 제도 운영 방법이 다르다.
- 신상정보제도의 이해를 위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양한 나라의 제도운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제도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여러 나라 중 가장 오랫동안 제도를 운영하고 우리나라 신상정보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영국, 캐나다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의 신상정보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01 미국

(1) 제도 운영 특징

- 미국은 국가 단위의 통합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제도를 구축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며, 우리나라 신상정보제도 도입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신상정보제도의 도입 과정 및 관리 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s around the World

- 1947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개별적인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처음 시작된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미국 대다수의 주가 신상정보등록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1994년 제정된 “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ce Offender Act”는 연방 차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관한 법률로 미국 전 주의 성범죄자 등록제도 실시와 주별로 이루어졌던 제도를 국가적으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1996년 제정된 메간법은 지역주민들 그리고 성범죄의 피해 위험이 높은 개인 혹은 집단에게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고, 2003년에는 기존 Wetterling Act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였다.
- 2006년 연방정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법(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이하 SORNA)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아담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Adam Walsh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제정하였다. 연방정부는 SORNA 제정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제도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주별로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던 등록 및 고지제도를 표준화하고, 주마다 상호 정보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 2008년 연방정부는 SORNA를 통한 효과적인 성범죄자 관리감독을 위하여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정부뿐 아니라 다른 공공, 민간 기관들을 지원하는 ‘성범죄자 형선고, 감시, 파악, 등록, 추적 부서’ SMART(Office of Sex Offender Sentencing, Monitoring, Apprehending, Registration and Tracking)를 신설하였으며, 2019년 기준 90만 명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1-3-1 미국 스마트 소개

항 목	내 용
기관 명칭	the Office of Sex Offender Sentencing, Monitoring, Apprehending Registering, Tracking
소 속	미국 법무부 차관실 소속
연 혁	2008년 연방정부에서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고지법을 시행하는 관할 구역에 지침, 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설립
목 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법 시행을 지원하고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성범죄자 관리 활동 전반에 형사사법전문가를 지원
역 할	▶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고지법의 표준 관리 ▶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고지 관련 보조금 프로그램 관리 ▶ 주, 특별구,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 제공 ▶ 성범죄자 공개 웹사이트 운영(www.nsopw.gov) ▶ 전국 성범죄자 관리 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률 및 집행에 관한 교육 실시

항 목		내 용
제공 기술	SORNA Exchange Portal	관할 구역이 다른 지역의 신상등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 SMART는 기술적 지원 제공
	SORT (Sex Offender Registry Tool)	성범죄자 등록 도구(성범죄자 관리 응용 프로그램)
DRU Sjodin (www.nsopw.gov)		전국 성범죄자 공개 웹사이트(50개주 전체 참여) - 인터넷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 성적학대 예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시 사 점		▶ 등록 및 공개·고지 업무를 일원화하여 운영 ▶ 신상정보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위해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기술적 지원 ▶ 성범죄 예방정책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 및 연구보고서 간행 등)

(2) 등록정보의 주요내용 및 확인 과정

- 등록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는 이름(가명, 별명 포함), 사회보장번호, 출소 후(최초등록 시) 거주할 집 주소(정기 방문등록 시 현재 거주하는 주소), 직장명과 직장 주소, 학교명과 학교 주소(학생일 경우), 자동차 번호판 번호와 자동차 종류 및 색깔 등 정보, 여타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정보(이메일, SNS계정, 전화번호, 직업관련 자격증, 생년월일, 신체특징 정보(키 몸무게 등), 성범죄자가 위반한 법률 조항, 전과 자료, 현재 사진(온라인 게재용), 지문 및 손바닥 지문, DNA 정보, 운전면허증 및 여타 여권 등 신분증(스캔받아서 데이터베이스 저장) 등이 있다. (연방법인 SORNA section 114(a) 참조)
- 등록정보 거주불명자 혹은 직업의 특성상 자주 옮겨 다니며 일하는 대상자의 주거지 정보에 대하여 경찰은 ‘습관적으로 사는 곳’을 등록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사는 곳은 30일 이상(연속 또는 불연속적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한다. 거주불명자의 경우, ‘xx지하철역 인근’ 등과 같이 거주하는 거리의 장소적 특징을 최대한 묘사할 것으로 요구된다.
- 직장정보의 경우, 직장명, 직장주소, 취업 중이거나 취업예정인 사업장의 주소(자원봉사 또는 무급 인턴 포함), 고정된 장소에 출퇴근하지 않는 대상자는 주로 일하러 가는 곳의 동선을 등록해야 하는데, 특히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아침에 인력 시장이 서는 곳을 직장의 주소로 간주하고 등록한다.
- 사진의 경우 3등급은 분기 1회, 2등급은 반기 1회, 1등급은 연 1회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신체정보는 일반적인 것과 특징적인 것 모두 등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 눈 색깔, 머리 색깔뿐만 아니라 상처와 문신과 같은 특징적인 정보도 모두 포함된다.
- 등록 담당 기관은 해당 정보 중 신상정보 등록에 해당하는 주요 정보만을 다시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성범죄 관련 위반 법률 및 죄명, 과거 범죄 전력, 체포 날짜 및 형 확정 날짜,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한 추가 정보가 중요 신상정보 항목으로 수집된다.

(3) 등록대상자 의무 및 제출서 처리 방식

- 대부분 각 주 산하 카운티 경찰이 '성범죄자등록도구(SORT, The Sex Offender Registry Tool)'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은 대상자의 정보 등록 과정에서 주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화된 정보를 등록하거나 또는 종이 문서 사용을 병행하는 등 차이가 있다. 경찰관이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성범죄자의 집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할 경우에는 모든 정보가 다 입력되면 성범죄자에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시키고,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처벌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시키며 웹사이트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다.
- SORNA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등록 대상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후 3일 이내,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 범죄로 구금이 해제되기 전에 최초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기관은 성범죄자에게 의무를 고지·설명하고 해당 성범죄자에게 등록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등록요건을 이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읽고 서명하게 해야 한다.
- 만약 성범죄자가 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벌금 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연방법에서는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대부분의 주에서도 등록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중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등록기간 및 면제조건

- 미국의 경우 보통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수법이나 죄질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 1-3-2>와 같이 성범죄자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한다. 성범죄 유형에 따라 2단계와 3단계가 구분되고 이 두 개의 군에 해당하지 않는 성범죄 유형은 1단계로 분류되는데, 3단계의 성범죄자가 가장 고위험군 범죄자이다. 등록기간은 이 분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5년·25년·종신으로 상이하게 부과될 수 있다. 각 단계별 등록정보의 진위 확인주기는 1단계는 1년에 한 번, 2단계는 6개월에 한 번, 3단계는 3개월에 한 번이 된다.
- SORNA에서는 1단계 성범죄자의 등록기간은 15년이며, 면제 기준이 충족되면 등록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된다. 2단계 성범죄자의 등록기간은 25년이며 단축시킬 수 없다. 3단계의 성범죄자는 평생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3단계 성범죄자 중에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는 예외이며, 면제 기준이 충족되면 등록기간이 종신에서 25년으로 단축될 수 있으며, 주마다 등록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다.

1-3-2 미국의 성범죄자 분류 단계(Sex Offender Classification Tiers)

분류 단계	등록기간	각 단계별 분류 지침
3단계 (Tier III)	무기	13세미만미성년자성적학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 납치 범죄(부모, 보호자 제외)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자 또는 2단계로 지정된 대상자가 재범(any offense)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2단계 (Tier II)	25년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강요 및 유인, 불법성행위참여목적미성년자이송, 미성년자대상 가학적성적행위, 미성년자성적공연이용, 미성년자성매매유인, 아동음란물 제작, 배포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자
1단계 (Tier I)	15년	2, 3단계에 속하지 않은 그 밖의 성범죄자들

출처 : Sex Offender Laws(2nd edition)

(5) 청소년 성범죄자 등록

- 청소년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주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SORNA의 통과 당시, 36개 주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되어 판결을 받은 특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 요구되었으나, 나머지 주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SORNA의 경우 범죄 당시 14세 이상이고, 가중 성범죄의 음모·미수·기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요건은 각 주에서 등록, 공개제도를 시행할 때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각 주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단순히 위의 성범죄보다 경한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 각 지방에서는 가중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소년의 정보를 등록정보 공개사이트에 게시할 의무가 없다. SORNA에서는 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각 지방 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 청소년의 신상정보 등록은 낙인효과, 사회적 배제 및 소외, 괴롭힘, 거주지의 제한, 고용의 제한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6) 신상정보 공개

- 등록정보의 공개는 각 주 등 관할지역에서 사이트를 통해 지역 우편번호, 주소, 성·이름 등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연방에서는 드루 소딘 성범죄자 공개사이트(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를 통해 통합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운영한다.
- 미국의 신상정보등록제도에서 규정한 공개정보를 최소 기준으로 해서 주 정부는 얼마든지 더 많은 정보를 성범죄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고 그것을 자체 주 정부 규정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성범죄자와 관련된 많은 개인 정보들이 사이트에 공개되지만 피해자 정보, 성범죄자의 사회보장번호,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경력, 기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는다. 각 주는 <표 1-3-2>의 1단계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범죄가 아동성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주 성명, 대상자가 다녔던 교육기관 이름, 기타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로 규정한 항목들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모든 주가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된 모든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주 대부분의 경우 그 대상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 성범죄자로 제한한다.

(7) 신상정보 고지

- 미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고지제도 역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고지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인에 대한 지역사회 고지제도’이다.
-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고지제도는 신상정보 등록정보에 대한 유관 기관과의 즉각적인 정보 공유 업무를 위한 것이다. 주 정부차원에서 성범죄자가 처음으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통보하거나, 새로운 변경 정보를 알리게 되면 지방 정부 담당자는 즉시 해당 사항을 범죄자가 출퇴근하는 타지역 유관기관이나 학교가 위치한 지역 주 정부에 알릴 책임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면 해당 정보를 경찰, 검찰, 보호관찰소 등 법 집행 및 감독기관, 아동 보호기관 등과 같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자원봉사단체까지도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상정보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일반인에 대한 지역사회 고지제도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 완료되거나 새롭게 갱신되었을 때 특정인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자동 고지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매우 한정적으로 운영된다. 그것보다 일반인 고지제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성범죄자 웹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3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제공 방식의 경우 우편함을 통해 개별적으로 간행물을 보내기도 하며, 언론(신문), 전화통화, 포스터(등록대상자의 사진과 정보)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이메일 고지제도’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범죄자의 ID를 포함하여 이메일로 특정 일반인들에게 성범죄자의 주거지와 직장 상황, 학교 정보, 주소, 우편번호 등의 정보를 고지하는 것이다.
- 한편, 대부분의 주에서는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통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주 공무원들이 단순히 해당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문에 해당 정보를 고시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석방이나 주거 이동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 개인방문 혹은 이웃들에게 편지를 보내 해당 정보를 알리는 것, 이전의 피해자 혹은 범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성범죄자가 석방되거나 거주지를 이동할 때 이전의 피해자와 시민들이 통보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옵트인(opt-in)’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8) 보호관찰과의 연계

- 미국 보호관찰관의 주요 임무는 성범죄자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과 성범죄자가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에 변동이 있을 때 성범죄자에게 정보 등록 기관에 가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를 등록하도록 고지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성범죄자가 보호관찰과 같은 형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이 성범죄자 신상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성범죄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송부한다. 그리고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출소하는 성범죄자에게 정해진 기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등록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02 캐나다

(1) 제도 운영 특징

- 캐나다는 1988년 미성년자를 유괴·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성범죄자 등록제도가 먼저 도입되었다. 온타리오주에서 2001년에 처음 독자적으로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을 도입한 후, 2004년 중앙 정부 주도로 SOIRA(성범죄자 정보 등록법, Sex Offender Information Registration Act)를 제정하여 국가 성범죄자 등록 체계를 공식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 이후 각 주 단위에서 수집된 신상정보 등록 자료를 중앙-지방 정부가 서로 연계하여 새로운 차원의 국가 신상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이다. 지방 경찰 부서 담당자들이 실제 성범죄자의 정보를 수집, 입력하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모든 책임이 있다. 특이하게도 다른 많은 나라들이 형사사법 기관과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과 달리, 캐나다는 오직 경찰기관 내 성범죄 수사 담당자에게만 한정하여 데이터를 오픈해 주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접근 및 활용이 실무자들에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2) 등록 대상

-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만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기준 아래에서 등록 범죄 유형은 강간과 같은 성적 공격, 추행 행위, 컴퓨터를 통한 아동 유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범죄까지 매우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인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중 범행의 심각성으로 인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은 일부 청소년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포함된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성범죄자는 등록 센터에 정보를 제출하거나 정보가 수집될 때 자신이 선택한 적절한 성인을 동석시킬 권리가 있다.

- 등록 대상과 관련하여 대상자가 등록 해당 요건을 갖추어도 유죄가 확정된 모든 성범죄자에게 제도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지역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등록 가능 대상으로 나온 성범죄자의 42%가 자신의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입증하여 등록 시스템에 개인 신상정보가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등록정보의 주요내용 및 대상자의 의무

- 연방 성범죄자정보등록법을 살펴보면 등록대상자가 등록센터에 제출해야 할 정보는 이름과 성, 모든 별칭, 생년월일, 주소지(거주지와 거소 또는 주소지가 없는 경우 현재 있는 장소의 주소), 직업, 연락처(주택 또는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자동차 등록번호(본인 명의), 운전면허, 여권번호, 범죄 수법 및 유형, 피해자 특징, 사진, 판결 날짜 등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전산 시스템 내에 입력되어 등록·관리되고 있고, 등록정보를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수집한 경우 1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다.
-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을 받거나, 대상 범죄에 대해 정신장애로 인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선고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등록센터에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지 또는 거주지 주소, 이름 및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발급받아 수령하는 등 변경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정보 제출 전까지는 캐나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입국 후 7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 경찰은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대상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거주지 증명서 소지 여부,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지, 거주지 내에 아동이 있는지 등록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가석방이나 금지명령과 같은 기타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가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개의 형이 병과될 수 있다.

(4) 등록기간 및 면제조건

- <표 1-3-3>와 같이 성범죄 등록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종신으로 기간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등록 기간은 범죄 유형의 심각성과 전과 횟수, 피해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1-3-3 캐나다 : 법정형 기준 차등화

등록기간	등록기준
10년	약식기소 되거나 최대 2년 또는 5년의 구금형을 부과 받은 경우
20년	최대 10년 또는 14년의 구금형을 부과 받은 경우
종신	종신형을 부과 받은 경우

- 등록대상자는 형사법원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성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교하여 등록 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면제는 완벽한 신상정보 기록 말소가 아닌 단순 등록 재확인, 변경 보고 의무를 해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재등록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국가 성범죄자 보고 데이터 전산 시스템’ 내에는 성범죄자의 기록이 남아 있게 된다.
- 성범죄자의 등록 기간에 따라 면제신청 가능 기간이 달라지는데, 10년의 등록 의무가 있는 성범죄자는 5년의 등록 기간 경과 후 법원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20년 등록 기간을 부여받은 성범죄자는 10년의 기간 경과 후 법원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종신형을 부과 받은 경우 등록기간이 20년 경과 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5) 신상정보 공개

- 캐나다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연방 성범죄자등록법에서는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가 수사기관 등 형사사법기관만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주별로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경찰청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정보를 권한 없이 공개하거나, 권한 없는 자가 열람한 경우에는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을 통해 10,000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03 영국

(1) 제도운영의 특징

- 영국은 1997년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을 제정하여 신상정보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형이 확정되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보하고, 주기별로 변경사실도 통보해야 할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 2000년 7월에 발생한 ‘사라 페인(Sarah Payne) 살해 사건(8살 소녀가 소아성애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에게 납치되어 강간·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2003년 제정된 성범죄 법(Sexual Offences Act)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강화하여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몇 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쪽으로 제도의 운영 방향이 변하게 되었다. 이에 일정한 성범죄(강간, 성폭행,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등)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개인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 영국의 신상정보제도는 성범죄자 등록과 아동 성범죄자 공개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경찰이 신상정보등록업무를 맡고 있으며, 신상정보 관리에는 보호관찰소 및 교정시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정 성범죄자가 개인적으로 경찰관서에 찾아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은행계좌, 신용카드 정보 등의 다양한 신상정보를 통보하고, 신상정보 항목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변경 사항을 다시 경찰관서에 통보하게 하여 성범죄자의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 공개는 아동을 키우는 부모나 보호자 등이 공식적으로 경찰관서에 찾아가 특정인이 아동 성범죄자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확인 요청을 할 때 제한적으로 해당 정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지칭한다.
- 영국의 신상정보등록제도는 경찰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이며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기 위한 것일 뿐 형벌 방법의 하나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간주된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운영 이념의 동향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범죄자 체포, 수사, 확인을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둘째, 경찰 이외에 다양한 지역사회 형사 사법 기관들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상정보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잠재적 범죄자가 성범죄의 의지를 단념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하나의 유익한 유도 전략으로 사회에서 활용될 뿐,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 등록 대상, 등록정보 및 대상자 의무

- 영국은 아동·성인에 대한 성범죄자 모두를 신상정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이 되는 성범죄 유형은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 아동대상 간음, 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간음, 추행, 그리고 남성 간 추행 행위 등이며,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각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
- 등록대상자는 관할 경찰서에 본인의 이름(둘 이상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 모든 이름), 주소, 생년월일, 국가보험번호, 여권 소지 여부 및 번호 등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촬영과 지문채취의 의무가 있다.
- 등록대상자는 판결 선고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3일 이내 등록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제출정보의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금 후 석방된 경우에도 석방일 기준 3일 이내에 자신이 석방되었다는 사실과 법에서 규정한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에 출국 또는 귀국하는 경우에는 일수와 상관없이 출국일, 여행국과 도착지점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등록대상자는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매년 등록정보를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변경 정보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본 정보 및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약식재판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두 형벌이 병과될 수 있고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3) 등록기간(수정 필요) 및 면제

- 영국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표 1-3-4>과 같이 선고형의 종류 및 형량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특징이다. 기간이 매우 다양하며 조건부 석방 기간은 우리나라의 선고유예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 등록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등록 서류를 최초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15년이 지나면 지역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자신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면제신청에 필요한 등록기간은 8년이다.
- 경찰은 위험성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면제를 결정하는데, 위험성 여부는 보호관찰소/교정기관이 제공한 각공 기록 및 재범위험성 평가, 범죄사실의 심각성, 경과기간, 등록명령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3-4 영국 : 선고형 기준 차등화 (성인 기준)

구분	등록기간					
	조건부 석방기간	훈방	벌금형, 사회봉사	징역 6월 이하	징역 6월 초과, 30개월 미만	징역 30개월 이상, 무기징역
18세 이상	조건부 석방기간	2년	5년	7년	10년	종신
18세 미만	조건부 석방기간	1년	2년 6개월	3년 6개월	5년	종신

(4) 등록정보 공개

- 영국은 2000년에 제정된 형사사법기관 및 법원법에서 성범죄자와 흉악범죄자들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보호관찰위원회, 경찰청장, 및 교도행정관할 장관이 각 지역의 책임기관으로서 다면기관 공공안전 협의회(MAPPA : 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이 협의회를 통해 공유하고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신상정보 등록 (Violent and Sex Offender Register: ViSOR) 전산 시스템에서 입력 자료가 연계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일반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아동 성범죄자 공개 지침(Child Sex Offender Disclosure Scheme)을 통해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경찰에게 신청하여 특정인의 아동성범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민사 명령(Civil Order)

- 영국의 성범죄 재범 예방과 관련하여 특이한 제도 중 성범죄법에 기초하여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민사 명령(Civil Order)이 있다. 이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민사명령이며, 해석에 따라 ‘공중보호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사명령의 종류로는 성적 위해 예방명령(Sexual Risk Orders), 성적 침해 예방 명령(Sexual Harm Prevention Order), 신상정보등록명령(Notification Order) 등이 있다.
- 성적 위해 예방명령은 성적인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성적 또는 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경고를 받은 모든 사람에 적용할 수 있으며 경찰이 요청에 따라 행정판사가 명령을 내린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제한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명령 기간 동안 등록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는 성범죄로 형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준해서 시스템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올라갈 수 있고, 추가적인 준수사항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 차원의 등록제도’라고 볼 수 있다.
- 성적 침해 예방 명령은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영국의 시민이나 아동 또는 취약한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법원이 부과한다. 위 두 명령에 해외여행 금지명령을 부가할 수 있고 법에는 금지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상정보등록명령은 영국 외의 국가에서 특정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나 경고를 받은 사람에게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여 내려질 수 있다.

04 프랑스

(1) 제도운영의 특징

- 프랑스는 2005년부터 중앙정부차원에서 성범죄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였고 법무부에서 FIJAIS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중이다. 프랑스에서 신상정보 등록 데이터 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경찰 외에 사법부, 프랑스 헌병특공대 및 기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만약 공무원 중 권한 없는 자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신상정보를 열람했다면 이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 프랑스는 신상정보제도를 통한 사전 범죄 억제 및 예방을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다. 신상정보제도 시행과 함께 성범죄자 치료명령,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의료모델 접근법을 활용하고 상습 범죄자에게는 전문 상담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격리나 처벌 보다는 통합과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2) 등록 대상, 등록정보 및 대상자 의무

-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서 성범죄자 신상등록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등록 대상 범죄는 강간, 고문,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등이다. 특이한 점으로 해외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내국인은 프랑스에 돌아온 경우 반드시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 성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 등록 기간은 범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20년 또는 30년으로 법률에서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의 등록 기간은 30이고 그 외에 경우에는 20년이라고 규정하였다.
- 등록정보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가족 관계 등이고 범죄의 종류, 선고형, 선고법원 등이 함께 기록 대상이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거주증명서와 함께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해외거주자는 프랑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법적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등록대상자가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최대 2년의 징역과 3만 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3) 공개제도

- 프랑스는 1997년 경찰법에 신상정보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중에게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고지하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단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 기관 등에 아동성범죄자의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범죄동향분석

[제1절](#) 성범죄 현황

[제2절](#) 성범죄자 특성

[제3절](#) 성범죄 죄명별 특성

[제4절](#) 성범죄 재등록사건 현황

[제5절](#) 재등록·원등록 비교

[제6절](#) 분석 요약 및 주요 동향

제 1 절



성범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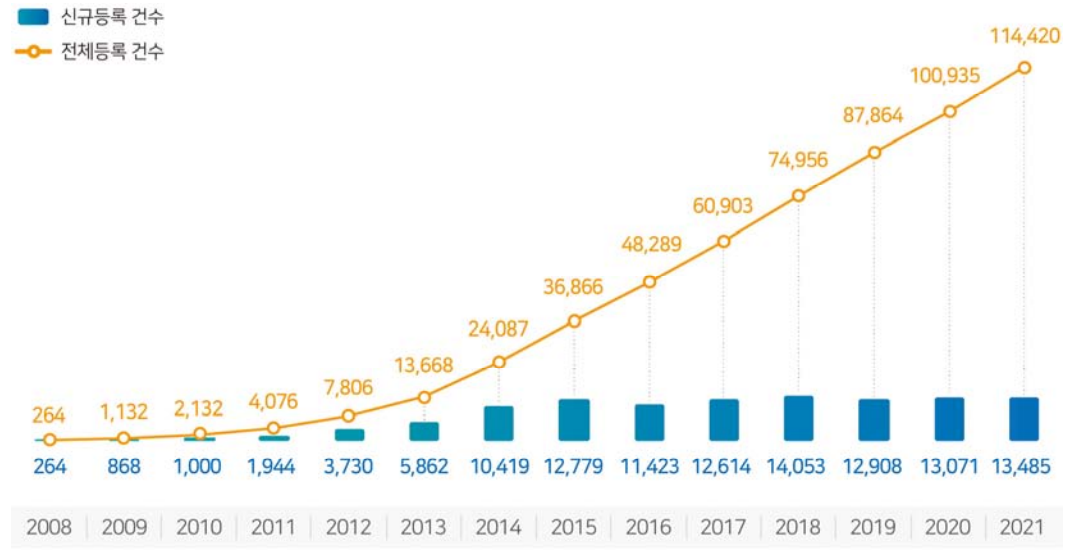
01 신상정보등록

- <표 2-1-1>은 신상정보등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신규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264건을 시작으로 2021년 13,485건까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1년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되었고, 2013년 법무부로 등록업무가 이관되면서 2014년부터 신규등록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 전체 실시 사건수의 경우, 2008년 264건을 시작으로 12년 만에 10만 건을 넘어섰고 2021년 114,420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1-1 신상정보등록 현황

연도	신규등록 건수	전체 실시 사건수(연도말 기준)
2008	264	264
2009	868	1,132
2010	1,000	2,132
2011	1,944	4,076
2012	3,730	7,806
2013	5,862	13,668
2014	10,419	24,087
2015	12,779	36,866
2016	11,423	48,289
2017	12,614	60,903
2018	14,053	74,956
2019	12,908	87,864
2020	13,071	100,935
2021	13,485	114,420

2-1-1 신상정보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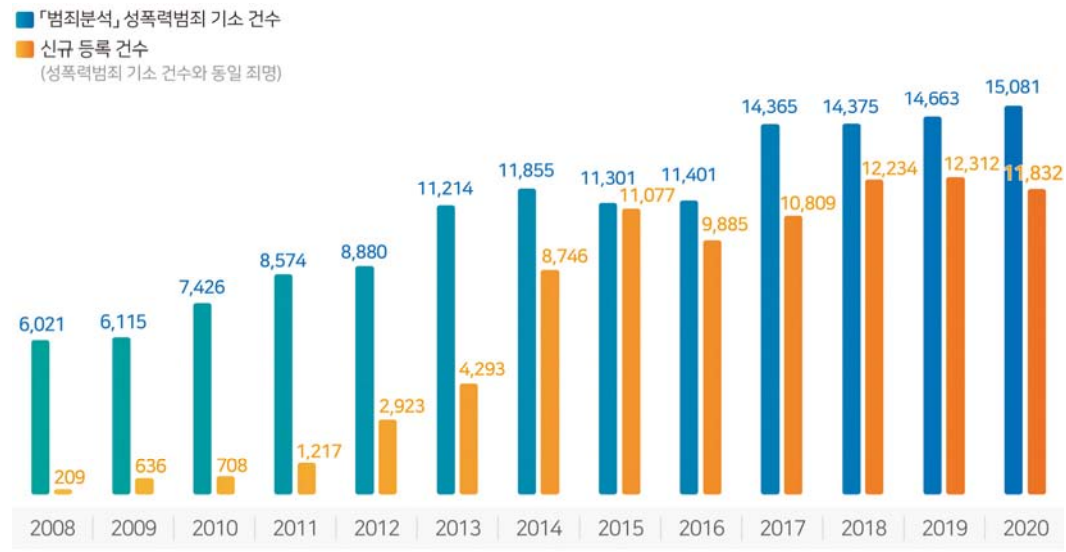
02 성폭력범죄 기소건수와 비교

- <표 2-1-2>은 대검찰청에서 2021년에 발간한 「범죄분석」(이하 “「범죄분석」”이라 한다.)의 성폭력범죄 기소 건수와 신상정보 신규등록 건수를 비교하였다.
- 「범죄분석」 성폭력범죄에 제외되어있는 유사성행위와 아동성학대 등을 다룬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 성보호법」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영업은 제외하고 비교하였다.
- 법무부로 모든 등록업무가 이관된 후인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93,041건이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었고, 같은 기간 내 동일 죄명으로 신상정보 신규등록이 된 사건은 76,895건으로, 82.6%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로써 성범죄자의 80% 이상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2-1-2 연도별 성범죄 기소 건수, 성폭력범죄 등록 건수 현황

연도	「범죄분석」 성폭력범죄 기소 건수	신규 등록 건수 (성폭력범죄 기소 건수와 동일 죄명)	비율(%)
2008	6,021	209	3.5
2009	6,115	636	10.4
2010	7,426	708	9.5
2011	8,574	1,217	14.2
2012	8,880	2,923	32.9
2013	11,214	4,293	38.3
2014	11,855	8,746	73.8
2015	11,301	11,077	98.0
2016	11,401	9,885	86.7
2017	14,365	10,809	75.2
2018	14,375	12,234	85.1
2019	14,663	12,312	84.0
2020	15,081	11,832	78.5
2014~2020 누계	93,041	76,895	82.6

2-1-2 연도별 성범죄 기소 건수, 성폭력범죄 등록건수 현황



03 등록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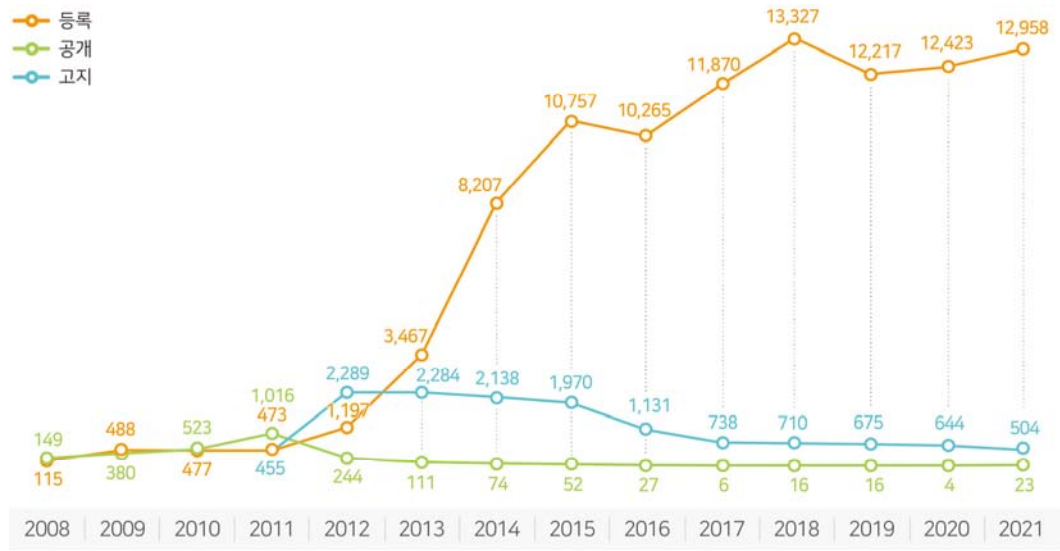
- <표 2-1-3>는 등록유형별 연도별 등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공개는 등록을 전제로 하고, 고지는 공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등록유형은 ‘등록’, ‘등록·공개’, ‘등록·공개·고지’로 구분된다.
-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등록건수는 114,420건이다. 2008년 등록건수는 264건인데 2016, 201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한해 13,485건이 등록되었다. 이는 2008년보다 약 50배 증가한 수치이다.
-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등록된 114,420건 중 공개 또는 고지 없는 단순 등록 사건은 98,241건 (85.9%), 공개명령을 받은 사건은 2,641건(2.3%), 공개와 함께 고지명령이 부과된 된 사건은 13,538건 (11.8%)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순 등록 사건수는 2008년 115건, 2021년 12,958건으로 약 100배 증가하였다.
- 등록·공개 사건수는 2008년에 149건이었는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신규 등록된 1,944건 중 1,016건(52.3%)을 차지했다.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그해 신규로 등록된 13,485건 중 23건(0.17%)에 불과하였다.
- 등록·공개·고지건수는 2011년 1월 고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1년 455건이 등록되었고, 2012년에는 2,28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당해년도 신규 등록된 3,730건 대비 61.4%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당해 신규로 등록된 사건의 3.7%인 504건에 불과하였다.

2-1-3 등록유형별 연도별 등록 현황

연도\등록유형	총계	등록	등록·공개	등록·공개·고지
2008	264	115	149	-
	(%)	43.6	56.4	-
2009	868	488	380	-
	(%)	56.2	43.8	-
2010	1,000	477	523	-
	(%)	47.7	52.3	-
2011	1,944	473	1,016	455
	(%)	24.3	52.3	23.4
2012	3,730	1,197	244	2,289
	(%)	32.1	6.5	61.4
2013	5,862	3,467	111	2,284
	(%)	59.1	1.9	39

연도 \ 등록유형	총계	등록	등록·공개	등록·공개·고지
2014	10,419	8,207	74	2,138
	(%)	78.8	0.7	20.5
2015	12,779	10,757	52	1,970
	(%)	84.2	0.4	15.4
2016	11,423	10,265	27	1,131
	(%)	89.9	0.2	9.9
2017	12,614	11,870	6	738
	(%)	94.1	0.1	5.9
2018	14,053	13,327	16	710
	(%)	94.8	0.1	5.1
2019	12,908	12,217	16	675
	(%)	94.7	0.1	5.2
2020	13,071	12,423	4	644
	(%)	95.1	0.0	4.9
2021	13,485	12,958	23	504
	(%)	96.1	0.2	3.7
총계	114,420	98,241	2,641	13,538
	(%)	85.9	2.3	11.8

2-1-3 등록유형별 연도별 등록 현황



(1) 등록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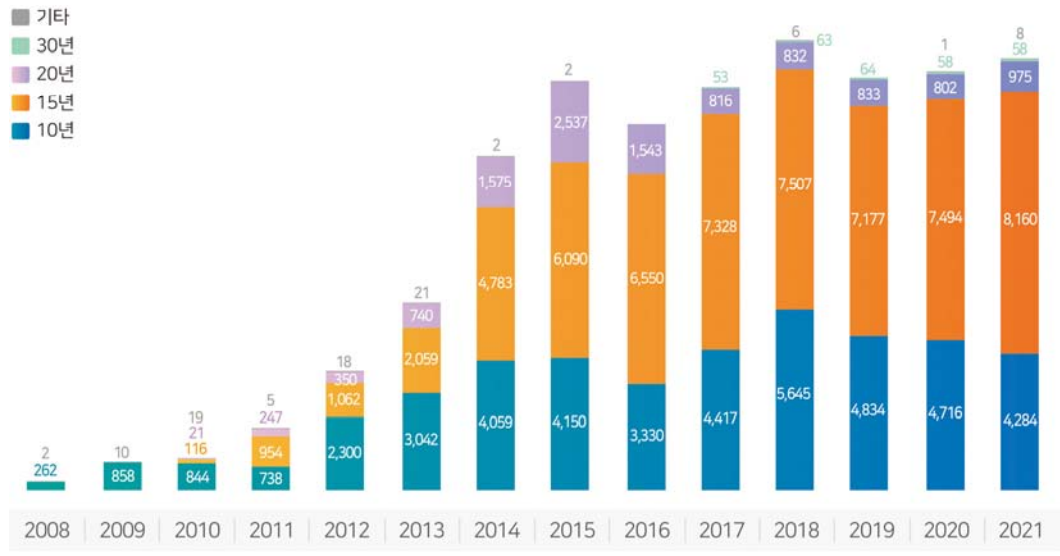
-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06년 5년에서 2013년에는 20년으로 확대되었고, 모든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등록 기간을 적용하였다.
- 그러나, 2015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등록기간이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16. 12. 20.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 3년 이하 징역형 등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10년 초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으로 등록 기간을 차등화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 <표 2-1-4>는 신상정보 등록기간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전체 등록대상자 중 등록 기간이 15년인 대상자가 59,279건(51.8%)으로 가장 많고 10년인 대상자가 43,480건(38.0%), 20년인 대상자가 11,271건(9.8%), 30년인 대상자가 296건(0.3%) 순으로 나타났다.
- 등록기간이 15년인 대상자는 건수, 비율 모두 증가하고 있고, 10년인 대상자는 30%~4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1년 4,284건(31.8%)로 감소하였다. 20년인 대상자는 2017년 816건(6.5%)에서 2021년 975건(7.2%)로 소폭 증가하였다.

 2-1-4 등록 기간별 현황

연도 \ 등록기간	총계	10년	15년	20년	30년	기타
2008	264	262	-	-	-	2
	(%)	99.2	-	-	-	0.8
2009	868	858	-	-	-	10
	(%)	98.8	-	-	-	1.2
2010	1,000	844	116	21	-	19
	(%)	84.4	11.6	2.1	-	1.9
2011	1,944	738	954	247	-	5
	(%)	38.0	49.1	12.7	-	0.2
2012	3,730	2,300	1,062	350	-	18
	(%)	61.6	28.5	9.4	-	0.5
2013	5,862	3,042	2,059	740	-	21
	(%)	51.9	35.1	12.6	-	0.4
2014	10,419	4,059	4,783	1,575	-	2
	(%)	39.0	45.9	15.1	-	0.0
2015	12,779	4,150	6,090	2,537	-	2
	(%)	32.5	47.7	19.8	-	0.0

연도 \ 등록기간	총계	10년	15년	20년	30년	기타
2016	11,423	3,330	6,550	1,543	-	-
	(%)	29.2	57.3	13.5	-	-
2017	12,614	4,417	7,328	816	53	-
	(%)	35.0	58.1	6.5	0.4	-
2018	14,053	5,645	7,507	832	63	6
	(%)	40.2	53.4	5.9	0.5	0.0
2019	12,908	4,834	7,177	833	64	-
	(%)	37.4	55.6	6.5	0.5	-
2020	13,071	4,716	7,494	802	58	1
	(%)	36.1	57.3	6.1	0.5	0.0
2021	13,485	4,284	8,160	975	58	8
	(%)	31.8	60.5	7.2	0.4	0.1
총계	114,420	43,479	59,280	11,271	296	94
	(%)	38.0	51.8	9.8	0.3	0.1

2-1-4 등록 기간별 현황



(2) 공개 기간

- <표 2-1-5>는 공개명령을 받은 사건을 연도별로 공개기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공개명령 사건 수는 2008년 149건을 시작으로 2012년에 2,533건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2021년 말 기준 공개명령 누적 사건 수는 16,179건이다.
- 공개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공개기간 5년이 6,736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4,037건(25.0%), 10년 2,377건(14.7%), 2년 1,205건(7.4%) 순으로 나타났다.
- 공개기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공개기간이 5년인 경우는 2008년 149건에서 2012년 1,017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 239건까지 감소하였다. 다만 2016년을 제외하고 30% 이상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 공개기간이 3년인 경우는 2010년 5건(1.0%)에서 2012년 713건(28.1%)까지 증가하였다가 2013년 552건(23.1%)에서 2021년 151건(28.6%)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 공개기간이 10년인 경우를 살펴보면, 2010년 18건(3.4%)에서 2013년 500건(20.9%)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 81건(10.9%)까지 감소하였고, 이후 2021년 73건(13.9%)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1-5 공개 기간별 현황

기간 연도	총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2008	149	-	-	-	-	149	-	-	-	-	-
	(%)	-	-	-	-	100.0	-	-	-	-	-
2009	380	-	-	-	-	380	-	-	-	-	-
	(%)	-	-	-	-	100.0	-	-	-	-	-
2010	523	-	1	5	1	498	-	-	-	-	18
	(%)	-	0.2	1.0	0.2	95.2	-	-	-	-	3.4
2011	1,471	6	37	260	23	933	1	20	-	-	191
	(%)	0.4	2.5	17.7	1.6	63.4	0.1	1.3	-	-	13.0
2012	2,533	8	148	713	169	1,017	7	64	1	-	406
	(%)	0.3	5.8	28.1	6.7	40.3	0.3	2.5	0.0	-	16.0
2013	2,395	8	161	552	200	817	17	132	8	-	500
	(%)	0.3	6.7	23.1	8.4	34.1	0.7	5.5	0.3	-	20.9
2014	2,212	21	203	514	146	726	30	133	18	3	418
	(%)	1.0	9.2	23.2	6.6	32.8	1.4	6.0	0.8	0.1	18.9
2015	2,022	24	206	516	111	645	41	144	32	3	300
	(%)	1.2	10.2	25.5	5.5	31.9	2.0	7.1	1.6	0.2	14.8

기간 연도	총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2016	1,158	11	149	363	57	332	15	73	16	1	141
	(%)	0.9	12.9	31.3	4.9	28.7	1.3	6.3	1.4	0.1	12.2
2017	744	4	92	253	27	235	12	35	5	-	81
	(%)	0.5	12.4	34.0	3.6	31.6	1.6	4.7	0.7	-	10.9
2018	726	2	85	231	25	258	4	29	6	-	86
	(%)	0.3	11.7	31.8	3.4	35.5	0.6	4.0	0.8	-	11.9
2019	691	3	63	228	12	269	1	35	2	-	78
	(%)	0.4	9.1	33.0	1.7	38.9	0.2	5.1	0.3	-	11.3
2020	648	3	36	251	10	238	1	24	-	-	85
	(%)	0.5	5.6	38.7	1.5	36.7	0.2	3.7	-	-	13.1
2021	527	2	24	151	1	239	1	34	2	-	73
	(%)	0.4	4.6	28.6	0.2	45.3	0.2	6.4	0.4	-	13.9
총계	16,179	92	1,205	4,037	782	6,736	130	723	90	7	2,377
	(%)	0.6	7.4	25.0	4.8	41.6	0.8	4.5	0.6	0.0	14.7

(3) 고지기간

- <표 2-1-6>은 고지명령을 받은 사건을 고지기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전체 고지명령 사건 수는 13,538건이었는데, 2011년 455건으로 시작하여 2012년 2,289건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공개명령과 마찬가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 고지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고지기간이 5년인 사건이 4,697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3,824건(28.2%), 10년 2,128건(15.7%), 2년 1,131건(8.4%) 순으로 나타났다.
- 고지기간별로 살펴보면, 고지기간이 5년인 경우는 2011년 191건에서 2012년 893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 229건까지 감소하였다.
- 고지기간이 3년인 경우는 2011년 165건에서 2012년 661건까지 증가하였다가 2021년 146건까지 감소하였다.
- 고지기간이 10년인 경우를 살펴보면, 2011년 41건(9.0%)에서 2013년 483건(21.1%)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73건(14.5%) 등록되었다.

2-1-6 고지 기간별 현황

기간 연도	총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2011	455	5	21	165	21	191	-	11	-	-	41
	(%)	1.1	4.6	36.3	4.6	42.0	-	2.4	-	-	9.0
2012	2,289	7	139	661	158	893	6	64	1	-	360
	(%)	0.3	6.1	28.9	6.9	39.0	0.3	2.8	0.0	-	15.7
2013	2,284	9	156	540	193	755	16	124	8	-	483
	(%)	0.4	6.8	23.6	8.5	33.1	0.7	5.4	0.4	-	21.1
2014	2,138	16	195	494	139	704	29	131	18	3	409
	(%)	0.8	9.1	23.1	6.5	32.9	1.4	6.1	0.9	0.1	19.1
2015	1,970	21	195	506	111	623	41	142	32	3	296
	(%)	1.1	9.9	25.7	5.6	31.6	2.1	7.2	1.6	0.2	15.0
2016	1,131	10	144	358	57	318	15	72	16	1	140
	(%)	0.9	12.7	31.7	5.0	28.1	1.3	6.4	1.4	0.1	12.4
2017	738	4	90	251	27	234	12	35	5	-	80
	(%)	0.5	12.2	34.0	3.7	31.7	1.6	4.8	0.7	-	10.8
2018	710	2	83	227	25	250	4	28	6	-	85
	(%)	0.3	11.7	32.0	3.5	35.2	0.6	3.9	0.8	-	12.0
2019	675	3	58	226	12	262	1	35	2	-	76
	(%)	0.4	8.6	33.5	1.8	38.8	0.1	5.2	0.3	-	11.3
2020	644	3	33	250	10	238	1	24	-	-	85
	(%)	0.5	5.1	38.8	1.5	37.0	0.2	3.7	-	-	13.2
2021	504	1	17	146	1	229	1	34	2	-	73
	(%)	0.2	3.4	29.0	0.2	45.4	0.2	6.7	0.4	-	14.5
총계	13,538	81	1,131	3,824	754	4,697	126	700	90	7	2,128
	(%)	0.6	8.4	28.2	5.6	34.7	0.9	5.2	0.7	0.0	15.7

04 선고형

- <표 2-1-7>는 등록대상사건의 선고형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총 등록건수 114,420건 중 집행유예가 47,904건(41.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벌금 35,856건(31.3%), 징역 28,511건(24.9%) 순으로 나타났다.
- 2010년을 제외하면, 2013년까지는 집행유예-징역-벌금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4년부터는 벌금의 비율이 징역을 넘어서 집행유예-벌금-징역 순으로 나타났다.
- 집행유예 사건을 살펴보면, 2008년 152건을 시작으로 2011년 1,094건을 기록하여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6,129건(45.5%)이 등록되었다.
- 벌금 사건은 2008년 10건(3.8%)을 시작으로, 2018년 5,298건(37.7%)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비율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전체의 약 3%대로 비중이 적었으나, 201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35.9%까지 상승한 후,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 징역 사건은 2015년 3,232건(25.3%)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 소폭 감소한 후, 2018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2021년에는 3,138건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하였다.

2-1-7 선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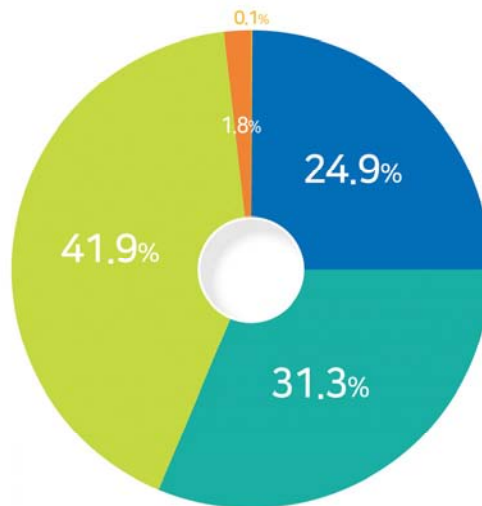
선고형 연도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2008	264	-	-	102	-	10	-	152	-	-
	(%)	-	-	38.6	-	3.8	-	57.6	-	-
2009	868	-	1	406	-	29	-	431	-	1
	(%)	-	0.1	46.8	-	3.3	-	49.7	-	0.1
2010	1,000	1	1	503	-	36	-	459	-	-
	(%)	0.1	0.1	50.3	-	3.6	-	45.9	-	-
2011	1,944	-	3	725	-	120	-	1,094	-	2
	(%)	-	0.2	37.3	-	6.2	-	56.3	-	0.1
2012	3,730	-	4	1,574	-	486	-	1,657	-	9
	(%)	-	0.1	42.2	-	13.0	-	44.4	-	0.2
2013	5,862	-	9	2,028	-	1,503	-	2,296	-	26
	(%)	-	0.2	34.6	-	25.6	-	39.2	-	0.4
2014	10,419	-	22	2,582	2	3,741	1	3,995	4	72
	(%)	-	0.2	24.8	0.0	35.9	0.0	38.3	0.0	0.7
2015	12,779	2	14	3,232	-	4,125	-	4,748	2	656
	(%)	0.0	0.1	25.3	-	32.3	-	37.2	0.0	5.1

선고형 연도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2016	11,423	-	10	2,911	2	3,275	1	4,898	1	325
	(%)	-	0.1	25.5	0.0	28.7	0.0	42.9	0.0	2.8
2017	12,614	-	4	2,711	-	4,046	-	5,570	1	282
	(%)	-	0.0	21.5	-	32.1	-	44.2	0.0	2.2
2018	14,053	-	3	2,793	-	5,298	-	5,706	-	253
	(%)	-	0.0	19.9	-	37.7	-	40.6	-	1.8
2019	12,908	-	3	2,853	-	4,593	-	5,304	1	154
	(%)	-	0.0	22.1	-	35.6	-	41.1	0.0	1.2
2020	13,071	-	4	2,953	-	4,509	-	5,465	-	140
	(%)	-	0.0	22.6	-	34.5	-	41.8	-	1.1
2021	13,485	-	6	3,138	-	4,085	-	6,129	2	125
	(%)	-	0.0	23.3	-	30.3	-	45.5	0.0	0.9
총계	114,420	3	84	28,511	4	35,856	2	47,904	11	2,045
	(%)	0.0	0.1	24.9	0.0	31.3	0.0	41.9	0.0	1.8

2-1-5 선고형별 비율

- 무기징역
- 징역
- 벌금
- 집행유예
- 선고유예

0%
사형, 금고, 치료감호, 형면제



05 최종 심급

- <표 2-1-8>은 등록대상사건의 최종 심급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확정 심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등록건수 중 1심 확정건수가 54,355건으로 47.5%를 차지하였으며, 2심 확정건수는 35,308건(30.9%), 3심 확정건수는 16,789건(14.7%)으로 나타났다.
- 2009~2012년까지는 2심 확정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2008년 한 해와 2013년 이후로는 1심 확정건수가 40% 내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심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1심의 경우 2008년 182건(68.9%)부터 2015년 6,695건(52.4%)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5,000건~6,000건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2심의 경우 2008년 80건(30.3%)부터 2015년 4,143건(32.4%)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3,000건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1심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3심의 경우도 2008년 2건(0.8%)을 시작으로 2015년 1,928건(15.1%)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후로는 1,000건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도에서 10%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 746건(20.0%)으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약식명령의 경우 2017년에 646건(5.1%)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1,755건(12.5%)으로 증가한 후 비슷한 사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1,729건으로 전체 사건의 12.8%를 차지하였다.

2-1-8 최종 심급별 현황

연도 \ 심급	총계	약식명령	1심	2심	3심
2008	264	-	182	80	2
	(%)	-	68.9	30.3	0.8
2009	868	-	382	410	76
	(%)	-	44.0	47.2	8.8
2010	1,000	-	317	514	169
	(%)	-	31.7	51.4	16.9
2011	1,944	15	776	882	271
	(%)	0.8	39.9	45.4	13.9
2012	3,730	68	1,364	1,552	746
	(%)	1.8	36.6	41.6	20.0
2013	5,862	70	2,813	2,028	951
	(%)	1.2	48.0	34.6	16.2

연도 \ 심급	총계	약식명령	1심	2심	3심
2014	10,419	18	6,027	3,123	1,251
	(%)	0.2	57.8	30.0	12.0
2015	12,779	13	6,695	4,143	1,928
	(%)	0.1	52.4	32.4	15.1
2016	11,423	22	5,906	3,764	1,731
	(%)	0.2	51.7	33.0	15.2
2017	12,614	646	6,408	3,931	1,629
	(%)	5.1	50.8	31.2	12.9
2018	14,053	1,755	6,636	3,806	1,856
	(%)	12.5	47.2	27.1	13.2
2019	12,908	1,726	5,637	3,588	1,957
	(%)	13.4	43.7	27.8	15.1
2020	13,071	1,906	5,430	3,631	2,104
	(%)	14.6	41.5	27.8	16.1
2021	13,485	1,729	5,782	3,856	2,118
	(%)	12.8	42.9	28.6	15.7
총계	114,420	7,968	54,355	35,308	16,789
	(%)	7.0	47.5	30.9	14.7

06 선고형별 최종 심급

- <표 2-1-9>는 등록사건의 선고형(징역,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별 최종 심급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확정 심급을 기준으로 했다.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행유예·벌금·징역을 살펴본 결과, 집행유예는 1심 확정이 31,564건(65.9%), 2심 확정이 14,044건(29.3%), 3심 확정이 2,296건(4.8%) 순으로 나타났다.
- 벌금의 경우에는 1심 확정이 18,593건(51.9%), 약식명령이 7,968건(22.2%), 2심 확정이 6,539건(18.2%) 순이다. 벌금의 경우 약식명령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벌금에서 약식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크게 증가하여 2심이나 3심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징역의 경우에는 2심 확정이 13,889건(48.7%), 3심 확정이 11,614건(40.7%), 1심 확정이 3,008건(10.6%)인데, 집행유예·벌금보다 2심과 3심 확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벌금·집행유예·선고유예는 1심 확정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형·무기징역·징역·금고의 경우 2심 이후의 확정 비율이 1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9 선고형별 등록대상사건 최종 심급 현황

선고형 \ 심급	총계	약식명령	1심	2심	3심
사형	3	-	-	2	1
	(%)	-	-	66.7	33.3
무기징역	84	-	1	26	57
	(%)	-	1.2	30.9	67.9
징역	28,511	-	3,008	13,889	11,614
	(%)	-	10.6	48.7	40.7
금고	4	-	1	2	1
	(%)	-	25.0	50.0	25.0
벌금	35,856	7,968	18,593	6,539	2,756
	(%)	22.2	51.9	18.2	7.7
치료감호	2	-	1	1	-
	(%)	-	50.0	50.0	-
집행유예	47,904	-	31,564	14,044	2,296
	(%)	-	65.9	29.3	4.8
선고유예	2,045	-	1,183	798	64
	(%)	-	57.9	39.0	3.1
형면제	11	-	4	7	-
	(%)	-	36.4	63.6	-
총계	114,420	7,968	54,355	35,308	16,789
	(%)	7.0	47.5	30.8	14.7

07 자유형의 형량

- 표 <2-1-10>은 자유형 이상의 형(사형·무기징역·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형량별로 구분한 것으로, 전체 28,602건 중 10년 미만 형이 26,967건(9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년 이상~3년 미만이 9,971건(34.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년 이상~6년 미만이 9,468건(33.1%), 1년 미만이 4,334건(15.1%) 순으로 나타났다.

2-1-10 자유형 이상 형량 현황(사형·무기징역·징역·금고형)

형량	사건 수	(%)
1년 미만	4,334	15.1
1년 이상~3년 미만	9,971	34.9
3년 이상~6년 미만	9,468	33.1
6년 이상~10년 미만	3,194	11.2
10년 이상~20년 미만	1,398	4.9
20년 이상~30년 미만	134	0.5
30년 이상~40년 미만	12	0.0
40년 이상	4	0.0
무기징역	84	0.3
사형	3	0.0
총계	28,602	100.0

08 사회내처우 부과

- 〈표 2-1-11〉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이수명령 등의 사회내처우 부과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사건 중 사회내처우 부과사건은 101,247건으로 88.5%를 차지하고 있다.
- 2008년 112건이 사회내처우가 부과되었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신규등록된 13,485건 중 12,725건(94.4%)에 부과되었다.
- 부과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42.4%를 시작으로 2011년 80.4%까지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다 2012년에 68.4%로 감소한 후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6년에는 90%를 넘었고, 2021년 94.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호관찰은 2008년 76건(28.8%)을 시작으로 그 건수가 2012년 1,049건(28.1%)으로 1,000건 대를 돌파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2018년까지 1,000건 안팎으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14년 1,624건(15.6%)으로 20%를 밑돌았고, 2021년에는 9.1%로 낮아졌다.
-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2008년 51건(19.3%)으로 시작하여 2014년 처음 1,000건 대를 넘었으며, 2021년 1,917건(14.2%)까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부과율은 2009년 178건(20.5%)을 제외하면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 수강·이수명령의 건수와 비율은 모두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 32건(12.1%)에서 2018년에는 12,656건(93.9%)까지 증가하는 등 사회내처우 중 수치가 가장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3,793건(64.7%)에서 2014년 8,689건(83.4%)으로 크게 증가(229%)하였는데, 이는 2013년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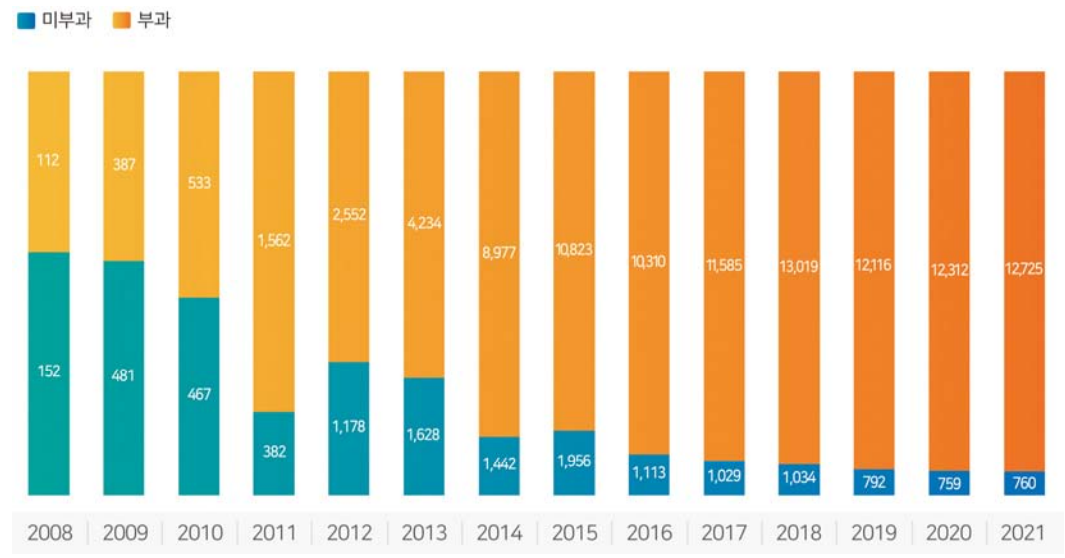
- 전자감독의 경우 2013년 603건(10.3%)까지 계속하여 증가하였다가 2014년부터 차츰 줄어 2021년에는 188건(1.4%)까지 감소하였으며, 부과비율도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 종합해보면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건수는 매년 비슷하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수강·이수명령의 부과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은 사건수와 비율 모두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전자감독의 경우는 사건수와 부과비율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11 사회내처우 부과현황(중복집계)

연도	처분 총계	미부과	부과	부과내용 (중복집계, %행은 총계 중 비율)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이수 명령	전자감독	치료감호	치료명령	약물치료
2008	264	152	112	76	51	32	14	1	-	-
	(%)	57.6	42.4	28.8	19.3	12.1	5.3	0.4	-	-
2009	868	481	387	267	178	168	62	16	-	-
	(%)	55.4	44.6	30.8	20.5	19.4	7.1	1.8	-	-
2010	1,000	467	533	345	177	281	172	17	-	-
	(%)	46.7	53.3	34.5	17.7	28.1	17.2	1.7	-	-
2011	1,944	382	1,562	715	305	1,299	355	29	-	-
	(%)	19.7	80.4	36.8	15.7	66.8	18.3	1.5	-	-
2012	3,730	1,178	2,552	1,049	555	2,132	517	41	-	-
	(%)	31.6	68.4	28.1	14.9	57.2	13.9	1.1	-	-
2013	5,862	1,628	4,234	1,261	744	3,793	603	38	2	1
	(%)	27.8	72.2	21.5	12.7	64.7	10.3	0.6	0.0	0.0
2014	10,419	1,442	8,977	1,624	1,131	8,689	598	70	2	6
	(%)	13.8	86.2	15.6	10.9	83.4	5.7	0.7	0.0	0.1
2015	12,779	1,956	10,823	1,679	1,380	10,371	582	49	-	5
	(%)	15.3	84.7	13.1	10.8	81.2	4.6	0.4	-	0.0
2016	11,423	1,113	10,310	1,435	1,538	10,052	344	56	-	3
	(%)	9.7	90.3	12.6	13.5	88	3	0.5	-	0.0
2017	12,614	1,029	11,585	1,394	1,813	11,337	249	27	25	2
	(%)	8.2	91.8	11.1	14.4	89.9	2	0.2	0.2	0.0

연도	처분	총계	미부과	부과	부과내용 (중복집계, %행은 총계 중 비율)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감·이수명령	전자감독	치료감호	치료명령	약물치료
2018		14,053	1,034	13,019	1,349	1,982	12,920	261	26	57	1
		(%)	7.4	92.6	9.6	14.1	91.9	1.9	0.2	0.4	0.0
2019		12,908	792	12,116	1,198	1,770	12,034	269	23	54	2
		(%)	6.1	93.9	9.3	13.7	93.2	2.1	0.2	0.4	0.0
2020		13,071	759	12,312	1,286	1,969	12,260	238	18	41	2
		(%)	5.8	94.2	9.8	15.1	93.8	1.8	0.1	0.3	0.0
2021		13,485	760	12,725	1,225	1,917	12,656	188	8	42	1
		(%)	5.6	94.4	9.1	14.2	93.9	1.4	0.1	0.3	0.0
총계		114,420	13,173	101,247	14,903	15,510	98,024	4,452	419	223	23
		(%)	11.5	88.5	13.0	13.6	85.7	3.9	0.4	0.2	0.0

2-1-6 사회내처우 부과현황



(1) 보호관찰 부과

- <표 2-1-12>는 보호관찰 부과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2008년에 등록된 264건 중 76건(28.8%)이 보호관찰을 부과받았고, 2015년 1,679건(13.1%)까지 건수가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1,225건(9.1%)으로 줄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등록된 114,420건 중 14,903건(13%)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보호관찰처분이 부과된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28.8%에서 2021년 9.1%까지 보호관찰 부과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등록사건 중 벌금 사건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른 상대적 감소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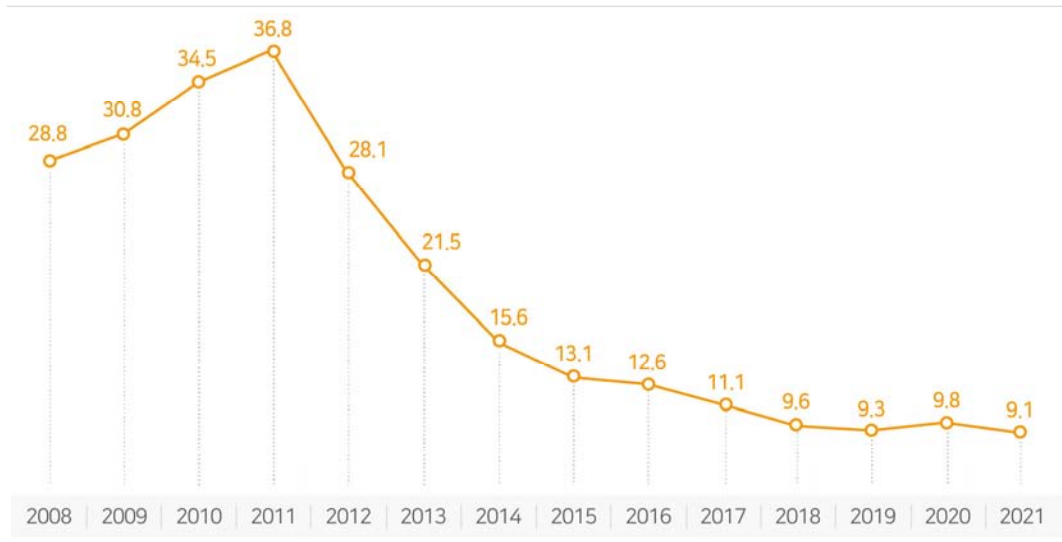
 2-1-12 보호관찰 부과현황

연도\보호관찰	총계	부과	미부과
2008	264	76	188
	(%)	28.8	71.2
2009	868	267	601
	(%)	30.8	69.2
2010	1,000	345	655
	(%)	34.5	65.5
2011	1,944	715	1,229
	(%)	36.8	63.2
2012	3,730	1,049	2,681
	(%)	28.1	71.9
2013	5,862	1,261	4,601
	(%)	21.5	78.5
2014	10,419	1,624	8,795
	(%)	15.6	84.4
2015	12,779	1,679	11,100
	(%)	13.1	86.9
2016	11,423	1,435	9,988
	(%)	12.6	87.4
2017	12,614	1,394	11,220
	(%)	11.1	88.9
2018	14,053	1,349	12,704
	(%)	9.6	90.4

연도\보호관찰	총계	부과	미부과
2019	12,908	1,198	11,710
	(%)	9.3	90.7
2020	13,071	1,286	11,785
	(%)	9.8	90.2
2021	13,485	1,225	12,260
	(%)	9.1	90.9
총계	114,420	14,903	99,517
	(%)	13.0	87.0

2-1-7 보호관찰 부과비율

(단위 : %)



(2) 보호관찰 기간

- <표 2-1-13>은 보호관찰 기간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보호관찰 처분이 부과된 14,903건 중 '2년'이 5,415건(36.4%)으로 가장 많고, '3년'이 3,163건(21.2%), '1년' 1,090건(7.3%) 순으로 나타나, 3년 이하 기간이 전체의 6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관찰 기간 '2년'의 비율은 2014년까지 20~30%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40%가 넘었으나 2020년부터는 소폭 감소하여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 보호관찰 기간 '3년'의 비율은 2012년까지 30% 전후를 유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는 다시 완만한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21년에는 345건(28.2%)이 등록되었다.

2-1-13 보호관찰 기간 현황

기간 연도	총계	6월	1년	1년 6월	2년	2년 6월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12년	15년	20년	25년	30년
2008	76	-	9	-	30	-	21	9	6	-	1	-	-	-	-	-	-	-
	(%)	-	11.8	-	39.5	-	27.6	11.8	7.9	-	1.3	-	-	-	-	-	-	-
2009	267	-	21	-	106	-	100	17	15	-	3	-	5	-	-	-	-	-
	(%)	-	7.9	-	39.7	-	37.5	6.4	5.6	-	1.1	-	1.9	-	-	-	-	-
2010	345	-	20	-	88	-	84	25	55	25	23	-	20	-	1	4	-	-
	(%)	-	5.8	-	25.5	-	24.3	7.2	15.9	7.2	6.7	-	5.8	-	0.3	1.2	-	-
2011	715	-	20	-	150	-	151	80	60	51	38	1	114	1	6	41	-	2
	(%)	-	2.8	-	21.0	-	21.1	11.2	8.4	7.1	5.3	0.1	15.9	0.1	0.8	5.7	-	0.3
2012	1,049	-	27	-	233	-	197	96	101	45	34	-	256	-	28	30	1	1
	(%)	-	2.6	-	22.2	-	18.8	9.2	9.6	4.3	3.2	-	24.4	-	2.7	2.9	0.1	0.1
2013	1,261	2	57	-	280	-	217	116	99	50	43	5	290	3	22	71	1	5
	(%)	0.2	4.5	-	22.2	-	17.2	9.2	7.9	4.0	3.4	0.4	23.0	0.2	1.7	5.6	0.1	0.4
2014	1,624	1	161	-	469	-	306	108	127	61	42	3	246	4	17	71	-	8
	(%)	0.1	9.9	-	28.9	-	18.8	6.7	7.8	3.8	2.6	0.2	15.1	0.2	1.0	4.4	-	0.5
2015	1,679	1	166	-	603	-	275	81	148	29	36	4	231	-	19	83	-	3
	(%)	0.1	9.9	-	35.9	-	16.4	4.8	8.8	1.7	2.1	0.2	13.8	-	1.1	4.9	-	0.2
2016	1,435	-	173	-	619	-	252	85	101	10	10	1	137	2	9	34	-	2
	(%)	-	12.1	-	43.1	-	17.6	5.9	7.0	0.7	0.7	0.1	9.5	0.1	0.6	2.4	-	0.1
2017	1,394	1	128	-	671	1	295	72	76	15	8	-	82	1	5	36	-	3
	(%)	0.1	9.2	-	48.1	0.1	21.2	5.2	5.5	1.1	0.6	-	5.9	0.1	0.4	2.6	-	0.2
2018	1,349	-	86	-	603	-	295	98	109	19	15	1	70	-	13	39	-	1
	(%)	-	6.4	-	44.7	-	21.9	7.3	8.1	1.4	1.1	0.1	5.2	-	1.0	2.9	-	0.1
2019	1,198	-	77	-	591	-	299	97	85	11	5	-	22	-	3	8	-	-
	(%)	-	6.4	-	49.3	-	25.0	8.1	7.1	0.9	0.4	-	1.8	-	0.3	0.7	-	-
2020	1,286	-	73	1	500	2	326	96	131	12	15	2	84	1	6	34	1	2
	(%)	-	5.7	0.1	38.9	0.1	25.4	7.5	10.2	0.9	1.2	0.1	6.5	0.1	0.5	2.6	0.1	0.1
2021	1,225	-	72	1	472	-	345	58	153	10	10	-	68	-	9	24	-	3
	(%)	-	5.9	0.1	38.5	-	28.2	4.7	12.5	0.8	0.8	-	5.6	-	0.7	2.0	-	0.2
총계	14,903	5	1,090	2	5,415	3	3,163	1,038	1,266	338	283	17	1,625	12	138	475	3	30
	(%)	0.0	7.3	0.0	36.4	0.0	21.2	7.0	8.5	2.3	1.9	0.1	10.9	0.1	0.9	3.2	0.0	0.2

(3) 사회봉사명령 부과

- <표 2-1-14>는 연도별 사회봉사명령 부과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등록사건 114,420건 중 15,510건 (13.6%)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았다. 2008년 등록된 264건 중 51건(19%)을 시작으로 2015년 1,380건(10.8%)까지 부과 비율이 점차 줄었으나, 이후 14%대 전후의 부과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1-14 사회봉사명령 부과현황

연도	사회봉사명령	총계	부과	미부과
2008		264	51	213
	(%)		19.3	80.7
2009		868	178	690
	(%)		20.5	79.5
2010		1,000	177	823
	(%)		17.7	82.3
2011		1,944	305	1,639
	(%)		15.7	84.3
2012		3,730	555	3,175
	(%)		14.9	85.1
2013		5,862	744	5,118
	(%)		12.7	87.3
2014		10,419	1,131	9,288
	(%)		10.9	89.1
2015		12,779	1,380	11,399
	(%)		10.8	89.2
2016		11,423	1,538	9,885
	(%)		13.5	86.5
2017		12,614	1,813	10,801
	(%)		14.4	85.6
2018		14,053	1,982	12,071
	(%)		14.1	85.9
2019		12,908	1,770	11,138
	(%)		13.7	86.3
2020		13,071	1,969	11,102
	(%)		15.1	84.9
2021		13,485	1,917	11,568
	(%)		14.2	85.8
총계		114,420	15,510	98,910
	(%)		13.6	86.4



(4)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

- <표 2-1-15>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사건의 시간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총 15,510건 중 50~150시간을 부과받은 사건이 10,375건(66.9%)이었으며, 300시간 이상은 220건(1.4%)에 불과하였다.
- 특히, 50~100시간이 5,580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100~150시간이 4,795건(30.9%), 150~200시간 2,181건(14.1%)으로 나타났다.

2-1-15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별 현황

사회봉사명령 시간	사건수	(%)
~50 미만	1,121	7.2
50 이상~100 미만	5,580	36.0
100 이상~150 미만	4,795	30.9
150 이상 200 미만	2,181	14.1
200 이상~300 미만	1,613	10.4
300 이상~400 미만	166	1.1
400 이상	54	0.3
총계	15,510	100.0

(5) 수강·이수명령 부과

- <표 2-1-16>는 수강·이수명령 부과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등록사건 114,420건 중 수강·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건은 98,024건(85.7%)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08년 등록된 264건 중 수강·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건은 32건(12.1%)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당해 등록건수 13,485건 중 수강·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건은 12,656건(93.9%)이었다.
- 특히, 2011년 이후로는 전년 대비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고, 2018년 이후 신규 등록된 건의 약 90%가 수강·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을 살펴보면, 신규등록된 39,464건 중 36,950건인 93.6%에 수강·이수명령이 부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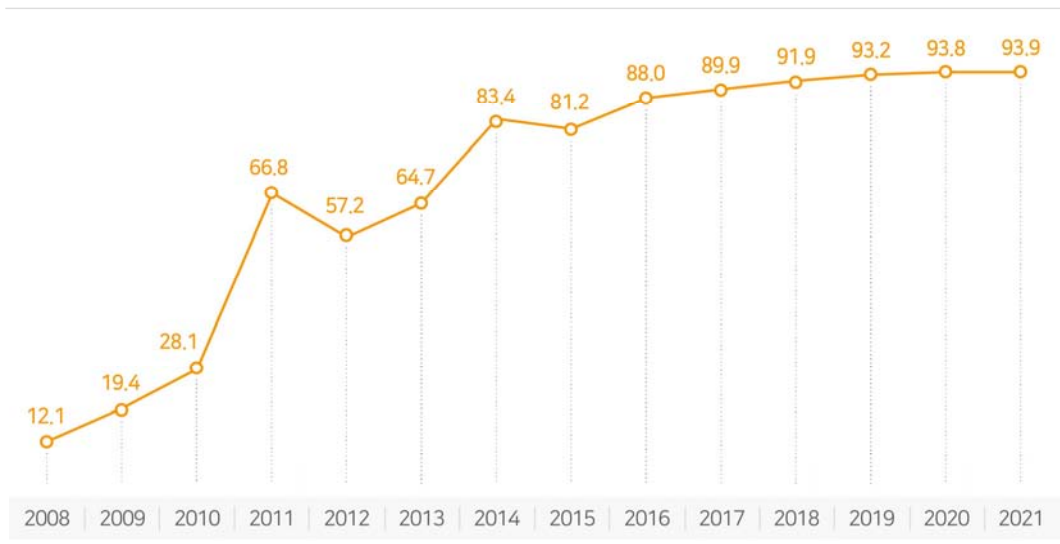
 2-1-16 수강·이수명령 부과현황

연도 \ 수강·이수 명령	총계	부과	미부과
2008	264	32	232
	(%)	12.1	87.9
2009	868	168	700
	(%)	19.4	80.6
2010	1,000	281	719
	(%)	28.1	71.9
2011	1,944	1,299	645
	(%)	66.8	33.2
2012	3,730	2,132	1,598
	(%)	57.2	42.8
2013	5,862	3,793	2,069
	(%)	64.7	35.3
2014	10,419	8,689	1,730
	(%)	83.4	16.6
2015	12,779	10,371	2,408
	(%)	81.2	18.8
2016	11,423	10,052	1,371
	(%)	88.0	12.0
2017	12,614	11,337	1,277
	(%)	89.9	10.1

연도 \ 수강·이수 명령	총계	부과	미부과
2018	14,053	12,920	1,133
	(%)	91.9	8.1
2019	12,908	12,034	874
	(%)	93.2	6.8
2020	13,071	12,260	811
	(%)	93.8	6.2
2021	13,485	12,656	829
	(%)	93.9	6.1
총계	114,420	98,024	16,396
	(%)	85.7	14.3

2-1-9 수강·이수명령 부과비율

(단위 : %)



(6) 수강·이수명령 부과시간

- <표 2-1-17>은 수강·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건의 부과시간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수강·이수명령이 부과된 사건 총 98,024건 중 100시간 미만 부과사건이 전체의 95,234건(97.1%)을 차지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시간 미만을 부과받은 사건이 79,417건(81.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100시간이 15,817건(16.1%), 100~150시간 2,233건(2.3%), 150시간 이상은 557건(0.6%)에 그쳤다.

2-1-17 수강·이수명령 부과시간별 현황

수강·이수명령 부과시간	사건수	(%)
~50 미만	79,417	81.0
50 이상~100 미만	15,817	16.1
100 이상~150 미만	2,233	2.3
150 이상~200 미만	260	0.3
200 이상~300 미만	269	0.3
300 이상~400 미만	26	0.0
400 이상	2	0.0
총계	98,024	100.0

(7)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현황

- <표 2-1-18>은 등록사건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등록건수 114,420건 중 4,452건(3.9%)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 2008년 등록된 264건 중 14건(5.3%)이 부착명령을 부과받은 것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당해 등록건수 5,862건 중 603건(10.3%)이 부과되었고, 이후 점차 그 수가 감소하여 2021년에는 당해 등록사건 13,485건 중 188건(1.4%)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당해 등록사건 대비 부착명령이 부과된 사건수는 2013년 603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부과비율은 2011년이 18.3%으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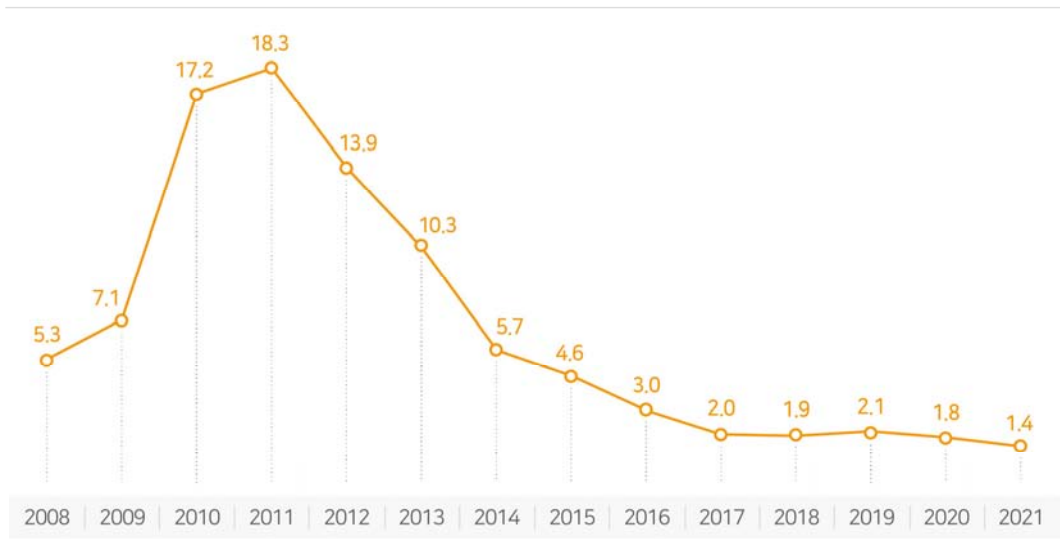
2-1-18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현황

연도	전자장치	총계	부과	미부과
2008		264	14	250
		(%)	5.3	94.7
2009		868	62	806
		(%)	7.1	92.9
2010		1,000	172	828
		(%)	17.2	82.8
2011		1,944	355	1,589
		(%)	18.3	81.7
2012		3,730	517	3,213
		(%)	13.9	86.1

연도 \ 전자장치	총계	부과	미부과
2013	5,862	603	5,259
	(%)	10.3	89.7
2014	10,419	598	9,821
	(%)	5.7	94.3
2015	12,779	582	12,197
	(%)	4.6	95.4
2016	11,423	344	11,079
	(%)	3	97
2017	12,614	249	12,365
	(%)	2	98
2018	14,053	261	13,792
	(%)	1.9	98.1
2019	12,908	269	12,639
	(%)	2.1	97.9
2020	13,071	238	12,833
	(%)	1.8	98.2
2021	13,485	188	13,297
	(%)	1.4	98.6
총계	114,420	4,452	109,968
	(%)	3.9	96.1

2-1-10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비율

(단위 : %)



(8)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 <표 2-1-19>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건의 부착기간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전자장치 부착명령 건수는 총 4,452건이며 이 중 부착기간 10년이 1,699건(38.2%)으로 가장 많고, 이어 5년이 655건(14.7%)으로 나타났다.
- 전자장치 부착기간 3년 513건(11.5%), 20년 514건(11.5%) 순으로 나타났고, 25년 4건(0.1%), 30년 32건(0.7%)으로 나타났다.

 2-1-19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별 현황

전자장치 부착기간	사건 수	(%)
1년	16	0.4
2년	139	3.1
3년	513	11.5
4년	62	1.4
5년	655	14.7
6년	349	7.8
7년	289	6.5
8년	18	0.4
10년	1,699	38.2
12년	13	0.3
15년	149	3.4
20년	514	11.5
25년	4	0.1
30년	32	0.7
총계	4,452	100.0

(9) 치료감호 부과

- <표 2-1-20>은 연도별 치료감호 부과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등록건수 114,420건 중 419건(0.4%)에 치료감호가 부과되었다.
- 2008년에 당해 등록건수 264건 중 1건(0.4%)이 치료감호를 부과받았고, 이후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하여 2014년에는 70건(0.7%)이 치료감호를 부과받았으나, 2021년에는 8건(0.1%)이 치료감호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20 치료감호 부과현황

연도	치료감호	총계	부과	미부과
2008		264	1	263
		(%)	0.4	99.6
2009		868	16	852
		(%)	1.8	98.2
2010		1,000	17	983
		(%)	1.7	98.3
2011		1,944	29	1,915
		(%)	1.5	98.5
2012		3,730	41	3,689
		(%)	1.1	98.9
2013		5,862	38	5,824
		(%)	0.6	99.4
2014		10,419	70	10,349
		(%)	0.7	99.3
2015		12,779	49	12,730
		(%)	0.4	99.6
2016		11,423	56	11,367
		(%)	0.5	99.5
2017		12,614	27	12,587
		(%)	0.2	99.8
2018		14,053	26	14,027
		(%)	0.2	99.8
2019		12,908	23	12,885
		(%)	0.2	99.8
2020		13,071	18	13,053
		(%)	0.1	99.9
2021		13,485	8	13,477
		(%)	0.1	99.9
총계		114,420	419	114,001
		(%)	0.4	99.6

2-1-11 치료감호 부과비율

(단위 : %)



(10) 치료명령 부과

- <표 2-1-21>은 치료명령 부과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등록건수 114,420건 중 223건(0.2%)이 치료명령을 부과받았다. 2013년과 2014년에 치료명령 부과된 사건은 2건이었고, 2017년에 25건, 2018년에 5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8년 이후 등록사건 중 치료명령이 부과된 사건수는 매년 40~50건대로 당해 신규등록 사건 대비 약 0.3~0.4% 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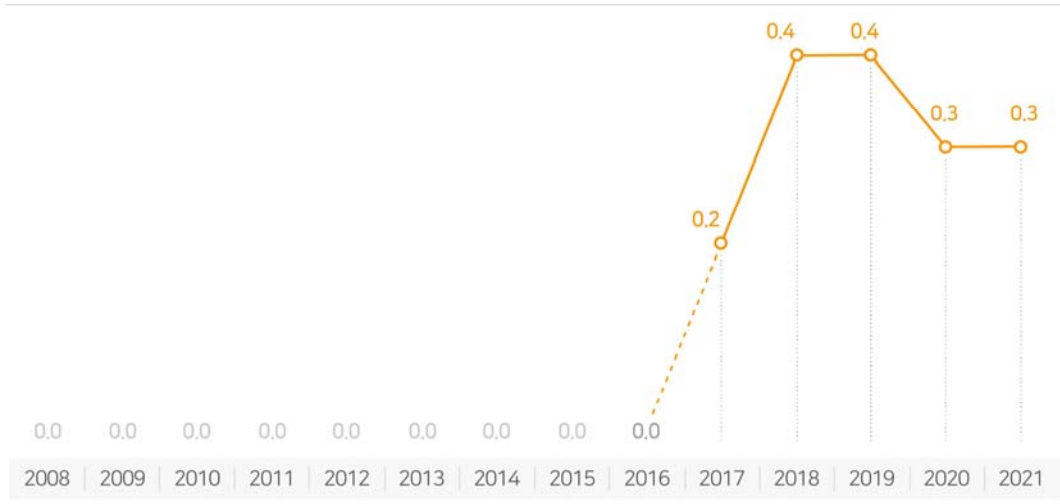
2-1-21 치료명령 부과현황

연도	치료명령	총계	부과	미부과
2008		264	-	264
	(%)		-	100.0
2009		868	-	868
	(%)		-	100.0
2010		1,000	-	1,000
	(%)		-	100.0
2011		1,944	-	1,944
	(%)		-	100.0
2012		3,730	-	3,730
	(%)		-	100.0
2013		5,862	2	5,860
	(%)		0.0	100.0

연도 \ 치료명령	총계	부과	미부과
2014	10,419	2	10,417
	(%)	0.0	100.0
2015	12,779	-	12,779
	(%)	-	100.0
2016	11,423	-	11,423
	(%)	-	100.0
2017	12,614	25	12,589
	(%)	0.2	99.8
2018	14,053	57	13,996
	(%)	0.4	99.6
2019	12,908	54	12,854
	(%)	0.4	99.6
2020	13,071	41	13,030
	(%)	0.3	99.7
2021	13,485	42	13,443
	(%)	0.3	99.7
총계	114,420	223	114,197
	(%)	0.2	99.8

2-1-12 치료명령 부과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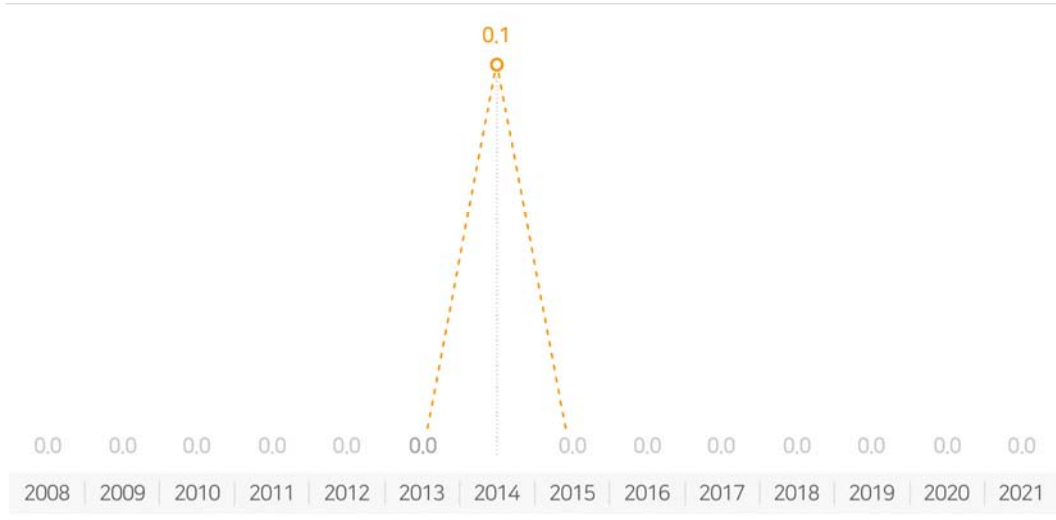


(11) 성충동 약물치료 부과

- <표 2-1-22>는 성충동 약물치료 부과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등록건수 114,420건 중 23건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부과받았다. 2011년 7월 「성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2013년에 처음으로 1건이 부과되었고 2014년에 6건, 2015년에 5건이 등록되었다.

 2-1-22 성충동 약물치료 부과현황

연도	성충동치료	총계	부과	미부과
2008		264	-	264
	(%)		-	100.0
2009		868	-	868
	(%)		-	100.0
2010		1,000	-	1,000
	(%)		-	100.0
2011		1,944	-	1,944
	(%)		-	100.0
2012		3,730	-	3,730
	(%)		-	100.0
2013		5,862	1	5,861
	(%)		0.0	100.0
2014		10,419	6	10,413
	(%)		0.1	99.9
2015		12,779	5	12,774
	(%)		0.0	100.0
2016		11,423	3	11,420
	(%)		0.0	100.0
2017		12,614	2	12,612
	(%)		0.0	100.0
2018		14,053	1	14,052
	(%)		0.0	100.0
2019		12,908	2	12,906
	(%)		0.0	100.0
2020		13,071	2	13,069
	(%)		0.0	100.0
2021		13,485	1	13,484
	(%)		0.0	100.0
총계		114,420	23	114,397
	(%)		0.0	100.0



09 등록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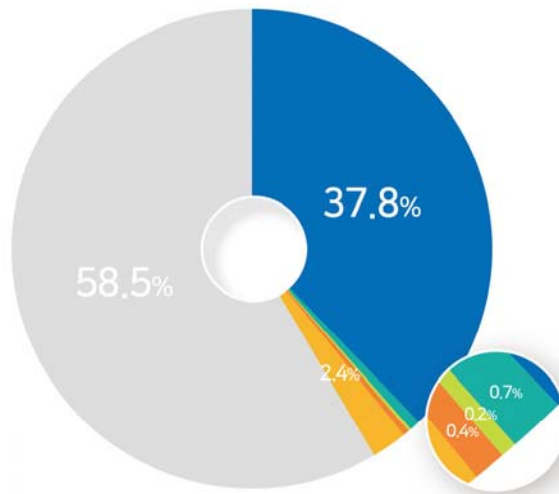
-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는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심사절차 없이 일률적인 등록기간이 적용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0, 2015. 7. 30.)에 따라 2016년 12월에 도입되어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표 2-1-23>는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에는 287건의 면제신청 중 241건(84.0%)이 허가되었고, 46건(16.0%)이 불허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제신청이 가능한 최소 경과 기간이 도래하는 등록대상자 수가 증가하여 매년 면제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총 2,143건이 신청되어 1,683건이 허가되었고, 460건이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건수는 전체 등록사건(114,420건) 대비 1.47% 수준이다.
- 불허 사유로는 제출의무 등 위반이 269건(58.5%)으로 가장 많았고, 기간 미경과 174건(37.8%), 사회내처우 미집행 11건(2.4%) 등이 뒤를 이었다.

2-1-23 면제 신청 현황

연도	접수 (접수일자 기준)	결정 결과 (결정일자 기준)							
		허가	불허(계)	불허 사유 (%행은 불허(계) 중 비율)					
				등록기간 미경과	성범죄 재범	선고형 등 미집행	공개고지 등 미집행	사회내처우 미집행	제출의무 등 위반
2017	287	241	46	1	-	-	-	4	41
	(%)	84.0	16.0	2.2	-	-	-	8.7	89.1
2018	180	160	20	5	1	-	1	2	11
	(%)	88.9	11.1	25.0	5.0	-	5.0	10.0	55.0
2019	126	91	35	16	-	-	-	1	18
	(%)	72.2	27.8	45.7	-	-	-	2.9	51.4
2020	419	319	100	47	-	-	-	-	53
	(%)	76.1	23.9	47.0	-	-	-	-	53.0
2021	1,131	872	259	105	2	1	1	4	146
	(%)	77.1	22.9	40.5	0.8	0.4	0.4	1.5	56.4
누계	2,143	1,683	460	174	3	1	2	11	269
	(%)	78.5	21.5	37.8	0.7	0.2	0.4	2.4	58.5

2-1-14 면제 불허 사유

- 등록기간 미경과
- 성범죄 재범
- 선고형 등 미집행
- 공개고지 등 미집행
- 사회내처우 미집행
- 제출의무 등 위반



10 등록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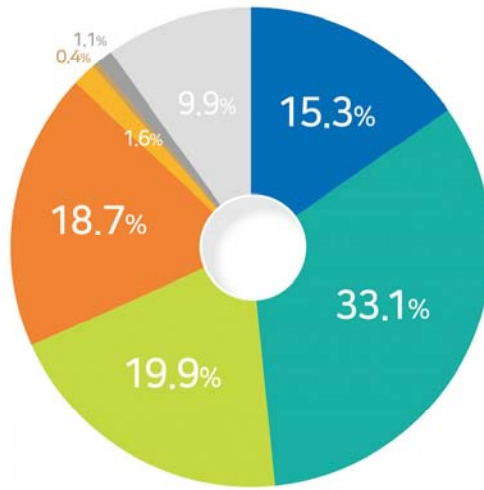
- <표 2-1-24>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등록 종료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종료 사건수는 총 8,975건으로 전체 등록사건수(114,420건)의 7.8%이다.
- 종료사유를 살펴보면, 사망이 2,968건(3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선고유예 면소 1,786건(19.9%), 면제 1,683건(18.7%), 등록기간 경과 1,370건(15.3%)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타 종료는 2016년 3월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헌(2015마688) 결정, 상소권 회복 등의 사유로 발생한 수치이다.
- 2018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2020 성범죄백서」에는 기간경과 종료가 168건으로 전체 종료 건수(3,944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에 불과하였으나, 본 백서의 통계집계기준인 2021년에는 구법이 적용된 등록기간(5·10년 등)이 도래한 사건이 늘어나 총 1,370건(15.3%)이 기간경과로 종료되었다.
- 2017년 6월 면제제도 시행 이후, 면제 하가로 종료되는 사건 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전체 종료 건수 8,975건 중 1,683건(18.7%)을 차지하여, 사망, 선고유예 면소와 함께 주요 종료 사유로 나타났다.

 2-1-24 등록 종료별 현황

종료 사유		사건 수	(%)
등록기간 경과		1,370	15.3
사망		2,968	33.1
선고유예 면소		1,786	19.9
등록 면제		1,683	18.7
기타	상소권 회복	141	1.6
	재심 확정	36	0.4
	정식재판 청구	99	1.1
	기타 (위헌 등)	892	9.9
총계		8,975	100.0

2-1-15 등록 종료별 비율

- 등록기간경과
- 사망
- 선고유예 면소
- 면제종료
- 상소권 회복
- 재심 확정
- 정식재판 청구
- 기타(위헌 등)



제 2 절



성범죄자 특성

01 성범죄 전과

(1) 성범죄 전과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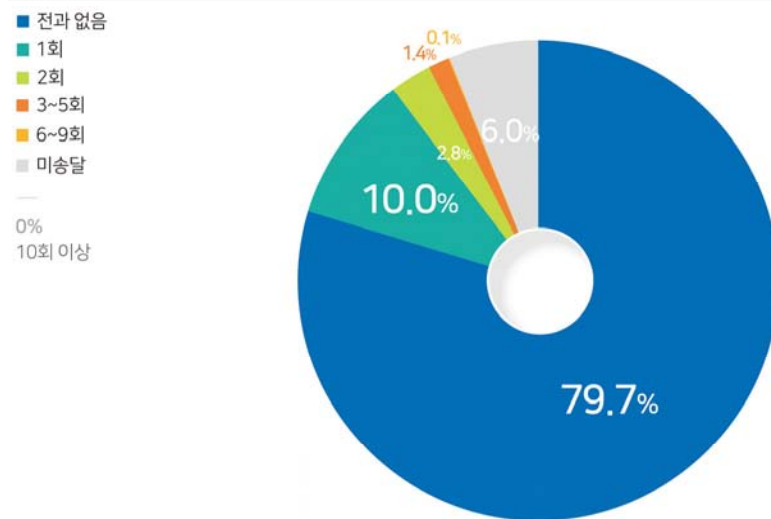
- 〈표 2-2-1〉은 연도별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등록사건 114,420건 중 91,186건(79.7%)이 성범죄 전과사실이 없었고, 성범죄 전과 1회는 11,411건(10.0%), 2회는 3,204건(2.8%) 순으로 나타났다.
-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전과 없음이 80%대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과 횟수 1회는 10% 내외의 비율을, 2회는 2~3%대로 나타났다.

2-2-1 성범죄 전과 횟수 현황

연도	전과	총계	전과 없음	1회	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미송달
2008		264	224	23	11	4	-	-	2
	(%)		84.8	8.7	4.2	1.5	-	-	0.8
2009		868	713	95	30	13	-	-	17
	(%)		82.1	10.9	3.5	1.5	-	-	2.0
2010		1,000	802	114	38	20	-	-	26
	(%)		80.2	11.4	3.8	2.0	-	-	2.6
2011		1,944	1,556	207	53	33	-	1	94
	(%)		80.0	10.7	2.7	1.7	-	0.1	4.8
2012		3,730	2,930	458	119	49	1	-	173
	(%)		78.6	12.3	3.2	1.3	0.0	-	4.6
2013		5,862	4,715	624	153	74	2	-	294
	(%)		80.4	10.7	2.6	1.3	0.0	-	5.0

연도	전과	총계	전과 없음	1회	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미송달
2014		10,419	8,371	1,126	309	140	4	-	469
		(%)	80.3	10.8	3.0	1.4	0.0	-	4.5
2015		12,779	10,122	1,349	337	161	4	1	805
		(%)	79.2	10.6	2.6	1.3	0.0	0.0	6.3
2016		11,423	8,943	1,162	379	167	7	2	763
		(%)	78.3	10.2	3.3	1.5	0.0	0.0	6.7
2017		12,614	9,982	1,193	331	158	10	-	940
		(%)	79.1	9.5	2.6	1.3	0.1	-	7.6
2018		14,053	11,135	1,334	371	196	12	-	1,005
		(%)	79.2	9.5	2.6	1.4	0.1	-	7.2
2019		12,908	10,550	1,281	400	212	34	-	431
		(%)	81.7	9.9	3.1	1.7	0.3	-	3.3
2020		13,071	10,543	1,271	353	223	32	1	648
		(%)	80.7	9.7	2.7	1.7	0.2	0.0	5.0
2021		13,485	10,600	1,174	320	185	24	-	1,182
		(%)	78.6	8.7	2.4	1.4	0.2	-	8.7
총계		114,420	91,186	11,411	3,204	1,635	130	5	6,849
		(%)	79.7	10.0	2.8	1.4	0.1	0.0	6.0

2-2-1 성범죄 전과 횟수 비율



(2) 공개대상자 성범죄 전과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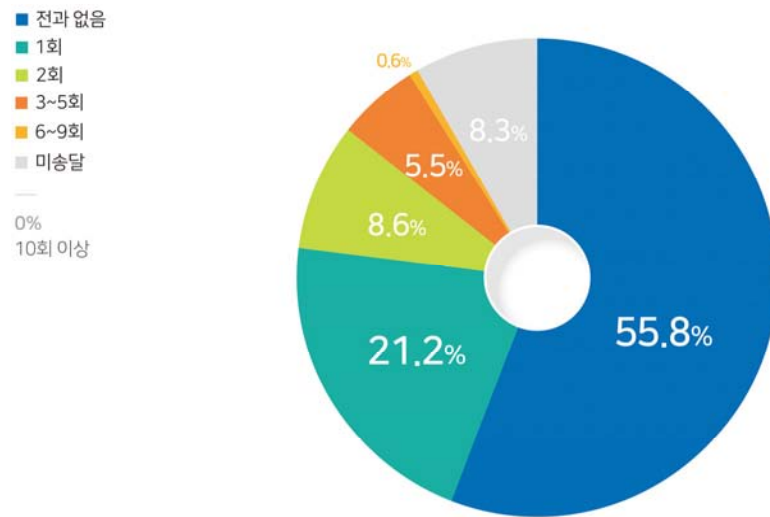
- <표 2-2-2>는 공개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고지는 공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등록·공개사건에서 등록·공개·고지 사건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음을 참고하길 바란다.
-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16,179건 중 9,023건(55.8%)이 전과가 없었으며, 1회 3,426건(21.2%), 2회 1,387건(8.6%)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4년까지는 공개대상자 중 50% 이상이 전과가 없었으나 2021년 27.7%로 비율이 감소하였고, 전과 1회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2017년부터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021년 32.1%를 나타냈다.

 2-2-2 공개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현황

연도 \ 전과	총계	전과 없음	1회	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미승달
2008	149	122	17	7	2	-	-	1
	(%)	81.9	11.4	4.7	1.3	-	-	0.7
2009	380	285	54	21	13	-	-	7
	(%)	75.0	14.2	5.5	3.4	-	-	1.8
2010	523	385	76	29	20	-	-	13
	(%)	73.6	14.5	5.5	3.8	-	-	2.5
2011	1,471	1,146	178	47	28	-	1	71
	(%)	77.9	12.1	3.2	1.9	-	0.1	4.8
2012	2,533	1,905	364	104	41	1	-	118
	(%)	75.2	14.4	4.1	1.6	0.0	-	4.7
2013	2,395	1,693	399	105	58	2	-	138
	(%)	70.7	16.7	4.4	2.4	0.1	-	5.8
2014	2,212	1,283	502	171	90	2	-	164
	(%)	58.0	22.7	7.7	4.1	0.1	-	7.4
2015	2,022	918	513	173	106	3	1	308
	(%)	45.4	25.4	8.6	5.2	0.1	0.0	15.2
2016	1,158	427	300	149	83	6	1	192
	(%)	36.9	25.9	12.9	7.2	0.5	0.1	16.6
2017	744	180	212	96	72	7	-	177
	(%)	24.2	28.5	12.9	9.7	0.9	-	23.8
2018	726	165	216	109	92	7	-	137
	(%)	22.7	29.8	15.0	12.7	1.0	-	18.9
2019	691	187	228	151	94	23	-	8
	(%)	27.1	33.0	21.9	13.6	3.3	-	1.2

연도\전과	총계	전과 없음	1회	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미송달
2020	648	181	198	122	119	25	-	3
	(%)	27.9	30.6	18.8	18.4	3.9	-	0.5
2021	527	146	169	103	82	18	-	9
	(%)	27.7	32.1	19.5	15.6	3.4	-	1.7
총계	16,179	9,023	3,426	1,387	900	94	3	1,346
	(%)	55.8	21.2	8.6	5.6	0.6	0.0	8.3

2-2-2 공개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비율



02 연령

(1)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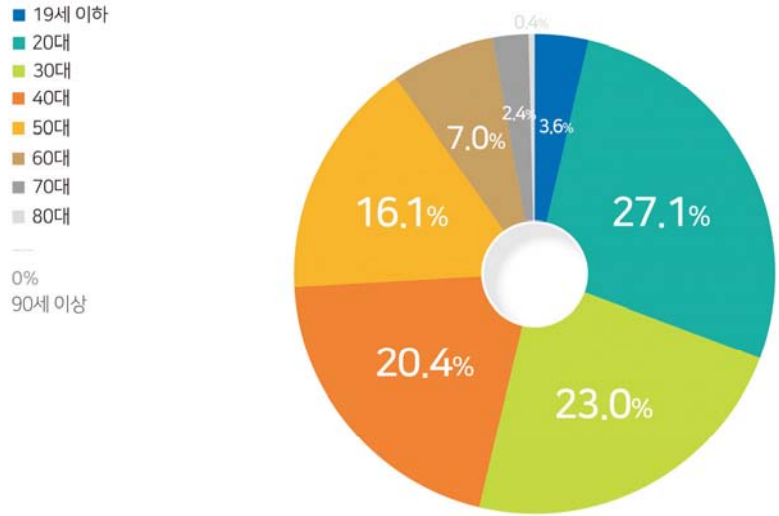
- <표 2-2-3>는 최초 등록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등록대상자의 연령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등록사건 중 20대가 31,062건(27.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30대가 26,324건(23.0%), 40대 23,297건(20.4%), 50대 18,413건(16.1%) 순으로 20~50대가 전체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자 연령 분석의 경우, 전체 성폭력범죄자 333,545명 중 19~30세가 96,504명(28.5%), 31~40세가 91,428명(21.1%), 41~50세가 63,173명(18.7%) 순으로 등록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한편, 전체 성폭력범죄자 중에서는 19세 미만이 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등록대상사건 중에서는 19세 이하 대상자가 3.6%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의 이유로 신상등록이 되지 않은 사건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록 <표 4-1-6> 참조)

2-2-3 연령별 현황

연령	사건 수	(%)
19세 이하	4,127	3.6
20대	31,062	27.1
30대	26,324	23.0
40대	23,297	20.4
50대	18,413	16.1
60대	8,041	7.0
70대	2,686	2.4
80대	453	0.4
90세 이상	17	0.0
총계	114,420	100.0

2-2-3 연령별 비율



(2) 연령별 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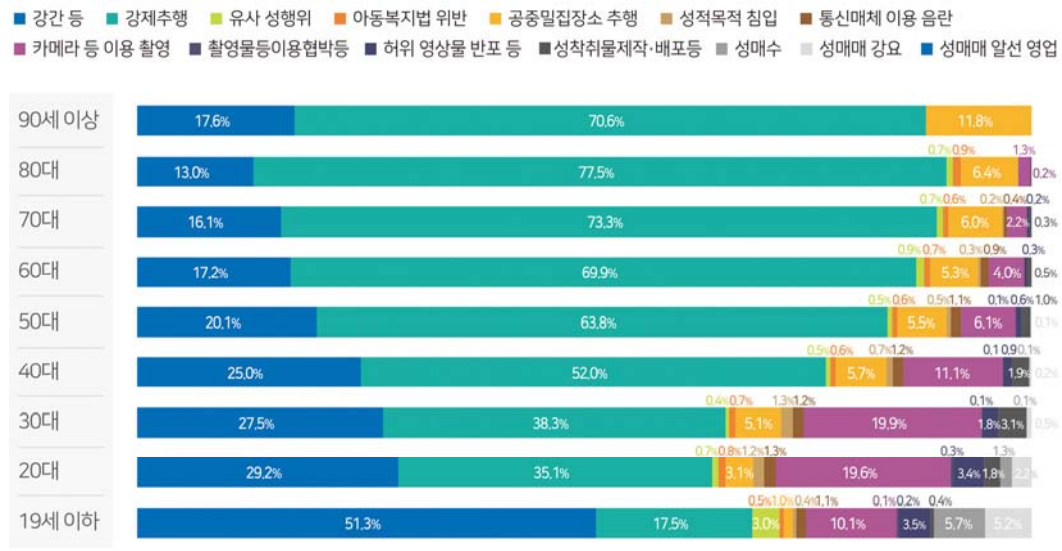
- <표 2-2-4>는 죄명별 등록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사건 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 20대는 전체 31,062건 중 강제추행 10,915건(35.1%), 강간 등 9,072건(29.2%), 카메라등이용촬영 6,090건(19.6%) 순으로 나타났다.
- 30대는 전체 26,324건 중 강제추행 10,094건(38.3%), 강간 등 7,244건(27.5%), 카메라등이용촬영 5,249건(19.9%) 순으로 나타났다.
- 40대는 전체 23,297건 중 강제추행 12,108건(52.0%), 강간 등 5,817건(25.0%), 카메라등이용촬영 2,585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 50대는 전체 18,413건 중 강제추행 11,745건(63.8%), 강간 등 3,707건(20.1%), 카메라등이용촬영 1,016건(5.5%) 순으로 나타났다.
- 20~50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강간 등 범죄 비율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고, 강제추행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전체 15,854건 중 20~40대가 13,924건(87.8%)을 차지했다.
- 이 외에 19세 이하는 4,127건으로 전체 연령대의 3.6%를 차지하며, 60대 8,041건(7.0%), 70대 2,686건(2.3%), 80대 453건(0.4%), 90세 이상 17건(0.01%)를 차지했다.

2-2-4 연령별 죄명 현황

죄명 연령	총계	강간 등	강제 추행	유사 성행위	아동 복지법 위반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이용 촬영	촬영물등 이용 협박등	허위 영상물 반포등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
19세 이하	4,127	2,117	721	124	21	42	18	48	417	3	8	143	15	234	216
	(%)	51.3	17.5	3.0	0.5	1.0	0.4	1.1	10.1	0.1	0.2	3.5	0.4	5.7	5.2
20대	31,062	9,072	10,915	203	249	957	384	411	6,090	9	78	1,049	559	411	675
	(%)	29.2	35.1	0.7	0.8	3.1	1.2	1.3	19.6	0.0	0.3	3.4	1.8	1.3	2.2
30대	26,324	7,244	10,094	91	188	1,350	331	313	5,249	-	26	480	810	24	124
	(%)	27.5	38.3	0.4	0.7	5.1	1.3	1.2	19.9	-	0.1	1.8	3.1	0.1	0.5
40대	23,297	5,817	12,108	119	147	1,326	162	280	2,585	-	25	218	450	12	48
	(%)	25.0	52.0	0.5	0.6	5.7	0.7	1.2	11.1	-	0.1	0.9	1.9	0.1	0.2
50대	18,413	3,707	11,745	94	112	1,016	83	207	1,131	1	15	102	181	4	15
	(%)	20.1	63.8	0.5	0.6	5.5	0.5	1.1	6.1	0.0	0.1	0.6	1.0	0.0	0.1
60대	8,041	1,382	5,621	72	58	424	27	72	318	2	2	22	38	1	2
	(%)	17.2	69.9	0.9	0.7	5.3	0.3	0.9	4.0	0.0	0.0	0.3	0.5	0.0	0.0
70대	2,686	431	1,969	18	17	162	4	10	58	1	1	6	9	-	-
	(%)	16.1	73.3	0.7	0.6	6.0	0.2	0.4	2.2	0.0	0.0	0.2	0.3	-	-

연령	죄명	총계	강간 등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아동 복지법 위반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등 이용 협박등	허위 영상물 반포등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
80대		453	59	351	3	4	29	-	-	6	1	-	-	-	-	-
	(%)		13.0	77.5	0.7	0.9	6.4	-	-	1.3	0.2	-	-	-	-	-
90세 이상		17	3	12	-	-	2	-	-	-	-	-	-	-	-	-
	(%)		17.6	70.6	-	-	11.8	-	-	-	-	-	-	-	-	-
총계		114,420	29,832	53,536	724	796	5,308	1,009	1,341	15,854	17	155	2,020	2,062	686	1,080
	(%)		26.1	46.8	0.6	0.7	4.6	0.9	1.2	13.9	0.0	0.1	1.8	1.8	0.6	0.9

2-2-4 연령별 죄명 비율



03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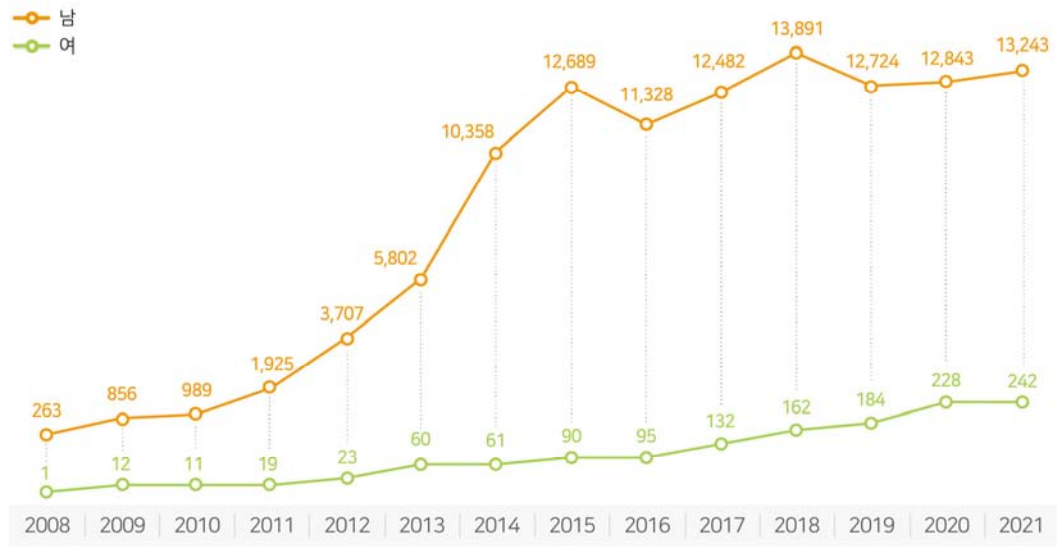
- <표 2-2-5>은 등록대상자의 성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등록사건 114,420건 중 남성이 113,100건(98.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320건(1.2%)이다. 등록사건은 남성, 여성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자 성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성폭력범죄자 333,845명 중 남성이 325,980명(96.2%), 여성이 8,229명(2.5%)으로 남성 성범죄자가 여성 성범죄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분석」의 여성 비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 처음 2%대 비율을 보였으며, 그 후 증감을 반복하며 3%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비율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4-1-5> 참조)

2-2-5 성별 현황

연도 \ 성별	총계	남	여
2008	264	263	1.0
	(%)	99.6	0.4
2009	868	856	12
	(%)	98.6	1.4
2010	1,000	989	11
	(%)	98.9	1.1
2011	1,944	1,925	19
	(%)	99.0	1.0
2012	3,730	3,707	23
	(%)	99.4	0.6
2013	5,862	5,802	60
	(%)	99.0	1.0
2014	10,419	10,358	61
	(%)	99.4	0.6
2015	12,779	12,689	90
	(%)	99.3	0.7
2016	11,423	11,328	95
	(%)	99.2	0.8
2017	12,614	12,482	132
	(%)	99.0	1.0
2018	14,053	13,891	162
	(%)	98.8	1.2
2019	12,908	12,724	184
	(%)	98.6	1.4
2020	13,071	12,843	228
	(%)	98.3	1.7
2021	13,485	13,243	242
	(%)	98.2	1.8
총계	114,420	113,100	1,320
	(%)	98.8	1.2

2-2-5 성별 현황



04 직업

- <표 2-2-6>은 등록대상자의 직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다만, 신상정보로 관리하는 직업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는 정보로서 통계 집계 기준일 당시 등록되어 있는 직업 정보로, 범행 시 또는 판결문에 기재된 직업이 아님을 참고하기 바란다.
- 전체 등록사건 114,420건 중 무직은 44,326건(38.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사무종사자 17,286건(15.1%), 단순노무 종사자 17,265건(15.1%) 순이며, 공무원은 330건(0.3%)으로 가장 적었다.
-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자 직업 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무직이 72,290명(21.4%), 일반회사원 57,507명(17.0%), 학생 46,700명(13.8%) 순이었다. 「범죄분석」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이 포함돼있어 학생 비중이 높다는 점 등 다루고 있는 대상과 분류 기준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등록대상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4-1-7> 참조)

2-2-6 직업 현황

직업	사건수	(%)
공무원	330	0.3
관리자	1,634	1.4
군인	1,068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768	3.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955	0.8
단순노무 종사자	17,265	15.1
사무 종사자	17,286	15.1
서비스 종사자	3,939	3.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937	3.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106	4.5
판매 종사자	6,201	5.4
학생	3,730	3.3
무직	44,326	38.7
기타	4,875	4.3
총계	114,420	100.0

05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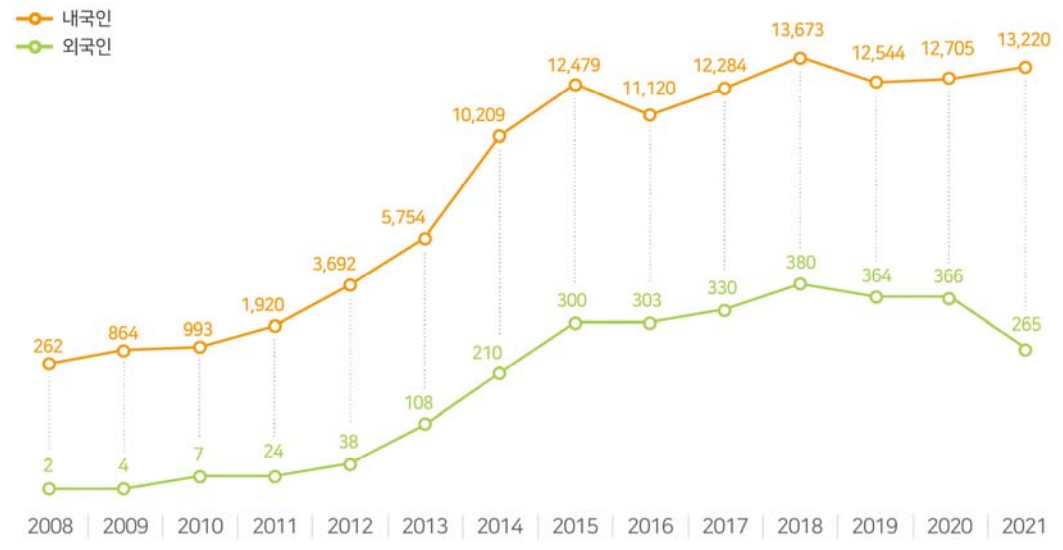
(1) 내·외국인 현황

- <표 2-2-7>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등록된 내·외국인대상자의 사건 수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등록사건 114,420건 중 외국인인 2,701건(2.4%)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대상자는 2008년 2건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364건으로 당해 연도 신규등록 건수의 2.8%였으며, 2021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265건(2.0%)이 등록되었다.

2-2-7 내·외국인대상자 현황

연도	국적	총계	내국인	외국인	(%)
2008		264	262	2	0.8
2009		868	864	4	0.5
2010		1,000	993	7	0.7
2011		1,944	1,920	24	1.2
2012		3,730	3,692	38	1.0
2013		5,862	5,754	108	1.8
2014		10,419	10,209	210	2.0
2015		12,779	12,479	300	2.3
2016		11,423	11,120	303	2.7
2017		12,614	12,284	330	2.6
2018		14,053	13,673	380	2.7
2019		12,908	12,544	364	2.8
2020		13,071	12,705	366	2.8
2021		13,485	13,220	265	2.0
총계		114,420	111,719	2,701	2.4

2-2-6 내·외국인대상자 연도별 등록 현황



(2) 외국인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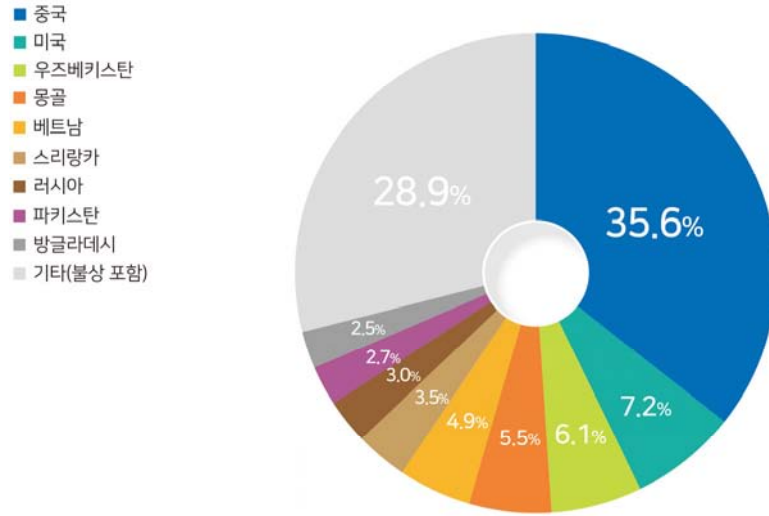
- <표 2-2-8>은 외국인대상자의 국적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이 961건(35.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5건(7.2%), 우즈베키스탄 166건(6.2%) 순이었으며, 뒤이어 몽골,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780건은 전체 84개국 중 상위 9개국을 제외한 75개 나라의 합이며, 이중 국적 불상 108건은 국적 확인이 불가하였다.
-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자 국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범죄자 338,545명 중 외국인은 7,931명(2.3%)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대상자의 국적은 기타를 제외하고 중국이 2,850명(35.9%)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664명(8.4%), 몽골 458(5.8%), 우즈베키스탄 447명(5.6%) 순으로, <표 2-2-2>의 비율 분석 내용과 그 순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4-1-8> 참조)
- 2021년도 체류외국인 현황(명)³⁾과 비교한 결과, 체류인원 대비 등록대상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0.1%의 베트남, 중국, 미국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도 0.5% 이하의 분포를 보였다.

 2-2-8 외국인 대상자의 국적 현황

국적	외국인 등록 사건 수	국적별 비율(%)	2021년 체류 외국인현황(명)	체류인원 대비 등록 비율(%)
총계	2,701	100.0	1,956,781	0.1
중국	961	35.6	840,193	0.1
미국	195	7.2	140,672	0.1
우즈베키스탄	166	6.2	66,677	0.2
몽골	149	5.5	37,012	0.4
베트남	132	4.9	208,740	0.1
스리랑카	94	3.5	20,291	0.5
러시아	82	3.0	48,680	0.2
파키스탄	74	2.7	12,410	0.6
방글라데시	68	2.5	16,426	0.4
기타(불상 포함)	780	28.9	-	-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공 자료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2-7 내·외국인대상자 국적 비율



(3) 외국인 죄명

- <표 2-2-9>는 외국인대상자의 죄명 현황을 국가별로 나타낸 것이다. 죄명별로는 전체 2,701건 중 강제추행이 1,555건(57.6%)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강간 등 527건(19.5%), 카메라등이용촬영 382건(14.1%), 공중밀집장소추행 168건(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죄명별 외국인 대상자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 강간 등은 중국 171건(32.4%), 몽골 43건(8.2%), 우즈베키스탄 41건(7.8%), 베트남 32건(6.1%) 등의 순이었다.
- 강제추행은 중국 532건(34.2%), 미국 124건(8.0%), 우즈베키스탄 97건(6.2%), 몽골 95건(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중국 155건(40.6), 미국 33건(8.6%), 베트남 32건(8.4%), 우즈베키스탄 22건(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중국 75건(44.6%), 스리랑카 8건(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2-9 외국인대상자의 죄명 현황

형량 죄명	총계	중국	미국	우즈베 키스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러시아	파키스탄	방글라 데시	기타
강간 등	527	171	28	41	43	32	17	9	16	19	151
	(%)	32.4	5.3	7.8	8.2	6.1	3.2	1.7	3.0	3.6	28.7
강제추행	1,555	532	124	97	95	60	58	65	45	39	440
	(%)	34.2	8.0	6.2	6.1	3.9	3.7	4.2	2.9	2.5	28.3
유사 성행위	8	4	-	1	-	-	1	-	-	-	2
	(%)	50.0	-	12.5	-	-	12.5	-	-	-	25.0
아동복지법 위반	7	5	-	-	-	-	-	-	-	-	2
	(%)	71.4	-	-	-	-	-	-	-	-	28.6
공중밀집 장소추행	168	75	6	4	6	5	8	3	6	5	50
	(%)	44.6	3.6	2.4	3.6	3.0	4.7	1.8	3.6	3.0	29.7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	13	5	-	-	1	1	-	-	-	-	6
	(%)	38.5	-	-	7.7	7.7	-	-	-	-	46.1
통신매체 이용음란	10	3	1	-	-	-	-	-	2	-	4
	(%)	30.0	10.0	-	-	-	-	-	20.0	-	40.0
카메라등 이용촬영	382	155	33	22	4	32	9	4	3	4	116
	(%)	40.6	8.6	5.8	1.0	8.4	2.4	1.0	0.8	1.0	30.4
허위영상물 반포등	0	-	-	-	-	-	-	-	-	-	-
	(%)	-	-	-	-	-	-	-	-	-	-
촬영물등 이용협박등	8	5	-	-	-	2	-	-	-	-	1
	(%)	62.5	-	-	-	25.0	-	-	-	-	12.5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11	3	2	-	-	-	1	-	-	-	5
	(%)	27.3	18.2	-	-	-	9.1	-	-	-	45.4
성매수	10	3	-	1	-	-	-	1	2	1	2
	(%)	30.0	-	10.0	-	-	-	10.0	20.0	10.0	20.0
성매매 강요	0	-	-	-	-	-	-	-	-	-	-
	(%)	-	-	-	-	-	-	-	-	-	-
성매매 알선영업	2	-	1	-	-	-	-	-	-	-	1
	(%)	-	50.0	-	-	-	-	-	-	-	50.0
총계	2,701	961	195	166	149	132	94	82	74	68	780
	(%)	35.6	7.2	6.2	5.5	4.9	3.5	3.0	2.7	2.5	0.0

(4) 외국인 연령

- <표 2-2-10>은 외국인대상자의 연령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30대가 1,05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21건, 40대 610건, 50대 28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대는 중국이 125건(20.1%)으로 가장 많았고, 몽골 66건(10.6%), 우즈베키스탄 60건(9.7%)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중국 317건(30.0%), 베트남 71건(6.7%), 미국 69건(6.5%) 순으로 나타났다.
- 40대는 중국 263건(43.1%), 미국 37건(6.1%), 우즈베키스탄 36건(5.9%) 순으로, 50대는 중국 185건(65.1%), 미국 12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2-10 외국인대상자의 연령 현황

연령	총계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러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기타
19세 이하	7	-	-	-	1	2	-	2	-	-	2
	(%)	-	-	-	14.3	28.6	-	28.6	-	-	28.6
20대	621	125	56	60	66	32	16	23	17	15	211
	(%)	20.1	9.0	9.7	10.6	5.2	2.6	3.7	2.7	2.4	34.0
30대	1,057	317	69	64	56	71	53	36	37	26	328
	(%)	30.0	6.5	6.1	5.3	6.7	5.0	3.4	3.5	2.5	31.0
40대	610	263	37	36	22	20	22	13	13	22	162
	(%)	43.1	6.1	5.9	3.6	3.3	3.6	2.1	2.1	3.6	26.6
50대	284	185	12	4	3	6	3	7	7	5	52
	(%)	65.1	4.2	1.4	1.1	2.1	1.1	2.5	2.5	1.8	18.3
60대	105	66	13	2	1	1	-	1	-	-	21
	(%)	62.9	12.4	1.9	1.0	1.0	-	1.0	-	-	20.0
70대	16	4	8	-	-	-	-	-	-	-	4
	(%)	25.0	50.0	-	-	-	-	-	-	-	25.0
80세 이상	1	1	-	-	-	-	-	-	-	-	-
	(%)	100.0	-	-	-	-	-	-	-	-	-
총계	2,701	961	195	166	149	132	94	82	74	68	780
	(%)	35.6	7.2	6.2	5.5	4.9	3.5	3.0	2.7	2.5	28.9

제 3 절



성범죄 죄명별 특성

01 등록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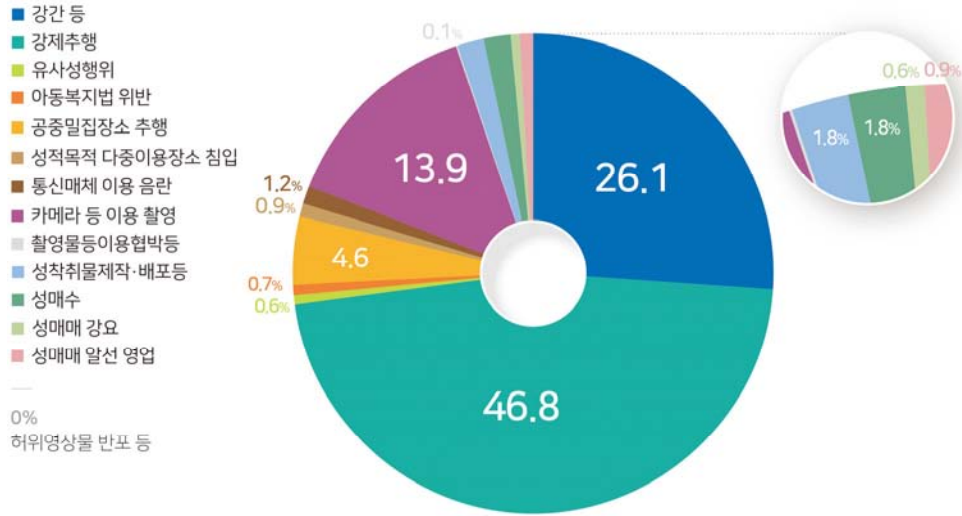
- <표 2-3-1>은 등록사건을 죄명별로 나타낸 것이다. 총계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53,536건(46.8%)으로 가장 많고, 강간 등이 29,832건(26.1%), 카메라등이용촬영이 15,854건(13.9%) 순이었으며, 이 3가지 범죄가 전체의 87.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강제추행부터 살펴보면, 2008년 21건(8.0%)이 등록된 후 2018년 7,496건(53.3%)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건수와 비율 모두 감소하여 2021년 6,599건(48.9%)이 등록되었다.
- 강간 등의 경우 등록사건수는 2008년 237건에서 2014년 3,246건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였고, 전체 등록죄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89.8%에서 2021년에는 17.5%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종합해보면, 강간 등의 범죄로 등록된 사건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 2천 중반대로 감소한 이후 회복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사건에서 강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6월부터 등록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이 포함되었고,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3년 412건(7.0%)을 시작으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2,388건(17.0%)까지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2,113건(15.7%)이 등록되었다.
-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 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2)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가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되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은 2021년 17건이 등록되었으며, ‘촬영물등이용협박등’은 2020년 6건에서 2021년 149건(1.1%)으로 증가하였다.
- ‘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경우, 2009년 2건을 시작으로 10건 이하에서 머물다가 2013년과 2021년에 각각 250건(4.3%), 1,006건(7.5%)으로 급증하였다.

- 참고로,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와 죄명별 등록대상 사건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록 <표 4-1-8> 참조)

2-3-1 죄명별 등록사건 현황

죄명 연도	총계	강간 등	강제 추행	유사 성행위	아동 복지법 위반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 영상물 반포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등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
2008	264	237	21	-	-	-	-	-	-	-	-	-	1	2	3
	(%)	89.8	8.0	-	-	-	-	-	-	-	-	-	0.4	0.8	1.1
2009	868	747	64	-	-	-	-	-	-	-	-	2	3	26	26
	(%)	86.1	7.4	-	-	-	-	-	-	-	-	0.2	0.3	3.0	3.0
2010	1,000	850	96	-	-	-	-	-	-	-	-	3	5	13	33
	(%)	85.0	9.6	-	-	-	-	-	-	-	-	0.3	0.5	1.3	3.3
2011	1,944	1,654	222	-	-	-	-	-	-	-	-	2	13	31	22
	(%)	85.1	11.4	-	-	-	-	-	-	-	-	0.1	0.7	1.6	1.1
2012	3,730	2,665	967	5	1	-	-	-	-	-	-	11	35	17	29
	(%)	71.4	25.9	0.1	0.0	-	-	-	-	-	-	0.3	0.9	0.5	0.8
2013	5,862	2,626	2,116	36	14	121	8	27	412	-	-	250	132	81	39
	(%)	44.8	36.1	0.6	0.2	2.1	0.1	0.5	7.0	-	-	4.3	2.3	1.4	0.7
2014	10,419	3,246	4,358	42	18	646	138	285	1,187	-	-	149	255	56	39
	(%)	31.2	41.8	0.4	0.2	6.2	1.3	2.7	11.4	-	-	1.4	2.4	0.5	0.4
2015	12,779	3,234	5,870	88	30	837	220	397	1,593	-	-	107	228	59	116
	(%)	25.3	45.9	0.7	0.2	6.5	1.7	3.1	12.5	-	-	0.8	1.8	0.5	0.9
2016	11,423	2,696	5,472	90	50	689	180	97	1,670	-	-	75	181	71	152
	(%)	23.6	47.9	0.8	0.4	6.0	1.6	0.8	14.6	-	-	0.7	1.6	0.6	1.3
2017	12,614	2,424	6,338	71	105	772	50	88	2,067	-	-	76	358	90	175
	(%)	19.2	50.2	0.6	0.8	6.1	0.4	0.7	16.4	-	-	0.6	2.8	0.7	1.4
2018	14,053	2,470	7,496	90	113	770	58	105	2,388	-	-	57	278	88	140
	(%)	17.6	53.3	0.6	0.8	5.5	0.4	0.7	17.0	-	-	0.4	2.0	0.6	1.0
2019	12,908	2,298	6,878	107	133	604	104	101	2,249	-	-	109	183	48	94
	(%)	17.8	53.3	0.8	1.0	4.7	0.8	0.8	17.4	-	-	0.9	1.4	0.4	0.7
2020	13,071	2,329	7,039	91	158	514	132	117	2,175	-	6	173	188	38	111
	(%)	17.8	53.9	0.7	1.2	3.9	1.0	0.9	16.6	-	0.1	1.3	1.4	0.3	0.9
2021	13,485	2,356	6,599	104	174	355	119	124	2,113	17	149	1,006	202	66	101
	(%)	17.5	48.9	0.8	1.3	2.6	0.9	0.9	15.7	0.1	1.1	7.5	1.5	0.5	0.7
총계	114,420	29,832	53,536	724	796	5,308	1,009	1,341	15,854	17	155	2,020	2,062	686	1,080
	(%)	26.1	46.8	0.6	0.7	4.6	0.9	1.2	13.9	0.0	0.1	1.8	1.8	0.6	0.9

2-3-1 죄명별 등록사건 비율



02 범죄 유형(접촉·비접촉)

- <표 2-3-2>는 연도별로 등록대상자의 범죄 유형을 접촉 여부에 따라 나눈 것이다.⁴⁾ 전체 등록사건 114,420건 중 접촉범죄는 90,196건(78.8%), 비접촉범죄는 24,224건(21.2%)이다.
- 2008년에는 전체 등록건수 264건 중 258건(97.7%)이 접촉범죄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 6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등록대상 성범죄가 확대되면서 2013년 이후 비접촉 성범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2014년 이후 접촉범죄 비율은 70%대, 비접촉범죄는 20%대이며, 그 중 2021년이 접촉범죄 9,588건 (71.1%), 비접촉범죄 3,897건(28.9%)으로 비접촉범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접촉범죄 : 강간, 추행,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비접촉범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등,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영업 등

2-3-2 범죄 유형(접촉·비접촉) 현황

연도	총계	접촉	비접촉
2008	264	258	6
	(%)	97.7	2.3
2009	868	811	57
	(%)	93.4	6.6
2010	1,000	946	54
	(%)	94.6	5.4
2011	1,944	1,876	68
	(%)	96.5	3.5
2012	3,730	3,638	92
	(%)	97.5	2.5
2013	5,862	4,913	949
	(%)	83.8	16.2
2014	10,419	8,310	2,109
	(%)	79.8	20.2
2015	12,779	10,059	2,720
	(%)	78.7	21.3
2016	11,423	8,997	2,426
	(%)	78.8	21.2
2017	12,614	9,710	2,904
	(%)	77.0	23.0
2018	14,053	10,939	3,114
	(%)	77.8	22.2
2019	12,908	10,020	2,888
	(%)	77.6	22.4
2020	13,071	10,131	2,940
	(%)	77.5	22.5
2021	13,485	9,588	3,897
	(%)	71.1	28.9
총계	114,420	90,196	24,224
	(%)	78.8	21.2

03 선고형

- <표 2-3-3>은 죄명별 선고형 현황이다. 전체 등록사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제추행(53,536건), 강간 등(29,832건), 카메라등이용촬영(15,854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강제추행은 55,536건 중 집행유예가 22,153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21,888건(40.9%), 징역 8,406건(15.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강간 등은 29,832건 중 징역형이 15,264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4,005건(46.9%), 벌금 457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 등의 경우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고, 살인, 상해 등 경합범죄가 있는 경우도 있어 더욱 중한 형벌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15,854건 중 벌금 8,003건(50.5%), 집행유예 5,615건(35.4%), 징역 1,701건(10.7%) 순이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5,308건 중 벌금 3,383건(63.7%), 집행유예 1,229건(23.1%), 징역 417건(7.9%), 선고유예 279건(5.3%) 순으로 나타났다.
- 강제추행은 집행유예-벌금-징역, 강간 등은 징역-집행유예-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벌금-집행유예-징역 순으로 나타나, 선고되는 형의 종류는 죄명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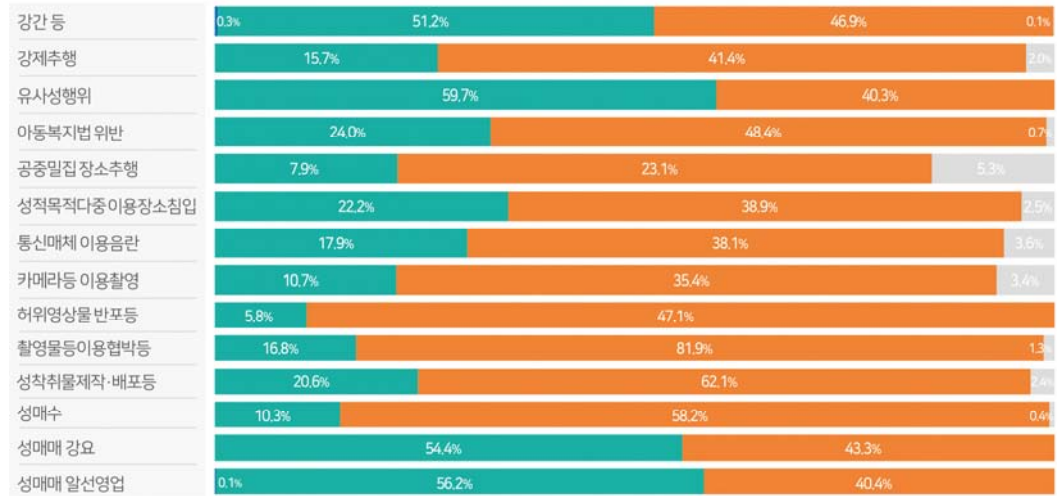
2-3-3 죄명별 선고형 현황(병과된 벌금, 치료감호는 제외)

선고형 죄명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강간 등	29,832	3	78	15,264	2	457	2	14,005	5	16
	(%)	0.0	0.3	51.2	0.0	1.5	0.0	46.9	0.0	0.1
강제추행	53,536	-	5	8,406	2	21,888	-	22,153	5	1,077
	(%)	-	0.0	15.7	0.0	40.9	-	41.4	0.0	2.0
유사성행위	724	-	-	432	-	-	-	292	-	-
	(%)	-	-	59.7	-	-	-	40.3	-	-
아동복지법 위반	796	-	-	191	-	214	-	385	-	6
	(%)	-	-	24.0	-	26.9	-	48.4	-	0.7
공중밀집 장소추행	5,308	-	-	417	-	3,383	-	1,229	-	279
	(%)	-	-	7.9	-	63.7	-	23.1	-	5.3
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 침입	1,009	-	-	224	-	367	-	393	-	25
	(%)	-	-	22.2	-	36.4	-	38.9	-	2.5
통신매체 이용음란	1,341	-	-	240	-	542	-	511	-	48
	(%)	-	-	17.9	-	40.4	-	38.1	-	3.6

범죄명 \ 선고형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카메라등 이용촬영	15,854	-	-	1,701	-	8,003	-	5,615	1	534
	(%)	-	-	10.7	-	50.5	-	35.4	0.0	3.4
허위영상물 등의반포등	17	-	-	1	-	8	-	8	-	-
	(%)	-	-	5.8	-	47.1	-	47.1	-	-
촬영물등 이용협박등	155	-	-	26	-	-	-	127	-	2
	(%)	-	-	16.8	-	-	-	81.9	-	1.3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2,020	-	-	417	-	300	-	1,254	-	49
	(%)	-	-	20.6	-	14.9	-	62.1	-	2.4
성매수	2,062	-	-	212	-	642	-	1,199	-	9
	(%)	-	-	10.3	-	31.1	-	58.2	-	0.4
성매매 강요	686	-	-	373	-	16	-	297	-	-
	(%)	-	-	54.4	-	2.3	-	43.3	-	-
성매매 알선영업	1,080	-	1	607	-	36	-	436	-	-
	(%)	-	0.1	56.2	-	3.3	-	40.4	-	-
총계	114,420	3	84	28,511	4	35,856	2	47,904	11	2,045
	(%)	0.0	0.1	24.9	0.0	31.3	0.0	41.9	0.0	1.8

2-3-2 죄명별 선고형 비교 (병과된 벌금, 치료감호는 제외)

■ 사형 ■ 무기징역 ■ 징역 ■ 금고 ■ 집행유예 ■ 형면제 ■ 선고유예



(1) 강간 등

- <표 2-3-4>는 강간 등의 선고형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29,832건 중 징역형이 15,264건(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징역형 선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5년 59.4%, 가장 낮았던 해는 2008년 38.8%로 나타났다.
- 그다음으로는 집행유예가 14,005건(46.9%)으로 징역형과 근소한 차이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8년 57.0%, 가장 낮았던 해는 2015년 39.6%로 나타났다.
- 또한 전체 등록사건 중 유일하게 사형선고가 3건이 있으며, 전체 무기징역 84건 중 강간 등이 78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3> 참고)

 2-3-4 연도별 선고형 현황(강간 등)

연도\선고형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2008	237	-	-	92	-	10	-	135	-	-
	(%)	-	-	38.8	-	4.2	-	57.0	-	-
2009	747	-	1	364	-	27	-	354	-	1
	(%)	-	0.1	48.8	-	3.6	-	47.4	-	0.1
2010	850	1	1	435	-	32	-	381	-	-
	(%)	0.1	0.1	51.2	-	3.8	-	44.8	-	-
2011	1,654	-	3	635	-	97	-	917	-	2
	(%)	-	0.2	38.4	-	5.9	-	55.4	-	0.1
2012	2,665	-	3	1,321	-	124	-	1,212	-	5
	(%)	-	0.1	49.6	-	4.7	-	45.5	-	0.2
2013	2,626	-	9	1,476	-	109	-	1,029	-	3
	(%)	-	0.3	56.2	-	4.2	-	39.2	-	0.1
2014	3,246	-	21	1,741	1	31	1	1,448	2	1
	(%)	-	0.7	53.6	0.0	1.0	0.0	44.6	0.1	0.0
2015	3,234	2	14	1,920	-	15	-	1,282	1	-
	(%)	0.1	0.4	59.4	-	0.5	-	39.6	0.0	-
2016	2,696	-	9	1,429	1	2	1	1,254	-	-
	(%)	-	0.4	53.0	0.0	0.1	0.0	46.5	-	-
2017	2,424	-	4	1,204	-	3	-	1,212	-	-
	(%)	-	0.2	49.7	-	0.1	-	50.0	-	-
2018	2,470	-	3	1,161	-	5	-	1,301	-	-
	(%)	-	0.1	47.0	-	0.2	-	52.7	-	-

연도 \ 신고형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2019	2,298	-	2	1,166	-	1	-	1,127	1	1
	(%)	-	0.1	50.7	-	0.0	-	49.0	0.1	0.1
2020	2,329	-	4	1,144	-	0	-	1,179	-	2
	(%)	-	0.2	49.1	-	0.0	-	50.6	-	0.1
2021	2,356	-	4	1,176	-	1	-	1,174	-	1
	(%)	-	0.2	49.9	-	0.0	-	49.9	-	0.0
총계	29,832	3	78	15,264	2	457	2	14,005	5	16
	(%)	0.0	0.3	51.2	0.0	1.5	0.0	46.9	0.0	0.1

(2) 강제추행

- <표 2-3-5>는 강제추행의 신고형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53,536건 중 집행유예가 22,153건(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1년(58.6%), 가장 낮았던 해는 2020년(38.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40%를 밑돌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다음으로는 벌금형이 40.9%로 집행유예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벌금형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0년(45.4%)이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벌금형 비율이 10%미만이었다가 2012년 이후로 2020년(45.4%)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2-3-5 연도별 신고형 현황(강제추행)

연도 \ 신고형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2008	21	-	-	9	-	-	-	12	-	-
	(%)	-	-	42.9	-	-	-	57.1	-	-
2009	64	-	-	28	-	1	-	35	-	-
	(%)	-	-	43.7	-	1.6	-	54.7	-	-
2010	96	-	-	51	-	4	-	41	-	-
	(%)	-	-	53.1	-	4.2	-	42.7	-	-
2011	222	-	-	72	-	20	-	130	-	-
	(%)	-	-	32.4	-	9.0	-	58.6	-	-
2012	967	-	1	220	-	340	-	402	-	4
	(%)	-	0.1	22.7	-	35.2	-	41.6	-	0.4

연도\선고형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2013	2,116	-	-	441	-	739	-	918	-	18
	(%)	-	-	20.8	-	34.9	-	43.4	-	0.9
2014	4,358	-	1	594	1	1,930	-	1,793	2	37
	(%)	-	0.0	13.6	0.0	44.3	-	41.1	0.1	0.9
2015	5,870	-	-	932	-	2,211	-	2,477	1	249
	(%)	-	-	15.9	-	37.7	-	42.2	0.0	4.2
2016	5,472	-	-	950	1	1,828	-	2,542	-	151
	(%)	-	-	17.4	0.0	33.4	-	46.4	-	2.8
2017	6,338	-	-	960	-	2,275	-	2,935	-	168
	(%)	-	-	15.1	-	35.9	-	46.3	-	2.7
2018	7,496	-	-	1,034	-	3,340	-	2,966	-	156
	(%)	-	-	13.8	-	44.5	-	39.6	-	2.1
2019	6,878	-	1	1,043	-	3,056	-	2,676	-	102
	(%)	-	0.0	15.2	-	44.4	-	38.9	-	1.5
2020	7,039	-	-	1,042	-	3,194	-	2,694	-	109
	(%)	-	-	14.8	-	45.4	-	38.3	-	1.5
2021	6,599	-	2	1,030	-	2,950	-	2,532	2	83
	(%)	-	0.0	15.6	-	44.7	-	38.4	0.0	1.3
총계	53,536	0	5	8,406	2	21,888	0	22,153	5	1,077
	(%)	0.0	0.0	15.7	0.0	40.9	0.0	41.4	0.0	2.0

(3) 유사성행위

- <표 2-3-6>은 유사성행위의 선고형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724건 중 징역형이 432건(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등록사건의 징역 선고비율 및 죄명별 징역 선고 비율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표 2-3-3> 참고)
- 연도별로 살펴보면 징역형 선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2년 80.8%, 가장 낮았던 해는 2013년 38.9%이었으며, 2021년에는 61.5%로 나타났다.

2-3-6 연도별 선고형 현황(유사성행위)

연도\선고형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2012	5	-	-	4	-	-	-	1	-	-
	(%)	-	-	80.0	-	-	-	20.0	-	-
2013	36	-	-	14	-	-	-	22	-	-
	(%)	-	-	38.9	-	-	-	61.1	-	-
2014	42	-	-	30	-	-	-	12	-	-
	(%)	-	-	71.4	-	-	-	28.6	-	-
2015	88	-	-	58	-	-	-	30	-	-
	(%)	-	-	65.9	-	-	-	34.1	-	-
2016	90	-	-	61	-	-	-	29	-	-
	(%)	-	-	67.8	-	-	-	32.2	-	-
2017	71	-	-	36	-	-	-	35	-	-
	(%)	-	-	50.7	-	-	-	49.3	-	-
2018	90	-	-	53	-	-	-	37	-	-
	(%)	-	-	58.9	-	-	-	41.1	-	-
2019	107	-	-	58	-	-	-	49	-	-
	(%)	-	-	54.2	-	-	-	45.8	-	-
2020	91	-	-	54	-	-	-	37	-	-
	(%)	-	-	59.3	-	-	-	40.7	-	-
2021	104	-	-	64	-	-	-	40	-	-
	(%)	-	-	61.5	-	-	-	38.5	-	-
총계	724	0	0	432	0	0	0	292	0	0
	(%)	0.0	0.0	59.7	0.0	0.0	0.0	40.3	0.0	0.0

(4) 아동복지법 위반

- <표 2-3-7>은 아동복지법 위반의 신고형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796건 중 집행유예가 385건(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2년 100.0%(1건), 2013년 71.4% 순이었고, 가장 낮았던 해는 2019년 41.4%로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는 벌금이 총 214건(26.9%)으로, 벌금형 선고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4년 38.9%, 가장 낮았던 해는 2013년 14.3%로 나타났다.
- 징역은 191건(24%)으로 벌금 선고비율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징역과 벌금 모두 최근 30%에 가까운 선고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다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복지법 위반' 신상등록 건수가 105건에서 174건으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등록사건 대비 상대적으로 사건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는 적다고 할 수 있다.

2-3-7 연도별 신고형 현황(아동복지법 위반)

연도\신고형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2012	1	-	-	-	-	-	-	1	-	-
	(%)	-	-	-	-	-	-	100.0	-	-
2013	14	-	-	2	-	2	-	10	-	-
	(%)	-	-	14.3	-	14.3	-	71.4	-	-
2014	18	-	-	3	-	7	-	8	-	-
	(%)	-	-	16.7	-	38.9	-	44.4	-	-
2015	30	-	-	5	-	7	-	18	-	-
	(%)	-	-	16.7	-	23.3	-	60.0	-	-
2016	50	-	-	13	-	11	-	26	-	-
	(%)	-	-	26.0	-	22.0	-	52.0	-	-
2017	105	-	-	20	-	25	-	59	-	1
	(%)	-	-	19.0	-	23.8	-	56.2	-	1.0
2018	113	-	-	26	-	36	-	49	-	2
	(%)	-	-	23.0	-	31.8	-	43.4	-	1.8
2019	133	-	-	39	-	39	-	55	-	-
	(%)	-	-	29.3	-	29.3	-	41.4	-	-
2020	158	-	-	36	-	38	-	81	-	3
	(%)	-	-	22.8	-	24.0	-	51.3	-	1.9
2021	174	-	-	47	-	49	-	78	-	-
	(%)	-	-	27.0	-	28.2	-	44.8	-	-
총계	796	0	0	191	0	214	0	385	0	6
	(%)	0.0	0.0	24.0	0.0	26.9	0.0	48.4	0.0	0.7

(5) 공중밀집장소추행

- <표 2-3-8>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신고형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5,308건 중 벌금이 3,383건(6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벌금 신고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3년 81.0%, 가장 낮았던 해는 2016년 54.7%로 나타났고,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 3년간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다음으로는 집행유예가 1,229건(23.2%)으로 많았으며, 집행유예 신고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7년 28.6%, 가장 낮았던 해는 2013년 19.0%로 나타났다.
- 그 밖에도 징역이 연간 5~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고유예의 경우 2015년 12.9%로 일시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COVID-19 감염병이 유행했던 2021년에는 2017년 대비 절반으로 전체 사건 수가 감소하였다.

2-3-8 연도별 신고형 현황(공중밀집장소추행)

연도	신고형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2013		121	-	-	-	-	98	-	23	-	-
	(%)	-	-	-	-	-	81.0	-	19.0	-	-
2014		646	-	-	31	-	479	-	130	-	6
	(%)	-	-	-	4.8	-	74.2	-	20.1	-	0.9
2015		837	-	-	55	-	502	-	172	-	108
	(%)	-	-	-	6.6	-	60.0	-	20.5	-	12.9
2016		689	-	-	71	-	377	-	182	-	59
	(%)	-	-	-	10.3	-	54.7	-	26.4	-	8.6
2017		772	-	-	56	-	448	-	221	-	47
	(%)	-	-	-	7.3	-	58.0	-	28.6	-	6.1
2018		770	-	-	70	-	516	-	153	-	31
	(%)	-	-	-	9.1	-	67.0	-	19.9	-	4.0
2019		604	-	-	59	-	382	-	147	-	16
	(%)	-	-	-	9.8	-	63.2	-	24.3	-	2.7
2020		514	-	-	48	-	337	-	120	-	9
	(%)	-	-	-	9.3	-	65.6	-	23.3	-	1.8
2021		355	-	-	27	-	244	-	81	-	3
	(%)	-	-	-	7.6	-	68.7	-	22.8	-	0.9
총계		5,308	0	0	417	0	3,383	0	1,229	0	279
	(%)	-	0.0	0.0	7.9	0.0	63.7	0.0	23.1	0.0	5.3

(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표 2-3-9>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신고형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1,009건 중 집행유예 393건(38.9%), 벌금 367건(36.4%), 징역 224건(22.2%) 순으로 선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해당 죄명의 경우 2016년까지 압도적으로 높았던 벌금 선고 비율은 2016년 12월 20일 시행된 개정법령(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으로 신고형 구성비에 큰 변화가 생겼고, 2019년부터 벌금형은 등록되지 않고 있다.
- 법 개정 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0.7%에서 2021년 5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징역 선고 비율은 2017년 28.0%에서 2021년에 44.5%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법정형 상향으로 징역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9 연도별 신고형 현황(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연도	선고형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2013		8	-	-	-	-	7	-	1	-	-
	(%)		-	-	-	-	87.5	-	12.5	-	-
2014		138	-	-	15	-	97	-	26	-	-
	(%)		-	-	10.9	-	70.3	-	18.8	-	-
2015		220	-	-	15	-	142	-	45	-	18
	(%)		-	-	6.8	-	64.5	-	20.5	-	8.2
2016		180	-	-	25	-	108	-	41	-	6
	(%)		-	-	13.9	-	60.0	-	22.8	-	3.3
2017		50	-	-	14	-	12	-	23	-	1
	(%)		-	-	28.0	-	24.0	-	46.0	-	2.0
2018		58	-	-	16	-	1	-	41	-	-
	(%)		-	-	27.6	-	1.7	-	70.7	-	-
2019		104	-	-	37	-	-	-	67	-	-
	(%)		-	-	35.6	-	-	-	64.4	-	-
2020		132	-	-	49	-	-	-	83	-	-
	(%)		-	-	37.1	-	-	-	62.9	-	-
2021		119	-	-	53	-	-	-	66	-	-
	(%)		-	-	44.5	-	-	-	55.5	-	-
총계		1,009	0	0	224	0	367	0	393	0	25
	(%)		0.0	0.0	22.2	0.0	36.4	0.0	38.9	0.0	2.5

(7) 통신매체이용음란

- <표 2-3-10>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신고형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1,341건 중 벌금 542건(40.4%), 집행유예 511건(38.1%), 징역 240건(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과 마찬가지로 2016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후 연도별 구성비에 변화가 있었다.
- 법 개정 전인 2013년(74.1%)부터 2016년(61.9%)까지는 벌금 선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집행유예가 20% 전후, 징역과 선고유예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 법 개정 후인 2017년(68.2%)부터 2021년(62.9%)까지는 다른 신고형보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약간의 감소 추세를 나타냈고, 벌금과 선고유예가 없어지면서 징역 선고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2016년 8.2%였던 것이 2017년 31.8%로 급증하였고, 2021년 37.1%까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3-10 연도별 신고형 현황(통신매체이용음란)

연도	신고형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2013		27	-	-	2	-	20	-	5	-	-
	(%)	-	-	7.4	-	74.1	-	18.5	-	-	-
2014		285	-	-	21	-	205	-	51	-	8
	(%)	-	-	7.4	-	71.9	-	17.9	-	-	2.8
2015		397	-	-	22	-	257	-	84	-	34
	(%)	-	-	5.5	-	64.7	-	21.2	-	-	8.6
2016		97	-	-	8	-	60	-	23	-	6
	(%)	-	-	8.2	-	61.9	-	23.7	-	-	6.2
2017		88	-	-	28	-	-	-	60	-	-
	(%)	-	-	31.8	-	-	-	68.2	-	-	-
2018		105	-	-	30	-	-	-	75	-	-
	(%)	-	-	28.6	-	-	-	71.4	-	-	-
2019		101	-	-	40	-	-	-	61	-	-
	(%)	-	-	39.6	-	-	-	60.4	-	-	-
2020		117	-	-	43	-	-	-	74	-	-
	(%)	-	-	36.8	-	-	-	63.2	-	-	-
2021		124	-	-	46	-	-	-	78	-	-
	(%)	-	-	37.1	-	-	-	62.9	-	-	-
총계		1,341	0	0	240	0	542	0	511	0	48
	(%)	0.0	0.0	17.9	0.0	40.4	0.0	38.1	0.0	3.6	

(8)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표 2-3-11>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부터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등의 신고형 현황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 전체 16,026건 중 벌금이 8,011건(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는 2013년 82.8%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해는 2021년 35.1%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는 집행유예가 5,750건(35.9%)으로 많았으며,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1년 48.7%, 가장 낮았던 해는 2013년 15.3%였다.
- 징역형의 경우 2013년 8건(1.9%)에서 2019년 265건(11.8%), 2021년 343건(15.1%)으로 사건 수와 선고 비율 모두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3-11 연도별 신고형 현황(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연도\신고형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2013	412	-	-	8	-	341	-	63	-	-
	(%)	-	-	1.9	-	82.8	-	15.3	-	-
2014	1,187	-	-	74	-	788	-	309	-	16
	(%)	-	-	6.2	-	66.4	-	26.0	-	1.4
2015	1,593	-	-	100	-	852	-	420	-	221
	(%)	-	-	6.3	-	53.5	-	26.3	-	13.9
2016	1,670	-	-	178	-	814	-	578	1	99
	(%)	-	-	10.7	-	48.7	-	34.6	0.1	5.9
2017	2,067	-	-	175	-	1,165	-	663	-	64
	(%)	-	-	8.5	-	56.3	-	32.1	-	3.1
2018	2,388	-	-	228	-	1,308	-	789	-	63
	(%)	-	-	9.6	-	54.8	-	33.0	-	2.6
2019	2,249	-	-	265	-	1,060	-	893	-	31
	(%)	-	-	11.8	-	47.1	-	39.7	-	1.4
2020	2,181	-	-	357	-	882	-	926	-	16
	(%)	-	-	16.4	-	40.4	-	42.5	-	0.7
2021	2,279	-	-	343	-	801	-	1,109	-	26
	(%)	-	-	15.1	-	35.1	-	48.7	-	1.1
총계	16,026	0	0	1,728	0	8,011	0	5,750	1	536
	(%)	0.0	0.0	10.8	0.0	50.0	0.0	35.9	0.0	3.3

(9) 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표 2-3-12>는 성착취물제작·배포등(舊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신고형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2,020건 중 신고형은 집행유예 1,255건(62.1%), 징역 417건(20.7%), 벌금 299건(14.8%) 순으로 나타났다.
- 집행유예는 2010년 1건(33.3%)에서 2020년 113건(65.3%)으로 신고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징역의 경우 2010년 2건(66.7%)에서 2020년 60건(34.7%)으로 신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 벌금의 경우 가장 신고비율이 높았던 해는 2014년 72.5%, 가장 낮았던 해는 2012년 27.3%로 나타났으며, 2017년 이후 벌금형은 더 이상 등록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정형이 징역형 이상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 2020년 ‘N번방 사건’의 영향으로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 6월에 시행되었고, 2021년 한 해에만 1,006건이 등록되었는데 이는 전체 사건 수의 절반 수준이다. 2021년 신고 비율을 살펴보면 집행유예 76.8% 징역 22.0%, 선고유예 1.2%로 나타났다.

 2-3-12 연도별 신고형 현황(성착취물제작·배포등)

연도 \ 신고형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2008	0	-	-	-	-	-	-	-	-	-
	(%)	-	-	-	-	-	-	-	-	-
2009	2	-	-	-	-	-	-	2	-	-
	(%)	-	-	-	-	-	-	100.0	-	-
2010	3	-	-	2	-	-	-	1	-	-
	(%)	-	-	66.7	-	-	-	33.3	-	-
2011	2	-	-	-	-	-	-	2	-	-
	(%)	-	-	-	-	-	-	100.0	-	-
2012	11	-	-	3	-	3	-	5	-	-
	(%)	-	-	27.3	-	27.3	-	45.4	-	-
2013	250	-	-	11	-	112	-	122	-	5
	(%)	-	-	4.4	-	44.8	-	48.8	-	2.0
2014	149	-	-	3	-	108	-	35	-	3
	(%)	-	-	2.0	-	72.5	-	23.5	-	2.0
2015	107	-	-	10	-	42	-	31	-	24
	(%)	-	-	9.3	-	39.3	-	29.0	-	22.4

연도\선고형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2016	75	-	-	12	-	28	-	32	-	3
	(%)	-	-	16.0	-	37.3	-	42.7	-	4.0
2017	76	-	-	29	-	6	-	41	-	-
	(%)	-	-	38.2	-	7.9	-	53.9	-	-
2018	57	-	-	25	-	-	-	32	-	-
	(%)	-	-	43.9	-	-	-	56.1	-	-
2019	109	-	-	41	-	-	-	66	-	2
	(%)	-	-	37.6	-	-	-	60.6	-	1.8
2020	173	-	-	60	-	-	-	113	-	-
	(%)	-	-	34.7	-	-	-	65.3	-	-
2021	1,006	-	-	221	-	-	-	773	-	12
	(%)	-	-	22.0	-	-	-	76.8	-	1.2
총계	2,020	0	0	417	0	299	0	1,255	0	49
	(%)	0.0	0.0	20.7	0.0	14.8	0.0	62.1	0.0	2.4

(10) 성매수 등

- <표 2-3-13>은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업의 선고형 현황을 합산하여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3,828건 중 집행유예가 1,9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건 수는 2008년 5건에서 2021년 19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8년 83.3%, 가장 낮았던 해는 2013년 40.9%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징역이 1,192건(31.2%)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징역 선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6년 40.6%이고 가장 낮았던 해는 2008년 16.7%였고, 2017부터는 30%대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 벌금의 경우 등록사건 수가 크게 증가한 2013년의 경우 벌금 선고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감소하여 2021년 10.6%로 나타났다.

2-3-13 연도별 선고형 현황(성매수 등)

연도	선고형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2008		6	-	-	1	-	-	-	5	-	-
	(%)	-	-	16.7	-	-	-	-	83.3	-	-
2009		55	-	-	14	-	1	-	40	-	-
	(%)	-	-	25.5	-	1.8	-	-	72.7	-	-
2010		51	-	-	15	-	-	-	36	-	-
	(%)	-	-	29.4	-	-	-	-	70.6	-	-
2011		66	-	-	18	-	3	-	45	-	-
	(%)	-	-	27.3	-	4.5	-	-	68.2	-	-
2012		81	-	-	26	-	19	-	36	-	-
	(%)	-	-	32.1	-	23.5	-	-	44.4	-	-
2013		252	-	-	74	-	75	-	103	-	-
	(%)	-	-	29.4	-	29.7	-	-	40.9	-	-
2014		350	-	-	70	-	96	-	183	-	1
	(%)	-	-	20.0	-	27.4	-	-	52.3	-	0.3
2015		403	-	-	115	-	97	-	189	-	2
	(%)	-	-	28.5	-	24.1	-	-	46.9	-	0.5
2016		404	-	1	164	-	47	-	191	-	1
	(%)	-	0.2	40.6	-	11.7	-	-	47.3	-	0.2
2017		623	-	-	189	-	112	-	321	-	1
	(%)	-	-	30.3	-	18.0	-	-	51.5	-	0.2
2018		506	-	-	150	-	92	-	263	-	1
	(%)	-	-	29.6	-	18.2	-	-	52.0	-	0.2
2019		325	-	-	105	-	55	-	163	-	2
	(%)	-	-	32.3	-	16.9	-	-	50.2	-	0.6
2020		337	-	-	120	-	58	-	158	-	1
	(%)	-	-	35.6	-	17.2	-	-	46.9	-	0.3
2021		369	-	-	131	-	39	-	199	-	-
	(%)	-	-	35.5	-	10.6	-	-	53.9	-	-
총계		3,828	0	1	1,192	0	694	0	1,932	0	9
	(%)	0.0	0.0	31.2	0.0	18.1	0.0	50.5	0.0	0.2	

04 자유 형량

- <표 2-3-14>는 자유형 이상의 형(사형·무기징역·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형량별로 구분한 것으로 전체 28,602건 중 강간 등 15,347건, 강제추행 8,413건, 카메라등이용촬영 1,701건 순으로 나타났다.
- 강간 등의 경우 3년 이상~6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건이 6,674건(43.5%)이며, 1년 이상~3년 미만이 4,319건(28.1%), 6년 이상~10년 미만이 2,711건(17.7%) 순으로 나타났다.
- 강제추행은 전체 8,413건 중 1년 이상~3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건이 3,794건(45.1%), 1년 미만이 2,606건(31.0%), 3년 이상~6년 미만이 1,644건(19.5%) 순으로 나타났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전체 1,701건 중 1년 이상~3년 미만이 807건(47.4%), 1년 미만이 763건(44.8%), 3년 이상~6년 미만이 117건(6.9%) 순으로 나타났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은 1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등, 성착취물제작·배포등은 1년 이상~3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유사성행위,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등은 3년 이상~6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2-3-14 죄명별 형량 현황(사형·무기징역·징역·금고형)

죄명	형량	총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6년 미만	6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40년 미만	40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강간 등		15,347	123	4,319	6,674	2,711	1,298	131	8	2	78	3
	(%)		0.8	28.1	43.5	17.7	8.5	0.9	0.0	0.0	0.5	0.0
강제추행		8,413	2,606	3,794	1,644	288	72	2	1	1	5	-
	(%)		31.0	45.1	19.5	3.4	0.9	0.0	0.0	0.0	0.1	-
유사성행위		432	-	88	249	87	8	-	-	-	-	-
	(%)		-	20.4	57.6	20.1	1.9	-	-	-	-	-
아동복지법 위반		191	65	99	22	5	-	-	-	-	-	-
	(%)		34.0	51.9	11.5	2.6	-	-	-	-	-	-
공중밀집장소추행		417	342	74	1	-	-	-	-	-	-	-
	(%)		82.0	17.8	0.2	-	-	-	-	-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24	152	65	6	1	-	-	-	-	-	-
	(%)		67.9	29.0	2.7	0.4	-	-	-	-	-	-
통신매체이용음란		240	113	110	12	3	1	-	1	-	-	-
	(%)		47.1	45.8	5.0	1.3	0.4	-	0.4	-	-	-
카메라 등 이용촬영		1,701	763	807	117	13	1	-	-	-	-	-
	(%)		44.8	47.4	6.9	0.8	0.1	-	-	-	-	-

형량 죄명	총계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6년 미만	6년~ 10년 미만	10년~ 20년 미만	20년~ 30년 미만	30년~ 40년 미만	40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허위 영상물 반포등	1	-	1	-	-	-	-	-	-	-	-
	(%)	-	100.0	-	-	-	-	-	-	-	-
촬영물등 이용협박 등	26	3	15	7	1	-	-	-	-	-	-
	(%)	11.5	57.7	26.9	3.9	-	-	-	-	-	-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417	30	173	168	33	10	1	1	1	-	-
	(%)	7.2	41.5	40.3	8.0	2.4	0.2	0.2	0.2	-	-
성매수	212	62	107	32	7	4	-	-	-	-	-
	(%)	29.2	50.5	15.1	3.3	1.9	-	-	-	-	-
성매매 강요	373	24	147	182	17	3	-	-	-	-	-
	(%)	6.4	39.4	48.8	4.6	0.8	-	-	-	-	-
성매매 알선영업	608	51	172	354	28	1	-	1	-	1	-
	(%)	8.3	28.3	58.2	4.6	0.2	-	0.2	-	0.2	-
총계	28,602	4,334	9,971	9,468	3,194	1,398	134	12	4	84	3
	(%)	15.1	34.9	33.1	11.2	4.9	0.5	0.0	0.0	0.3	0.0

05 벌금형

- <표 2-3-15>는 죄명별 벌금형을 나타낸 것이다. 등록대상 사건 중 벌금을 받은 전체 건수는 38,104건으로, <표 2-3-3>과 달리 병과된 벌금이 포함되었다. 전체 38,104건의 벌금형 중 200~300만 원이 9,182건(24.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400만 원 8,131건(21.3%), 400~500만 원 6,161건(16.2%)의 순이다.
- 벌금형을 가장 많이 선고받은 죄명은 강제추행(23,065건), 카메라등이용촬영(8,574건), 공중밀집장소추행(3,681건) 순이다.
-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강제추행의 경우 200~300만 원 5,239건(22.7%), 300~400만 원 4,762건(20.6%), 400~500만 원 4,449건(19.3%) 순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은 200~300만 원 2,095건(24.4%), 300~400만 원 1,950건(22.7%), 400~500만 원 1,417건(16.5%)으로 나타나 강제추행과 그 순서가 같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도 200~300만 원이 1,290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200만 원 1,153건(31.3%), 300~400만 원 897건(24.4%)으로 다른 두 죄명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 한편, 강간 등,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수의 경우 2,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음을 볼 수 있고, 특히 성매수의 경우 전체 653건 중 284건(43.5%)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참고로 2020년과 2021년에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권유·유인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다.

2-3-15 죄명별 벌금형

(단위 : 만원)

형량 죄명	총계	~100 미만	100 ~200	200 ~300	300 ~400	400 ~500	500 ~600	600 ~700	700 ~800	800 ~900	900 ~1000	1,000 ~1,500	1,500 ~2,000	2,000 ~2,500	2,500 ~3,000	3,000 이상~
강간 등	516 (%)	35 6.8	9 1.7	52 10.1	93 18.0	18 3.5	182 35.3	5 1.0	46 8.9	10 1.9	- -	26 5.0	20 3.9	14 2.7	- -	6 1.2
강제추행	23,065 (%)	505 2.2	2,452 10.6	5,239 22.7	4,762 20.6	4,449 19.3	2,956 12.8	822 3.6	637 2.8	128 0.5	300 1.3	455 2.0	221 1.0	87 0.4	21 0.1	31 0.1
유사 성행위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복지 법 위반	223 (%)	7 3.1	17 7.6	48 21.5	33 14.8	42 18.8	36 16.2	10 4.5	7 3.1	- -	10 4.5	10 4.5	2 0.9	1 0.5	- -	- -
공중 밀집장소 추행	3,681 (%)	160 4.4	1,153 31.3	1,290 35.1	897 24.4	126 3.4	38 1.0	11 0.3	4 0.1	- -	1 0.0	1 0.0	- -	- -	- -	- -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	394 (%)	16 4.1	100 25.4	140 35.5	97 24.6	21 5.3	14 3.5	2 0.5	2 0.5	1 0.3	- -	1 0.3	- -	- -	- -	- -
통신매체 이용음란	593 (%)	31 5.2	184 31.0	179 30.2	138 23.3	26 4.4	27 4.5	- -	7 1.2	1 0.2	- -	- -	- -	- -	- -	- -
카메라 등 이용촬영	8,574 (%)	193 2.3	1,085 12.7	2,095 24.4	1,950 22.7	1,417 16.5	1,080 12.6	307 3.6	243 2.8	40 0.5	65 0.8	75 0.9	18 0.2	2 0.0	2 0.0	2 0.0
허위 영상물 반포 등	8 (%)	- -	- -	- -	5 62.5	- -	1 12.5	- -	- -	- -	- -	2 25.0	- -	- -	- -	- -
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342 (%)	53 15.5	87 25.4	77 22.5	82 24.0	12 3.5	27 7.9	1 0.3	1 0.3	1 0.3	- -	1 0.3	- -	- -	- -	- -
성매수	653 (%)	8 1.2	20 3.1	53 8.1	68 10.4	38 5.8	115 17.6	6 0.9	12 1.8	3 0.5	46 7.1	157 24.0	69 10.6	44 6.7	7 1.1	7 1.1
성매매 강요	19 (%)	3 15.8	- -	4 21.1	2 10.5	2 10.5	- -	2 10.5	2 10.5	- -	2 10.5	2 10.5	- -	- -	- -	- -
성매매 알선영업	36 (%)	4 11.1	2 5.5	5 13.9	4 11.1	10 27.8	5 13.9	2 5.5	- -	- -	1 2.8	2 5.5	- -	1 2.8	- -	- -
총계	38,104 (%)	1,015 2.6	5,109 13.4	9,182 24.1	8,131 21.3	6,161 16.2	4,481 11.8	1,168 3.1	961 2.5	184 0.5	425 1.1	732 1.9	330 0.9	149 0.4	30 0.1	46 0.1

06 집행유예 기간

- <표 2-3-16>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47,904건을 죄명별로 구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47,904건 중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인 경우가 23,601건(49.3%), 3년이 12,320건(25.7%), 4년이 5,646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강제추행은 전체 22,153건 중 2년이 12,771건(57.7%), 3년이 4,601건(20.8%), 1년이 2,396건(10.8%) 순으로 나타났다.
- 강간 등은 전체 14,005건 중 3년이 6,408건(45.8%), 4년이 3,422건(24.4%), 2년이 2,677건(19.1%)으로 나타났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전체 5,615건 중 2년이 4,321건(77.0%)으로 가장 많았고, 1년이 776건(13.8%), 3년이 461건(8.2%)이었다.

2-3-16 죄명별 집행유예 기간

기간 죄명	총계	1년	1년 6월	2년	2년 6월	3년	3년 6월	4년	5년
강간 등	14,005	55	-	2,677	-	6,408	2	3,422	1,441
	(%)	0.4	-	19.1	-	45.8	0.0	24.4	10.3
강제추행	22,153	2,396	7	12,771	1	4,601	-	1,795	582
	(%)	10.8	0.0	57.7	0.0	20.8	-	8.1	2.6
유사성행위	292	-	-	6	-	108	-	116	62
	(%)	-	-	2.1	-	37.0	-	39.7	21.2
아동복지법 위반	385	33	-	271	-	69	-	10	2
	(%)	8.6	-	70.4	-	17.9	-	2.6	0.5
공중밀집 장소추행	1,229	338	-	859	-	32	-	-	-
	(%)	27.5	-	69.9	-	2.6	-	-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393	91	-	273	-	26	-	3	-
	(%)	23.1	-	69.5	-	6.6	-	0.8	-
통신매체 이용음란	511	92	-	382	-	32	-	4	1
	(%)	18.0	-	74.7	-	6.3	-	0.8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5,615	776	-	4,321	-	461	-	41	16
	(%)	13.8	-	77.0	-	8.2	-	0.7	0.3
허위영상물등 의반포 등	8	-	-	6	-	2	-	-	-
	(%)	-	-	75.0	-	25.0	-	-	-

기간 죄명	총계	1년	1년 6월	2년	2년 6월	3년	3년 6월	4년	5년
촬영물등 이용협박등	127	8	-	79	-	35	-	3	2
	(%)	6.3	-	62.2	-	27.5	-	2.4	1.6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1,254	248	3	632	-	188	-	133	50
	(%)	19.8	0.2	50.4	-	15.0	-	10.6	4.0
성매수	1,199	75	-	1,010	-	101	-	8	5
	(%)	6.3	-	84.2	-	8.4	-	0.7	0.4
성매매 강요	297	8	-	96	-	102	-	66	25
	(%)	2.7	-	32.3	-	34.4	-	22.2	8.4
성매매 알선영업	436	8	-	218	1	155	-	45	9
	(%)	1.8	-	50.0	0.2	35.6	-	10.3	2.1
총계	47,904	4,128	10	23,601	2	12,320	2	5,646	2,195
	(%)	8.6	0.0	49.3	0.0	25.7	0.0	11.8	4.6

07 최종 심급

- <표 2-3-17>은 죄명별 최종 심급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확정 심급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 죄명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제추행, 강간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은 1심 확정이 26,997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2심 14,613건(27.3%), 3심 6,691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 강간 등의 경우 2심 확정이 13,042건(43.7%), 1심 확정이 9,634건(32.3%), 3심 7,137건(23.9%) 순이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1심 확정이 9,167건(57.8%), 2심 확정이 3,795건(23.9%)이었으며, 다음으로 약식명령이 1,823건(11.5%)이었다.
- 강제추행의 최종심급은 1심, 2심, 3심 순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은 1심, 2심, 약식명령 순이었으며, 강간 등의 경우 2심, 1심, 3심 순으로 죄명마다 차이를 보였다.
- 또한 강간 등, 유사성행위,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알선영업은 2심 확정 비율이 높았고, 그 외 대부분의 죄명은 1심 확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심 확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죄명은 강간 등이 7,137건(23.9%), 유사성행위 195건(26.9%), 성매매알선영업 253건(23.4%), 성매매강요 147건(21.4%)으로 2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17 죄명별 최종 심급 현황

죄명 \ 심급	총계	약식명령	1심	2심	3심
강간 등	29,832	19	9,634	13,042	7,137
	(%)	0.1	32.3	43.7	23.9
강제추행	53,536	5,235	26,997	14,613	6,691
	(%)	9.8	50.4	27.3	12.5
유사성행위	724	-	197	332	195
	(%)	-	27.2	45.9	26.9
아동복지법 위반	796	51	359	261	125
	(%)	6.4	45.1	32.8	15.7
공중밀집장소추행	5,308	738	3,115	939	516
	(%)	13.9	58.7	17.7	9.7
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	1,009	4	676	223	106
	(%)	0.4	67.0	22.1	10.5
통신매체이용음란	1,341	6	887	319	129
	(%)	0.5	66.1	23.8	9.6
카메라등이용촬영	15,854	1,823	9,167	3,795	1,069
	(%)	11.5	57.8	23.9	6.8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17	6	9	1	1
	(%)	35.3	52.9	5.9	5.9
촬영물등이용협박등	155	-	115	30	10
	(%)	-	74.2	19.4	6.4
성착취물제작·배포등	2,020	18	1,283	472	247
	(%)	0.9	63.5	23.4	12.2
성매수	2,062	61	1,361	477	163
	(%)	3.0	66.0	23.1	7.9
성매매 강요	686	-	213	326	147
	(%)	-	31.1	47.5	21.4
성매매 알선영업	1,080	7	342	478	253
	(%)	0.6	31.7	44.3	23.4
총계	114,420	7,968	54,355	35,308	16,789
	(%)	7.0	47.5	30.8	14.7

08 범죄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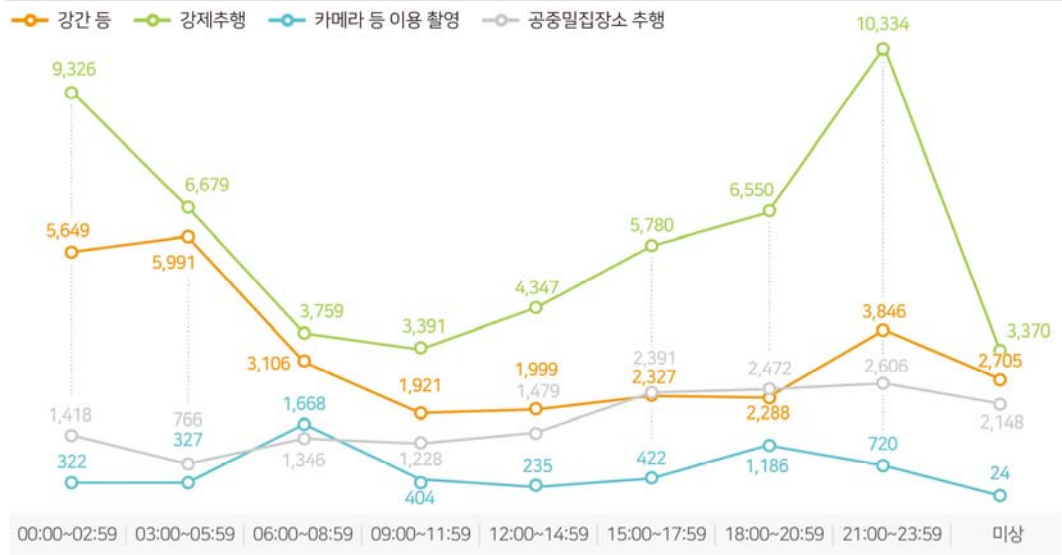
- <표 2-3-18>은 죄명별 범죄시간을 나타낸 현황이다. 전체 114,420건 중 21:00~23:59에 발생한 범죄가 18,783건(1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00:00~02:59 17,632건(15.4%), 03:00~05:59 14,270건(12.5%) 순으로, 주로 야간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제추행은 전체 53,536건 중 21:00~23:59 10,334건(19.3%), 00:00~02:59 9,326건(17.4%), 03:00~05:59 6,679건(12.5%) 등의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간 등은 전체 29,832건 중 03:00~05:59 5,991건(20.1%), 00:00~02:59 5,649건(18.9%), 21:00~23:59 3,846건(12.9%) 등의 순이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전체 15,854건 중 21:00~23:59 2,606건(16.4%), 18:00~20:59 2,472건(15.6%), 15:00~17:59 2,391건(15.1%) 등의 순으로 절반(48.9%)의 범행이 15:00~24:00 사이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전체 5,308건 중 06:00~08:59 1,668건(31.4%), 18:00~20:59 1,186건(22.3%), 21:00~23:59 720건(13.6%) 등의 순으로 발생했는데, 주로 출·퇴근 시간에 범행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로, 「범죄분석」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폭력범죄 발생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121,488건 중 20:00~03:59의 시간대가 42,105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체 성폭력범죄 217,345건 중 미상을 제외하고 21:00~23:59이 34,372건(15.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18:00~20:59이 27,105건(12.5%), 15:00~17:59이 22,242건(10.2%) 순으로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주로 야간에 성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하였다.
- 등록사건과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 분석 결과,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간대는 21:00~23:59로 나타났다.(부록 <표 4-1-3>, <표 4-1-4> 참조)

2-3-18 죄명별 범죄시간 현황

시간 죄명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강간 등	29,832	5,649	5,991	3,106	1,921	1,999	2,327	2,288	3,846	2,705
	(%)	18.9	20.1	10.4	6.4	6.7	7.8	7.7	12.9	9.1
강제추행	53,536	9,326	6,679	3,759	3,391	4,347	5,780	6,550	10,334	3,370
	(%)	17.4	12.5	7.0	6.3	8.1	10.8	12.3	19.3	6.3
유사 성행위	724	84	74	36	39	71	79	79	81	181
	(%)	11.6	10.2	5.0	5.4	9.8	10.9	10.9	11.2	25.0
아동복지법 위반	796	37	13	48	48	97	171	112	85	185
	(%)	4.7	1.6	6.0	6.0	12.2	21.5	14.1	10.7	23.2

시간 죄명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공중밀집 장소추행	5,308	322	327	1,668	404	235	422	1,186	720	24
	(%)	6.1	6.2	31.4	7.6	4.4	7.9	22.3	13.6	0.5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1,009	169	77	34	94	106	143	145	225	16
	(%)	16.7	7.6	3.4	9.3	10.5	14.2	14.4	22.3	1.6
통신매체 이용음란	1,341	182	77	88	148	167	171	169	220	119
	(%)	13.6	5.7	6.6	11.0	12.5	12.7	12.6	16.4	8.9
카메라 등 이용촬영	15,854	1,418	766	1,346	1,228	1,479	2,391	2,472	2,606	2,148
	(%)	8.9	4.8	8.5	7.8	9.3	15.1	15.6	16.4	13.6
허위영상물 반포 등	17	-	2	2	-	-	-	4	2	7
	(%)	-	11.8	11.8	-	-	-	23.5	11.8	41.1
촬영물등 이용협박등	155	19	10	5	21	18	14	27	26	15
	(%)	12.3	6.5	3.2	13.5	11.6	9.0	17.4	16.8	9.7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2,020	98	43	34	59	97	134	136	135	1284
	(%)	4.9	2.1	1.7	2.9	4.8	6.6	6.7	6.7	63.6
성매수	2062	195	120	70	115	173	299	335	341	414
	(%)	9.5	5.8	3.4	5.6	8.4	14.5	16.2	16.5	20.1
성매매 강요	686	57	39	16	13	24	24	42	70	401
	(%)	8.3	5.7	2.3	1.9	3.5	3.5	6.1	10.2	58.5
성매매 알선영업	1,080	76	52	20	15	28	46	53	92	698
	(%)	7.0	4.8	1.9	1.4	2.6	4.3	4.9	8.5	64.6
총계	114,420	17,632	14,270	10,232	7,496	8,841	12,001	13,598	18,783	11,567
	(%)	15.4	12.5	8.9	6.6	7.7	10.5	11.9	16.4	10.1

2-3-4 죄명별 범죄시간 현황



09 범행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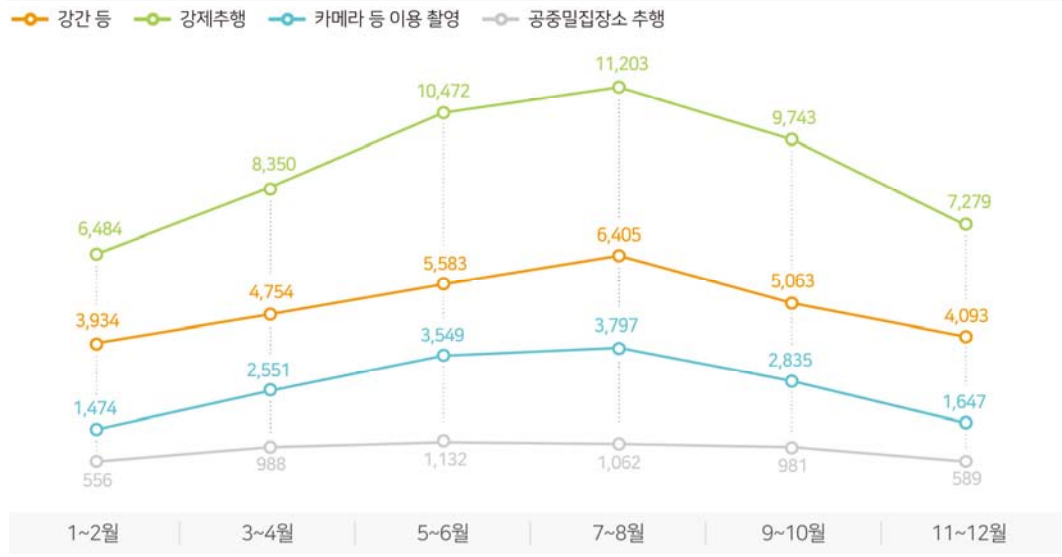
- <표 2-3-19>는 죄명별 범행월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114,420건 중 7월~8월에는 24,428건(21.3%)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5월~6월 22,432건(19.6%), 9월~10월 20,324건(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월~2월에는 13,830건(12.1%)으로 가장 낮았는데,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성범죄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와 계절과의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 죄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제추행은 전체 53,536건 중 7월~8월에 11,203건(20.9%)이 발생하였고, 뒤를 이어 5월~6월 10,472건(19.6%), 9월~10월 9,743건(18.2%) 등의 순이었다.
- 강간 등은 29,832건 중 7월~8월 6,405건(21.5%), 5월~6월 5,583건(18.7%), 9월~10월 5,063건(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15,854건 중 7월~8월 3,797건(23.9%), 5월~6월 3,549건(22.4%), 9월~10월 2,835건(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범죄분석」의 성폭력 발생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범죄 354,518건 중 7월~8월에 73,466건(20.7%)(7월 26,930건, 8월 27,298건)이 발생하였고, 1월~2월에는 40,805건(11.5%)(1월 14,439건, 2월 14,012건)이 발생하였다.
- 등록대상사건과 「범죄분석」의 전체 성폭력범죄 모두 7월~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1월~2월에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4-1-2> 참조)

2-3-19 죄명별 범행월 현황

범행월 죄명	총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미상
강간 등	29,832	3,934	4,754	5,583	6,405	5,063	4,093	-
	(%)	13.2	15.9	18.7	21.5	17.0	13.7	-
강제추행	53,536	6,484	8,350	10,472	11,203	9,743	7,279	5
	(%)	12.1	15.6	19.6	20.9	18.2	13.6	0.0
유사성행위	724	101	103	124	150	117	129	-
	(%)	14.0	14.2	17.1	20.7	16.2	17.8	-
아동복지법 위반	796	98	134	145	159	158	102	-
	(%)	12.3	16.8	18.2	20.0	19.9	12.8	-
공중밀집 장소추행	5,308	556	988	1,132	1,062	981	589	-
	(%)	10.5	18.6	21.3	20.0	18.5	11.1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1,009	109	164	195	213	196	132	-
	(%)	10.8	16.3	19.3	21.1	19.4	13.1	-

범행월 죄명	총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미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1,341	194	247	259	258	192	191	-
	(%)	14.5	18.4	19.3	19.2	14.3	14.3	-
카메라등 이용촬영	15,854	1,474	2,551	3,549	3,797	2,835	1,647	1
	(%)	9.3	16.1	22.4	23.9	17.9	10.4	0.0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17	2	-	1	5	6	3	-
	(%)	11.8	-	5.9	29.4	35.3	17.6	-
촬영물등 이용협박등	155	23	12	33	35	30	22	-
	(%)	14.8	7.7	21.3	22.6	19.4	14.2	-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2,020	224	475	297	441	376	206	1
	(%)	11.1	23.5	14.7	21.8	18.6	10.2	0.1
성매수	2,062	360	373	350	376	319	283	1
	(%)	17.5	18.1	17.0	18.2	15.5	13.7	0.0
성매매 강요	686	121	103	109	128	131	94	-
	(%)	17.6	15.0	15.9	18.7	19.1	13.7	-
성매매 알선영업	1,080	150	203	183	196	177	171	-
	(%)	13.9	18.8	16.9	18.2	16.4	15.8	-
총계	114,420	13,830	18,457	22,432	24,428	20,324	14,941	8
	(%)	12.1	16.1	19.6	21.3	17.8	13.1	0.0

2-3-5 죄명별 범행월 현황



(1) 강간 등의 월별 범행 시간

- <표 2-3-20>은 강간 등의 월별 범행 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29,832건 중 03:00~05:59에 가장 많은 5,991건(20.1%)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00:00~02:59에 5,649건(18.9%), 21:00~23:59에 3,846건(12.9%) 순으로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강간 등 범죄는 대부분 야간에 발생했고, 특히 03:00~05:59에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로, 강간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한 7~8월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03:00~05:59에 1,410건 (22.0%), 00:00~02:59에 1,248건(19.5%), 21:00~23:59에 772건(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3-20 월별 범행시간 현황(강간 등)

범행 시간 월별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1~2월	3,934	706	743	409	253	293	284	313	527	406
	(%)	17.9	18.9	10.4	6.4	7.5	7.2	8.0	13.4	10.3
3~4월	4,754	866	866	513	323	333	413	401	616	423
	(%)	18.2	18.2	10.8	6.8	7.0	8.7	8.4	13.0	8.9
5~6월	5,583	1,079	1,219	568	352	378	432	402	724	429
	(%)	19.3	21.8	10.2	6.3	6.8	7.7	7.2	13.0	7.7
7~8월	6,405	1,248	1,410	659	423	419	459	417	772	598
	(%)	19.5	22.0	10.3	6.6	6.5	7.2	6.5	12.1	9.3
9~10월	5,063	959	1,011	537	306	314	407	421	642	466
	(%)	18.9	20.0	10.6	6.1	6.2	8.0	8.3	12.7	9.2
11~12월	4,093	791	742	420	264	262	332	334	565	383
	(%)	19.3	18.1	10.3	6.4	6.4	8.1	8.2	13.8	9.4
총계	29,832	5,649	5,991	3,106	1,921	1,999	2,327	2,288	3,846	2,705
	(%)	18.9	20.1	10.4	6.4	6.7	7.8	7.7	12.9	9.1

(2) 강제추행의 월별 범행시간

- <표 2-3-21>은 강제추행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53,536건의 강제추행 중 21:00~23:59에 10,334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00:00~02:59에 9,326건(17.4%), 03:00~05:59에 6,679건(12.5%) 등의 순이었다.
- 앞서 살펴본 것처럼 7월~8월이 11,203건으로 20.9%를 차지하였는데, 범죄발생 시간을 들여다보면 21:00~23:59에 2,088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00:00~02:59에 2,044건(18.3%), 03:00~05:59에 1,517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3-21 월별 범행시간 현황(강제추행)

범행 시간 월별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1~2월	6,484	1,086	864	421	428	556	657	813	1,187	472
	(%)	16.8	13.3	6.5	6.6	8.6	10.1	12.5	18.3	7.3
3~4월	8,350	1,318	986	593	535	737	920	1,061	1,674	526
	(%)	15.8	11.8	7.1	6.4	8.8	11.0	12.7	20.1	6.3
5~6월	10,472	1,831	1,257	716	728	825	1,170	1,308	2,050	587
	(%)	17.5	12.0	6.8	6.9	7.9	11.2	12.5	19.6	5.6
7~8월	11,203	2,044	1,517	865	687	914	1,177	1,253	2,088	658
	(%)	18.3	13.5	7.7	6.1	8.2	10.5	11.2	18.6	5.9
9~10월	9,743	1,814	1,146	671	600	751	1,027	1,196	1,922	616
	(%)	18.6	11.8	6.9	6.2	7.7	10.5	12.3	19.7	6.3
11~12월	7,279	1,233	909	493	413	564	829	919	1,413	506
	(%)	16.9	12.5	6.8	5.7	7.7	11.4	12.6	19.4	7.0
미상	5	-	-	-	-	-	-	-	-	5
	(%)	-	-	-	-	-	-	-	-	100.0
총계	53,536	9,326	6,679	3,759	3,391	4,347	5,780	6,550	10,334	3,370
	(%)	17.4	12.5	7.0	6.3	8.1	10.8	12.3	19.3	6.3

(3) 유사성행위의 월별 범행시간

- <표 2-3-22>은 유사성행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724건 중 월별 범행 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미상 181건(25.0%)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유사성행위의 범행시간을 살펴보면, 00:00~02:59에 84건(11.6%), 21:00~23:59에 81건(11.2%), 15:00~17:59에 79건(10.9%), 18:00~20:59(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7월~8월의 경우 03:00~05:59에 22건(14.7%), 18:00~20:59에 20건(13.3%), 12:00~14:59에 16건(10.7%)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22 월별 범행시간 현황(유사성행위)

범행 시간 월별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1~2월	101	14	7	1	5	10	12	11	8	33
	(%)	13.9	6.9	1.0	4.9	9.9	11.9	10.9	7.9	32.7
3~4월	103	10	3	9	7	14	10	16	11	23
	(%)	9.7	2.9	8.8	6.8	13.6	9.7	15.5	10.7	22.3
5~6월	124	17	20	5	4	11	11	12	19	25
	(%)	13.7	16.1	4.0	3.2	8.9	8.9	9.7	15.3	20.2
7~8월	150	14	22	6	12	16	13	20	15	32
	(%)	9.3	14.7	4.0	8.0	10.7	8.7	13.3	10.0	21.3
9~10월	117	17	10	6	4	8	16	8	10	38
	(%)	14.5	8.6	5.1	3.4	6.8	13.7	6.8	8.6	32.5
11~12월	129	12	12	9	7	12	17	12	18	30
	(%)	9.3	9.3	7.0	5.4	9.3	13.2	9.3	13.9	23.3
총계	724	84	74	36	39	71	79	79	81	181
	(%)	11.6	10.2	5.0	5.4	9.8	10.9	10.9	11.2	25.0

(4) 아동복지법 위반의 월별 범행시간

- <표 2-3-23>은 아동복지법 위반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796건 중 월별 범행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미상 185건(23.2%)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아동복지법 위반의 범행시간을 살펴보면, 15:00~17:59에 171건(21.5%)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18:00~20:59에 112건(14.1%), 12:00~14:59에 97건(12.2%)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이 발생한 7월~8월의 경우 15:00~17:59에 36건(22.7%), 12:00~14:59 및 21:00~23:59에 19건(11.9%)이 발생하였다.

 2-3-23 월별 범행시간 현황(아동복지법 위반)

범행 시간 월별	범행 시간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1~2월		98	7	2	2	6	19	13	16	14	19
		(%)	7.2	2.0	2.0	6.1	19.4	13.3	16.3	14.3	19.4
3~4월		134	2	1	12	5	17	29	20	14	34
		(%)	1.5	0.7	9.0	3.7	12.7	21.6	14.9	10.5	25.4
5~6월		145	4	1	9	10	15	36	29	8	33
		(%)	2.8	0.7	6.2	6.9	10.3	24.8	20.0	5.5	22.8
7~8월		159	6	4	8	9	19	36	13	19	45
		(%)	3.8	2.5	5.0	5.7	11.9	22.7	8.2	11.9	28.3
9~10월		158	13	1	11	11	16	32	25	21	28
		(%)	8.2	0.6	7.0	7.0	10.1	20.3	15.8	13.3	17.7
11~12월		102	5	4	6	7	11	25	9	9	26
		(%)	4.9	3.9	5.9	6.9	10.8	24.5	8.8	8.8	25.5
총계		796	37	13	48	48	97	171	112	85	185
		(%)	4.7	1.6	6.0	6.0	12.2	21.5	14.1	10.7	23.2

(5)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월별 범행시간

- <표 2-3-24>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월별 범행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5,308건을 범행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06:00~08:59에 1,668건(31.4%), 18:00~20:59에 1,186건(22.3%), 21:00~23:59에 720건(13.6%)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는데,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었음을 볼 수 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주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데, 5월~6월의 경우 06:00~08:59에 381건(33.7%), 18:00~20:59에 242건(21.4%), 21:00~23:59에 151건(13.3%) 순으로 발생하였고, 7월~8월에는 06:00~08:59에 353건(33.2%), 18:00~20:59에 234건(22.0%), 21:00~23:59에 149건(14.0%) 순으로 나타났다.

2-3-24 월별 범행시간 현황(공중밀집장소추행)

범행 시간 월별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1~2월	556	50	66	145	42	25	35	113	77	3
	(%)	9.0	11.9	26.1	7.6	4.5	6.3	20.3	13.8	0.5
3~4월	988	43	41	340	71	38	84	236	131	4
	(%)	4.4	4.1	34.4	7.2	3.8	8.5	23.9	13.3	0.4
5~6월	1,132	59	50	381	100	49	95	242	151	5
	(%)	5.2	4.4	33.7	8.8	4.3	8.4	21.4	13.3	0.4
7~8월	1,062	54	58	353	80	48	82	234	149	4
	(%)	5.1	5.5	33.2	7.5	4.5	7.7	22.0	14.0	0.4
9~10월	981	66	58	299	73	46	83	232	119	5
	(%)	6.7	5.9	30.5	7.4	4.7	8.5	23.6	12.1	0.5
11~12월	589	50	54	150	38	29	43	129	93	3
	(%)	8.5	9.2	25.5	6.5	4.9	7.3	21.9	15.8	0.5
총계	5,308	322	327	1,668	404	235	422	1,186	720	24
	(%)	6.1	6.2	31.4	7.6	4.4	8.0	22.3	13.6	0.5

(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월별 범행시간

- <표 2-3-25>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1,009건 중 225건(22.3%)이 21:00~23:59에 발생하였고, 00:00~02:59에 169건(16.7%), 18:00~20:59에 145건(14.4%) 순으로 발생했다.
- 앞서 살펴본 것처럼 7월~8월에 가장 많은 213건이 발생하였고,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21:00~23:59에 43건(20.2%), 15:00~17:59에 36건(16.9%), 18:00~20:59에 33건(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9~10월은 196건, 5~6월은 195건이 발생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역시 겨울보다 여름에, 21:00~23:59에 더 많이 발생하였다.

 2-3-25 월별 범행시간 현황(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행 시간 월별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1~2월	109	18	9	2	12	11	17	14	25	1
	(%)	16.5	8.3	1.8	11.0	10.1	15.6	12.8	23.0	0.9
3~4월	164	25	15	12	15	16	27	12	39	3
	(%)	15.3	9.1	7.3	9.1	9.8	16.5	7.3	23.8	1.8
5~6월	195	31	14	6	19	19	26	29	45	6
	(%)	15.9	7.2	3.1	9.7	9.7	13.3	14.9	23.1	3.1
7~8월	213	27	17	9	18	28	36	33	43	2
	(%)	12.7	8.0	4.2	8.5	13.1	16.9	15.5	20.2	0.9
9~10월	196	38	16	1	14	21	26	32	45	3
	(%)	19.4	8.2	0.5	7.1	10.7	13.3	16.3	23.0	1.5
11~12월	132	30	6	4	16	11	11	25	28	1
	(%)	22.7	4.6	3.0	12.1	8.3	8.3	19.0	21.2	0.8
총계	1,009	169	77	34	94	106	143	145	225	16
	(%)	16.7	7.6	3.4	9.3	10.5	14.2	14.4	22.3	1.6

(7)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월별 범행시간

- <표 2-3-26>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1,341건 중 221건(16.5%)이 21:00~23:59에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00:00~02:59에 182건(13.6%), 15:00~17:59에 171건(12.7%)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 월별로 세분화해보면 5~6월에 259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범행시간은 00:00~02:59에 44건(17.0%), 21:00~23:59에 38건(14.7%), 18:00~20:59에 35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7~8월은 5~6월보다 1건 적은 258건이었고, 범행시간은 21:00~23:59에 50건(19.4%), 15:00~17:59에 39건(15.1%), 18:00~20:59에 35건(13.6%) 순으로 나타나 5~6월과는 양상이 달랐으며, 3~4월에도 247건이 발생하여 3월부터 8월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가 나타났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특성으로 계절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2-3-26 월별 범행시간 현황(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시간 월별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1~2월	194	28	14	11	24	23	22	27	30	15
	(%)	14.4	7.2	5.7	12.4	11.9	11.3	13.9	15.5	7.7
3~4월	247	34	16	16	21	31	36	28	40	25
	(%)	13.8	6.5	6.5	8.5	12.5	14.6	11.3	16.2	10.1
5~6월	259	44	15	14	33	28	30	35	38	22
	(%)	17.0	5.8	5.4	12.7	10.8	11.6	13.5	14.7	8.5
7~8월	258	30	13	20	27	26	39	35	50	18
	(%)	11.6	5.0	7.7	10.5	10.1	15.1	13.6	19.4	7.0
9~10월	192	27	14	15	15	23	25	23	31	19
	(%)	14.1	7.3	7.8	7.8	12.0	13.0	12.0	16.1	9.9
11~12월	191	19	20	9	15	22	19	22	32	33
	(%)	9.9	10.5	4.7	7.9	11.5	9.9	11.5	16.8	17.3
총계	1,341	182	92	85	135	153	171	170	221	132
	(%)	13.6	6.9	6.3	10.1	11.4	12.7	12.7	16.5	9.8

(8)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월별 범행시간

- <표 2-3-27>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월별 범행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15,854건 중 2,603건(16.4%)이 21:00~23:59에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18:00~20:59에 2,363건(14.9%), 15:00~17:59에 2,228건(14.1%) 등의 순이었다.
- 7~8월에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건수는 3,797건으로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범행발생시간은 18:00~20:59에 600건(15.8%), 21:00~23:59에 583건(15.4%), 15:00~17:59에 526건(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5~6월은 3,549건이었고, 범행발생시간은 18:00~20:59에 591건(16.7%), 21:00~23:59에 548건(15.4%), 15:00~17:59에 526건(14.8%) 등의 순이었으며, 9~10월은 2,835건 중 21:00~23:59에 512건(18.1%), 18:00~20:59에 410건(14.5%), 15:00~17:59에 395건(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카메라등이용촬영도 날이 더워지는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하였고, 월별 범행시간으로는 7~8월 18:00~20:59에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2-3-27 월별 범행시간 현황(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시간 월별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1~2월	1,474	205	127	67	106	126	171	190	248	234
	(%)	13.9	8.6	4.5	7.2	8.6	11.6	12.9	16.8	15.9
3~4월	2,551	252	136	205	215	245	383	366	427	322
	(%)	9.9	5.3	8.0	8.4	9.6	15.0	14.4	16.8	12.6
5~6월	3,549	331	244	313	286	338	526	591	548	372
	(%)	9.3	6.9	8.8	8.1	9.5	14.8	16.7	15.4	10.5
7~8월	3,797	391	234	381	296	359	526	600	583	427
	(%)	10.3	6.2	10.0	7.8	9.5	13.8	15.8	15.4	11.2
9~10월	2,835	293	177	238	201	235	395	410	512	374
	(%)	10.3	6.2	8.4	7.1	8.3	13.9	14.5	18.1	13.2
11~12월	1,647	193	124	117	90	155	227	206	285	250
	(%)	11.7	7.5	7.1	5.5	9.4	13.8	12.5	17.3	15.2
미상	1	-	-	-	-	-	-	-	-	1
	(%)	-	-	-	-	-	-	-	-	100.0
총계	15,854	1,665	1,042	1,321	1,194	1,458	2,228	2,363	2,603	1,980
	(%)	10.5	6.6	8.3	7.5	9.2	14.1	14.9	16.4	12.5

(9)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의 월별 범행시간

- <표 2-3-28>은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Deepfakes)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2020년 3월 「성폭력처벌법」에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으로 등록된 사건은 17건으로 그중 7월~12월까지 14건이 발생하였으나, 등록된 사건수가 적어 월별, 시간대별 통계 분석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2-3-28 월별 범행시간 현황(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범행 시간 월별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1~2월	2	-	1	-	-	-	-	-	-	1
	(%)	-	50.0	-	-	-	-	-	-	50.0
3~4월	-	-	-	-	-	-	-	-	-	-
	(%)	-	-	-	-	-	-	-	-	-
5~6월	1	-	-	-	-	-	-	-	-	1
	(%)	-	-	-	-	-	-	-	-	100.0
7~8월	5	-	1	2	-	-	-	1	-	1
	(%)	-	20.0	40.0	-	-	-	20.0	-	20.0
9~10월	6	-	-	-	-	-	-	2	1	3
	(%)	-	-	-	-	-	-	33.3	16.7	50.0
11~12월	3	-	-	-	-	-	-	1	1	1
	(%)	-	-	-	-	-	-	33.3	33.3	33.3
총계	17	-	2	2	-	-	-	4	2	7
	(%)	-	11.8	11.8	-	-	-	23.5	11.8	41.1

(10) 촬영물등이용협박등의 월별 범행시간

- <표 2-3-29>은 촬영물등이용협박등의 월별 범행시간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20년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2020년 5월 「성폭력처벌법」이 일부 개정되어 촬영물등이용협박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 월별로 보면 전체 155건 중 7~8월에 가장 많은 35건이 발생하였다.
- 범행시간대를 살펴보면 전체 155건 중 18:00~20:59에 27건(17.4%)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21:00~23:59에 26건(16.8%), 09:00~11:59에 21건(13.5%) 순으로 나타나는 등, 범행 시간이 특정 시간대에 편중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2-3-29 월별 범행시간 현황(촬영물등이용협박등)

범행 시간 월별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1~2월	23	1	1	-	4	3	3	3	5	3
	(%)	4.4	4.4	-	17.4	13.0	13.0	13.0	21.8	13.0
3~4월	12	1	1	2	3	1	1	-	3	-
	(%)	8.3	8.3	16.7	25.0	8.3	8.3	-	25.0	-
5~6월	33	2	3	-	4	3	3	9	4	5
	(%)	6.1	9.1	-	12.1	9.1	9.1	27.3	12.1	15.1
7~8월	35	6	3	-	7	3	2	6	6	2
	(%)	17.1	8.6	-	20.0	8.6	5.7	17.1	17.1	5.7
9~10월	30	6	2	1	1	6	5	4	3	2
	(%)	20.0	6.7	3.3	3.3	20.0	16.7	13.3	10.0	6.7
11~12월	22	3	-	2	2	2	-	5	5	3
	(%)	13.6	-	9.1	9.1	9.1	-	22.7	22.7	13.6
총계	155	19	10	5	21	18	14	27	26	15
	(%)	12.3	6.5	3.2	13.5	11.6	9.0	17.4	16.8	9.7

(11) 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월별 범행시간

- <표 2-3-30>은 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특성상 범행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 전체 2,020건 중 621건으로 30.7%를 차지한다.
- 월별 시간대를 보면 3~4월에 가장 많은 475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범행시간을 알 수 없는 사건은 140건(29.5%), 21:00~23:59와 00:00~02:59 56건(11.8%)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7~8월은 441건이 발생하였고, 미상 127건(28.8%), 00:00~02:59 61건(13.8%), 21:00~23:59 58건(13.2%) 순으로 나타났다.

2-3-30 월별 범행시간 현황(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행 시간 월별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1~2월	224	24	21	18	11	14	27	30	29	50
	(%)	10.7	9.4	8.0	4.9	6.3	12.1	13.4	12.9	22.3
3~4월	475	56	35	22	29	37	49	51	56	140
	(%)	11.8	7.4	4.6	6.1	7.8	10.3	10.7	11.8	29.5
5~6월	297	25	22	12	12	19	31	41	47	88
	(%)	8.4	7.4	4.1	4.1	6.4	10.4	13.8	15.8	29.6
7~8월	441	61	35	25	21	30	38	46	58	127
	(%)	13.8	7.9	5.7	4.8	6.8	8.6	10.4	13.2	28.8
9~10월	376	24	19	17	18	23	41	45	31	158
	(%)	6.4	5.1	4.5	4.8	6.1	10.9	12.0	8.2	42.0
11~12월	206	25	14	19	11	10	23	17	30	57
	(%)	12.1	6.8	9.2	5.3	4.9	11.2	8.2	14.6	27.7
미상	1	-	-	-	-	-	-	-	-	1
	(%)	-	-	-	-	-	-	-	-	100.0
총계	2,020	215	146	113	102	133	209	230	251	621
	(%)	10.6	7.2	5.6	5.1	6.6	10.4	11.4	12.4	30.7

(12) 성매수의 월별 범행시간

- <표 2-3-31>는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 월별 사건수는 1월부터 12월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그중 7~8월에 발생한 성매수 건수가 376건으로 가장 많았다.
- 범행시간대는 21:00~23:59에 372건(18%), 미상 361건(17.5%), 18:00~20:59에 307건(1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성매수 역시 범행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이 많았다.

 2-3-31 월별 범행시간 현황(성매수)

범행 시간 월별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1~2월	360	40	30	19	22	32	44	52	64	57
	(%)	11.1	8.3	5.3	6.1	8.9	12.2	14.5	17.8	15.8
3~4월	373	34	31	15	12	39	46	65	69	62
	(%)	9.1	8.3	4.0	3.2	10.5	12.4	17.4	18.5	16.6
5~6월	350	38	23	17	16	25	47	54	62	68
	(%)	10.9	6.6	4.9	4.6	7.1	13.4	15.4	17.7	19.4
7~8월	376	43	28	20	26	25	52	49	65	68
	(%)	11.4	7.5	5.3	6.9	6.7	13.8	13.0	17.3	18.1
9~10월	319	27	30	13	17	25	38	46	60	63
	(%)	8.5	9.4	4.1	5.3	7.8	11.9	14.4	18.8	19.8
11~12월	283	33	18	12	24	16	45	41	52	42
	(%)	11.7	6.4	4.2	8.5	5.6	15.9	14.5	18.4	14.8
미상	1	-	-	-	-	-	-	-	-	1
	(%)	-	-	-	-	-	-	-	-	100.0
총계	2,062	215	160	96	117	162	272	307	372	361
	(%)	10.4	7.8	4.6	5.7	7.9	13.2	14.9	18.0	17.5

(13) 성매매강요의 월별 범행시간

- <표 2-3-32>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강요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686건 중 범행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이 330건(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21:00~23:59에 89건(13.0%), 00:00~02:59에 73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월별로 시간대를 분석해보면, 9~10월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미상 63건(48.1%), 21:00~23:59에 16건(12.2%), 00:00~02:59에 15건(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7~8월에 발생한 128건 중에서 미상 64건(50.0%), 21:00~23:59에 18건(14.1%), 00:00~02:59에 16건(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3-32 월별 범행시간 현황(성매매강요)

범행 시간 월별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1~2월	121	11	11	6	2	4	5	11	18	53
	(%)	9.1	9.1	5.0	1.6	3.3	4.1	9.1	14.9	43.8
3~4월	103	11	4	2	1	5	5	3	13	59
	(%)	10.7	3.9	2.0	1.0	4.8	4.8	2.9	12.6	57.3
5~6월	109	11	6	2	5	5	9	8	13	50
	(%)	10.1	5.5	1.8	4.6	4.6	8.3	7.3	11.9	45.9
7~8월	128	16	8	2	2	1	7	10	18	64
	(%)	12.4	6.2	1.6	1.6	0.8	5.5	7.8	14.1	50.0
9~10월	131	15	12	1	3	7	8	6	16	63
	(%)	11.4	9.2	0.8	2.3	5.3	6.1	4.6	12.2	48.1
11~12월	94	9	8	3	3	5	6	8	11	41
	(%)	9.6	8.5	3.2	3.2	5.3	6.4	8.5	11.7	43.6
총계	686	73	49	16	16	27	40	46	89	330
	(%)	10.7	7.2	2.3	2.3	3.9	5.8	6.7	13.0	48.1

(14) 성매매알선영업의 월별 범행시간

- <표 2-3-33>은 성매매알선영업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이다. 전체 1,080건 중에서 범행 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미상 551건(51%)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21:00~23:59에 124건(11.5%), 00:00~ 02:59에 94건(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월별 범행시간의 경우, 3~4월은 203건 중 미상 111건(54.7%), 21:00~23:59에 21건(10.3%), 03:00~05:59에 19건(9.3%) 등의 순이며, 7~8월은 196건 중 미상 95건(48.5%), 21:00~23:59에 22건(11.2%), 00:00~02:59에 21건(10.7%) 순으로 나타났다.

 2-3-33 월별 범행시간 현황(성매매알선영업)

범행 시간 월별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1~2월	150	15	14	6	5	6	7	9	17	71
	(%)	10.0	9.3	4.0	3.3	4.0	4.7	6.0	11.3	47.3
3~4월	203	16	19	12	4	5	3	12	21	111
	(%)	7.9	9.3	5.9	2.0	2.5	1.5	5.9	10.3	54.7
5~6월	183	14	11	5	2	15	15	11	21	89
	(%)	7.7	6.0	2.7	1.1	8.2	8.2	6.0	11.5	48.6
7~8월	196	21	11	6	9	7	15	10	22	95
	(%)	10.7	5.6	3.1	4.6	3.6	7.6	5.1	11.2	48.5
9~10월	177	14	9	3	11	6	6	9	24	95
	(%)	7.9	5.1	1.7	6.2	3.4	3.4	5.1	13.5	53.7
11~12월	171	14	11	6	3	3	13	12	19	90
	(%)	8.2	6.4	3.5	1.8	1.8	7.6	7.0	11.1	52.6
총계	1,080	94	75	38	34	42	59	63	124	551
	(%)	8.7	6.9	3.5	3.2	3.9	5.5	5.8	11.5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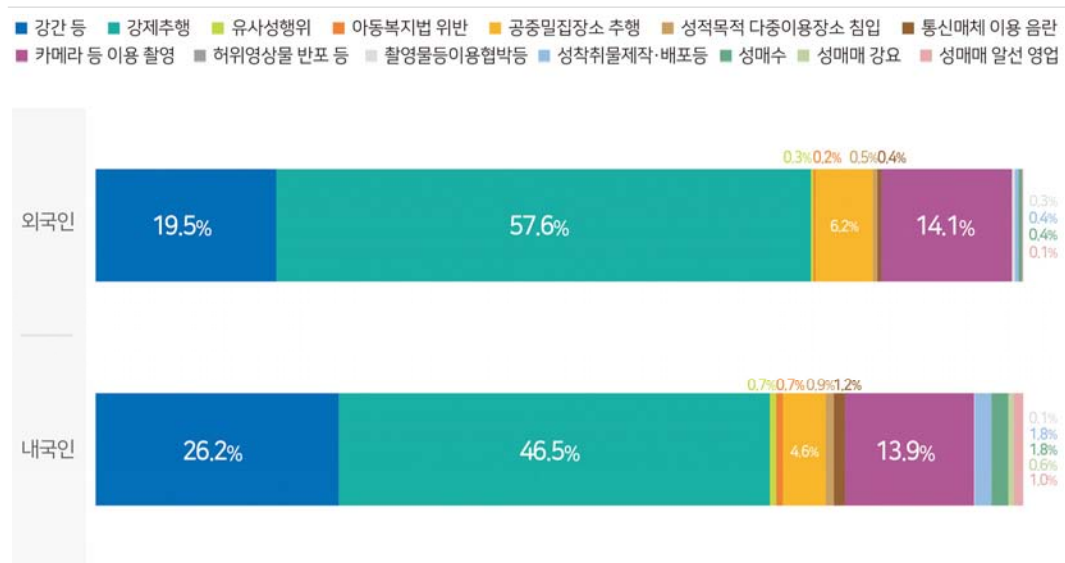
10 내·외국인

- 〈표 2-3-34〉은 죄명별 내·외국인대상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내국인 대상자의 죄명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51,981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간 등 29,305건(26.2%), 카메라등이용촬영 15,472건(13.9%) 순으로, 이 세가지 범죄가 전체 내국인 성범죄의 약 87%를 차지하였다.
- 외국인대상자의 경우도 강제추행이 1,555건(57.6%)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등 527건(19.5%), 카메라등이용촬영 382건(14.1%) 순으로, 이 세가지 범죄가 전체 외국인 성범죄의 약 91%를 차지하여, 등록사건의 죄명별 구성비는 내·외국인 간 별 차이가 없었다.

2-3-34 죄명별 등록대상사건의 내·외국인대상자 현황

죄명 국적	총계	강간 등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 영상물 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
내국인	111,719	29,305	51,981	716	789	5,140	996	1,331	15,472	17	147	2,009	2,052	686	1,078
	(%)	26.2	46.5	0.7	0.7	4.6	0.9	1.2	13.9	0.0	0.1	1.8	1.8	0.6	1.0
외국인	2,701	527	1,555	8	7	168	13	10	382	-	8	11	10	-	2
	(%)	19.5	57.6	0.3	0.2	6.2	0.5	0.4	14.1	-	0.3	0.4	0.4	-	0.1
총계	114,420	29,832	53,536	724	796	5,308	1,009	1,341	15,854	17	155	2,020	2,062	686	1,080
	(%)	26.1	46.8	0.6	0.7	4.6	0.9	1.2	13.9	0.0	0.1	1.8	1.8	0.6	0.9

2-3-6 죄명별 등록대상사건의 내·외국인대상자 비율



11 피해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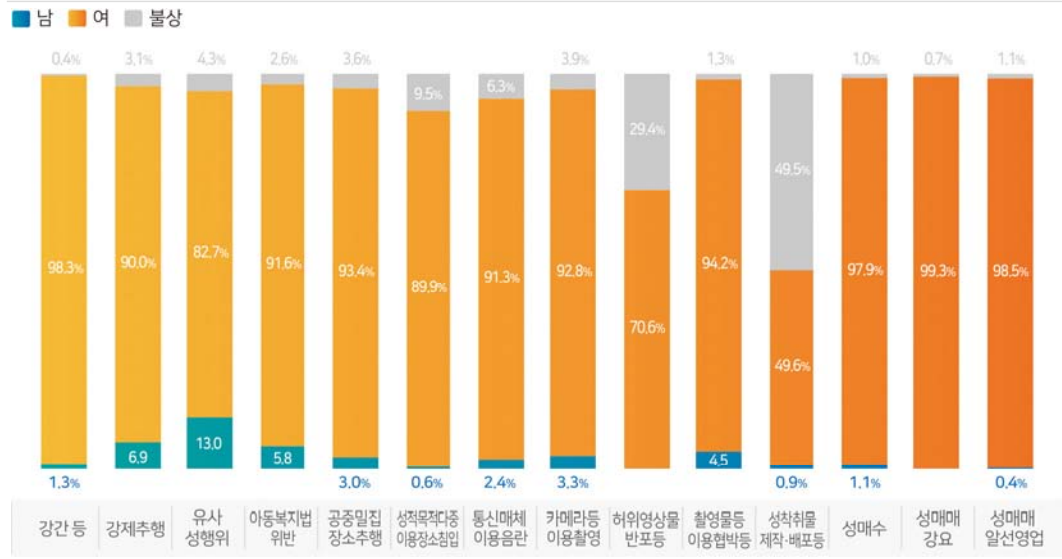
- <표 2-3-35>은 죄명별 피해자 성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114,420건 중에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105,546건으로 9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남성 5,008건(4.4%), 불상 3,866건(3.4%)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강요,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에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없었다.
- 피해자가 여성인 105,546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강제추행 48,169건(45.6%), 강간 등 29,325건(27.8%), 카메라등이용촬영 14,711건(13.9%) 등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가 남성인 5,008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강제추행 범죄가 3,700건(73.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525건(10.5%) 강간 등 392건(7.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죄명에 따른 남녀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 유사성행위 범죄 724건 중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이 94건으로 13%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 성별을 알 수 없는 3,866건 중 강제추행이 1,667건(73.9%) 가장 많았고, 성착취물제작·배포등 999건(10.5%), 카메라등이용촬영이 618건(7.8%) 순으로 나타났다.

 2-3-35 죄명별 피해자 성별 현황

죄명 \ 성별	총계	남	여	불상
강간 등	29,832	392	29,325	115
	(%)	1.3	98.3	0.4
강제추행	53,536	3,700	48,169	1,667
	(%)	6.9	90.0	3.1
유사성행위	724	94	599	31
	(%)	13.0	82.7	4.3
아동복지법 위반	796	46	729	21
	(%)	5.8	91.6	2.6
공중밀집장소추행	5,308	162	4,956	190
	(%)	3.1	93.4	3.6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1,009	6	907	96
	(%)	0.6	89.9	9.5
통신매체이용음란	1,341	32	1,225	84
	(%)	2.4	91.3	6.3
카메라등이용촬영	15,854	525	14,711	618
	(%)	3.3	92.8	3.9

범죄명	성별	총계	남	여	불상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17	-	12	5
	(%)	(%)	-	70.6	29.4
촬영물등이용협박등		155	7	146	2
	(%)	(%)	4.5	94.2	1.3
성착취물제작·배포등		2,020	18	1,003	999
	(%)	(%)	0.9	49.7	49.5
성매수		2,062	22	2,019	21
	(%)	(%)	1.1	97.9	1.0
성매매 강요		686	-	681	5
	(%)	(%)	-	99.3	0.7
성매매 알선영업		1,080	4	1,064	12
	(%)	(%)	0.4	98.5	1.1
총계		114,420	5,008	105,546	3,866
	(%)	(%)	4.4	92.2	3.4

2-3-7 죄명별 피해자 성별 현황



12 피해자 연령

- <표 2-3-36>은 죄명별 피해자 연령 현황이다. 연령은 판결문에 기재된 범행 당시 나이 기준이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최연소 나이로 하였다.
- 전체 114,420건 중 피해자 연령이 20대인 사건이 37,989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0대가 33,781건(29.5%), 30대 12,508건(1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가 10세 미만인 사건은 3,386건(3.0%)이었고, 70대 이상은 845건(0.7%)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가 29세 이하인 사건은 전체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
- 참고로, 따로 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청소년(만 18세 이하)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전체 등록사건 114,420건 중 32,114건(28.1%)이었고,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는 72,145건(63.0%), 연령 미상은 10,161건(8.9%)이었다.
- 죄명별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제추행 53,536건 중 피해자 연령이 20대가 19,485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대 13,217건(24.7%), 30대 6,514건(12.2%) 순으로 나타났다.
- 강간 등 범죄는 전체 29,832건 중 피해자 나이 10대가 11,960건(40.1%), 20대 8,737건(29.3%), 30대 3,101건(10.4%) 순으로 나타났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전체 15,854건 중 피해자 나이 20대가 5,780건(36.5%), 30대 1,831건(11.5%), 10대 1,777건(11.2%) 순으로 나타났다.

2-3-36 죄명별 피해자 연령

연령 죄명	총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미상
강간 등	29,832	1,119	11,960	8,737	3,101	2,194	1,474	438	221	118	20	450
	(%)	3.7	40.1	29.3	10.4	7.4	4.9	1.5	0.7	0.4	0.1	1.5
강제추행	53,536	1,961	13,217	19,485	6,514	4,629	3,702	1,164	342	112	5	2,405
	(%)	3.7	24.7	36.4	12.2	8.6	6.9	2.2	0.6	0.2	0.0	4.5
유사 성행위	724	97	493	58	26	29	13	2	1	1	-	4
	(%)	13.4	68.1	8.0	3.6	4.0	1.8	0.3	0.1	0.1	-	0.6
아동복지법 위반	796	130	658	-	-	-	-	-	-	-	-	8
	(%)	16.3	82.7	-	-	-	-	-	-	-	-	1.0
공중밀집 장소추행	5,308	-	759	3,087	703	216	84	25	4	-	-	430
	(%)	-	14.3	58.1	13.2	4.1	1.6	0.5	0.1	-	-	8.1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	1,009	3	105	364	143	69	21	1	-	-	-	303
	(%)	0.3	10.4	36.1	14.2	6.8	2.1	0.1	-	-	-	30.0

연령 죄명	총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미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1,341	17	321	413	164	149	94	19	7	4	-	153
	(%)	1.3	24.0	30.8	12.2	11.1	7.0	1.4	0.5	0.3	-	11.4
카메라등 이용촬영	15,854	14	1,777	5,780	1,831	919	408	65	7	-	-	5,053
	(%)	0.1	11.2	36.5	11.5	5.8	2.6	0.4	0.0	-	-	31.9
허위영상물 등의반포등	17	-	3	1	-	-	1	3	-	-	-	9
	(%)	-	17.6	5.9	-	-	5.9	17.6	-	-	-	53.0
촬영물등 이용협박등	155	-	27	64	26	22	8	4	-	-	-	4
	(%)	-	17.4	41.3	16.8	14.2	5.1	2.6	-	-	-	2.6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2,020	45	701	-	-	-	-	-	-	-	-	1,274
	(%)	2.2	34.7	-	-	-	-	-	-	-	-	63.1
성매수	2,062	-	2,037	-	-	-	-	-	-	-	-	25
	(%)	-	98.8	-	-	-	-	-	-	-	-	1.2
성매매 강요	686	-	677	-	-	-	-	-	-	-	-	9
	(%)	-	98.7	-	-	-	-	-	-	-	-	1.3
성매매 알선영업	1,080	-	1,046	-	-	-	-	-	-	-	-	34
	(%)	-	96.9	-	-	-	-	-	-	-	-	3.1
총계	114,420	3,386	33,781	37,989	12,508	8,227	5,805	1,721	582	235	25	10,161
	(%)	3.0	29.5	33.2	10.9	7.2	5.1	1.5	0.5	0.2	0.0	8.9

제 4 절



성범죄 재등록사건 현황

01 재등록사건

- <표 2-4-1>은 재등록사건의 연도별 등록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 동안 재등록된 사건은 총 6,334건이다.
- 참고로 '재(再)등록사건'이라 함은 이미 등록된 사건의 등록기간 중 다시 '등록대상 성범죄'로 등록된 경우로, 그 대상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 재범'과는 그 의미가 구분된다.
- 또한, 재등록 통계는 '사람 수'가 아닌 '사건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본 절에서 다루고 있는 '재등록사건'은 총 6,334건이지만, 이를 '재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5,811명이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모든 절차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계 분석 또한 6,334건이라는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음을 일러둔다.
- 재등록사건은 2009년 1건을 시작으로 2013년 6월 등록대상 범죄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등록사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2013년 56건, 2014년 197건이 등록되었고, 모집단이라 할 수 있는 등록·관리사건이 증가하면서 재등록되는 사건 수도 차츰 증가하여 2020년에는 1,219건, 2021년에는 1,106건이 재등록되었다.(참고 <표 2-4-5> 재등록사건의 연도별·죄명별 등록 현황)
- 등록사건 대비 재등록되는 비율은 서서히 증가하여 2018년에 1.3%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1년은 재등록률 0.97%로 2020년 1.21%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COVID-19 감염병 유행이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4-1 재등록사건 연도별 등록 현황

연도	등록사건	재등록	재등록률(%)
2008	264	0	0.00
2009	1,132	1	0.09
2010	2,132	5	0.23
2011	4,076	15	0.37
2012	7,806	23	0.29
2013	13,668	56	0.41
2014	24,087	197	0.82
2015	36,866	349	0.95
2016	48,289	550	1.14
2017	60,903	738	1.21
2018	74,656	967	1.30
2019	87,864	1,108	1.26
2020	100,935	1,219	1.21
2021	114,420	1,106	0.97

02 등록 유형

(1) 처분유형

- <표 2-4-2>는 전체 실시사건과 재등록사건의 처분유형의 구성비를 비교한 것이다. 재등록사건의 경우 단순 등록 4,223건(66.7%), 등록·공개 41건(0.6%), 등록·공개·고지 2,070건(32.7%)로 나타났다.
- 전체 실시사건의 경우 단순 등록 98,241건(85.9%), 등록·공개 2,641건(2.3%), 등록·공개·고지 13,538건(11.8%)로, 재등록사건의 경우 공개명령 부과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2 처분유형별 구성비

구분 \ 등록유형	계	등록	등록·공개	등록·공개·고지
재등록	6,334	4,223	41	2,070
	(%)	66.7	0.6	32.7
실시사건	114,420	98,241	2,641	13,538
	(%)	85.9	2.3	11.8

(2) 등록 기간

- <표 2-4-3>는 재등록사건 중 등록사건의 기간을 나타낸 표이다. 재등록사건 6,334건 중 등록기간이 15년인 사건이 4,695건(7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0년 934건(14.7%), 20년 669건(10.6%), 30년 36건(0.6%)으로 나타났다.
- 전체 등록사건 114,420건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사건에서는 등록기간이 10년인 사건이 38.0%를 차지하였으나, 재등록 사건에서는 14.7%를 차지하여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4-3 재등록사건 등록기간별 현황

구분 \ 기간	계	10년	15년	20년	30년	기타
재등록사건	6,334	934	4,695	669	36	0
	(%)	14.7	74.1	10.6	0.6	0.0
실시사건	114,420	43,479	59,280	11,271	296	94
	(%)	38.0	51.8	9.8	0.3	0.1

(3) 공개 기간

- <표 2-4-4>는 공개명령 처분을 받은 사건의 공개 기간을 나타낸 표이다. 재등록 사건의 경우 <표 2-4-2>의 등록·공개 41건과 등록·공개·고지 2,070건을 합한 2,111건이 공개명령 처분을 받은 사건에 해당한다.
- 공개명령을 처분받은 재등록사건 2,111건 중 공개 기간 3년이 768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공개기간 5년(35.0%)이 738건, 2년 263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실시사건의 경우 공개명령이 부과된 사건은 16,179건으로, 공개 기간 5년인 사건이 6,736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공개 기간 3년이 4,037건(25.0%), 2년 1,205건(7.4%) 순으로 나타나 재등록사건의 구성비와는 차이를 보였다.

 2-4-4 공개 기간별 구성비

구분 \ 기간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재등록	2,111	20	263	768	48	738	4	77	5	0	188
	(%)	0.9	12.5	36.4	2.3	35.0	0.2	3.6	0.2	0.0	8.9
실시사건	16,179	92	1,205	4,037	782	6,736	130	723	90	7	2,377
	(%)	0.6	7.4	25.0	4.8	41.6	0.8	4.5	0.6	0.0	14.7

03 죄명

- <표 2-4-5>는 재등록사건의 죄명별 등록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재등록사건의 죄명별 구성비는 강제추행이 3,036건(47.9%), 카메라등이용촬영 1,082건(17.1%), 강간 등 905건(14.3%) 순이었다.
- 전체 실시사건의 죄명별 구성비는 강제추행 46.8%, 강간 등 26.1%, 카메라등이용촬영 13.9%로 나타나 재등록사건의 죄명별 구성비와는 차이가 있었다.

2-4-5 재등록사건의 연도별·죄명별 등록 현황

연도별 재등록	죄명	계	강간 등	강제 추행	유사 성행위	아동·복 지법 위반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성적·목 적·다중 이용·장 소·침입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 영상·물 반포·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등	성 착취·물 제작 배포·등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
재등록 사건	계	6,334	905	3,036	28	64	686	188	107	1,082	-	6	67	110	16	39
	(%)	100.0	14.3	47.9	0.4	1.0	10.8	3.0	1.7	17.1	0.0	0.1	1.1	1.7	0.3	0.6
	2008	0	-	-	-	-	-	-	-	-	-	-	-	-	-	-
	2009	1	1	-	-	-	-	-	-	-	-	-	-	-	-	-
	2010	5	5	-	-	-	-	-	-	-	-	-	-	-	-	-
	2011	15	14	1	-	-	-	-	-	-	-	-	-	-	-	-
	2012	23	20	2	-	-	-	-	-	-	-	-	-	1	-	-
	2013	56	30	24	-	-	-	-	-	1	-	-	-	-	-	1
	2014	197	45	93	1	-	24	2	2	20	-	-	2	4	3	1
	2015	349	61	159	3	3	50	11	6	52	-	-	-	3	1	-
	2016	550	69	250	4	1	74	19	7	115	-	-	2	6	-	3
	2017	738	84	353	2	6	92	11	14	142	-	-	4	17	4	9
	2018	967	93	479	3	9	132	16	20	178	-	-	4	20	6	7
	2019	1,108	141	547	4	9	134	36	14	193	-	-	6	19	2	3
	2020	1,219	170	591	9	20	114	49	21	209	-	-	7	24	-	5
	2021	1,106	172	537	2	16	66	44	23	172	-	6	42	16	-	10
실시사건	계	114,420	29,832	53,536	724	796	5,308	1,009	1,341	15,854	17	155	2,020	2,062	686	1,080
	(%)	100.0	26.1	46.8	0.6	0.7	4.6	0.9	1.2	13.9	0.0	0.1	1.8	1.8	0.6	0.9

04 선고형

- <표 2-4-6>는 재등록사건의 선고형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재등록사건의 경우 전체 6,334건 중 징역이 3,506건(55.4%)으로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였고 집행유예 1,931건(30.5%), 벌금 884건(14%) 순으로 나타났다.
- 전제 실시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가 41.9%, 벌금 31.3%, 징역 24.9%인 것과 비교할 때 재등록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4-6 재등록사건 선고형별 현황

구분 \ 선고형	총계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재등록	6,334	-	7	3,506	1	884	1	1,931	2	2
	(%)	0.00	0.11	55.35	0.02	13.96	0.02	30.49	0.03	0.03
실시사건	114,420	3	84	28,511	4	35,856	2	47,904	11	2,045
	(%)	0.00	0.07	24.92	0.00	31.34	0.00	41.87	0.01	1.79

05 사회내처우 부과

- <표 2-4-7>은 재등록사건의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재등록 사건 중 사회내처우가 부과된 사건은 6,334건 중 6,174건(97.5%)으로 재등록사건 대부분에 사회내처우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재등록사건에 부과된 사회내처우 내용을 살펴보면 수강·이수명령 5,891건(93.0%)이 부과되었고, 보호관찰 1,939건(30.6%), 전자감독 971건(15.3%)이 부과되었다.
- 전체 등록사건의 경우 수강·이수명령 98,024건(85.7%), 사회봉사명령 15,510건(13.6%), 보호관찰 14,903건(13.0%), 전자감독이 4,452건(3.9%) 순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재등록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의 부과율이 높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7 재등록사건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중복집계)

사회내 처우 구분	총계	미부과	부과	부과 내용 (중복집계, %행은 총계 중 비율)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 이수명령	전자감독	치료감호	치료명령	약물치료
재등록	6,334	160	6,174	1,939	629	5,891	971	54	41	7
	(%)	2.5	97.5	30.6	9.9	93.0	15.3	0.9	0.6	0.1
실사사건	114,420	13,173	101,247	14,903	15,510	98,024	4,452	419	223	23
	(%)	11.5	88.5	13.0	13.6	85.7	3.9	0.4	0.2	0.0

06 재등록 경과 기간⁵⁾

- 〈표 2-4-8〉은 재등록까지 경과된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1년 이후~2년 이내에 재등록된 사건이 1,236건(19.5%)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년 이후~3년 이내가 1,199건(18.9%)이었으며, 3년 이후~4년 이내가 978건(15.5%)이었다. 1년 이후부터 4년 이내 재등록된 사건은 총 3,413건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하였다.
-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기간 및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 156,184건 중 22,242건(14.3%)이 동종재범(성폭력범죄)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중 재범기간이 3년 초과인 사건이 6,590건(29.6%)이었으며, 다음으로 1년 이내가 5,215건(23.4%), 2년 이내가 3,426건(15.4%)이었다.

2-4-8 재등록 경과 기간

경과 기간 재등록	계	3월 이내	6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8년 이내	9년 이내	9년 초과
재등록	6,334	76	96	403	1,236	1,199	978	824	603	404	235	133	147
	(%)	1.2	1.5	6.4	19.5	18.9	15.5	13.0	9.5	6.4	3.7	2.1	2.3

5) 원등록일로부터 재등록일까지 경과기간을 의미한다.

07 성범죄 전과 횟수

- <표 2-4-9>는 재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과를 확인할 수 없는 198건은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 재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가 1회인 사건이 3,643건(57.8%)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2회 1,436건(22.7%), 3~5회 946건(14.9%), 6~9회 110건(1.8%) 순으로 나타났다.
- 재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전과가 1회인 사건은 2012년 이후 50%~60%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2회인 사건은 2016년 이후 20%대이며, 3~5회인 사건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재등록된 대상자 중 성범죄 전과 횟수가 가장 많은 자는 13회로 나타났다.

 2-4-9 재등록대상자 성범죄 전과 횟수

연도 \ 전과	계	1회	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미상
계	6,334	3,643	1,436	946	110	1	198
	(%)	57.5	22.7	14.9	1.8	0.0	3.1
2009	1	1	-	-	-	-	-
2010	5	4	-	-	-	-	1
2011	15	10	2	2	-	-	1
2012	23	16	3	4	-	-	-
2013	56	35	9	9	1	-	2
2014	197	115	43	35	1	-	3
2015	349	211	69	49	3	-	17
2016	550	295	133	91	4	1 (13회)	26
2017	738	410	167	110	8	-	43
2018	967	524	231	147	12	-	53
2019	1,108	630	276	158	30	-	14
2020	1,219	721	266	188	29	-	15
2021	1,106	671	237	153	22	-	23

08 성별

- <표 2-4-10>는 재등록사건 대상자의 성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재등록사건 대상자의 성별이 남성인 사건이 6,322건으로 99.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등록사건 대상자의 성별 현황(표 2-2-5)에서 남성의 비율이 98.8%인 것과 비교했을 때 재등록사건 대상자의 남성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2-4-10 재등록사건 성별 현황

구분 \ 성별	계	남	여
재등록사건	6,344	6,322	12
	(%)	99.8	0.2
실시사건	114,420	113,100	1,320
	(%)	98.8	1.2

09 국적

- <표 2-4-11>는 내·외국인대상자의 재등록사건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내국인 재등록사건은 6,313건(99.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재등록사건은 21건(0.3%)으로 미미하였다.
- 외국인의 국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8건, 대만 4건, 방글라데시 2건, 몽골·케냐·인도·미국·이집트·캄보디아·파키스탄 각 1건으로 나타났다.

2-4-11 재등록대상자 국적 현황

구분 \ 국적	내국인	외국인										
		계	중국	대만	방글라데시	몽골	케냐	인도	미국	이집트	캄보디아	파키스탄
계	6,334	6,313	21	8	4	2	1	1	1	1	1	1
(%)		99.7	0.3									

10 직권등록

- <표 2-4-12>는 재등록 사건의 직권등록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직권등록이라 함은 법정 제출기한 내(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가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직권으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전체 재등록사건 6,344건 중 944건(5.3%)이 직권으로 등록된 것을 알 수 있다.

2-4-12 재등록사건 직권등록 여부

사건구분 \ 등록구분	총계	일반등록	직권등록
재등록사건	6,334	5,390	944
	(%)	94.7	5.3
실시사건	114,420	96,675	17,745
	(%)	84.5	15.5

11 범죄 유형(접촉·비접촉)

- <표 2-4-13>는 재등록 사건의 범죄 유형을 접촉범죄와 비접촉범죄⁶⁾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 재등록사건 6,334건 중 접촉범죄는 4,719건(74.5%), 비접촉범죄는 1,615건(25.5%)이며, 전체등록 사건의 경우 114,420건 중 접촉범죄 90,196건(78.8%), 비접촉범죄 24,224건(21.2%)으로 접촉·비접촉 범죄 유형의 구성비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2-4-13 재등록사건 연도별 비접촉 범죄 현황

연도별 \ 죄명	등록(실시)사건			재등록사건		
	계	접촉범죄	비접촉범죄	계	접촉범죄	비접촉범죄
계	114,420	90,196	24,224	6,334	4,719	1,615
	(%)	78.8	21.2	(%)	74.5	25.5
2008	264	258	6	-	-	-
2009	868	811	57	1	1	-
2010	1,000	946	54	5	5	-

6) 접촉범죄 : 강간, 추행,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

비접촉범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등,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영업 등

연도별 죄명	등록(실시)사건			재등록사건		
	계	접촉범죄	비접촉범죄	계	접촉범죄	비접촉범죄
2011	1,944	1,876	68	15	15	-
2012	3,730	3,638	92	23	22	1
2013	5,862	4,913	949	56	54	2
2014	10,419	8,310	2,109	197	163	34
2015	12,779	10,059	2,720	349	276	73
2016	11,423	8,997	2,426	550	398	152
2017	12,614	9,710	2,904	738	537	201
2018	14,053	10,939	3,114	967	716	251
2019	12,908	10,020	2,888	1,108	835	273
2020	13,071	10,131	2,940	1,219	904	315
2021	13,485	9,588	3,897	1,106	793	313

제 5 절



재등록·원등록 비교

- 본 절은 재등록 사건 6,334건을 원등록사건과 대비하여 분석한 것으로 원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의 죄명, 유형, 피해자 등의 비교 자료는 성폭력 범죄예방 연구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분석에서 제시되는 표의 항목별 구성비는 재등록률 또는 재범률과 전혀 다른 개념임을 참고하길 바란다.

01 죄명 비교

- <표 2-5-1>은 재등록사건을 죄명별로 원등록사건과 비교한 것이다. 재등록사건의 6,334건 중 원등록사건과 범죄명이 같은 사건은 총 3,648건(57.6%)이며, 총 3,648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이 64.1%이고 강제추행 61.2%, 공중밀집장소추행 57.9% 순으로 나타났다.
- 죄명별 사건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제추행으로 재등록된 사건 3,036건 중 원등록사건에서 강제추행 1,857건(61.2%), 강간 등 762건(25.1%), 공중밀집장소추행 218건(7.2%) 순으로 나타났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등록된 사건 1,082건 중 원등록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694건(64.1%), 강제추행 161건(14.9%), 강간 등 110건(10.2%) 순으로 나타났다.
- 강간 등으로 재등록된 사건 905건 중, 원등록사건에서 강간 등 506건(55.9%), 강제추행 281건(31.1%), 카메라등이용촬영 36건(4.0%) 순으로 나타났다.

2-5-1 재등록사건과 원등록사건의 죄명 비교

원등록 재등록	총계	강간 등	강제 추행	유사 성행위	아동 복지법 위반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 영상물 반포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등	성 착취물 제작 배포등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
총계	6,334	1,564	2,603	34	27	683	155	102	974	-	1	41	86	28	36
	(%)	24.7	41.1	0.5	0.4	10.8	2.4	1.6	15.4	-	0.0	0.7	1.4	0.4	0.6
강간 등	905	506	281	11	4	14	6	11	36	-	-	3	15	7	11
	(%)	55.9	31.1	1.2	0.4	1.5	0.7	1.2	4.0	-	-	0.3	1.7	0.8	1.2
강제 추행	3,036	762	1,857	13	8	218	26	21	103	-	1	8	10	5	4
	(%)	25.1	61.2	0.4	0.3	7.2	0.8	0.7	3.4	-	0.0	0.3	0.3	0.2	0.1
유사 성행위	28	10	7	5	1	-	1	-	1	-	-	-	-	1	2
	(%)	35.7	25.0	17.8	3.6	-	3.6	-	3.6	-	-	-	-	3.6	7.1
아동 복지법 위반	64	20	23	-	5	-	1	3	6	-	-	3	3	-	-
	(%)	31.2	35.9	-	7.8	-	1.6	4.7	9.4	-	-	4.7	4.7	-	-
공중밀집 장소추행	686	48	175	-	-	397	9	2	50	-	-	-	3	-	2
	(%)	7	25.5	-	-	57.9	1.3	0.3	7.3	-	-	-	0.4	-	0.3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	188	18	43	-	-	6	69	-	52	-	-	-	-	-	-
	(%)	9.6	22.9	-	-	3.2	36.7	-	27.6	-	-	-	-	-	-
통신매체 이용음란	107	14	21	-	-	5	3	52	8	-	-	2	2	-	-
	(%)	13.1	19.6	-	-	4.6	2.8	48.6	7.5	-	-	1.9	1.9	-	-
카메라 등 이용촬영	1,082	110	161	-	2	43	40	10	694	-	-	6	12	1	3
	(%)	10.2	14.9	-	0.2	4.0	3.7	0.9	64.1	-	-	0.5	1.1	0.1	0.3
허위 영상물 반포등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촬영물등 이용협박 등	6	3	1	-	-	-	-	-	1	-	-	-	1	-	-
	(%)	50.0	16.7	-	-	-	-	-	16.7	-	-	-	16.7	-	-
성 착취물 제작배포	67	10	10	3	4	-	-	1	16	-	-	15	8	-	-
	(%)	14.9	14.9	4.5	6.0	-	-	1.5	23.9	-	-	22.4	11.9	-	-
성매수	110	41	23	1	3	-	-	1	7	-	-	3	30	-	1
	(%)	37.3	20.9	0.9	2.7	-	-	0.9	6.4	-	-	2.7	27.3	-	0.9
성매매 강요	16	6	-	-	-	-	-	-	-	-	-	-	1	7	2
	(%)	37.5	-	-	-	-	-	-	-	-	-	-	6.2	43.8	12.5
성매매 알선영업	39	16	1	1	-	-	-	1	-	-	-	1	1	7	11
	(%)	41.0	2.6	2.6	-	-	-	2.6	-	-	-	2.6	2.6	17.9	28.1

02 범죄 유형(접촉·비접촉)

- <표 2-5-2>는 재등록사건의 범죄 유형(접촉·비접촉)을 나타낸 것이다. 원등록사건의 경우 접촉범죄가 4,911건(77.5%), 비접촉범죄가 1,423건(22.5%)이었고, 재등록사건은 접촉범죄가 4,719건(74.5%), 비접촉범죄가 1,615건(25.5%)으로 나타나, 원등록·재등록사건 모두 접촉범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접촉범죄 재등록사건 1,615건을 살펴보면 원등록사건이 비접촉범죄인 사건은 1,069건(66.2%), 접촉범죄인 사건은 546건(33.8%)으로 비접촉범죄 사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접촉범죄 재등록사건 4,719건을 살펴보면 원등록사건이 비접촉범죄인 사건은 354건(7.5%), 접촉범죄인 사건은 4,365건(92.5%)으로 재등록사건 중 접촉범죄 사건의 원등록 사건은 대부분 접촉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접촉 범죄보다 접촉 범죄가 동일 유형으로 재등록 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5-2 재등록사건 범죄 유형(접촉·비접촉)

원등록 재등록	총계	비접촉	접촉
총계	6,334	1,423	4,911
	(%)	22.5	77.5
비접촉	1,615	1,069	546
	(%)	66.2	33.8
접촉	4,719	354	4,365
	(%)	7.5	92.5

03 범죄 발생 시기

(1) 월별

- <표 2-5-3>은 재등록대상자의 범행 월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재등록사건은 7월~8월 1,349건(21.3%), 5월~6월 1,332건(21.0%), 9월~10월 1,098건(17.4%) 등의 순으로 발생했고, 원등록사건의 경우 7월~8월에 1,421건(22.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원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의 범행 월별 현황이 비슷한 추이를 나타낸다.
- 재등록사건과 원등록사건이 모두 같은 월에 발생한 사건은 1,104건으로 전체 6,334건 중 17.4%의 비율을 나타냈다. 월별로는 7월~8월에 재등록사건 중 원등록사건의 비율은 312건(23.1%)로 가장 높았으며, 5월~6월에 18.8%, 9월~10월이 16.9% 순으로 나타났다.

2-5-3 재등록사건 발생 시기(월별)

원등록 재등록	총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총계	6,334	664	1,056	1,310	1,421	1,133	750
	(%)	10.5	16.7	20.7	22.4	17.9	11.8
1~2월	736	90	116	144	171	124	91
	(%)	12.2	15.8	19.6	23.2	16.8	12.4
3~4월	1,071	115	171	244	229	186	126
	(%)	10.7	16.0	22.8	21.4	17.4	11.7
5~6월	1,332	130	238	250	308	247	159
	(%)	9.8	17.9	18.8	23.1	18.5	11.9
7~8월	1,349	138	205	294	312	251	149
	(%)	10.2	15.2	21.8	23.1	18.6	11.1
9~10월	1,098	119	197	231	237	185	129
	(%)	10.8	17.9	21.0	21.6	16.9	11.8
11~12월	748	72	129	147	164	140	96
	(%)	9.6	17.3	19.7	21.9	18.7	12.8

(2) 시간별

- <표 2-5-4>는 재등록대상자의 범죄 발생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재등록사건은 21:00~23:59이 969건(1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18:00~20:59이 930건(14.7%), 15:00~17:59이 863건(13.6%) 순으로 나타났다.
- 원등록사건은 전체 6,334건 중 21:00~23:59의 시간대가 927건(14.6%)으로 가장 비율이 높고, 뒤이어 18:00~20:59이 896건(14.1%), 00:00~02:59이 819건(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재등록사건과 원등록사건이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은 1,311건으로 미상 284건을 제외한 전체 원등록사건 6,050건 중 21.7%이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03:00~05:59이 184건(25.0%), 21:00~23:59이 231건(24.9%), 00:00~02:59이 202건(24.7%) 등이다. 대체로 재등록사건의 범행시간과 원등록사건의 범행시간이 동일한 경우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5-4 재등록사건 발생 시기(시간별)

원등록 재등록	총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총계	6,334	819	737	804	475	601	791	896	927	284
	(%)	12.9	11.6	12.7	7.5	9.5	12.5	14.2	14.6	4.5
00:00 ~02:59	802	202	146	85	34	44	55	77	135	24
	(%)	25.2	18.2	10.6	4.2	5.5	6.9	9.6	16.8	3.0
03:00 ~05:59	645	115	184	91	48	41	38	38	63	27
	(%)	17.8	28.5	14.1	7.4	6.4	5.9	5.9	9.8	4.2
06:00 ~08:59	702	73	85	190	55	43	65	90	77	24
	(%)	10.4	12.1	27.1	7.8	6.1	9.3	12.8	11.0	3.4
09:00 ~11:59	496	53	41	71	54	66	71	70	54	16
	(%)	10.7	8.3	14.3	10.9	13.3	14.3	14.1	10.9	3.2
12:00 ~14:59	566	44	37	58	54	86	108	90	65	24
	(%)	7.8	6.5	10.2	9.6	15.2	19.1	15.9	11.5	4.2
15:00 ~17:59	863	66	43	80	78	132	170	148	114	32
	(%)	7.6	5.0	9.3	9.0	15.3	19.7	17.2	13.2	3.7
18:00 ~20:59	930	74	65	115	66	94	141	194	140	41
	(%)	7.9	7.0	12.4	7.1	10.1	15.2	20.9	15.0	4.4
21:00 ~23:59	969	150	101	94	57	61	103	136	231	36
	(%)	15.5	10.4	9.7	5.9	6.3	10.6	14.0	23.9	3.7
미상	361	42	35	20	29	34	40	53	48	60
	(%)	11.6	9.7	5.6	8.0	9.4	11.1	14.7	13.3	16.6

04 범행장소

- 〈표 2-5-5〉는 재등록사건의 범행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재등록사건은 노상 915건(14.4%), 지하철·기차 795건(12.5%), 유흥업소가 500건(7.9%) 순으로 나타났고, 원등록사건은 노상 963건(15.2%), 지하철·기차 686건(10.8%), 상업시설 458건(7.2%) 순으로 나타났다.
-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전체 338,833건 중 기타인 경우를 제외하고 노상이 48,848건(1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업소·목욕탕이 36,202건(10.7%), 아파트·연립·다세대가 35,122건(10.4%) 순이었다. 노상의 비율이 높은 점은 재등록사건의 경우와 공통적이지만,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 발생 장소의 비율은 숙박업소·목욕탕의 비율이 높은 반면, 등록사건에서는 지하철·기차의 비율이 높다는 차이점도 나타난다. (부록 〈표 4-1-10〉 참조)

- 이어서 재등록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원등록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일치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6,334건 중 1,721건(27.2%)이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살펴보면 지하철·기차의 경우가 51.8%로 가장 높았으며, 버스 44.3%, 목욕탕·찜질방 43.7%의 비율순으로 나타났다.
- 재등록 시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 1,574건을 분석해보면, 재등록 시 가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 470건 중 원등록 시에도 가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은 141건(30.0%)이었고 재등록 시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 369건 중 원등록 시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은 81건(22.0%)이었다.
- 원등록 및 재등록 시 범행 장소에 대해 비교했을 때 동일 장소에서 발생할 비율이 장소마다 달라 개별적으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5-5 재등록사건 범행 장소

원등록 재등록	총계	주거지				대중교통					자동차	주차장	상업시설	숙박시설	유흥업소	다중시설	화장실	목욕탕 탕방	학교 학원	직장	군부대	교도소	공장고 빈집	공원	노상	기타 불상	
		가해 자	피해 자	가피 해해 자자	기타	지하 하차 철	버 스	택 시	승 역강 장																		
총계	6,334	422	410	60	62	686	336	35	310	128	47	458	428	226	363	444	452	52	176	17	18	7	178	963	56		
	(%)	6.7	6.5	0.9	1.0	10.8	5.3	0.6	4.9	2.0	0.7	7.2	6.8	3.6	5.7	7.0	7.1	0.8	2.8	0.3	0.3	0.1	2.8	15.2	0.9		
주거지	가해 자	470	141	41	11	11	6	6	2	8	14	2	25	60	10	14	13	14	-	9	5	2	1	13	53	9	
		(%)	30.0	8.7	2.3	2.3	1.3	1.3	0.4	1.7	3.0	0.4	5.3	12.8	2.1	3.0	2.8	3.0	-	1.9	1.1	0.4	0.2	2.8	11.3	1.9	
	피해 자	369	34	81	10	7	6	6	3	11	14	7	21	40	10	22	14	11	1	6	-	2	-	8	49	6	
		(%)	9.2	22.0	2.7	1.9	1.6	1.6	0.8	3.0	3.8	1.9	5.7	10.8	2.7	6.0	3.8	3.0	0.3	1.6	-	0.5	-	2.2	13.3	1.6	
	가피 해해 자자	68	11	7	10	1	2	-	-	2	4	-	1	11	-	2	2	6	-	1	-	2	1	1	4	-	
		(%)	16.2	10.3	14.7	1.5	2.9	-	-	2.9	5.9	-	1.5	16.2	-	2.9	2.9	8.8	-	1.5	-	2.9	1.5	1.5	5.9	-	
	기타	48	7	6	1	3	-	-	1	-	1	-	3	6	3	3	2	2	-	-	-	-	1	1	6	2	
		(%)	14.6	12.5	2.1	6.2	-	-	2.1	-	2.1	-	6.2	12.5	6.2	6.2	4.2	4.2	-	-	-	-	2.1	2.1	12.5	4.2	
	대중교통	지하 하차 철	795	12	15	1	-	412	49	-	53	4	2	30	15	9	39	24	22	6	6	-	-	-	13	82	1
			(%)	1.5	1.9	0.1	-	51.8	6.2	-	6.7	0.5	0.2	3.8	1.9	1.1	4.9	3.0	2.8	0.8	0.8	-	-	-	1.6	10.3	0.1
버 스		359	2	2	-	-	53	159	-	26	1	-	10	2	1	14	16	20	3	7	-	-	-	5	36	2	
		(%)	0.6	0.6	-	-	14.7	44.3	-	7.2	0.3	-	2.8	0.6	0.3	3.9	4.4	5.6	0.8	1.9	-	-	-	1.4	10.0	0.6	
택 시		25	3	1	-	-	2	8	1	-	-	1	-	2	-	1	2	-	-	-	-	-	-	4	-		
		(%)	12.0	4.0	-	-	-	8.0	32.0	4.0	-	-	4.0	-	8.0	-	4.0	8.0	-	-	-	-	-	-	16.0	-	
승 역강 장		233	4	9	-	-	35	14	-	71	2	-	11	5	4	10	12	7	2	5	-	-	-	9	33	-	
		(%)	1.7	3.9	-	-	15.0	6.0	-	30.5	0.9	-	4.7	2.1	1.7	4.3	5.1	3.0	0.9	2.1	-	-	-	3.9	14.2	-	
자동차	152	14	10	2	1	2	2	6	1	33	4	7	23	2	10	2	2	1	6	-	-	-	8	12	4		
	(%)	9.2	6.6	1.3	0.7	1.3	1.3	4.0	0.7	21.7	2.6	4.6	15.1	1.3	6.6	1.3	1.3	0.7	4.0	-	-	-	5.2	7.9	2.6		
주차장	48	5	5	-	-	1	1	-	3	2	2	3	5	-	2	2	-	-	-	-	-	-	2	14	1		
	(%)	10.4	10.4	-	-	2.0	2.0	-	6.3	4.2	4.2	6.3	10.4	-	4.2	4.2	-	-	-	-	-	-	4.2	29.2	2.0		
상업시설	177	4	7	1	3	21	3	1	5	2	2	35	7	2	14	10	8	7	10	-	-	-	7	28	-		
	(%)	2.2	4.0	0.6	1.7	11.9	1.7	0.6	2.8	1.1	1.1	19.8	4.0	1.1	7.9	5.6	4.5	4.0	5.6	-	-	-	4.0	15.8	-		
숙박 시설	209	23	16	2	4	4	2	-	2	4	-	13	52	10	12	4	10	2	22	1	-	-	3	23	-		
	(%)	11.0	7.6	1.0	1.9	1.9	1.0	-	1.0	1.9	-	6.2	24.9	4.8	5.7	1.9	4.8	1.0	10.5	0.5	-	-	1.4	11.0	-		

원등록 재등록	총계	주거지				대중교통				자 동 차	주 차 장	상 업 시 설	숙 박 시 설	유 형 업 소	다 중 시 설	화 장 실	목 욕 탕· 찜질방	학 교· 학원	직 장	군 부 대	교 도 소	공 장· 창고· 빈집	공 원	노 상	기타 불상
		가 해 자	피 해 자	가 피 해 자	기 타	기 지 하 차 철	버 스	택 시	승 역 장																
유형 업소	500	26	35	4	2	15	14	1	19	13	1	110	21	56	32	18	10	4	17	-	-	1	13	85	3
	(%)	5.2	7.0	0.8	0.4	3.0	2.8	0.2	3.8	2.6	0.2	22.0	4.2	11.2	6.4	3.6	2.0	0.8	3.4	-	-	0.2	2.6	17.0	0.6
다중 시설	421	33	31	3	12	19	9	2	10	13	3	28	81	12	36	21	18	5	10	-	-	1	11	52	11
	(%)	7.8	7.4	0.7	2.8	4.5	2.1	0.5	2.4	3.1	0.7	6.7	19.2	2.8	8.6	5.0	4.3	1.2	2.4	-	-	0.2	2.6	12.4	2.6
화장실	296	14	17	-	3	18	6	-	9	6	2	25	21	29	10	78	9	-	7	1	-	-	7	34	-
	(%)	4.7	5.7	-	1.0	6.1	2.0	-	3.0	2.0	0.7	8.5	7.1	9.8	3.4	26.4	3.0	-	2.4	0.3	-	-	2.4	11.5	-
목욕탕· 찜질방	341	7	15	2	-	15	15	1	13	1	1	21	10	5	24	19	149	1	7	-	1	-	-	34	-
	(%)	2.0	4.4	0.6	-	4.4	4.4	0.3	3.8	0.3	0.3	6.2	2.9	1.5	7.0	5.6	43.7	0.3	2.0	-	0.3	-	-	10.0	-
학교· 학원	172	2	6	3	-	8	8	-	2	-	1	2	-	4	4	7	105	2	1	1	1	-	5	9	1
	(%)	1.2	3.5	1.7	-	4.6	4.6	-	1.2	-	0.6	1.2	-	2.3	2.3	4.1	61.0	1.2	0.6	0.6	-	-	2.9	5.2	0.6
직장	426	13	22	1	6	15	10	1	14	3	2	25	13	20	22	149	19	4	34	3	1	-	6	38	5
	(%)	3.0	5.2	0.2	1.4	3.5	2.4	0.2	3.3	0.7	0.5	5.9	3.0	4.7	5.2	35.0	4.5	0.9	8.0	0.7	0.2	-	1.4	8.9	1.2
군부대	10	2	-	-	-	-	-	-	-	-	-	-	-	-	2	1	-	-	-	3	-	-	-	2	-
	(%)	20.0	-	-	-	-	-	-	-	-	-	-	-	-	20.0	10.0	-	-	-	30.0	-	-	-	20.0	-
교도소	101	10	15	4	2	-	-	2	4	3	1	6	11	4	10	2	7	1	-	1	9	1	3	4	1
	(%)	9.9	14.9	3.9	2.0	-	-	2.0	3.9	3.0	1.0	6.0	10.9	3.9	9.9	2.0	6.9	1.0	-	1.0	8.9	1.0	3.0	3.9	1.0
공장· 창고· 빈집	11	1	1	-	1	-	-	-	-	-	-	1	1	-	-	-	1	-	-	-	-	-	1	3	1
	(%)	9.1	9.1	-	9.1	-	-	-	-	-	-	9.1	9.1	-	-	-	9.1	-	-	-	-	-	9.0	27.3	9.1
공원	144	9	13	-	-	7	3	1	3	2	2	7	8	4	16	7	6	3	2	-	-	-	20	31	-
	(%)	6.2	9.0	-	-	4.9	2.1	0.7	2.1	1.4	1.4	4.9	5.5	2.8	11.1	4.9	4.1	2.1	1.4	-	-	-	13.9	21.5	-
노상	915	36	55	5	4	47	23	6	50	5	14	69	31	39	64	35	24	10	26	2	-	1	41	323	5
	(%)	3.9	6.0	0.6	0.4	5.1	2.5	0.7	5.5	0.6	1.5	7.5	3.4	4.3	7.0	3.8	2.6	1.1	2.8	0.2	-	0.1	4.5	35.3	0.6
기타· 불상	44	9	-	-	2	-	4	-	3	1	1	4	5	-	1	5	-	-	-	-	-	-	1	4	4
	(%)	20.5	-	-	4.5	-	9.1	-	6.8	2.3	2.3	9.1	11.3	-	2.3	11.3	-	-	-	-	-	-	2.3	9.1	9.1

05 음주

- <표 2-5-6>은 재등록대상자의 범행 당시 음주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판결문에 음주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음주’로 분류하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분류하였다.
- 전체 재등록사건 6,334건 중 재등록 사건 범행 시 음주한 상태였던 대상자 564건 중 원등록사건이 음주한 상태였던 대상자는 176건(31.2%)이었고 재등록 사건 시 음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지른 5,770건 중 원등록사건이 음주한 상태였던 대상자는 446건(7.7%)으로 나타났다.

2-5-6 재등록대상자 음주 여부

원등록 재등록	총계	음주	해당없음
총계	6,334	622	5,712
	(%)	9.8	90.2
음주	564	176	388
	(%)	31.2	68.8
해당없음	5,770	446	5,324
	(%)	7.7	92.3

06 공범

- <표 2-5-7>은 재등록대상자의 공범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재등록사건은 전체 6,334건 중 126건 (2.0%)이 공범이 있었으며 원등록사건은 전체 6,334건 중 173건(2.7%)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등록·재등록사건 모두 공범이 있는 경우는 44건으로 34.9%를 차지했다.
-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 공범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29,301명 중 단독범의 경우 315,567명 (95.8%)이며, 공범이 있는 성범죄자는 13,734명(4.2%)이다. 등록대상사건에서 단독범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부록 <표 4-1-11> 참조)
- 재등록대상자를 분석해 보면, 재등록 당시 단독범이었던 6,208건 중 원등록사건이 단독범인 사건은 6,079건(97.9%)이고 공범이 있는 사건은 129건(2.1%)으로 나타났고, 재등록 당시 공범이 있었던 사건 126건 중 원등록사건이 단독범인 사건은 82건(65.1%)이고 원등록사건이 공범이 있는 사건은 44건 (34.9%)으로 나타났다.

2-5-7 재등록대상자 공범 여부

원등록 재등록	총계	단독범	공범 있음
총계	6,334	6,161	173
	(%)	97.3	2.7
단독범	6,208	6,079	129
	(%)	97.9	2.1
공범 있음	126	82	44
	(%)	65.1	34.9

07 피해자

- 재등록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분석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수,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였음을 참고하길 바란다.

(1) 피해자 연령별 구분(아동·성인)

- <표 2-5-8>은 피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 성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이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 편의상 '아동'으로 표기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연령대가 상이한 경우 '아동&성인'으로 표기하였다.
- 재등록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 사건이 4,277건(67.5%), 아동 1,463건(23.1%), 불상 416건(6.6%), 아동·성인 178건(2.8%) 순으로 나타났고, 원등록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이 3,818건(60.3%), 아동 2,013건(31.8%), 불상 310건(4.9%), 아동·성인 193건(3.0%)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가 아동이었던 재등록사건 1,463건 중 892건(61%)이 원등록사건에서 아동이 피해자였고 성인이 피해자인 사건은 499건(34.1%)으로 재등록 사건의 피해자가 아동이면, 원등록 사건의 피해자가 아동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8 피해자 연령별 구분(아동·성인)

원등록 재등록	총계	성인	아동	아동 & 성인	불상
총계	6,334	3,818	2,013	193	310
	(%)	60.3	31.8	3	4.9
성인	4,277	2,986	992	125	174
	(%)	69.8	23.2	2.9	4.1
아동	1,463	499	892	43	29
	(%)	34.1	61.0	2.9	2.0
아동 & 성인	178	102	56	12	8
	(%)	57.3	31.5	6.7	4.5
불상	416	231	73	13	99
	(%)	55.5	17.6	3.1	23.8

(2) 피해자 성별

- <표 2-5-9>는 피해자 성별을 나타낸 것이다. 재등록사건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5,779건(91.2%), 남성인 경우는 348건(5.5%)으로 나타났고 원등록사건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5,903건(93.2%),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262건(4.1%)으로 나타났다. 원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의 피해자 성별 비율에서 유의미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재등록사건에서 남성 피해자가 348건으로 원등록사건 262건보다 86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등록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5,779건 중 원등록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었던 건수는 46건 (0.8%)이며, 재등록사건에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원등록사건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135건(38.8%)이다.

 2-5-9 피해자 성별

원등록 재등록	총계	남	여	미상
총계	6,334	262	5,903	169
	(%)	4.1	93.2	2.7
남	348	180	135	33
	(%)	51.7	38.8	9.5
여	5,779	46	5,619	114
	(%)	0.8	97.2	2.0
미상	207	36	149	22
	(%)	17.4	72.0	10.6

(3) 피해자 장애 여부

- <표 2-5-10>은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재등록사건의 경우 147건(2.3%)이 피해자가 장애 등이 있는 경우였고, 원등록사건 중에서는 136건(2.1%)이 피해자가 장애 등이 있는 경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재등록사건의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147건 중 원등록 사건의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건은 39건(26.5%), 장애가 없는 사건은 108건(73.5%)이며 이 수치는 전체 재등록 사건의 피해자가 장애가 있을 확률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알 수 있다.

2-5-10 피해자 장애 여부

원등록 재등록	총계	장애 있음	없음
총계	6,334	136	6,198
	(%)	2.1	97.9
장애 있음	147	39	108
	(%)	26.5	73.5
없음	6,187	97	6,090
	(%)	1.6	98.4

(4) 피해자 인원수

- <표 2-5-11>은 피해자 인원수를 나타낸 것이다. 재등록사건의 경우는 피해자 1명이 4,759건(75.1%), 피해자 2명이 694건(10.9%), 피해자 3명이 227건(3.6%), 피해자 4명이 105건(1.7%), 5명 이상이 549건(8.7%)으로 나타났다.
- 원등록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명이었던 사건이 4,714건(74.3%), 피해자 2명이 721건(11.4%), 3명이 257건(4.1%), 4명이 106건(1.7%), 5명 이상이 536건(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의 피해자 인원수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11 피해자 수

원등록 재등록	총계	1	2	3	4	5이상
총계	6,334	4,714	721	257	106	536
	(%)	74.4	11.4	4.0	1.7	8.5
1	4,759	3,741	550	172	67	229
	(%)	78.6	11.6	3.6	1.4	4.8
2	694	500	96	34	15	49
	(%)	72.0	13.8	4.9	2.2	7.1
3	227	154	21	18	7	27
	(%)	67.8	9.3	7.9	3.1	11.9
4	105	59	11	10	7	18
	(%)	56.2	10.5	9.5	6.7	17.1
5이상	549	260	43	23	10	213
	(%)	47.4	7.8	4.2	1.8	38.8

(5) 피해자와의 관계

- <표 2-5-12>는 원등록 사건과 재등록 사건의 피해자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재등록사건의 경우 대상자가 낯선사람인 사건 3,342건(52.8%), 일시적 만남인 사건 1,773건(28.0%), 지인인 사건 1,109건(17.5%), 가족인 사건 64건(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등록사건의 경우 대상자가 낯선사람인 사건 3,550건(56.0%), 일시적 만남(또는 1회 만난 사람)인 사건 1,600건(25.3%), 지인인 사건 1,029건(16.2%), 가족인 사건 59건(0.9%) 순으로 그 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재등록사건 6,334건 중 원등록 사건 피해자 관계와 동일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3,543건(55.9%)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대상자가 낯선사람인 사건이 동일한 피해자 관계의 재등록 사건이 등록된 경우가 2,452건(6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일시적 만남 759건(21.4%), 기타 지인 252건(7.1%), 애인 16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5-12 피해자와의 관계

원등록 재등록	총계	가족·친족							지인						그 외		
		친모	친부	계부	형제	배우자	친척	기타 친족	애인	친구	직장 동료	권력 관계	학교 선후배	기타 지인	일시적 만남	낯선 사람	기타
총계	6,334	2	15	12	1	4	5	20	84	29	30	106	19	761	1,600	3,550	96
	(%)	0.0	0.2	0.2	0.0	0.1	0.1	0.3	1.3	0.5	0.5	1.7	0.3	12.0	25.3	56.0	1.5
가족·친족	친모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친부	21	-	7	-	-	-	2	-	-	-	-	-	5	1	5	1
		(%)	-	33.3	-	-	-	9.5	-	-	-	-	-	23.8	4.8	23.8	4.8
	계부	11	-	-	5	-	-	1	-	-	-	-	-	3	-	2	-
		(%)	-	-	45.5	-	-	9.1	-	-	-	-	-	27.3	-	18.2	-
	형제	2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100.0	-
	배우자	13	-	1	-	-	-	-	-	-	-	-	-	2	4	6	-
		(%)	-	7.7	-	-	-	-	-	-	-	-	-	15.4	30.8	46.2	-
	친척	8	-	-	-	1	-	2	-	-	-	-	-	2	1	2	-
		(%)	-	-	-	12.5	-	25.0	-	-	-	-	-	25.0	12.5	25.0	-
	기타 친족	9	-	-	-	-	-	1	-	-	-	-	-	2	3	3	-
		(%)	-	-	-	-	-	11.1	-	-	-	-	-	22.2	33.3	33.3	-
지인	애인	109	-	-	-	1	-	-	16	3	1	4	1	32	33	18	-
		(%)	-	-	-	0.9	-	-	14.7	2.8	0.9	3.7	0.9	29.4	30.3	16.5	-
	친구	26	-	-	-	-	-	-	2	-	1	-	1	8	8	6	-
		(%)	-	-	-	-	-	-	7.7	-	3.8	-	3.8	30.8	30.8	23.1	-
	직장 동료	45	-	-	-	-	-	1	3	-	4	2	-	7	11	15	2
		(%)	-	-	-	-	-	2.2	6.7	-	8.9	4.4	-	15.6	24.4	33.3	4.4

원등록 재등록		총계	가족·친족							지인					그 외			
			친모	친부	계부	형제	배우자	친척	기타 친족	애인	친구	직장 동료	권력 관계	학교 선후배	기타 지인	일시적 만남	낯선 사람	기타
그 외	권력 관계	116	-	-	1	-	-	-	2	3	-	2	40	-	26	22	20	-
		(%)	-	-	0.9	-	-	-	1.7	2.6	-	1.7	34.5	-	22.4	19.0	17.2	-
	학교 선후배	10	-	-	-	-	-	-	-	1	-	-	-	2	3	2	1	1
		(%)	-	-	-	-	-	-	-	10.0	-	-	-	20.0	30.0	20.0	10.0	10.0
	기타 지인	803	2	2	2	-	3	2	7	19	7	5	21	6	252	164	304	7
		(%)	0.2	0.2	0.2	-	0.4	0.2	0.9	2.4	0.9	0.6	2.6	0.7	31.4	20.4	37.9	0.9
	일시적 만남	1,773	-	4	-	-	-	-	6	29	14	7	22	7	198	759	692	35
		(%)	-	0.2	-	-	-	-	0.3	1.6	0.8	0.4	1.2	0.4	11.2	42.8	39.0	2.0
	낯선 사람	3,342	-	1	4	-	-	1	-	9	5	9	17	2	217	578	2,452	47
		(%)	-	0.0	0.1	-	-	0.0	-	0.3	0.1	0.3	0.5	0.1	6.5	17.3	73.4	1.4
	기타	46	-	-	-	-	-	-	-	2	-	1	-	-	4	14	22	3
		(%)	-	-	-	-	-	-	-	4.3	-	2.2	-	-	8.7	30.4	47.8	6.5

제 6 절



분석 요약 및 주요 동향

01 성범죄 분석 요약

-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성폭력범죄⁷⁾ 발생건수는 전체 354,518건이고, 등록대상사건⁸⁾의 등록 누계 건수는 2021년 기준 114,420건, 재등록사건 등록 누계 건수는 6,334건이다. (부록 <표 4-1-1> 참조)
-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최근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2008년 16,234건에서 2020년 30,105건으로 약 1.8배 증가하였고, 등록대상사건 또한 2008년 264건에서 2021년 13,485건으로 약 51배 증가하였다. 재등록사건의 경우 2009년 1건을 시작으로 2021년 1,106건으로 증가하였다.
- 등록유형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등록사건은 2008년 115명을 시작으로 2021년 12,958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공개대상자는 2008년 149명에서 2021년 23명으로 감소하였다. 고지대상자 또한 2012년 2,289명에서 2021년 504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

(1) 발생월

- 성폭력범죄의 발생월을 보면, 전체 성폭력범죄 354,518건 중 7월~8월에 54,228건(15.3%), 7월 36,756건, 8월 36,712건이 발생하였고, 1월~2월에는 40,805건(11.5%), 1월 20,869건, 2월 19,936건이 발생하였다. 여름철에 성폭력범죄 발생 비율이 겨울철보다 약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록 <표 5-1-2> 참조)
- 등록대상사건도 비교하여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7월~8월에 24,428건(18.1%)으로 가장 많았으며, 1월~2월에 13,830건(10.2%)으로 가장 적었다. 재등록사건 또한 7월~8월에 1,349건(21.3%)으로 가장 많았고, 1월~2월에 736건(11.6%)으로 가장 적었다.

7) 21년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의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성폭력 범죄

8)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신상정보등록이 된 성범죄 사건

-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성범죄 발생은 계절의 영향에 따라 빈도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발생시간

- 성폭력범죄의 범죄 발생시간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20:00~03:59시간대에 42,105건(34.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09:00~11:59 시간대가 7,409건(6.1%)으로 가장 적었다.
- 2014년 이후로는 비교시간대가 변경되었는데, 21:00~23:59 시간대가 34,372건(15.8%)으로 가장 많았고, 09:00~08:59 시간대가 15,762건(7.2%)으로 가장 적었다. 비교시간대가 변경되어도 저녁시간대의 성폭력범죄 발생이 많고, 아침시간대가 적음을 알 수 있다.(부록 <표 4-1-3>, <표 4-1-4> 참조)
- 등록대상사건도 비교하여 살펴보면, 21:00~23:59 시간대가 18,783건(16.4%)으로 가장 많았으며, 09:00~11:59 시간대가 7,496건(6.6%)으로 가장 적었다. 재등록사건은 21:00~23:59 시간대에 969건(15.3%)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09:00~11:59에 496건(7.8%)이 발생하여 가장 적었다.
- 성폭력범죄와 등록대상사건과 재등록사건 모두 21:00~23: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 반면, 09:00~11:59 시간대에 가장 적게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3) 성별

- 성폭력범죄자의 성별을 보면, 전체 누적 338,845명 중 여성은 8,229명으로 2.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1% 내외를 유지하다 2012년 처음 2%대 비율을 나타냈으며, 2020년에는 3.8%였다.(부록 <표 4-1-5> 참조)
- 등록대상사건 114,420건 중 등록대상자가 여성인 경우는 1,320건(1.2%)으로, 2008년 0.4%에서 2021년 1.8%까지 증가하였다.
- 종합적인 성별 비교 결과, 성폭력범죄자와 등록대상사건, 재등록사건의 경우에 모두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상당히 적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연령

- 성폭력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19~30세가 96,504명(28.5%)으로 가장 많으며, 19세 미만이 109명(0.0%)으로 가장 적다. 61세 이상도 24,487명으로 7.2% 비율을 보이고 있다.(부록 <표 4-1-6> 참조)
- 등록대상사건도 비교하여 살펴보면, 20~30대가 34,170건(45.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세 이하는 4,127건(3.6%)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도 11,197건(9.8%)으로 전체적으로 성범죄자의 연령과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5) 직업

- 성폭력범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72,290명(21.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회사원 57,507명(17.1%), 학생 46,700명(14.1%) 순이다.(부록 <표 4-1-7> 참조)
- 등록대상사건도 비교하여 살펴보면, 무직이 44,326건(38.7%)으로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뒤이어 사무종사자 17,286건(15.1%), 단순노무 종사자 17,265건(15.1%), 학생 3,730(3.3%) 순으로 나타났다.

(6) 국적

- 성폭력범죄자의 국적을 보면, 전체 누적 338,545명 중 내국인은 330,614명(97.7%)이며, 외국인은 7,931명(2.3%)이다. 외국인의 국적으로는 중국이 2,850명(35.9%)으로 가장 많고, 미국 664명(8.4%), 몽골 458명(5.8%) 순이다.(부록 <표 4-1-8> 참조)
- 등록대상사건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 누적 114,420건 중 내국인이 111,719건(97.6%), 외국인이 2,701건(2.4%)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의 국적으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중국이 961건(35.6%), 미국이 195건(7.2%), 우즈베키스탄이 166건(6.1%)이다. 재등록사건의 경우 전체 21건 중 중국이 8건(38.0%), 대만이 4건(19.0%) 순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범죄자와 등록대상사건의 국적 분석 결과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재등록 사건

- 2008년부터 2021년 동안 등록된 전체 114,420건의 등록대상사건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은 6,334건이다. 재등록된 사건의 원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처분유형을 살펴보면 재등록사건 6,334건 중 등록대상사건이 4,223건(66.7%) 공개·고지사건이 2,070건(32.7%) 공개사건이 41건(0.6%)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등록사건 중 등록대상사건 85.9%, 공개·고지대상사건 11.8%, 공개대상사건 2.3%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했을 때 재등록사건의 경우 공개·고지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 선고형을 살펴보면 재등록사건 6,334건 중 징역형 3,506건(55.35%), 집행유예 1,931건(30.49%), 벌금형 884건(13.96%)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등록사건 중 집행유예 41.9%, 벌금형 31.3%, 징역형 24.9%, 선고유예 1.8%인 것과 비교했을 때 재등록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재등록사건이 원등록사건에서 같은 죄명으로 재등록된 사건 비율을 살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64.1%, 강제추행 61.2%, 공중밀집장소추행 57.9%로 나타났다.

- 재등록사건과 원등록사건 접촉범죄 여부를 살펴보면, 재등록사건의 경우 접촉범죄가 74.5%, 비접촉범죄가 25.5%로 나타났고, 원등록사건의 경우 접촉범죄가 77.5%, 비접촉범죄가 22.5%로 나타났다.

02 신상등록은 지속적 증가, 공개·고지 대상은 감소 추세

- 신상정보등록사건은 2008년 264건 등록 후 2018년에는 한해 14,053건이 등록되었고 2021년에는 13,485건이 등록되어 2008년과 비교하여 51배 증가하였다. 2011년부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등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신상정보등록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며 이전 백서의 추산대로 2020년 10만 건을 넘어 2021년 전체 실시사건 수는 114,420건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죄명별로 살펴봤을 때 모든 성범죄가 증가된 것은 아니다. 강간 등의 경우는 2014년 3,246건에서 2021년 2,356건으로 감소하였고, 연도별 등록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44.8%에서 2021년 17.5%로 감소하였다.
- 반면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강제추행은 2013년 2,166건에서 2021년 6,599건으로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고, 연도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36.1%에서 2021년 48.9%로 늘어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2013년 412건에서 2021년 2,113건으로 5.1배로 눈에 띄게 급증하였으며 전체 등록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7%에서 2021년 15.7%로 늘어났다.
- 이처럼 강간 등의 범죄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범죄의 증가로 등록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등록유형별로 보면, 공개는 2008년 149건에서 2011년 1,016건으로 증가한 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2021년에는 23건에 불과하였다. 공개·고지는 고지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 455건에서 2013년 2,284건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2014년부터 꾸준히 줄어들었고 2021년에는 504건에 그쳤다.
- 등록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된 2014년에 등록대상사건이 78.8%, 공개대상사건이 0.7%, 고지대상사건이 20.5%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에는 등록대상사건이 96.1%인 반면 공개대상사건은 0.2%, 공개·고지대상사건은 3.7%에 불과할 정도로 등록대상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개·고지대상사건은 급감하고 있다.

03 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등록 사건 급증

- 최근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여성은 성폭행 범죄보다 불법촬영에 더 높은 불안감을 보인다.⁹⁾ 불법촬영에 대해 불안감이 큰 것은 피해자가 일상생활 중 부지불식간에 촬영을 당하고, 인터넷을 통해 촬영된 영상이 확산되면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2013년에 신상등록 성범죄에 처음 포함되었다. 2013년 412건이 등록된 이후 매년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2,113건으로 5.1배로 급증하였다. 신고형을 보면 벌금형(50.5%), 집행유예(35.4%), 징역(10.7%) 순이고 대상자 연령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30대(19.9%), 20대(19.0%), 19세 이하(10.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20대가 5,780건(36.5%), 30대 1,831(11.5%), 10대 1,777건(11.2%) 순으로 나타났다.
- 주목할 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체 등록사건에 비해 재등록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전체등록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비중은 13.9%인 반면에 재등록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비중은 17.1%로 나타났다. 또한 원등록 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동종범죄로 재등록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등록된 사건은 1,082건인데, 이 중 원등록 사건의 죄명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 사건은 641건(64.1%)으로 동일 범죄일 확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사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대상자의 연령이 30대 이하가 49%로 대부분 젊은 층이라는 점,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¹⁰⁾ 등을 고려하여 교육 강화 및 전문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9) 서울 여성 3,892명 대상으로 범죄별 불안도 설문조사 결과 : 불법촬영 1,246명(32.0%), 성폭행·추행 1,131(29.1%), 주거침입 910(23.4%), 스토킹 595(15.3%) 순으로 나옴(2019년 서울경찰청 자료)

10) 비접촉 성범죄는 성행위 방식이나 성행위 본질에서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속하는 성적 일탈 유형으로 DSM-5에서 변태성욕장애에 포함된다. 범죄 행위에 따라 단순 경미한 행위에서부터 심각한 행위까지 그 성적 일탈 범죄가 매우 광범위하고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성도착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접촉 성범죄자들이 성범죄 '경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주로 비접촉 성범죄다.



성범죄자의 사회내 처우 현황

제1절 보호관찰 현황

제2절 사회봉사명령 현황

제3절 수강명령(이수명령) 현황

제4절 전자감독 현황

제5절 성충동 약물치료 현황

제6절 청구전조사 등 현황

제 1 절



보호관찰 현황

-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해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 이 중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1994년 4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가 흉포화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1년의 보호관찰을,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그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996년 7월 1일 실시된 「형법」 및 1997년 1월 1일 실시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관찰이 확대되었으며, 2008년 9월 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을 실시하였다.
- 그리고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더욱 확대되었고, 2010년 3월에 발생한 부산 여중생 강간살해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2011년 7월 24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다시 한번 강화되었다.
- 보호관찰소에서는 사범별 범죄개별처우의 실천,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10년 사범별 지도감독 매뉴얼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부터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6월부터는 집중 면담과 외부전문가 연계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3-1-1 성폭력범죄자 대상 보호관찰 도입 시기

도입(시행일)	법률
1994. 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
1997. 1. 1.	「형법」
2008. 10. 28.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2012. 12.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2011. 7. 2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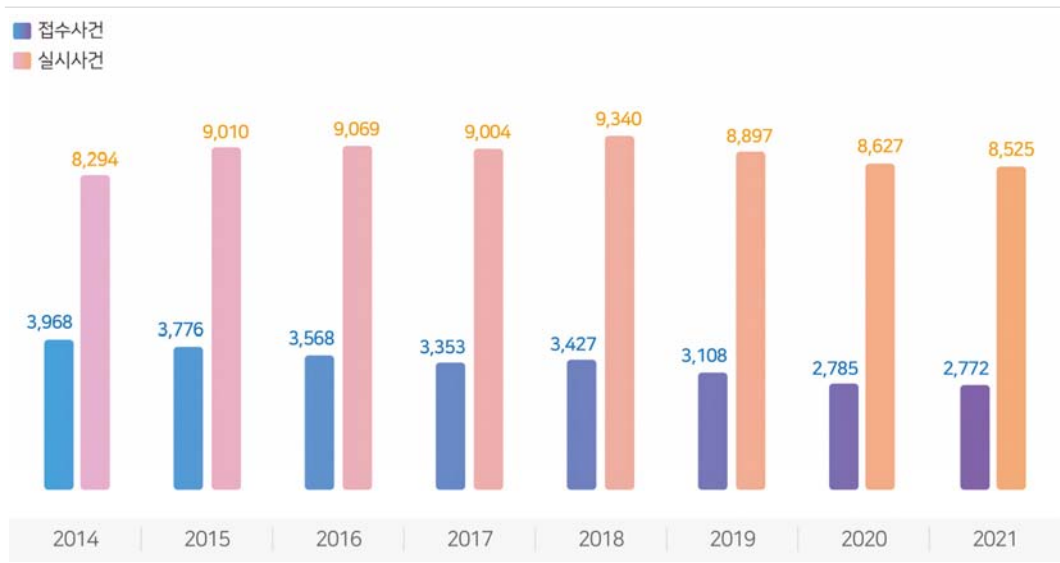
01 접수사건 및 실시사건(병과자, 전자감독 포함)

- <표 3-1-2>는 성폭력을 저지른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 접수사건 및 실시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접수사건은 2014년 3,968건이었으나 이후 점점 감소하여 2021년 2,772건으로 줄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연도별 접수사건과 달리 기간의 개념이 반영된 실시사건의 경우 2014년 8,294건에서 2018년 9,340건까지 증가하다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 보호관찰 접수사건 및 실시사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접수사건	3,968	3,776	3,568	3,353	3,427	3,108	2,785	2,772
실시사건	8,294	9,010	9,069	9,004	9,340	8,897	8,627	8,525

3-1-1 보호관찰 접수사건 및 실시사건



02 성별(실시사건)

- <표 3-1-3>은 성별에 따른 보호관찰 실시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남성의 경우 전체의 약 98%를 차지하였으며, 2014년 8,120건, 2018년 9,169건, 2021년 8,403건으로 전체 추이와 마찬가지로 증감을 반복하였고, 여성의 경우에는 ‘성폭력 사범’이라는 특수성으로 그 숫자가 미미하여 통계적 의미는 없다고 하겠다.

3-1-3 성별에 따른 보호관찰 실시사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8,294	9,010	9,069	9,004	9,340	8,897	8,627	8,525
남	8,120	8,908	8,967	8,828	9,169	8,763	8,503	8,403
여	174	102	102	176	171	134	124	122

3-1-2 성별에 따른 보호관찰 실시사건



03 재범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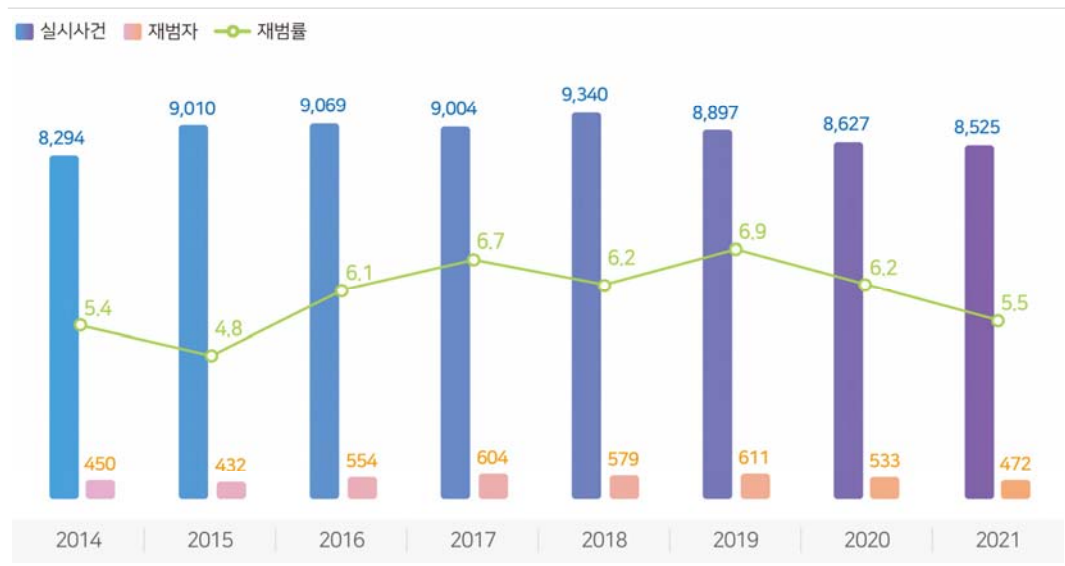
(1) 성폭력사범 재범률(전체)

- <표 3-1-4>는 성폭력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전체 8,294건 중 450건의 재범이 발생하여 5.4%의 재범률을 나타냈고, 2015년에는 재범률이 4.8%로 낮아졌으나, 그 이후 등락을 반복하여 2021년에는 5.5%를 기록하였다. 2015년 재범률이 4.8%로 가장 낮았고, 2019년 재범률이 6.9%로 가장 높았다.

3-1-4 성폭력사범 재범률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시사건	8,294	9,010	9,069	9,004	9,340	8,897	8,627	8,525
재범자	450	432	554	604	579	611	533	472
재범률	5.4	4.8	6.1	6.7	6.2	6.9	6.2	5.5

3-1-3 성폭력사범 재범률



(2) 성폭력사범 재범률(동종)

- <표 3-1-5>는 보호관찰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을 나타낸 것이다. 재범자의 수는 2017년 190건(2.1%)까지 늘었다가 2021년에는 158건(1.9%)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3-1-5 성폭력사범 재범률(동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시사건	8,294	9,010	9,069	9,004	9,340	8,897	8,627	8,525
재범자	156	154	164	190	185	176	157	158
재범률	1.9	1.7	1.8	2.1	2.0	2.0	1.8	1.9

제 2 절



사회봉사명령 현황

-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원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무보수 강제노동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범죄인의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여가 시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처벌효과가 크고 공공의 이익증진에 도움이 되며, 범죄인의 구금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¹¹⁾
-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은 1989년 소년법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가 1995년 개정된 「형법」에 사회봉사명령이 규정되었고 1996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다. 2011년 4월에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2년 12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확대되었다.
- 보호관찰소에서는 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여성, 아동, 장애인 이용시설 제외)에서의 협력 집행 및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복지 지원, 영세농가 일손 돕기 등 농촌지원, 태풍·폭우·폭설로 인한 재난복구 등 대민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1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2011. 9.) 사회봉사·수감명령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방안 손외철 9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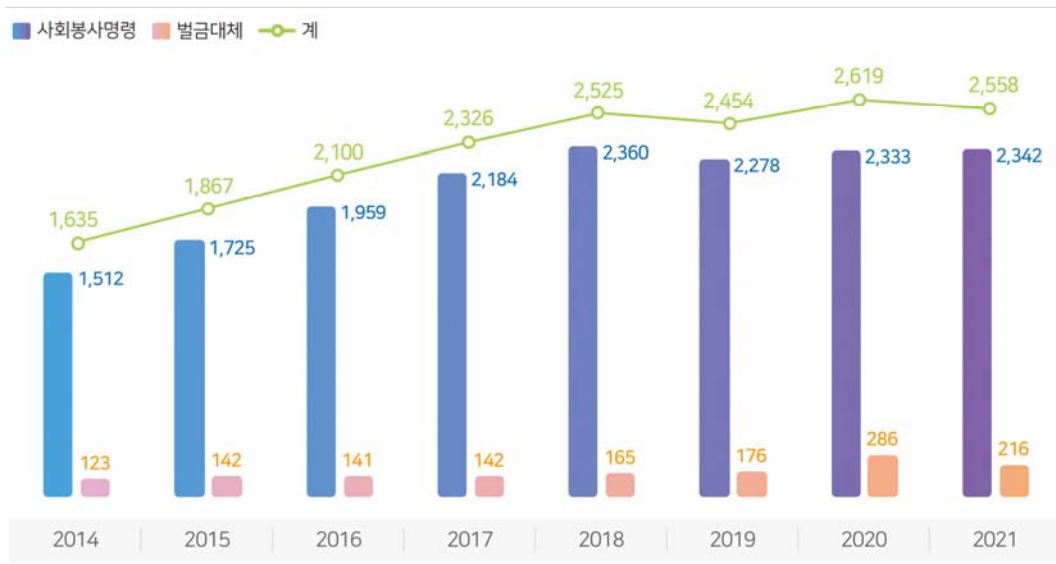
01 접수사건

- <표 3-2-1>은 성폭력 대상자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1,512건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고 이어 2015년 1,725건, 2016년 1,959건, 2017년 2,184건, 2018년 2,360건 등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2,278건으로 소폭 감소 후 2021년 2,34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 접수현황은 2014년 123건, 2015년 142건, 2016년 141건, 2017년 142건, 2018년 165건 등으로 5년 동안 수치의 큰 변화가 없다가 2020년 28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후 2021년 216건이 부과되었다.

3-2-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635	1,867	2,100	2,326	2,525	2,454	2,619	2,558
사회봉사명령	1,512	1,725	1,959	2,184	2,360	2,278	2,333	2,342
벌금대체	123	142	141	142	165	176	286	216

3-2-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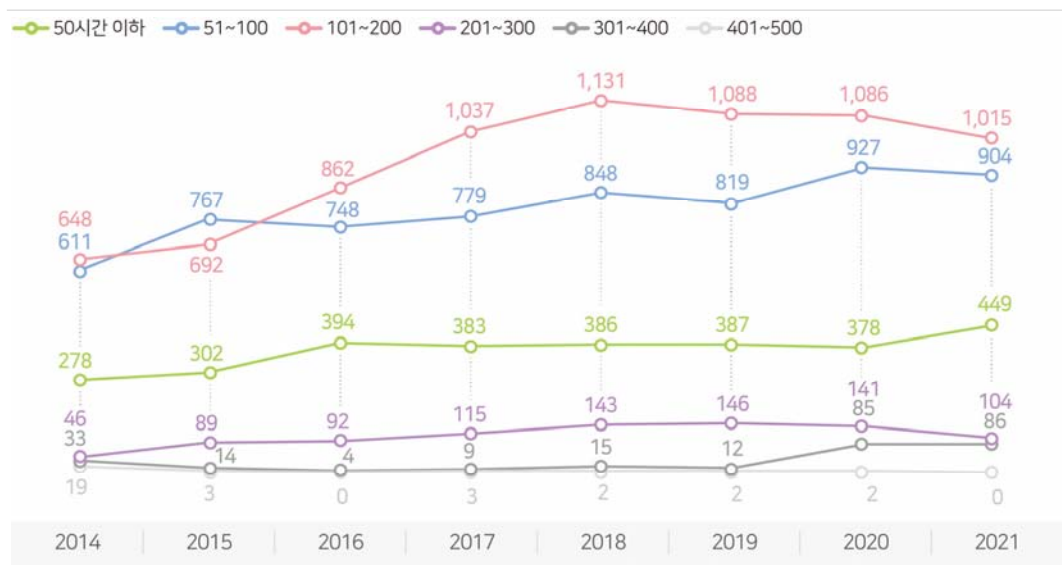
02 부과시간

- <표 3-2-2>는 접수된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시간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부과 시간별 접수 분포를 살펴보면, 51~100시간 부과가 가장 많았던 2015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101~200시간 부과된 사건수가 가장 많았다.

3-2-2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간별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635	1,867	2,100	2,326	2,525	2,454	2,619	2,558
50시간 이하	278	302	394	383	386	387	378	449
51~100	611	767	748	779	848	819	927	904
101~200	648	692	862	1,037	1,131	1,088	1,086	1,015
201~300	46	89	92	115	143	146	141	104
301~400	33	14	4	9	15	12	85	86
401~500	19	3	0	3	2	2	2	0

3-2-2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간별 현황



제 3 절



수강명령(이수명령) 현황

-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교화 개선하고자 일정 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치료활동에 참여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1989년 청소년 비행성 교정과 심성순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의 하나로서 최초 도입되었고 형법 개정에 따라 1997년부터 성인에게도 확대 실시하였다. 수강명령의 주요 집행 분야로는 전문프로그램으로 성폭력 치료, 가정폭력 치료, 약물 및 알코올 치료가 있으며 일반프로그램으로 교통사범을 대상으로 한 준법운전 수강명령,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 성매매방지, 도박치료, 소년 수강명령 등이 있다.
- 이수명령은 범죄인의 재범 예방에 교육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에서 2010년 도입되어 최초 시행된 이후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마약류관리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에서 순차적으로 법제화하였다. 기존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에 더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특정한 범죄인에게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¹²⁾
- 수강(이수)명령 분야 중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은 1998년 1월 1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 실시하였고, 2010년 이수명령 도입으로 인해 크게 확대되었다. 성폭력 치료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소 및 교도소, 민간에서는 성폭력상담소 등이 실시하고 있는데, 보호관찰소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자격을 갖추거나 다양한 분야의 수련을 거친 보호관찰관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도소에서는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부과된 성범죄자에게 실시하고 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은 성폭력범죄가 삶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게 하여 문제점과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왜곡된 성가치관을 바로잡아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시킴으로써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12) 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249면

01 접수현황

- <표 3-3-1>은 성폭력 수감명령 및 이수명령 접수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의 전체 접수건수는 7,932건이었고, 5년 동안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수감명령의 경우 2014년 4,133건에서 2017년 5,524건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5,379건으로 감소 후 2021년 6,202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이수명령은 2014년 3,799건에서 2015년 4,221건, 2016년 3,749건으로 증감을 반복다가 2017년 4,792건, 2018년 5,691건으로 급증한 이후 5천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3-3-1 성폭력 수감명령 및 이수명령 접수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7,932	8,985	8,931	10,316	11,070	10,952	11,315	11,957
수감명령	4,133	4,764	5,182	5,524	5,379	5,376	5,550	6,202
이수명령	3,799	4,221	3,749	4,792	5,691	5,576	5,765	5,755

3-3-1 성폭력 수감명령 및 이수명령 접수현황



02 부과시간

- <표 3-3-2>는 수강명령의 시간별 처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50시간 이하 처분이 가장 많았는데 2014년 6,554건, 2015년 7,591건, 2016년 7,770건, 2017년 9,303건, 2021년 11,335건 등으로 51시간 이상 처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51시간 이상의 처분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수강명령 시간별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7,932	8,985	8,931	10,316	11,070	10,952	11,315	11,957
50시간 이하	6,554	7,591	7,770	9,303	10,282	10,146	10,560	11,335
51~100	1,226	1,267	1,082	957	749	751	704	587
101~200	146	127	78	56	39	52	48	34
201~300	6	0	1	0	0	2	2	1
301~400	0	0	0	0	0	1	1	0

3-3-2 수강명령 시간별 현황



0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

- 〈표 3-3-3〉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5회기)을 나타낸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되돌아보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동기강화, 성에 대한 정확한 내용 이해, 왜곡된 인지 수정, 피해자에 대한 공감, 마지막으로 자존감 향상과 긍정적 감정을 통한 변화로 구성된다. 주로 일 8시간 5회기로 구성되며 대상으로 하여금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3-3-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구성

주 제	내 용
1회기 동기강화	• Session 1 : 자기소개 및 프로그램 소개 • Session 2 : 사건 이후 부정적 감정 다루기 • Session 3 : 사건개요 털어놓기 • Session 4 : 인생운전, 자신이해하기 • Session 5 : 인생목표 설정하기
2회기 성교육	• Session 6 : 현행 법령 이해하기 • Session 7 :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 Session 8 : 성 관련 경험 탐색하기 • Session 9 ~ 10 : 건강한 성(性)
3회기 인지적 왜곡	• Session 11 : 인지행동 치료 모델 소개 • Session 12 : 인지적 왜곡 이해하기 • Session 13 : 강간통념의 수정 • Session 14 : 성폭력 발생 당시의 기대 검토하기 • Session 15 ~ 16 : 계획성 인정하기 (1), (2)
4회기 공감 및 재범방지	• Session 17 : 피해자 고통 인식하기 • Session 18-1, 2 : 역할극,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 Session 19 ~ 20 : 재범방지 모델 • Session 21 : 스트레스 대처하기
5회기 변화를 위한 제안	• Session 22 : 자기조절(분노, 음주, 환경) • Session 23 ~ 24 : 대인관계 능력증진(가족, 이성) • Session 25 : 자존감 향상 • Session 26 : 긍정적 감정 채우기

(2) 심리치료 프로그램(교정)

- 교정본부는 2011년 10월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시작한 이래, 재범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문적·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밀양·청주·청주여자·군산·목포심리치료센터 등 7개의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안양·의정부·진주·천안·군산교도소에 심리치료과를 신설, 치료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 <표 3-3-4>는 교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수형자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재범위험성과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기본·집중·심화·특별·유지과정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과정은 전 교정기관에서 실시하며, 집중과정은 16개 교정기관, 심화과정은 5개 심리치료센터, 특별과정은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 유지과정은 전 교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3-3-4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교정)

구분		기본과정	집중과정	심화과정	특별과정	유지과정
대상	재범 위험성	저	중	고	기본·집중·심화과정 수료자 중 가학·변태적, 13세 미만·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으로 잔형기 1년 이내의 자	심화과정 수료자로 잔형기 1년 이내의 자 (필요시 기본·집중과정 수료자)
	이수명령 시간	80시간 이하	80시간 초과 120시간 이하	120시간 초과		
운영시간		60시간(1개월)	100시간(3개월)	300시간(6개월)	150시간(4개월)	20시간(1개월)
운영기관		전 교정기관	집중기관*	심리치료센터**	서울남부 심리치료센터	전 교정기관

* 집중기관(16) : 안양·의정부·여주·서울남부·대구·창원·진주·안동·천안·공주·청주·광주·전주·순천·목포(교), 충주(구)

** 심리치료센터(5) : 서울청(서울남부), 대구청(포항, 밀양), 대전청(청주), 광주청(군산)

(3) 심리치료 실적(교정)

- <표 3-3-5>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성폭력 수형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수료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20년부터는 정규과정(기본·집중·심화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추가과정(특별·유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3-5 성폭력 수형자 심리치료 실적(교정)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본과정	1,579	1,702	1,839	1,765	1,825	1,939	1,477	1,798
집중과정	304	206	221	244	197	163	99	162
심화과정	187	259	256	220	204	204	194	190
특별과정	-						6	6
유지과정	-						28	57
합계	2,070	2,167	2,316	2,229	2,226	2,306	1,804	2,213

(4) 이수명령 집행 실적(교정)

- <표 3-3-6>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963명, 2015년 1,531명, 2016년 2,014명, 2017년 1,853명, 2018년 1,892명을 집행했고, 2019년에는 2,0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은 1,496명, 2021년 1,937명을 집행하였다.

 3-3-6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실적(교정)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성폭력	963	1,531	2,014	1,853	1,892	2,044	1,496	1,937

제 4 절



전자감독 현황

- 전자감독제도란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이동경로 확인 및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 제도는 성폭력·살인사건의 연이은 발생으로 성폭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민 불안감 해소와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되어 2008년 9월 1일 전면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이후 강력범죄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유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 2019년 4월에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1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되었고, 2020년 8월에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 및 가석방 시 전자감독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였으며, 2021년 6월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사항에 대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감독 기간 중 동종범죄로 재범한 비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2.1%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2.53%를 기록하였다가, 2019년 1.70%, 2020년 1.27%로 낮아지고 있다.

3-4-1 전자감독 실시 죄명 추가 현황

2008. 9. 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시행
2009. 8. 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추가 시행
2010. 7.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살인죄 추가 시행
2012. 12.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강도죄 추가 시행
2019. 4.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및 실시
2020. 8.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 가석방 시 전자감독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
2021. 6.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사항에 대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 도입 시기는 시행일 기준

01 현재원

- <표 3-4-2>는 연도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집행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771명에서 2015년 2,008명, 2016년 2,178명, 2017년 2,373명, 2018년 2,423명, 2019년 2,501명, 2020년 2,571명, 2021년 2,597명의 성폭력 대상자를 집행하였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3.4%, 2016년에는 8.5%, 2017년에는 9.0% 등 확연한 증가율을 보였고, 2021년에는 2,597명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4-2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771	2,008	2,178	2,373	2,423	2,501	2,571	2,597

3-4-1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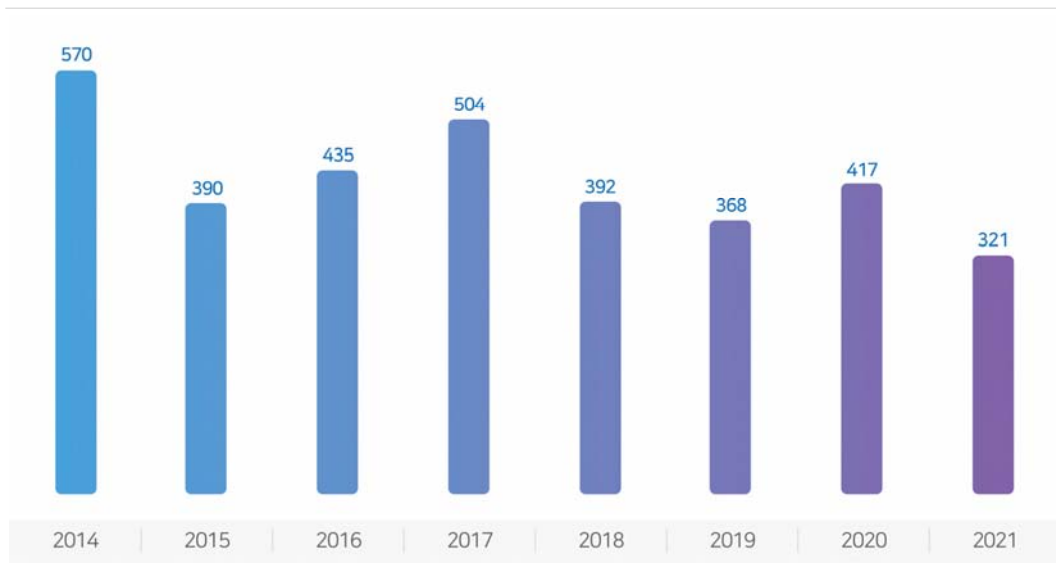
02 접수사건

- <표 3-4-3>은 연도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연도별 접수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에 570건의 성폭력 대상자가 접수되었고, 2015년 390건, 2016년 435건, 2017년 504건, 2018년 392건, 2019년 368건, 2020년 417건, 2021년 321건이 접수되어 증감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연도별 신규 접수사건이 줄더라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매년 관리해야 하는 현재원은 <표 3-4-2>에서 살펴본 것처럼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4-3 연도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접수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계	570	390	435	504	392	368	417	321

 3-4-2 연도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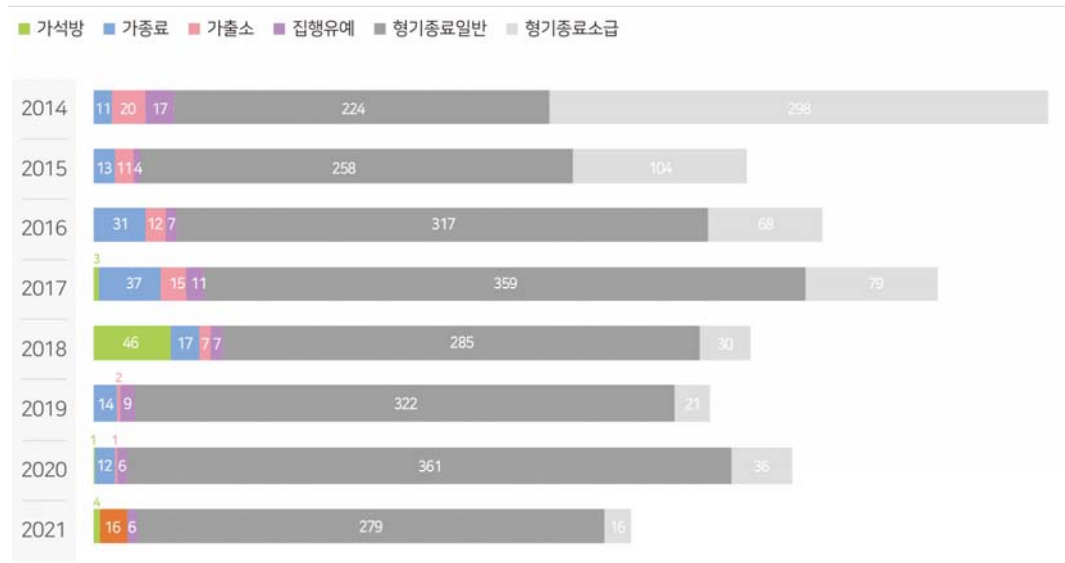
03 처분유형

- <표 3-4-4>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처분 유형별 접수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접수된 570건 중 형기종료 대상자가 522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 형기종료 대상자가 224건, 소급 형기종료 대상자가 298건이었다. 2015년에 접수된 390건 중 일반 형기종료 대상자 258건, 소급 형기종료 대상자 104건으로 소급 형기종료 대상자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에는 접수된 295건 중 일반 형기종료 대상자 279건, 소급 형기종료 대상자 16건을 나타내고 있다.

3-4-4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처분 유형별 접수 현황

연도	구분	계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집행유예	형기종료		
							계	일반	소급
2014		570	-	11	20	17	522	224	298
2015		390	-	13	11	4	362	258	104
2016		435	-	31	12	7	385	317	68
2017		504	3	37	15	11	438	359	79
2018		392	46	17	7	7	315	285	30
2019		368	0	14	2	9	343	322	21
2020		417	1	12	1	6	397	361	36
2021		321	4	16	0	6	295	279	16

3-4-3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처분 유형별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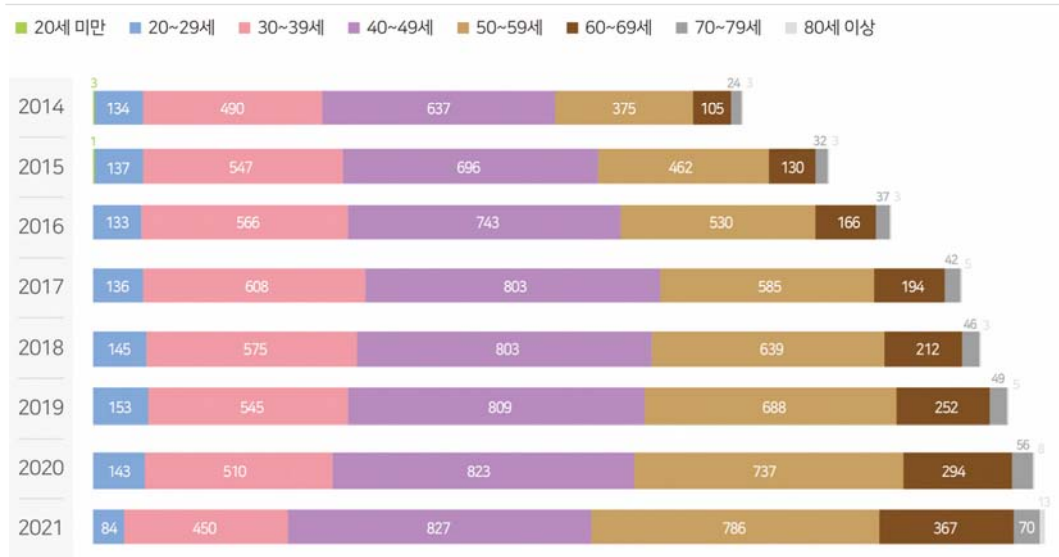
04 연령

- <표 3-4-5>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연령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1,771명의 현재원 중 40대가 63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90명, 50대가 37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5년에는 40대 696명, 30대 547명, 50대 462명 등의 순이었고, 2016년에는 40대 743명, 30대 566명, 50대 5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40대 803명, 30대 608명, 50대 585명 등의 순이며 2018년 이후부터 40대가 80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50대 639명, 30대 575명으로 이전 4년간과 달리 50대가 30대보다 많았고 2021년에도 40대가 827명, 50대 786명, 30대 450명 순이었다.
- 이러한 연령별 현황 현황을 통해 30대~50대까지의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평균 80%를 상회하는 등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20대가 꾸준히 줄고 60세 이상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3-4-5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연령별 현황

연령 연도	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4	1,771	3	134	490	637	375	105	24	3
2015	2,008	1	137	547	696	462	130	32	3
2016	2,178	0	133	566	743	530	166	37	3
2017	2,373	0	136	608	803	585	194	42	5
2018	2,423	0	145	575	803	639	212	46	3
2019	2,501	0	153	545	809	688	252	49	5
2020	2,571	0	143	510	823	737	294	56	8
2021	2,597	0	84	450	827	786	367	70	13

3-4-4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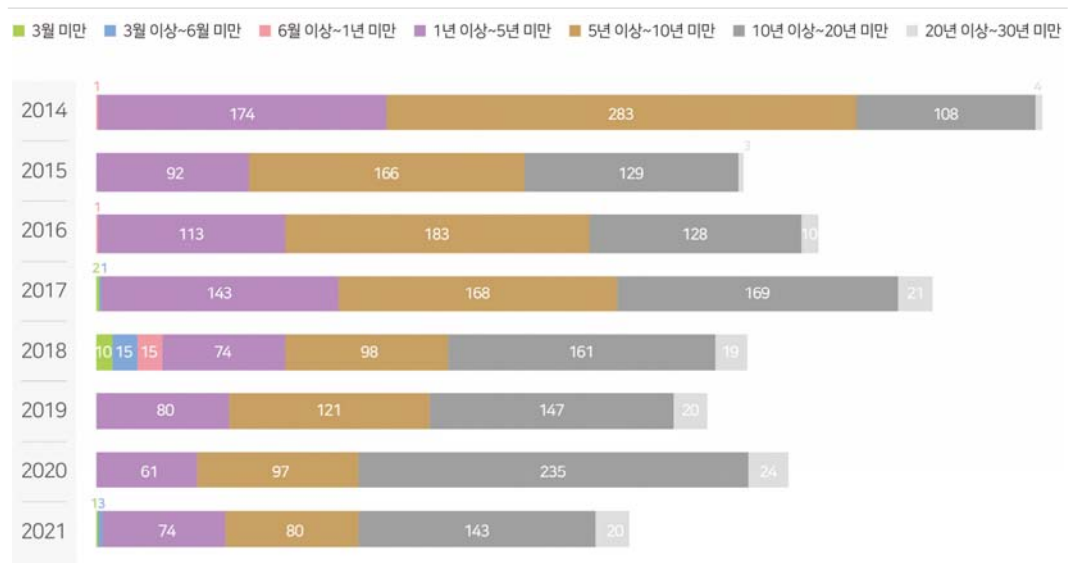
05 부작명령 기간

- <표 3-4-6>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부작명령 기간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별 누계를 보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5년 이상~10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까지는 5년 이상~10년 미만이 가장 많긴 하였으나, 1년 이상~5년 이하, 10년 이상~20년 미만도 고르게 분포된 반면, 2018년부터는 1년 이상~5년 이하와 5년 이상~10년 미만이 눈에 띄게 줄고, 상대적으로 10년 이상~20년 미만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3-4-6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부작명령 기간별 현황

기간 연도	계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2014	570	0	0	1	174	283	108	4
2015	390	0	0	0	92	166	129	3
2016	435	0	0	1	113	183	128	10
2017	504	2	1	0	143	168	169	21
2018	392	10	15	15	74	98	161	19
2019	368	0	0	0	80	121	147	20
2020	417	0	0	0	61	97	235	24
2021	321	1	3	0	74	80	143	20
계	3,397	16	22	23	812	1,201	1,230	141

3-4-5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부작명령 기간별 현황



제 5 절



성충동 약물치료 현황

-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성충동에 대한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명 ‘화학적 거세’라고도 한다. 아동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성폭력범죄가 흉포화되자 2008년부터 입법이 논의되다가 2010년 7월 23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약물 투입과 더불어 인지행동치료를 비롯한 심리치료를 병행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행동 개선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또한, 형 집행 종료 후 단계에서의 치료적 행위를 통해 국가의 성범죄자 관리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¹³⁾
- 이처럼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를 비롯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심리치료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인지행동치료 등)의 실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01 집행

- <표 3-5-1>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개시된 대상자는 2014년 4명, 2015년 1명, 2016년 7명, 2017년 5명, 2018년에는 10명, 2019년 17명, 2020년 2명, 2021명 14명으로 증감을 반복하였고, 현재원은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34명이다.

13)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과 「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150면

3-5-1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현황

구분 연도	개시				종료				현재원				대기	
	소계	법원 판결	가종료 가출소	가석방	소계	법원 판결	가종료 가출소	가석방	소계	법원 판결	가종료 가출소	가석방	법원 판결	가종료
2014	4	-	4	-	-	-	-	-	7	-	7	-	12	-
2015	1	-	1	-	1	-	1	-	7	-	7	-	18	-
2016	7	2	5	-	2	-	2	-	12	2	10	-	20	-
2017	5	-	5	-	4	-	4	-	13	2	11	-	20	-
2018	10	3	7	-	1	-	1	-	22	5	17	-	18	-
2019	17	-	17	-	8	3	5	-	32	2	30	-	20	-
2020	2	-	2	-	7	1	6	-	26	1	25	-	22	2
2021	14	1	13	-	6	0	6	-	34	2	32	-	22	1

02 판결(또는 결정)

- <표 3-5-2>는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또는 결정)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법원에서는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8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1건에 대해 치료명령을 선고하였고,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에서는 2014년 5건,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16건, 2020년 4건, 2021년 12건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3-5-2 연도별 성충동 약물치료 현황

구분 연도	합계	법원판결							가종료· 가출소
		소계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2014	11	6	1	2	1	2	-	-	5
2015	6	6	1	3	-	-	2	-	0
2016	9	4	-	-	1	3	-	-	5
2017	6	0	-	-	-	-	-	-	6
2018	8	1	-	-	-	1	-	-	7
2019	18	2	-	-	-	1	-	1	16
2020	6	2	-	-	-	1	-	1	4
2021	13	1	-	-	-	-	-	1	12
합계	77	17	2	5	2	6	2	3	23

03 죄명

- <표 3-5-3>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한 죄명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강간 등 죄의 경우 2014년 9건,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4건, 2018년 7건, 2019년 18건, 2020년 6건, 2021년 13건이었고, 강제추행의 경우 2014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3건으로 나타났다.

3-5-3 성충동 약물치료 죄명별 현황

구분 연도	합계	강간 등				강제추행			
		소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형법 위반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소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형법 위반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2014	11	9	9	-	-	2	1	1	-
2015	6	6	4	1	1	-	-	-	-
2016	9	7	6	1	-	2	1	1	-
2017	6	4	4	-	-	2	1	1	-
2018	8	7	3	4	-	1	-	-	1
2019	18	15	14	1	-	3	2	1	-
2020	6	5	3	1	1	1	-	-	1
2021	13	10	6	3	1	3	2	-	1
합계	40	33	26	5	2	7	3	3	1

04 치료내용 및 기관 현황

- 성충동 약물치료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판결(최대 15년) 및 치료감호심의 위원회의 결정(최대 3년)으로 부과되는데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약물 투여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에 1회 실시하며,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심리치료는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해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01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재범자는 없었으며,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치료기관은 2021년 12월 31일 말 기준 총 20개가 지정되어 있다.

3-5-4 치료기관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계	10	10	11	13	15	18	18	20

05 심리치료 프로그램

-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은 정신성적장애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성적장애는 흔히 성도착증이라고 일컫는데 노출증, 소아기호증, 관음증, 물품음란증 등이 있다. 치료감호 대상으로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국립법무병원에서는 주치의가 피치료 감호자의 증상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리치료,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을 하고 있다.

3-5-5 국립법무병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종류	내용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과 일탈적 성적 신호를 수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치료과정
	영화치료, 심리극	-
약물치료	정신과약물치료	정신과적 치료의 일부분으로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항정신병 약물 등의 약물치료 병행
	성충동 약물치료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
재활치료	의료재활치료	미술치료, 단주교육, 명상, 신체단련, 일상생활훈련, 기초학습능력훈련, 위생교육, 정신보건교육 등
	직업재활	건축도장, 제과제빵, PC정비, 건축시공 등 5개 공과 직업훈련 및 컴퓨터 교육
	지역사회 복귀	정신건강 출소 교육, 사후관리

제 6 절



청구전조사 등 현황

- 조사는 법령에 따라 법원 및 검찰의 요구에 의해 보호관찰관이 범죄인의 인격, 환경에 관한 상황, 재범위험성의 양태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양형 및 처우 개별화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1989년 「보호관찰법」 제정으로 소년 판결전조사를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 보호관찰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 범주도 넓어졌다. 2007년에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청구전조사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 청구전조사는 검사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범죄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에 요청하는 제도이며, 2011년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한 조사, 2013년 6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기 위한 조사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청구전조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 현재 보호관찰소 조사업무는 조사 대상, 목적, 적용법조 등에 따라 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조사서의 전문성 확보 및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관 자격제도(2010년) 및 전문조사관 제도(2019년)를 도입하였다. 성폭력 범죄자의 왜곡된 성 의식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및 객관적인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조사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표 4-6-1>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조사 접수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000건을 상회하였으나 2017년 2,707건으로 급감한 후 2021년까지 그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전조사, 판결전조사, 검사결정전조사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소년보호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을 다루는 결정전조사의 경우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3-6-1 성폭력범죄자 조사 접수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747	3,488	3,577	2,707	2,680	2,552	2,328	2,263
청구전조사	2,281	2,072	2,250	1,511	1,333	1,318	1,210	1,028
판결전조사	437	472	374	270	297	291	271	262
결정전조사	580	565	563	522	737	699	612	737
검사결정전조사	265	214	250	183	148	92	145	137
환경조사	184	165	140	221	165	152	90	99



부록.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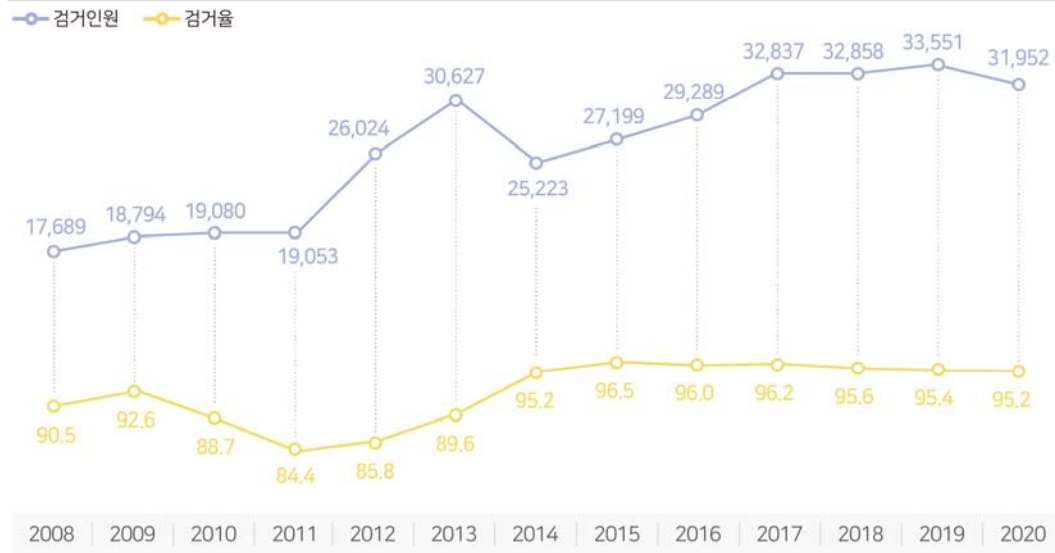
01 성폭력범죄 현황

4-1-1 연도별 성폭력범죄 현황

(단위 : 건, %, 명)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08	16,234	14,698	90.5	17,689
2009	17,263	15,977	92.6	18,794
2010	20,368	18,058	88.7	19,080
2011	22,132	18,673	84.4	19,053
2012	27,237	23,373	85.8	26,024
2013	33,939	30,408	89.6	30,627
2014	29,863	28,420	95.2	25,223
2015	31,063	29,981	96.5	27,199
2016	29,357	28,197	96.0	29,289
2017	32,824	31,585	96.2	32,837
2018	32,104	30,706	95.6	32,858
2019	32,029	30,550	95.4	33,551
2020	30,105	28,675	95.2	31,952
전체	354,518	329,301	92.9	344,176

4-1-1 연도별 성폭력범죄 검거 상황



02 성폭력범죄 발생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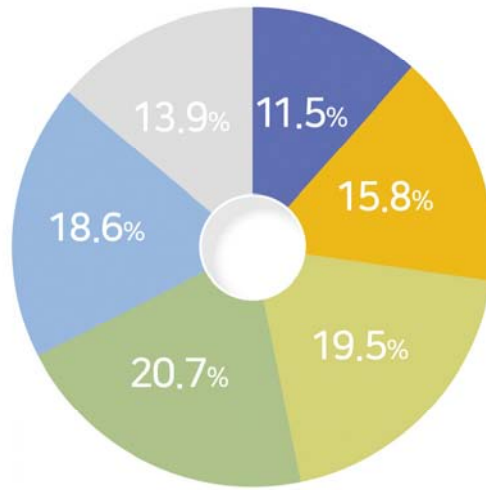
4-1-2 연도별 성폭력범죄 발생월

(단위 : 건)

연도	계	1월~2월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11월~12월
2008	16,234	1,820	2,307	2,983	3,119	3,229	2,776
	(%)	11.2	14.2	18.4	19.2	19.9	17.1
2009	17,263	1,975	2,439	2,906	3,491	3,558	2,894
	(%)	11.5	14.1	16.8	20.2	20.6	16.8
2010	20,368	2,097	3,160	3,619	4,036	3,796	3,660
	(%)	10.3	15.5	17.8	19.8	18.6	18.0
2011	22,132	2,877	3,385	4,041	4,546	3,760	3,523
	(%)	13.0	15.3	18.3	20.5	17.0	15.9
2012	27,237	2,561	3,376	4,557	5,490	6,808	4,445
	(%)	9.4	12.4	16.7	20.2	25.0	16.3
2013	33,939	2,859	4,464	7,270	6,888	7,640	4,818
	(%)	8.4	13.2	21.4	20.3	22.5	14.2
2014	29,863	3,459	5,352	6,054	6,659	4,949	3,390
	(%)	11.6	17.9	20.3	22.3	16.6	11.3
2015	31,063	3,489	5,505	6,675	6,681	5,229	3,484
	(%)	11.2	17.7	21.5	21.5	16.9	11.2
2016	29,357	3,426	4,920	5,887	6,166	5,253	3,705
	(%)	11.7	16.8	20.0	21.0	17.9	12.6
2017	32,824	3,888	5,586	6,765	7,152	5,748	3,685
	(%)	11.9	17.0	20.6	21.8	17.5	11.2
2018	32,104	4,179	5,597	6,243	6,464	5,471	4,150
	(%)	13.0	17.4	19.5	20.1	17.1	12.9
2019	32,029	3,945	5,305	6,420	6,693	5,542	4,124
	(%)	12.3	16.6	20.0	20.9	17.3	12.9
2020	30,105	4,230	4,488	5,770	6,083	5,087	4,447
	(%)	14.0	14.9	19.2	20.2	16.9	14.8
전체	354,518	40,805	55,884	69,190	73,468	66,070	49,101
	(%)	11.5%	15.8%	19.5%	20.7%	18.6%	13.9%

4-1-2 성폭력범죄 발생월 비율

- 1월~2월
- 3월~4월
- 5월~6월
- 7월~8월
- 9월~10월
- 11월~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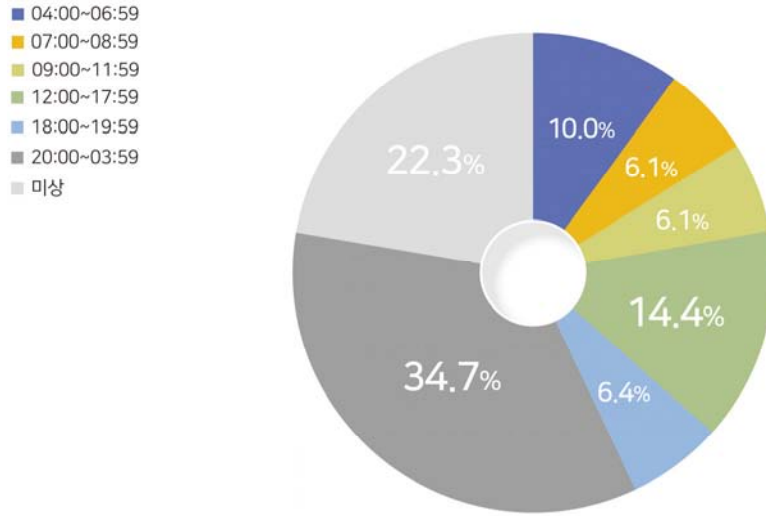
03 발생시간

4-1-3 연도별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2014년 이전)

(단위 : 건)

연도	계	04:00~ 06:59	07:00~ 08:59	09:00~ 11:59	12:00~ 17:59	18:00~ 19:59	20:00~ 03:59	미상
2008	15,094	1,811	906	923	2,114	889	5,526	2,925
	(%)	12.0	6.0	6.1	14.0	5.9	36.6	19.4
2009	16,156	1,816	980	1,036	2,233	902	5,653	3,536
	(%)	11.2	6.1	6.4	13.8	5.6	35.0	21.9
2010	19,939	1,982	1,361	1,166	2,659	1,298	6,798	4,675
	(%)	9.9	6.8	5.8	13.3	6.5	34.1	23.4
2011	22,034	2,188	1,446	1,163	3,007	1,577	7,706	4,947
	(%)	9.9	6.6	5.3	13.6	7.2	35.0	22.5
2012	21,346	2,120	1,228	1,249	3,074	1,346	7,631	4,698
	(%)	9.9	5.8	5.9	14.4	6.3	35.7	22.0
2013	26,919	2,214	1,542	1,872	4,432	1,806	8,791	6,262
	(%)	8.2	5.7	7.0	16.5	6.7	32.7	23.3
전체	121,488	12,131	7,463	7,409	17,519	7,818	42,105	27,043
	(%)	10.0	6.1	6.1	14.4	6.4	34.7	22.3

4-1-3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 비율(2014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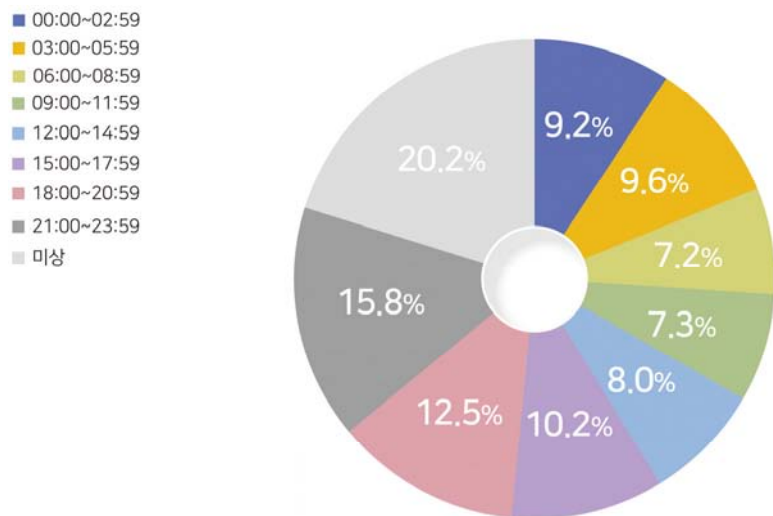


4-1-4 연도별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2014년 이후)

(단위 : 건)

연도	계	00:00~02:59	03:00~05:59	06:00~08:59	09:00~11:59	12:00~14:59	15:00~17:59	18:00~20:59	21:00~23:59	미상
2014	29,863	2,511	2,651	2,275	2,197	2,330	3,059	3,576	4,405	6,859
	(%)	8.4	8.9	7.6	7.4	7.8	10.2	12.0	14.8	22.9
2015	31,063	2,518	2,665	2,465	2,122	2,473	3,262	3,826	4,635	7,097
	(%)	8.1	8.6	7.9	6.8	8.0	10.5	12.3	14.9	22.9
2016	29,357	2,897	2,852	2,202	1,996	2,241	2,894	3,710	4,903	5,662
	(%)	9.9	9.7	7.5	6.8	7.6	9.9	12.6	16.7	19.3
2017	32,824	3,200	3,296	2,615	2,559	2,651	3,442	4,335	5,303	5,423
	(%)	9.7	10.0	8.0	7.8	8.1	10.5	13.2	16.1	16.6
2018	32,104	3,054	3,250	2,246	2,394	2,615	3,327	4,034	5,086	6,098
	(%)	9.5	10.1	7.0	7.5	8.1	10.4	12.6	15.8	19.0
2019	32,029	3,061	3,332	2,233	2,317	2,539	3,204	3,920	5,048	6,375
	(%)	9.6	10.4	7.0	7.2	7.9	10.0	12.2	15.8	19.9
2020	30,105	2,820	2,808	1,726	2,207	2,479	3,054	3,704	4,992	6,315
	(%)	9.4	9.3	5.7	7.3	8.2	10.2	12.3	16.6	21.0

4-1-4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 비율(2014년 이후)



04 성폭력범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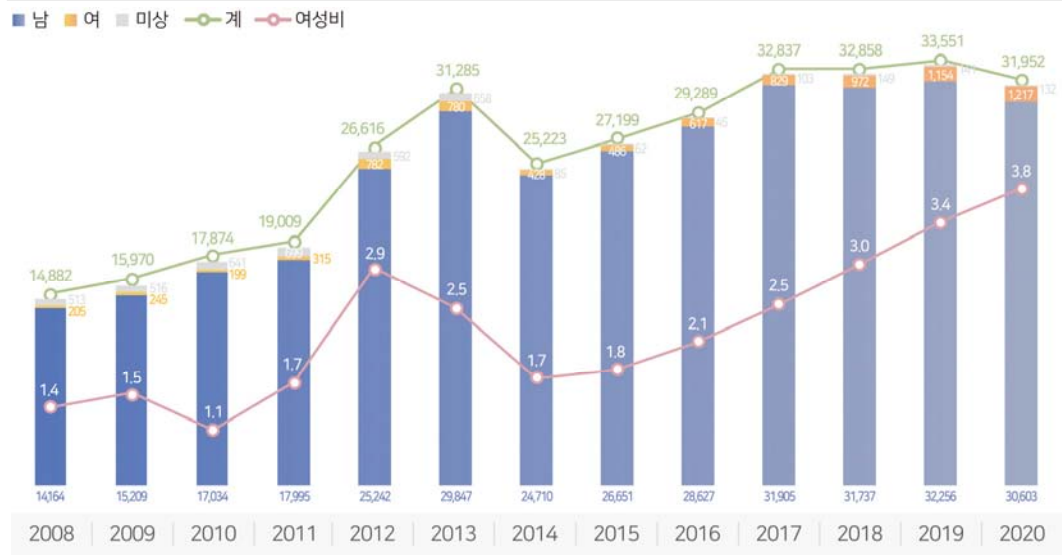
4-1-5 성폭력범죄자 성별

(단위 : 명)

연도	계	남	여	미상
2008	14,882	14,164	205	513
	(%)	95.2	1.4	3.4
2009	15,970	15,209	245	516
	(%)	95.2	1.5	3.2
2010	17,874	17,034	199	641
	(%)	95.3	1.1	3.6
2011	19,009	17,995	315	699
	(%)	94.7	1.7	3.7
2012	26,616	25,242	782	592
	(%)	94.8	2.9	2.2
2013	31,285	29,847	780	658
	(%)	95.4	2.5	2.1
2014	25,223	24,710	428	85
	(%)	98.0	1.7	0.3

연도	계	남	여	미상
2015	27,199	26,651	486	62
	(%)	98.0	1.8	0.2
2016	29,289	28,627	617	45
	(%)	97.7	2.1	0.2
2017	32,837	31,905	829	103
	(%)	97.2	2.5	0.3
2018	32,858	31,737	972	149
	(%)	96.6	3.0	0.5
2019	33,551	32,256	1,154	141
	(%)	96.2	3.4	0.4
2020	31,952	30,603	1,217	132
	(%)	95.8	3.8	0.4
전체	338,545	325,980	8,229	4,336
	(%)	96.3	2.4	1.3

4-1-5 성폭력범죄자 성별



05 성폭력범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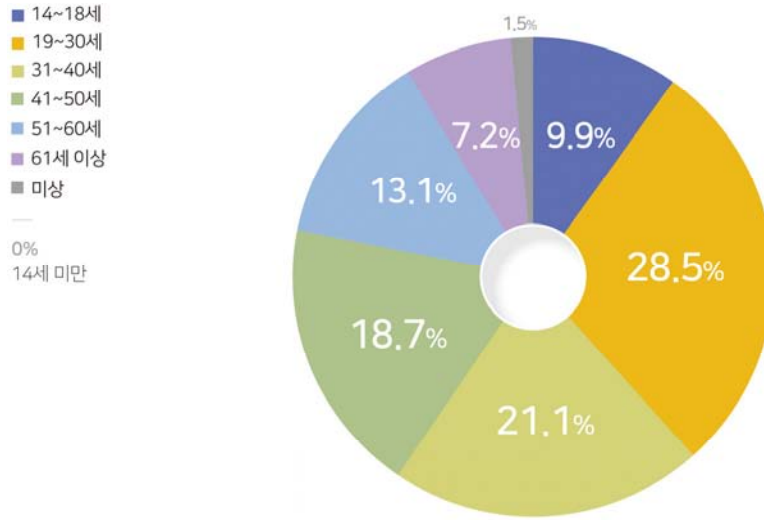
4-1-6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연령¹⁴⁾

(단위 : 명)

연도	계	14세 미만	14~18세	19~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미상
2008	14,882	15	1,477	3,919	3,776	3,049	1,332	635	679
	(%)	0.1	9.9	26.3	25.4	20.5	8.9	4.3	4.6
2009	15,970	15	1,727	4,286	3,963	3,229	1,468	648	634
	(%)	0.1	10.8	26.8	24.8	20.2	9.2	4.1	4.0
2010	17,874	8	2,154	4,668	4,160	3,740	1,918	829	397
	(%)	0.2	12.1	26.1	23.3	20.9	10.7	4.6	2.2
2011	19,009	6	2,038	5,138	4,293	4,004	2,184	999	347
	(%)	0.0	10.7	27	22.6	21.1	11.5	5.3	1.8
2012	26,616	30	2,986	7,869	5,919	4,916	2,955	1,266	675
	(%)	0.1	11.2	29.6	22.2	18.5	11.1	4.8	2.5
2013	31,285	25	3,173	9,463	6,859	5,744	3,637	1,643	741
	(%)	0.1	10.1	30.3	21.9	18.4	11.6	5.3	2.4
2014	25,223	1	2,563	6,955	5,279	5,132	3,505	1,684	104
	(%)	0.0	10.2	27.6	20.9	20.4	13.9	6.7	0.4
2015	27,199	1	2,206	7,535	5,866	5,335	3,812	2,010	434
	(%)	0.0	8.1	27.7	21.6	19.6	14	7.4	1.6
2016	29,289	3	2,857	8,059	6,039	5,527	4,328	2,346	130
	(%)	0.0	9.8	27.5	20.6	18.9	14.8	8	0.4
2017	32,837	5	3,078	9,449	6,608	5,882	4,771	2,841	203
	(%)	0.0	9.4	28.8	20.1	17.9	14.5	8.7	0.6
2018	32,858	-	3,173	9,622	6,234	5,768	4,889	2,914	258
	(%)	-	9.6	29.3	19.0	17.5	14.9	8.9	0.8
2019	33,551	-	3,180	9,996	6,352	5,568	4,920	3,344	191
	(%)	-	9.5	29.8	18.9	16.6	14.6	10.0	0.6
2020	31,952	-	2,702	9,545	6,080	5,279	4,758	3,328	260
	(%)	-	8.5	29.9	19.0	16.5	14.9	10.4	0.8
전체	338,545	109	33,314	96,504	71,428	63,173	44,477	24,487	5,053
	(%)	0.0	9.9	28.5	21.1	18.7	13.1	7.2	1.5

14) 2018년부터 14세 미만은 따로 기재하지 않음

4-1-6 성폭력범죄자 연령 비율



06 직업

4-1-7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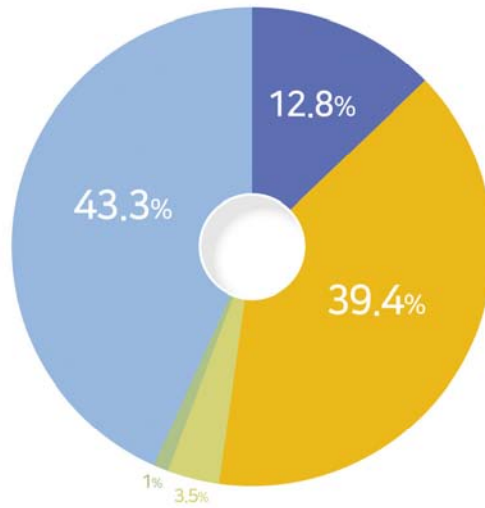
(단위 : 명)

직업	연도		전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계	14,882		15,970		17,874		19,009		26,616		31,285		25,223		27,199		29,289		32,837		32,858		33,551		31,952		338,500	
자영업자(소계)	2,278	15.3	2,424	15.2	2,303	12.9	2,390	12.6	3,423	12.9	3,076	9.8	2,780	11	3,725	13.7	3,817	13	4,445	13.5	4,890	14.9	4,339	12.9	3,743	11.7	43,633	12.8
농림수산업	278	1.9	261	1.6	295	1.7	280	1.5	357	1.3	396	1.3	370	1.5	370	1.4	374	1.3	401	1.2	377	1.1	364	1.1	339	1.1	4,462	1.4
광업	3	0.0	0	0.0	3	0.0	2	0.0	1	0.0	1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	0.0
제조업	154	1.0	155	1.0	126	0.7	62	0.3	70	0.3	64	0.2	55	0.2	94	0.4	96	0.3	115	0.4	105	0.3	91	0.3	72	0.2	1,259	0.4
건설업	199	1.3	212	1.3	160	0.9	130	0.7	151	0.6	196	0.6	212	0.8	268	1.0	278	1.0	340	1.0	370	1.1	366	1.1	278	0.9	3,160	0.9
도소매업	204	1.4	244	1.5	195	1.1	140	0.7	147	0.6	47	0.2	36	0.1	78	0.3	70	0.2	70	0.2	64	0.2	47	0.1	30	0.1	1,372	0.5
무역업	32	0.2	23	0.1	30	0.2	28	0.2	27	0.1	29	0.1	20	0.1	23	0.1	38	0.1	35	0.1	32	0.1	30	0.1	13	0.0	360	0.1
요식업	214	1.4	278	1.7	162	0.9	173	0.9	230	0.9	151	0.5	135	0.5	179	0.7	191	0.7	215	0.7	207	0.6	214	0.6	175	0.5	2,524	0.8
숙박업	25	0.2	36	0.2	31	0.2	69	0.4	96	0.4	54	0.2	33	0.1	39	0.1	31	0.1	33	0.1	57	0.2	33	0.1	36	0.1	573	0.2
유통업	129	0.9	132	0.8	133	0.7	149	0.8	193	0.7	92	0.3	101	0.4	97	0.4	85	0.3	112	0.3	109	0.3	96	0.3	74	0.2	1,502	0.5
금융업	43	0.3	29	0.2	23	0.1	20	0.1	24	0.1	17	0.1	13	0.1	12	0.0	14	0.1	19	0.1	19	0.1	19	0.1	17	0.1	269	0.1
부동산업	66	0.4	63	0.4	67	0.4	47	0.3	61	0.2	71	0.2	69	0.3	99	0.4	139	0.5	133	0.4	168	0.5	113	0.3	99	0.3	1,195	0.3
의료보건업	21	0.1	14	0.1	17	0.1	13	0.1	10	0.0	8	0.0	8	0.0	28	0.1	16	0.1	24	0.1	26	0.1	17	0.1	8	0.0	210	0.1
차량정비업	34	0.2	36	0.2	39	0.2	28	0.2	30	0.1	14	0.0	9	0.0	26	0.1	31	0.1	37	0.1	55	0.2	34	0.1	21	0.1	394	0.1

연도 직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노점	39	0.3	30	0.2	34	0.2	33	0.2	45	0.2	36	0.1	33	0.1	45	0.2	28	0.1	35	0.1	28	0.1	24	0.1	12	0.0	422	0.2	
	행사	26	0.2	8	0.1	15	0.1	15	0.1	7	0.0	6	0.0	2	0.0	5	0.0	1	0.0	4	0.0	3	0.0	1	0.0	0	0.0	93	0.0	
	기타사업	811	5.5	903	5.7	973	5.4	1,201	6.3	1,974	7.4	1,894	6.1	1,684	6.7	2,362	8.7	2,425	8.3	2,872	8.8	3,270	10.0	2,890	8.6	2,569	8.0	25,828	7.1	
피고용자 (소계)	5,457	36.7	5,740	35.9	6,913	38.7	7,542	39.7	11,006	41.4	13,465	43.0	11,236	44.6	10,554	38.8	10,765	36.8	11,986	36.5	11,697	35.6	10,448	31.1	8,730	27.3	125,539	39.4		
표 기 90년	교원 (사립)	21	0.1	23	0.1	21	0.1	24	0.1	24	0.1	64	0.2	70	0.3	103	0.4	63	0.2	94	0.3	134	0.4	75	0.2	36	0.1	752	0.2	
	사무원	128	0.9	138	0.9	99	0.6	99	0.5	42	0.2	20	0.1	33	0.1	57	0.2	51	0.2	63	0.2	62	0.2	72	0.2	45	0.1	909	0.3	
	기술자	108	0.7	86	0.5	112	0.6	79	0.4	78	0.3	218	0.7	179	0.7	266	1.0	298	1.0	341	1.0	288	0.9	280	0.8	208	0.7	2,541	0.7	
	점원	119	0.8	108	0.7	115	0.6	97	0.5	99	0.4	65	0.2	53	0.2	87	0.3	87	0.3	111	0.3	100	0.3	84	0.3	46	0.1	1,171	0.4	
	공원	176	1.2	164	1.0	162	0.9	170	0.9	192	0.7	167	0.5	147	0.6	142	0.5	153	0.5	113	0.3	105	0.3	103	0.3	70	0.2	1,864	0.7	
	운전자	486	3.3	531	3.3	598	3.4	602	3.2	769	2.9	705	2.3	613	2.4	696	2.6	757	2.6	750	2.3	785	2.4	727	2.2	610	1.9	8,629	2.7	
	경비원	73	0.5	80	0.5	118	0.7	90	0.5	109	0.4	111	0.4	120	0.5	149	0.6	203	0.7	197	0.6	182	0.6	166	0.5	112	0.4	1,710	0.5	
	외판원	23	0.2	30	0.2	24	0.1	9	0.1	13	0.1	71	0.2	68	0.3	92	0.3	104	0.4	109	0.3	99	0.3	105	0.3	107	0.3	854	0.2	
	국공기업 직원	23	0.2	22	0.1	23	0.1	15	0.1	11	0.0	9	0.0	11	0.0	15	0.1	25	0.1	13	0.0	16	0.0	8	0.0	12	0.0	203	0.1	
	일반 회사원	1,982	13.3	2,160	13.5	2,729	15.3	3,331	17.5	4,521	17.0	5,251	16.8	4,336	17.2	5,281	19.4	5,392	18.4	6,109	18.6	5,998	18.3	5,525	16.5	4,892	15.3	57,507	17.1	
	금융기관 직원	33	0.2	30	0.2	23	0.1	30	0.2	20	0.1	34	0.1	21	0.1	52	0.2	50	0.2	47	0.1	57	0.2	39	0.1	32	0.1	468	0.1	
	유통업 종사자	96	0.7	100	0.6	144	0.8	124	0.7	111	0.4	85	0.3	86	0.3	89	0.3	104	0.4	92	0.3	83	0.3	90	0.3	52	0.2	1,256	0.4	
	요식업 종사자	159	1.1	144	0.9	261	1.5	224	1.2	264	1.0	243	0.8	187	0.7	287	1.1	336	1.2	357	1.1	340	1.0	288	0.9	225	0.7	3,315	1.0	
	일용 노동자	990	6.7	987	6.2	1,235	6.9	1,234	6.5	1,515	5.7	1,323	4.2	1,082	4.3	1,238	4.6	1,197	4.1	1,260	3.8	1,097	3.3	904	2.7	675	2.1	14,737	5.0	
	기타비고 용자	1,040	7.0	1,137	7.1	1,249	7.0	1,414	7.4	3,238	12.2	5,099	16.3	4,230	16.8	2,000	7.4	1,945	6.6	2,330	7.1	2,351	7.2	1,982	5.9	1,608	5.0	29,623	9.9	
	전문직(소계)	407	2.7	422	2.6	562	3.1	615	3.2	803	3.0	910	2.9	760	3.0	1,198	4.4	1,277	4.4	1,462	4.5	1,651	5.0	1,351	4.0	1,112	3.5	12,530	3.5	
	표 기 90년	의사	50	0.3	56	0.4	67	0.4	61	0.3	95	0.4	104	0.3	83	0.3	115	0.4	125	0.4	138	0.4	163	0.5	149	0.4	155	0.5	1,361	0.4
		변호사	1	0.0	0	0.0	3	0.0	2	0.0	5	0.0	9	0.0	2	0.0	2	0.0	9	0.0	5	0.0	19	0.1	14	0.0	14	0.0	85	0.0
		교수	19	0.1	21	0.1	27	0.2	17	0.1	22	0.1	33	0.1	27	0.1	43	0.2	35	0.1	36	0.1	61	0.2	54	0.2	18	0.1	413	0.1
종교인		62	0.4	72	0.5	94	0.5	91	0.5	97	0.4	105	0.3	93	0.4	120	0.4	111	0.4	108	0.3	137	0.4	118	0.4	113	0.4	1,321	0.4	
언론인		11	0.1	10	0.1	13	0.1	11	0.1	10	0.0	15	0.1	15	0.1	16	0.1	13	0.0	23	0.1	16	0.0	23	0.1	21	0.1	197	0.1	
예술인		33	0.2	27	0.2	46	0.3	43	0.2	71	0.3	118	0.4	68	0.3	105	0.4	124	0.4	143	0.4	148	0.5	124	0.4	79	0.2	1,129	0.3	
기타 전문직		231	1.6	236	1.5	312	1.8	390	2.1	503	1.9	526	1.7	472	1.9	797	2.9	860	2.9	1,009	3.1	1,107	3.4	869	2.6	712	2.2	8,024	2.2	
공무원(소계)		101	0.7	119	0.8	146	0.8	154	0.8	223	0.8	213	0.7	283	1.1	345	1.3	403	1.4	419	1.3	407	1.2	424	1.3	404	1.3	3,641	1.0	
표 기 90년	공무원	101	0.7	119	0.8	146	0.8	154	0.8	223	0.8	213	0.7	209	0.8	331	1.2	393	1.3	415	1.3	405	1.2	420	1.3	402	1.3	3,531	1.0	
	군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4	0.3	14	0.1	10	0.0	4	0.0	2	0.0	4	0.0	2	0.0	110	0.0	
기타(소계)	6,628	44.5	7,258	45.5	7,923	44.3	8,308	43.7	11,161	41.9	13,621	43.5	10,164	40.3	11,377	41.8	13,027	44.5	14,525	44.2	14,213	43.3	16,989	50.6	17,963	56.2	153,157	43.3		
표 기 90년	학생	1,810	12.2	2,047	12.8	2,673	15.0	2,791	14.7	4,059	15.3	4,395	14.1	3,393	13.5	3,714	13.7	4,071	13.9	4,580	14.0	4,728	14.4	4,633	13.8	3,806	11.9	46,700	14.0	
	주부	12	0.1	12	0.1	12	0.1	14	0.1	28	0.1	37	0.1	29	0.1	27	0.1	31	0.1	62	0.2	57	0.2	49	0.1	46	0.1	416	0.1	
	전경, 의경	17	0.1	9	0.1	7	0.0	22	0.1	17	0.1	20	0.1	17	0.1	18	0.1	22	0.1	22	0.1	26	0.1	14	0.0	10	0.0	221	0.1	
	공익요원	32	0.2	31	0.2	42	0.2	73	0.4	136	0.5	143	0.5	70	0.3	105	0.4	92	0.3	91	0.3	103	0.3	83	0.2	40	0.1	1,041	0.3	
	무직자	3,604	24.2	3,887	24.3	4,064	22.7	4,102	21.6	5,770	21.7	6,608	21.1	5,243	20.8	5,897	21.7	6,035	20.6	6,903	21.0	6,679	20.3	6,961	20.7	6,537	20.5	72,290	21.7	
	미상	1,153	7.8	1,272	8.0	1,125	6.3	1,306	6.9	1,151	4.3	2,418	7.7	1,412	5.6	1,616	5.9	2,776	9.5	2,867	8.7	2,620	8.0	5,249	15.6	7,524	23.5	32,489	7.1	

4-1-7 성폭력범죄자 직업 비율

- 자영업자
- 피고용자
- 전문직
- 공무원
- 기타



07 성폭력범죄자 국적

4-1-8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국적

(단위 : 명)

연도	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대만	필리핀	스리랑카	일본	기타
2008	14,882	14,712	170	46	6	15	3	37	4	7	3	0	0	49
	(%)	98.9	1.1	0.3	0.0	0.1	0.0	0.3	0.0	0.1	0.0	0.0	0.0	0.3
2009	15,970	15,787	183	49	6	13	4	23	13	4	4	0	0	67
	(%)	98.9	1.2	0.3	0.0	0.1	0.0	0.1	0.1	0.0	0.0	0.0	0.0	0.4
2010	17,874	17,671	203	58	4	27	4	7	12	8	3	15	0	65
	(%)	98.9	1.1	0.3	0.0	0.2	0.0	0.0	0.1	0.0	0.0	0.1	0.0	0.4
2011	19,009	18,621	388	90	26	31	28	4	26	8	9	22	6	138
	(%)	98.0	2.0	0.5	0.1	0.2	0.2	0.0	0.1	0.0	0.1	0.1	0.0	0.7
2012	26,616	26,150	466	166	31	34	2	35	31	4	7	22	9	125
	(%)	98.3	1.8	0.6	0.1	0.1	0.0	0.1	0.1	0.0	0.0	0.1	0.0	0.5
2013	31,285	30,605	680	216	31	45	9	38	44	14	10	35	17	221
	(%)	97.8	2.2	0.7	0.1	0.1	0.0	0.1	0.1	0.0	0.0	0.1	0.1	0.7
2014	25,223	24,610	613	230	32	57	16	35	34	15	9	11	13	161
	(%)	97.6	2.4	0.9	0.1	0.2	0.1	0.1	0.1	0.1	0.0	0.0	0.1	0.6

연도	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대만	필리핀	스리랑카	일본	기타
2015	27,199	26,450	749	282	22	71	15	36	53	14	7	44	15	190
	(%)	97.3	2.8	1.0	0.1	0.3	0.1	0.1	0.2	0.1	0.0	0.2	0.1	0.7
2016	29,289	28,491	798	336	23	59	12	44	49	20	22	20	8	205
	(%)	97.3	2.7	1.2	0.1	0.2	0.0	0.2	0.2	0.1	0.1	0.1	0.0	0.7
2017	32,837	31,887	950	354	39	87	23	53	37	14	13	19	23	288
	(%)	97.1	2.9	1.1	0.1	0.3	0.1	0.2	0.1	0.0	0.0	0.1	0.1	0.9
2018	32,858	31,871	987	368	39	73	35	56	44	13	7	16	33	303
	(%)	97.0	3.0	1.1	0.1	0.2	0.1	0.2	0.1	0.0	0.0	0.0	0.1	0.9
2019	33,551	32,572	979	369	50	81	28	49	60	20	4	14	20	284
	(%)	97.1	2.9	1.1	0.1	0.2	0.1	0.1	0.2	0.1	0.0	0.0	0.1	0.8
2020	31,952	31,187	765	286	33	71	27	41	40	11	4	7	4	241
	(%)	97.6	2.4	0.9	0.1	0.2	0.1	0.1	0.1	0.0	0.0	0.0	0.0	0.8
전체	338,545	330,614	7,931	2,850	342	664	206	458	447	152	102	225	148	2,337
	(%)	97.7	2.3	0.8	0.1	0.2	0.1	0.1	0.1	0.0	0.0	0.1	0.0	0.7

4-1-8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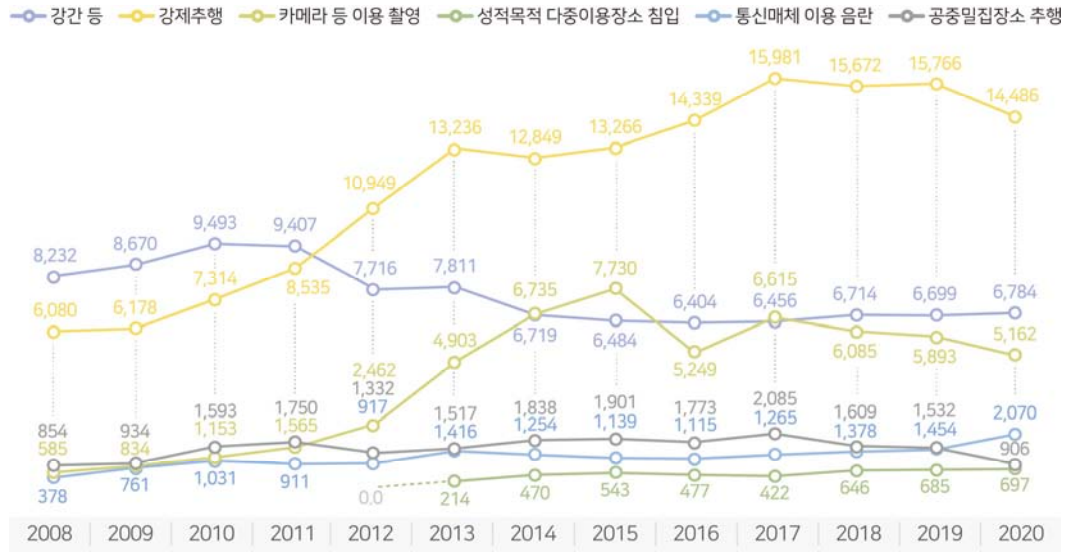
08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4-1-9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단위 : 건, %)

연도	강간 등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기타*	전체
2008	8,232	6,080	585	-	378	854		16,129
	51.0	37.7	3.6	-	2.4	5.3		(%)
2009	8,670	6,178	834	-	761	934		17,377
	49.9	35.5	4.8	-	4.4	5.4		(%)
2010	9,493	7,314	1,153	-	1,031	1,593		20,584
	46.1	35.5	5.6	-	5.0	7.8		(%)
2011	9,407	8,535	1,565	-	911	1,750		22,168
	42.4	38.5	7.1	-	4.1	7.9		(%)
2012	7,716	10,949	2,462	-	917	1,332		23,376
	33.0	46.9	10.5	-	3.9	5.7		(%)
2013	7,811	13,236	4,903	214	1,416	1,517		29,097
	26.8	45.5	16.9	0.7	4.9	5.2		(%)
2014	6,719	12,849	6,735	470	1,254	1,838		29,865
	22.5	43.0	22.5	1.6	4.2	6.2		(%)
2015	6,484	13,266	7,730	543	1,139	1,901		31,063
	20.9	42.7	24.9	1.7	3.7	6.1		(%)
2016	6,404	14,339	5,249	477	1,115	1,773		29,357
	21.8	48.9	17.9	1.6	3.8	6.0		(%)
2017	6,456	15,981	6,615	422	1,265	2,085		32,824
	19.7	48.7	20.1	1.3	3.9	6.3		(%)
2018	6,714	15,672	6,085	646	1,378	1,609		32,104
	20.9	48.8	19.0	2.0	4.3	5.0		(%)
2019	6,699	15,766	5,893	685	1,454	1,532		32,029
	20.9	49.2	18.4	2.1	4.6	4.8		(%)
2020	6,784	14,486	5,162	697	2,070	906	157	30,105
	22.5	48.1	17.2	2.3	6.9	3.0	0.5	(%)

4-1-9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09 성폭력범죄 발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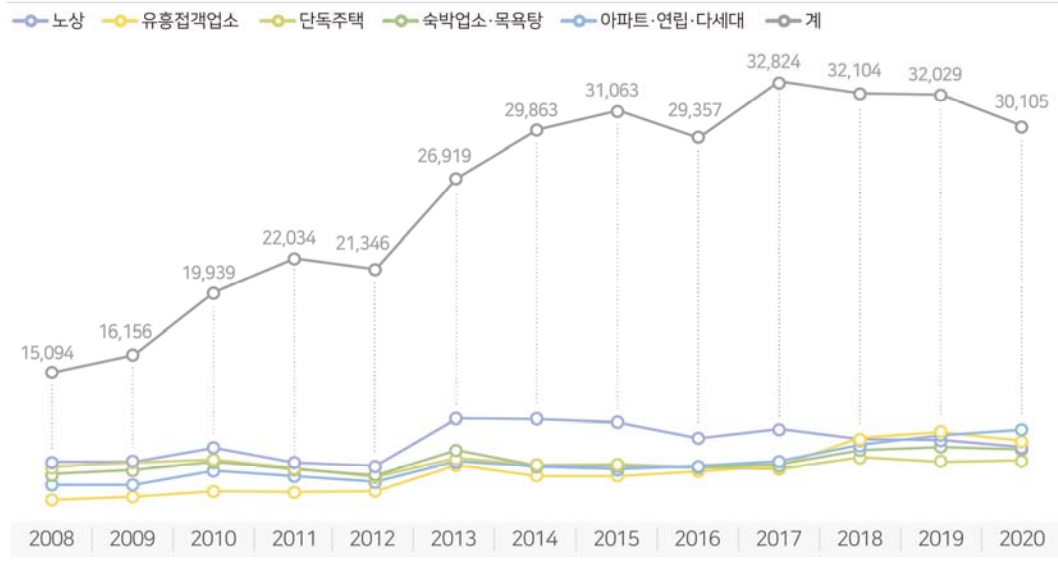
4-1-10 연도별 성폭력 발생장소

(단위 : 건)

연도	장소	계	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 주택	고속 도로	노상	상점	시장 노점	숙박 업소·목욕탕	유흥·접객 업소	사무실	공장	공사업 광산	창고	역·대합실	지하철	기타 교통수단내	총행경	유원지	학교	금융기관	의료기관	종교기관	산아	해상	부대	구급장소	공지	기타
2008		15,094	1,679	2,586	13	2,787	266	12	2,232	931	255	20	18	16	87	618	317	41	166	201	11	84	45	30	1	5	12	11	2,650
	(%)	11.1	17.1	0.1	18.5	1.8	0.1	14.8	6.2	1.7	0.1	0.1	0.1	0.1	0.6	4.1	2.1	0.3	1.1	1.3	0.1	0.5	0.3	0.2	0.0	0.0	0.1	0.1	17.5
2009		16,156	1,668	2,776	10	2,788	369	16	2,425	1,094	276	24	10	14	148	820	343	40	175	138	9	94	44	37	1	5	5	5	2,822
	(%)	10.3	17.2	0.1	17.3	2.3	0.1	15.0	6.8	1.7	0.1	0.1	0.1	0.1	0.9	5.1	2.1	0.2	1.1	0.9	0.0	0.6	0.3	0.2	0.0	0.0	0.0	0.0	17.5
2010		19,939	2,371	2,927	18	3,488	390	26	2,798	1,362	352	26	12	24	298	1,339	551	65	227	188	17	147	64	37	2	1	14	11	3,184
	(%)	11.9	14.7	0.1	17.5	2.0	0.1	14.0	6.8	1.8	0.1	0.1	0.1	0.1	1.5	6.7	2.8	0.3	1.1	0.9	0.1	0.7	0.3	0.2	0.0	0.0	0.1	0.1	16.0
2011		22,034	2,082	2,493	14	2,765	351	29	2,452	1,309	327	30	15	22	435	1,227	552	31	170	150	17	138	53	39	2	4	3	7	7,317
	(%)	9.5	11.3	0.1	12.6	1.6	0.1	11.1	5.9	1.5	0.1	0.1	0.1	0.1	2.0	5.6	2.5	0.1	0.8	0.7	0.1	0.6	0.2	0.2	0.0	0.0	0.0	0.0	33.2
2012		21,346	1,817	2,070	9	2,604	454	91	2,145	1,369	383	27	11	13	523	760	808	31	150	144	9	130	43	58	42	5	4	7	7,639
	(%)	8.5	9.7	0.0	12.2	2.1	0.4	10.1	6.4	1.8	0.1	0.1	0.1	0.1	2.5	3.6	3.8	0.1	0.7	0.7	0.0	0.6	0.2	0.3	0.2	0.0	0.0	0.0	35.8
2013		26,919	2,842	3,001	14	4,969	826	176	3,369	2,632	755	65	13	18	1,143	1,098	1,361	83	238	240	38	262	58	68	135	5	13	7	3,490
	(%)	10.6	11.1	0.0	18.5	3.1	0.7	12.5	9.8	2.8	0.2	0.0	0.1	4.2	4.1	5.1	0.3	0.9	0.9	0.1	1.0	0.2	0.3	0.5	0.0	0.0	0.0	0.0	13.0
2014		29,863	2,584	2,629	13	4,919	766	122	2,604	2,115	655	60	10	22	1,269	1,200	1,243	154	268	440	18	234	73	68	1	8	14	5	8,369
	(%)	8.7	8.8	0.0	16.5	2.6	0.4	8.7	7.1	2.2	0.2	0.0	0.1	4.3	4.0	4.2	0.5	0.9	1.5	0.1	0.8	0.2	0.2	0.0	0.0	0.0	0.0	0.0	28.0

연도	장소	계	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주택	고속도로	노상	상점	시장·노점	숙박업소·목욕탕	유흥·접객업소	사무실	공장	공사장·광산	창고	역·대합실	지하철	기타·교통수단 내	총행장	유원지	학교	금융기관	의료기관	종교기관	산아	해상	부대	구금장소	공지	기타
2015		31,063	2,440	2,683	24	4,748	744	163	2,611	2,097	712	36	11	13	1,857	1,570	876	63	304	418	17	264	84	72	1	8	20	3	9,224
	(%)	7.9	8.6	0.1	15.3	2.4	0.5	8.4	6.8	2.3	0.1	0.0	0.0	6.0	5.1	2.8	0.2	1.0	1.3	0.1	0.8	0.3	0.2	0.0	0.0	0.1	0.0	29.7	
2016		29,357	2,597	2,513	18	3,962	657	161	2,526	2,351	637	62	15	16	1,121	1,309	929	63	274	423	22	268	61	64	2	11	37	6	9,252
	(%)	8.8	8.6	0.1	13.5	2.2	0.6	8.6	8.0	2.2	0.2	0.1	0.1	3.8	4.5	3.2	0.2	0.9	1.4	0.1	0.9	0.2	0.2	0.0	0.0	0.1	0.0	31.5	
2017		32,824	2,845	2,431	20	4,448	798	185	2,673	2,588	596	55	13	19	1,481	1,692	1,035	79	284	491	20	292	61	39	3	15	29	3	10,629
	(%)	8.7	7.4	0.1	13.5	2.4	0.6	8.1	7.9	1.8	0.2	0.0	0.1	4.5	5.2	3.1	0.2	0.9	1.5	0.1	0.9	0.2	0.1	0.0	0.0	0.1	0.0	32.4	
2018		32,104	3,679	3,030	27	3,928	1,049	336	3,397	4,018	690	46	18	18	1,249	1,545	1,359	112	323	581	19	318	78	50	2	18	47	3	6,164
	(%)	11.5	9.4	0.1	12.2	3.3	1.0	10.6	12.5	2.2	0.1	0.1	0.1	3.9	4.8	4.2	0.3	1.0	1.8	0.1	1.0	0.2	0.2	0.0	0.1	0.1	0.0	19.2	
2019		32,029	4,127	2,790	20	3,909	1,125	308	3,556	4,281	659	62	20	17	1,132	1,541	1,271	123	331	585	15	396	86	43	3	17	34	2	5,576
	(%)	12.9	8.7	0.1	12.2	3.5	1.0	11.1	13.4	2.0	0.2	0.1	0.1	3.5	4.8	4.0	0.4	1.0	1.8	0.0	1.2	0.3	0.1	0.0	0.1	0.1	0.0	17.4	
2020		30,105	4,391	2,886	13	3,533	1,125	304	3,414	3,874	715	51	17	17	795	891	1,089	107	269	349	22	413	57	36	7	22	34	4	5,670
	(%)	14.6	9.6	0.0	11.7	3.7	1.0	11.3	12.9	2.4	0.2	0.1	0.1	2.6	3.0	3.6	0.3	0.9	1.2	0.1	1.4	0.2	0.1	0.0	0.1	0.1	0.0	18.8	
전체		338,833	35,122	34,815	213	48,848	8,920	1,929	36,202	30,021	7,012	564	183	229	11,538	15,610	11,734	992	3,179	4,348	234	3,040	807	641	202	124	266	74	81,986
	(%)	10.4	10.3	0.0	14.4	2.6	0.6	10.7	8.9	2.1	0.2	0.0	0.1	3.4	4.6	3.5	0.3	0.9	1.3	0.1	0.9	0.2	0.2	0.0	0.0	0.1	0.0	24.2	

4-1-10 연도별 성폭력 주요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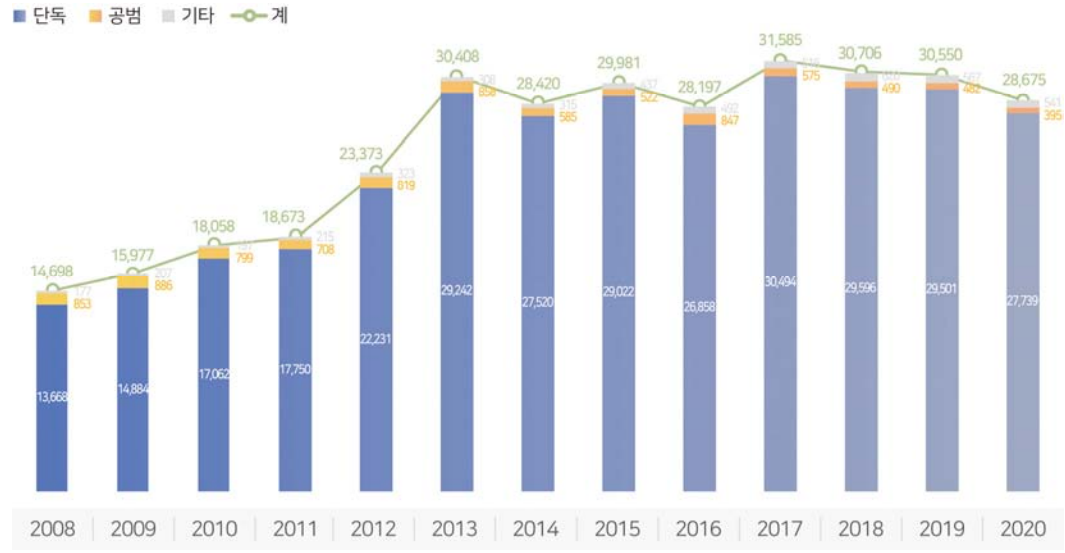
10 성폭력범죄 공범수

4-1-11 연도별 성폭력범죄 공범 수

(단위 : 건)

연도	계	단독	공범 (소계)	공범						
				2명	3명	4명	5명	10명 이하	20명 이하	기타
2008	14,698	13,668	1,030	489	178	70	34	76	6	177
	(%)	93.0	7.0	3.3	1.2	0.5	0.2	0.5	0.0	1.2
2009	15,977	14,884	1,093	534	160	71	53	58	10	207
	(%)	93.2	6.8	3.3	1.0	0.4	0.3	0.4	0.1	1.3
2010	18,058	17,062	996	470	161	76	45	41	6	197
	(%)	94.5	5.5	2.6	0.9	0.4	0.2	0.2	0.0	1.1
2011	18,673	17,750	923	439	139	57	38	33	2	215
	(%)	95.1	4.9	2.4	0.7	0.3	0.2	0.2	0.0	1.2
2012	23,373	22,231	1,142	513	172	63	28	35	8	323
	(%)	95.1	4.9	2.2	0.7	0.3	0.1	0.1	0.0	1.4
2013	30,408	29,242	1,166	552	164	56	28	51	7	308
	(%)	96.2	3.8	1.8	0.5	0.2	0.1	0.2	0.0	1.0
2014	28,420	27,520	900	392	106	49	10	26	2	315
	(%)	96.8	3.2	1.4	0.4	0.2	0.0	0.1	0.0	1.1
2015	29,981	29,022	959	339	101	35	14	28	5	437
	(%)	96.8	3.2	1.1	0.3	0.1	0.0	0.1	0.0	1.5
2016	28,197	26,858	1,339	592	157	41	21	30	6	492
	(%)	95.3	4.7	2.1	0.6	0.1	0.1	0.1	0.0	1.7
2017	31,585	30,494	1,091	410	106	22	16	19	2	516
	(%)	96.5	3.5	1.3	0.3	0.1	0.1	0.1	0.0	1.6
2018	30,706	29,596	1,110	362	71	25	11	18	3	620
	(%)	96.4	3.6	1.2	0.2	0.1	0.0	0.1	0.0	2.0
2019	30,550	29,501	1,049	339	75	33	14	20	1	567
	(%)	96.6	3.4	1.1	0.2	0.1	0.0	0.1	0.0	1.9
2020	28,675	27,739	936	265	69	21	9	30	1	541
	(%)	96.7	3.3	0.9	0.2	0.1	0.0	0.1	0.0	1.9
전체	329,301	315,567	13,734	5,696	1,659	619	321	465	59	4,915
	(%)	95.8	4.2	1.7	0.5	0.2	0.1	0.1	0.0	1.5

4-1-11 연도별 성폭력 공범 수



11 성폭력범죄자 재범기간 및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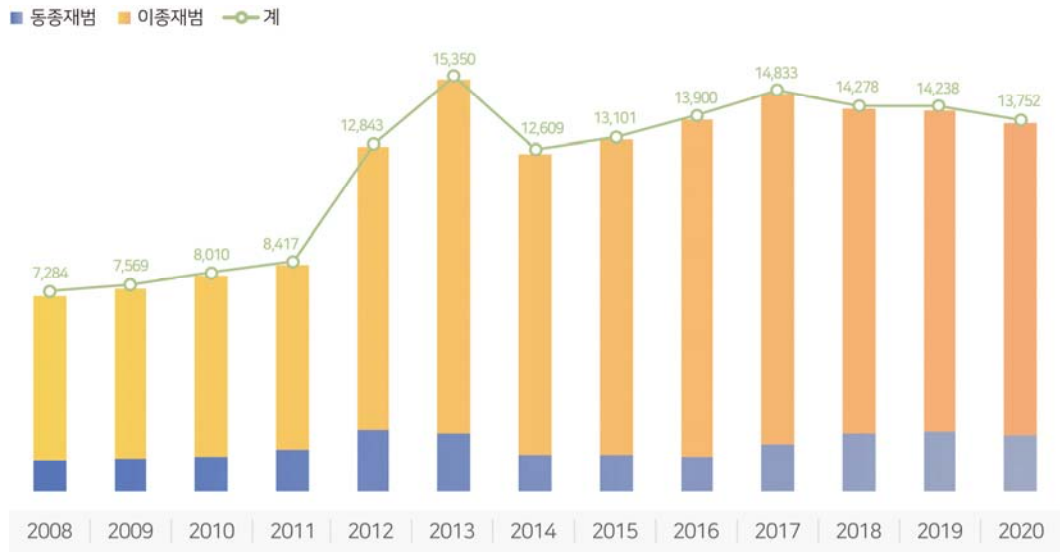
4-1-12 연도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기간 및 종류

(단위 : 명)

연도	계	동종 재범 (소계)	동종재범							이종 재범 (소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2008	7,284	1,145	49	70	63	299	180	153	331	6,139
	(%)	15.7	0.7	1.0	0.9	4.1	2.5	2.1	4.5	84.3
2009	7,569	1,267	65	84	77	320	190	172	359	6,302
	(%)	16.7	0.9	1.1	1.0	4.2	2.5	2.3	4.7	83.3
2010	8,010	1,325	60	102	111	287	201	176	388	6,685
	(%)	16.5	0.7	1.3	1.4	3.6	2.5	2.2	4.8	83.5
2011	8,417	1,568	96	108	101	373	195	233	462	6,849
	(%)	18.6	1.1	1.3	1.2	4.4	2.3	2.8	5.5	81.4
2012	12,843	2,329	129	179	172	553	339	353	604	10,514
	(%)	18.1	1.0	1.4	1.3	4.3	2.6	2.7	4.7	81.9
2013	15,350	2,159	74	142	181	546	310	315	591	13,191
	(%)	14.1	0.5	0.9	1.2	3.6	2.0	2.1	3.9	85.9

연도	계	동종 재범 (소계)	동종재범							이종 재범 (소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2014	12,609	1,371	39	59	102	295	236	171	469	11,238
	(%)	10.9	0.3	0.5	0.8	2.3	1.9	1.4	3.7	89.1
2015	13,101	1,404	43	54	85	300	211	199	512	11,697
	(%)	10.7	0.3	0.4	0.6	2.3	1.6	1.5	3.9	89.3
2016	13,900	1,280	30	59	74	293	225	218	381	12,620
	(%)	9.2	0.2	0.4	0.5	2.1	1.6	1.6	2.7	90.8
2017	14,833	1,788	66	100	111	380	304	259	568	13,045
	(%)	12.1	0.4	0.7	0.7	2.6	2.0	1.7	3.8	87.9
2018	14,278	2,206	93	141	151	496	391	317	617	12,072
	(%)	15.5	0.7	1.0	1.1	3.5	2.7	2.2	4.3	84.5
2019	14,238	2,255	74	119	133	560	332	354	683	11,983
	(%)	15.8	0.5	0.8	0.9	3.9	2.3	2.5	4.8	84.2
2020	13,752	2,145	80	140	141	513	312	334	625	11,607
	(%)	15.6	0.6	1.0	1.0	3.7	2.3	2.4	4.5	84.4
전체	156,184	22,242	898	1,357	1,502	5,215	3,426	3,254	6,590	133,942
	(%)	14.2	0.6	0.9	1.0	3.3	2.2	2.1	4.2	85.8

4-1-12 연도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기간 및 종류



1. 국내문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9). 「연구보고서」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보호관찰 연계방안 연구: 외국의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보호관찰 연계 사례 중심으로.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9). 보호관찰 30년사.
- 대검찰청. (2021). 「범죄분석」.
- 법무부 교정본부. (2021). 교정통계연보.
- 법무연수원. (2021). 범죄백서.
- 통계청. e-나라지표.
- 강지현·김정명·김지선. (2012). 성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Ⅰ) -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 연구.
- 이백철·조윤오·함혜현·한영선·박은영·권해수·이창한·박미랑·김지선·조성남·김안식·박준휘. (2019). 범죄예방정책학
- 김지선·김영중·오현아·이정원·강지현. (2020).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Ⅰ):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 강지현. (2013). 신상공개제도 대상자의 제도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호관찰 중인 신상공개 대상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2).
- 김정환. (2013). “2013년 성폭행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 보호관찰, 13(1).
- 김태명. (2011).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2(3).
- 문지선. (2016).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개선방안, 신상정보등록제도 개선 입법공청회 자료.
- 법무부응역과제. (2015). 성범죄자 프로파일링 및 신상정보등록제도 효율화 방안.
- 심선옥. (2015).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외출장보고서.
- 조윤오. (2017).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조직 및 인력 운영 개선 방안 연구.
- 조종태. (2015).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형사법학 석사 학위 논문.
- 최응렬·장현석·이창배. (2007).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1권.

2. 국외문헌 및 웹사이트

- Beard, J. (2017).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sex offenders. House of Commons Briefing Paper, Number 5267, 28.
- Brodsky, D. (2006), The ‘predator’ next door: Risk management at the community interface. 37th Annual APPL meeting, Chicago, USA.

- Cole, M., & Petrunik, M. (2006).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privacy rights. Criminal Justice Reports.
- Davidson, J. (2009). Sex offender registration – a review of practice in the United Kingdom, Europe, and North America. Hallam Centre for Community Justice Briefing Paper.
- Donaher, E. (2015). Sex offender registration laws for the homeless: Safeguarding society or punishing sexually dangerous individuals for being homeless?
- Lovell, E., (2007). Megan's law: Does it protect Children? LohDom: Policy and Public Affairs, NSPCC.
- Murphy, L., Fedoroff, J. P., & Martineau, M. (2009). Canada's sex offender registries: Background, implementation, and social policy considerations.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18(1-2).
- Newburn, K. (2011). The prospect of an international sex offender registry: Why an international system modeled after united states sex offender laws is not an effective solution to stop child sexual abuse.
- Petrunik, M., Murphy, L., & Fedoroff, J. P. (2008). American and Canadian approaches to sex offenders: A study of the politics of dangerousness.
- Public Safety Canada. (2007). National sex offender registry.
<http://www.publicsafety.gc.ca/prg/cor/tls/soir-eng.aspx>.
- Thomas, T., (2008). Sex offender 'Register': A case Study in Function Creep.
- U.S. Department of Justice. (2016). SMART summary 2016 global survey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system. U.S. Department of Justice.
- Vess, J., Langskaill, B., Day, A., Powell, M., & Graffam, J.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f Australian sex offender legislation for sex offender registrie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4, 404-424. doi:10.1177/0004865811419065.
- 미국 Dru Sjodin National Sex offeender Publie Website(<https://www.nsopw.gov/Home>) 2022. 11. 21. 최종방문
- 미국 SMART(the Office of Sex Offener Sentencing, Monitoring, Apprehending, Registering, and Tracking)(<https://smart.ojp.gov/>) 2022. 11. 21. 최종방문
- 미국 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https://www.dps.texas.gov/administration/crime_records/pages/sexoffender.htm) 2022. 11. 21. 최종방문
- 미국 Ontario Ministray of the Solicitor General (https://www.mcscs.jus.gov.on.ca/english/police_serv/sor/sor.html) 2022. 11. 21. 최종방문

미국 Nevada Sex offender Public website (<https://www.nvsexoffenders.gov/ConditionsOfUse.Asp>) 2022. 11. 21. 최종방문

미국 Louisiana STATE SEX OFFENDER AND CHILD PREDATOR REGISTRY (<https://www.lsp.org/socpr/default.html>) 2022. 11. 21. 최종방문

캐나다 Manitoba Justice(<https://www.gov.mb.ca/justice/commsafe/notification/index.html>) 2022. 11. 21. 최종방문

캐나다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https://www.rcmp-grc.gc.ca/en/sex-offender-management>) 2022. 11. 21. 최종방문

캐나다 Sex Offender Information Registration Act

프랑스 RÉPUBLIQUE FRANÇAISE Légifrance (<https://www.legifrance.gouv.fr/>) 2022. 11. 21. 최종방문

2023 성범죄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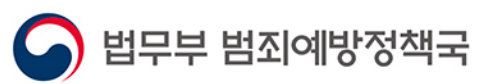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총괄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 및 집필 심선옥 (법무부 전자감독과장)
이정희 (법무부 전자감독과 사무관)
박지훈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책임관)
권오경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책임관)
박홍래 (법무부 전자감독과 책임관)
고창범 (법무부 전자감독과 책임관)
신은비 (법무부 전자감독과 책임관)
김은정 (법무부 전자감독과 주무관)
김유정 (법무부 전자감독과 주무관)

디자인·인쇄 디자인페이지플러스(주) 02-2285-527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